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2025. 2.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 정 조 사 특 별 위 원 회

목 차

Ⅰ. 국정조사위원회의 구성 ····· 1

1. 구성경위 ····· 1

2. 구성현황 ····· 2

가. 위원명단 ····· 2

나. 직원명단 ····· 4

다. 보좌직원명단 ····· 5

Ⅱ.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개황 ····· 6

1. 조사목적 ····· 6

2. 조사범위 ····· 7

3. 조사방법 ····· 8

4. 조사대상기관 ····· 9

5. 조사기간 ····· 10

6. 조사일정 ····· 11

7. 증인 및 참고인 ····· 14

가. 기관증인 ····· 14

나. 일반증인 및 참고인 ····· 27

Ⅲ. 국정조사 실시내용 ····· 46

1. 기관보고 ····· 46

[1월 14일] ····· 46

(1) 국방부 ····· 46

(2) 합동참모본부 ····· 60

(3) 육군본부 ····· 67

(4) 국군방첩사령부 ····· 75

(5) 정보사령부 ····· 80

(6) 수도방위사령부 ····· 86

(7) 특수전사령부 ····· 91

(8) 국방부조사본부 ····· 102

[1월 15일] ····· 104

(1)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 104

(2) 기획재정부 ····· 113

(3) 법무부 ····· 118

(4) 대검찰청 ····· 126

(5) 법제처 ····· 127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129

(7) 행정안전부 ····· 132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135

(9) 경찰청 ····· 143

(10) 소방청 ····· 155

(11) 국가정보원 ····· 158

(12) 국무총리실 ····· 163

2. 청문회 주요 질의·답변 요지 ····· 167

[2025년 1월 22일, 제1차 청문회] ····· 167

(1) 12·3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 167

(2) 계엄선포 원인 및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 ····· 174

(3) 12·3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여부 및 그 적법성 ···· 182

(4) 12·3 계엄 선포 후 각 국무위원들의 후속대책 이행 등 ··· 186

(5) 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의 구체적 경위와 헌법 및 법률 준수 여부 ·· 194

(6)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의 임명과 포고령 포고 경위 ··· 198

(7) 계엄 선포 전 병력 및 경찰력 동원을 위한 준비사항 ··· 199

(8) 주요 헌법기관 등의 점거 경위 ····· 202

(9)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에 관한 사항 ····· 204

(10)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의 동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 209

(11) 계엄해제 의결 후 해제 공고 지연에 관한 사항 ····· 212

(12) 내란범죄 수사주체 논란과 수사상황 점검 ····· 212

(13) 계엄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226

(14) 2차 계엄 가능성에 관한 사항 ····· 227

(15) 국무위원 탄핵에 관한 사안 ····· 228

(16) 관저 골프연습시설 설치 의혹에 관한 사항 ····· 230

(17) 기타 대통령경호처 관련 사항 ····· 232

(18) 기타 국정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일체 ··· 235

[2025년 2월 4일, 제2차 청문회] ····· 239

(1) 12·3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 239

(2) 계엄선포 원인 및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 ····· 253

(3) 12·3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여부 및 그 적법성 ·· 262

(4) 12·3 계엄 선포 후 각 국무위원들의 후속대책 이행 등 ·· 264

(5) 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의 구체적 경위와 헌법 및 법률 준수 여부 ··· 273

(6)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의 임명과 포고령 포고 경위 … 275

(7) 계엄 선포 전 병력 및 경찰력 동원을 위한 준비사항 … 277

(8) 주요 헌법기관 등의 점거 경위 …… 279

(9)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에 관한 사항 …… 282

(10)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의 동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 284

(11) 계엄해제 의결 후 해제 공고 지연에 관한 사항 …… 297

(12) 내란범죄 수사주체 논란과 수사상황 점검 …… 299

(13) 기타 국정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일체 …… 301

(14) 2차 계엄 가능성에 관한 질의 …… 319

(15)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발언 …… 321

[2025년 2월 6일, 제3차 청문회] …… 323

(1) 12·3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 323

(2) 계엄선포 원인 및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 …… 329

(3) 12·3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여부 및 그 적법성 … 335

(4) 12·3 계엄 선포 후 각 국무위원들의 후속대책 이행 등 · 339

(5) 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의 구체적 경위와 헌법 및 법률 준수 여부 · 347

(6)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의 임명과 포고령 포고 경위 …· 349

(7) 계엄 선포 전 병력 및 경찰력 동원을 위한 준비사항 …· 349

(8) 주요 헌법기관 등의 점거 경위 ……· 352

(9)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에 관한 사항 ……· 353

(10)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의 동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356

(11) 계엄해제 의결 후 해제 공고 지연에 관한 사항 ……· 365

(12) 내란범죄 수사주체 논란과 수사상황 점검 ……· 369

(1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관련 사항 ……· 378

(14) 기타 국정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일체 ·· 383

[2025년 2월 21일, 제4차 청문회] ……· 399

(1) 12·3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 399

(2) 계엄선포 원인 및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 ……· 403

(3)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의 임명과 포고령 포고 경위 … 404

(4) 계엄 선포 전 병력 및 경찰력 동원을 위한 준비사항 … 407

(5) 주요 헌법기관 등의 점거 경위 ……· 410

(6)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에 관한 사항 ……· 412

(7)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의 동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 420

(8) 계엄해제 의결 후 해제 공고 지연에 관한 사항 ····· 427

(9) 2차 계엄 가능성에 관한 사항 ····· 428

(10) 내란범죄 수사주체 논란과 수사상황 점검 ····· 435

(11) 기타 국정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일체 ·· 436

[2025년 2월 25일, 제5차 청문회] ····· 444

(1) 12·3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 444

(2) 계엄선포 원인 및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 ····· 448

(3) 12·3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여부 및 그 적법성 ····· 453

(4) 12·3 계엄 선포 후 각 국무위원들의 후속대책 이행 등 ··· 456

(5) 계엄 선포 전 병력 등의 동원을 위한 준비사항 ····· 460

(6)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에 관한 사항 ····· 462

(7)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의 동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 465

(8)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행위에 관한 사항 ····· 467

(9) 내란범죄 수사주체 논란과 수사상황 점검 ····· 476

(10) 기타 국정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일체 ··· 496

3. 현장조사 ····· 521

[1월 21일,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 521

[2월 5일, 서울동부구치소, 서울구치소, 수도방위사령부] ···· 523

Ⅳ. 종합의견 ····· 527

1.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의 경위 ··· 527

2.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의 진상 및 원인 규명 ··· 530

(1) 12·3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병력 및 경찰력 동원을 위한 준비 여부 ·· 530

(2) 계엄선포 원인 및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 ····· 539

(3) 12·3 선포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여부 및 그 적법성 ·· 548

(4) 12·3 계엄 선포 후 각 국무위원들의 후속대책 이행 등 ··· 554

(5) 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의 구체적 경위와 헌법 및 법률 준수 여부 ·· 560

(6) 계엄 선포 후 포고령 포고 경위 ····· 562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경위 ····· 564

(8)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에 관한 사항 ····· 571

(9)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및 경찰력 등의 동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 580

(10) 계엄해제 의결 후 해제 공고 지연에 관한 사항 ····· 593

(11) 내란범죄 수사주체 논란과 수사상황 점검 ····· 596

(12) 기타 국정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일체 ·· 617

3.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향후 대책 ····· 628

4. 불출석 및 위증 등 고발의결사항 ····· 633

(1) 불출석증인에 대한 고발 관련사항 등 ····· 633

(2) 위증고발 관련사항 ····· 634

5. 기타 논의사항 ····· 635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한 국정조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함.

Ⅰ. 국정조사위원회의 구성

1. 구성경위

가. 2024년 12월 12일 박찬대·정춘생·천하람·윤종오·용혜인·한창민 의원 등 190인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위헌·무효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제출됨.

나. 2024년 12월 30일 국회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18인을 선임·통지함(더불어민주당 10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 1인)

다. 2024년 12월 31일 제420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함.

라. 2025년 2월 12일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활동기간 연장의 건(15일간 연장하여 활동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로 함)에 대한 보고를 받고, 원안대로 승인함.

마. 2025년 2월 28일 제422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제1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함.

2. 구성현황

가. 위원명단

(2024. 12. 31. 구성 명단)

구 분	교섭단체	위 원	비 고
위원 (18)	더불어민주당 (10)	안 규 백 한 병 도 김 병 주 김 승 원 민 병 덕 민 홍 철 박 선 원 백 혜 련 윤 건 영 추 미 애	(위원장) (간사)
	국민의힘 (7)	김 성 원 강 선 영 곽 규 택 박 준 태 임 종 득 주 진 우 한 기 호	(간사)
	비교섭단체 (1)	용 혜 인	

※ 위원 사보임 현황

- 김승원 → 박지원('24.12.31.,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 김승원('25.1.6.,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 부승찬('25.1.17., 더불어민주당)
  김성원 → 장동혁('25.2.4., 국민의힘)

(2025. 2. 28. 기준 명단)

구 분	교섭단체	위 원	비 고
위원 (18)	더불어민주당 (10)	안 규 백 한 병 도 김 병 주 민 병 덕 민 홍 철 박 선 원 백 혜 련 부 승 찬 윤 건 영 추 미 애	(위원장) (간사)
	국민의힘 (7)	한 기 호 강 선 영 곽 규 택 박 준 태 임 종 득 장 동 혁 주 진 우	(간사)
	비교섭단체 (1)	용 혜 인	

나. 직원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국 방 위 원 회 (13인)	수 석 전 문 위 원	오 명 호	
	전 문 위 원	류 승 우	
	행 정 실 장	신 세 민	
	입 법 조 사 관	김 용 우	
	입 법 조 사 관	김 대 은	
	입 법 조 사 관	길 기 혁	
	입 법 조 사 관	조 정 일	
	입 법 조 사 관	김 영 훈	
	입 법 조 사 관	황 태 율	
	행 정 관	고 형 태	
	주 무 관	김 윤 진	
	주 무 관	강 량 인	
	주 무 관	박 성 희	
국회운영위원회 (3인)	입 법 조 사 관	설 그 린	
	주 무 관	최 선 아	
	주 무 관	우 지 현	
법제사법위원회 (2인)	입 법 조 사 관	정 수 정 (~'25.1.23)	최 한 슬 ('25.1.31~)
	입 법 조 사 관	이 상 민	
행정안전위원회 (3인)	입 법 조 사 관	전 성 민	
	입 법 조 사 관	구 진 회	
	입 법 조 사 관	김 형 래	
정 보 위 원 회 (1인)	입 법 조 사 관	이 수 진	
국 회 사 무 처 (1인)	행 정 사 무 관 시 보	최 승 표 (~'25.2.13)	

※ 직원 임면 현황
- 면직: 정수정 ('25.1.23., 법제사법위원회), 임명: 최한슬('25.1.31., 법제사법위원회)
- 면직: 최승표 ('25.2.13., 국회사무처)

다. 보좌직원명단

소 속	위원명	보좌직원명단
더불어민주당 (10인)	안규백	성영준, 이정효, 김준태, 이정수, 나호선, 김혜원, 심재용, 길창룡, 이주혜, 김재겸
	한병도	기영서, 조현아, 권오선, 윤무영, 서영준, 이세라, 박혜민, 유선준
	김병주	곽병호, 최문희, 안태훈, 김동춘, 황동현, 이민희, 전종호, 이유리, 지수현
	민병덕	김대경, 김병섭, 강나루, 배장원, 전영규, 김영준, 한지영, 안성익, 박영숙
	민홍철	김대승, 한주연, 성채린, 황광덕, 임주성, 정재욱, 지준혁, 노은주
	박선원	강화수, 신동일, 김지혜, 조명준, 김태인, 한재호, 이혜인, 김민지, 천서현
	백혜련	권훈, 전용두, 차광일, 최예지, 원서연, 주의현, 김재혁, 서진호, 이승찬
	부승찬	이재연, 정재민, 김영식, 이규정, 남병호, 송재희, 서정일, 김세원, 서인하
	윤건영	권기혁, 여정민, 안본아, 전성건, 정지환, 이준배, 김충일, 안유빈, 이아연
	추미애	강동기, 김재형, 김근민, 송성수, 신혜인, 김혁수, 전설아, 김성용, 김민기
국민의힘 (7인)	한기호	김민찬, 조재숙, 선민수, 송유준, 정다와, 손정희, 신승윤, 박순화
	강선영	최근대, 임주석, 손선엽, 임계영, 최도윤, 허은서
	곽규택	기남형, 한수근, 이용운, 이한식, 정성안, 유승현, 백다인, 김보미, 김규남
	박준태	강효나, 오세웅, 우충희, 이정룡, 김진서, 정휘윤, 오영주
	임종득	권태윤, 정연우, 권기환, 박찬현, 오장택, 오희정, 박채림, 김보경, 김기영
	장동혁	이승구, 한상필, 정희태, 한형민, 김홍범, 배지연, 유병효, 이혁진, 신다슬
	주진우	이시우, 정성철, 김대원, 최지현, 최주연, 황성연, 강지수, 김재헌, 최해인
비교섭단체 (1인)	용혜인	김영길, 장홍배, 양다혜, 김종필, 양지혜, 금동운, 이혜정, 신원호, 김지수

Ⅱ.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개황

1. 조사목적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통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으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본청에 모여 있는 국회의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기 위해 무장한 군 병력을 투입하여 헌법기관을 난입·무단 점거하는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강압에 의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여 내란의 우두머리로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내란 행위를 한 혐의가 있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함.

현직 대통령이 본인의 권력강화를 위해 벌인 사건으로써 그 어떤 사건보다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검찰, 군검찰, 경찰 및 공수처가 경쟁적·산발적으로 수사를 벌이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가능성이 언급되는 등 극도의 헌정질서 혼란이 초래되는 상황임.

국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12·3 계엄 사태의 본질인 내란 혐의를 조사하고, 헌정질서 문란 행위를 확인한 후, 국회가 당장 취할 조치가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국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2. 조사범위

가. 12·3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나. 계엄선포 원인 및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

다. 12·3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여부 및 그 적법성

라. 12·3 계엄 선포 후 각 국무위원들의 후속대책 이행 등

마. 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의 구체적 경위와 헌법 및 법률 준수 여부

바.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의 임명과 포고령 포고 경위

사. 계엄 선포 전 병력 및 경찰력 동원을 위한 준비사항

아. 주요 헌법기관 등의 점거 경위

자.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에 관한 사항

차.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의 동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카.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행위에 관한 사항

타. 계엄해제 의결 후 해제 공고 지연에 관한 사항

파. 내란범죄 수사주체 논란과 수사상황 점검

하. 계엄해제 후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 공동담화 경위

거. 기타 국정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일체

3. 조사방법

가. 조사와 관련된 기관 보고

나. 조사와 관련된 서류제출 실시

다. 각종 서류에 대한 검증 실시

라.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신문은 청문회 방법으로 시행

마. 증인 또는 참고인을 변경 또는 추가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바. 위원회의 국정조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문회 개최 전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위원회 전문위원 등 직원과 위원회의 간사가 추천하는 전문가 등으로 예비조사팀을 구성할 수 있음. 인원은 간사 간에 협의하여 정함.

사. 국정조사 청문회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 시 TV, 인터넷 등으로 생중계할 수 있음.

4. 조사대상기관

가. 보고 및 서류제출기관

o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서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포함), 대검찰청(특별수사본부 포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국방부검찰단, 드론작전사령부 포함), 합동참모본부, 육군(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포함), 공군, 당시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로 정하는 기관

※ 기관보고는 각 기관의 장이 보고함을 원칙으로 함.

※ 서류등의 제출요구는「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음.

나. 증인 및 참고인

o 증인 및 참고인은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채택함.

5. 조사기간 : 2024. 12. 31. ~ 2025. 2. 28. (60일)

가. 예비조사기간 : 2024. 12. 31.부터 실시하되, 구체적 일정은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나. 기관보고 :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다. 현장조사 : 현장검증을 실시하되,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라. 청 문 회 :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함.

마.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음.

※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당시 활동기간을 2024. 12. 31. ~ 2025. 2. 13. (45일)로 의결했으나,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2025년 2월 28일까지 15일간 연장함.

6. 조사일정

○ 기관보고

날짜	주요 활동	비고
’25. 1. 14.(화)	○ 기관보고(1차) -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국방부조사본부	
’25. 1. 15(수)	○ 기관보고(2차) -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안보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대검찰청,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국가정보원	

○ 위원회 회의

회의차수(날짜)	주요 활동	비고
제1차 전체회의 (’24. 12. 31)	○ 위원장·간사 선임 ○ 국정조사계획서 채택	
제2차 전체회의 (’25. 1. 7)	○ 위원회 운영 일정 결정 ○ 기관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의결 ○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 의결 ○ 현장조사 실시 의결 ○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의결	
제3차 전체회의 (’25. 1. 14)	○ 기관보고 실시(제1차) ○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의결	
제4차 전체회의 (’25. 1. 15)	○ 기관보고 실시(제2차)	

회의차수(날짜)	주요 활동	비고
제5차 전체회의 ('25. 1. 22)	○ 국정조사청문회 실시(제1차) - 동행명령장 발부 ○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의결	
제6차 전체회의 ('25. 2. 4)	○ 국정조사청문회 실시(제2차) - 동행명령장 발부 ○ 간사 선임의 건	
제7차 전체회의 ('25. 2. 6)	○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제3차) - 동행명령장 발부 ○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8차 전체회의 ('25. 2. 13)	○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의결	
제9차 전체회의 ('25. 2. 21)	○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제4차) - 동행명령장 발부	
제10차 전체회의 ('25. 2. 25)	○ 국정조사 청문회 실시(제5차) - 동행명령장 발부	
제11차 전체회의 ('25. 2. 28)	○ 국정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불출석 및 동행명령 거부 등 증인 고발의 건	

○ 현장조사

날짜	주요 활동	비고
’25. 1. 22.	○ 계엄 당시 작전시설 확인 및 특위 위원 질의·답변 -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25. 2. 5	○ 구치소 수감 증인 접견 시도 등 - 서울동부구치소 : 김용현 - 서울구치소 : 윤석열, 노상원, 김용군 - 수도방위사령부 : 여인형	

7. 증인 및 참고인[1)]

가. 기관증인

❑ 1. 14(화) 1차 기관보고 (82명)

소 속 기 관	직 위	성 명	신 문 요 지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김선호	국정조사범위 및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조창래	〃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철진	〃
국방부	대변인	전하규	〃
국방부	인사기획관	오영대	〃
국방부	前 국방혁신기획관	방정환	〃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의장	김명수	〃
합동참모본부	합동참모차장	정진팔	〃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박명재	〃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이승오	〃

1) 이하 표의 음영부분은 출석하지 않은 증인·참고인임.

소 속 기 관	직 위	성 명	신 문 요 지
육군	前 합참 합동화력과장 (現 육군 제5포병여단장)	김지환	〃
합동참모본부	군수부장	서동설	〃
합동참모본부	민군작전부장	허태선	〃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	이재식	〃
병무청	청장	김종철	〃
국군방첩사령부	前 사령관	여인형	〃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 직무대리	이경민	〃
국군방첩사령부	前 1처장	정성우	〃
국군방첩사령부	2처장	임삼묵	〃
국군방첩사령부	前 수사단장	김대우	〃
국군방첩사령부	비서실장	이창엽	〃
국군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	나승민	〃
국군방첩사령부	군사기밀수사실장	노영훈	〃

소 속 기 관	직 위	성 명	신 문 요 지
국방부(국직부대)	국방정보본부장	원천희	〃
국방부(국직부대)	사이버작전사령관	조원희	〃
국방부(국직부대)	국방부조사본부장	박헌수	〃
국방부(국직부대)	국방부조사본부차장	김상용	〃
국방부(국직부대)	국방부조사본부 기획처장	김성곤	〃
국방부(국직부대)	국방부검찰단장	김동혁	〃
국방부(국직부대)	前 정보사령관	문상호	〃
국방부(국직부대)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고동희	〃
국방부(국직부대)	정보사령부 지휘통신처	김성호	〃
국방부(국직부대)	정보사령부 ○○부대장	이○○	〃
국방부(국직부대)	정보사령부 ○○여단 참모장	이○○	〃
국방부(국직부대)	드론작전사령관	김용대	〃
국방부(국직부대)	드론작전사령부 정작처장	이제승	〃

소 속 기 관	직 위	성 명	신 문 요 지
국방부(국직부대)	정보사령부 대령	김봉규	〃
국방부(국직부대)	정보사령부 대령	정성욱	〃
국방부(국직부대)	정보사령부 대령	정○○	〃
국방부(국직부대)	777사령관	박종선	〃
국방부(국직부대)	드론작전사령부 제103드론대대장	왕지훈	〃
국방부(국직부대)	드론작전사령부 제103드론대대 정찰중대 제1작전반장	도 현	〃
국방부(국직부대)	국군심리전단장	양현승	〃
국방부(국직부대)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배도건	〃
육군	前 참모총장	박안수	〃
육군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	고창준	〃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강호필	〃
육군	참모차장	고현석	〃
육군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김진익	〃

소 속 기 관	직 위	성 명	신 문 요 지
육군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조종래	〃
육군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	〃
육군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장	김승완	〃
육군	육군 인사사령부 정책연수	박성훈	〃
육군	육군본부 정책실장	김홍준	〃
육군	前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직무대리	김호복	〃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제2특수임무대대장	윤태현	〃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제35특수임무대대장	박진우	〃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김창학	〃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작전과장	안경민	〃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	〃
육군	前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

소 속 기 관	직 위	성 명	신 문 요 지
육군	특수전사령관 직무대리	박성제	〃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	이상현	〃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장	김정근	〃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9공수여단장	안무성	〃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수작전항공단장	김세운	〃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707특임단장	김현태	〃
육군	특수전사령부 군수처장	최용준	〃
육군	특전사 감찰실장	남기동	〃
육군	제35보병사단장	김광석	〃
육군	前 ○○여단장 (現 제2군단 부군단장)	박○○	〃
육군	前 제2기갑여단장	구삼회	〃
육군	육군사관학교장	소형기	〃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	박정환	〃

소 속 기 관	직 위	성 명	신 문 요 지
국군방첩사령부	국방부 방첩부대장	장상주	〃
국군방첩사령부	법무실장	윤비나	〃
국방부(국직부대)	정보사령부 대령	오○○	〃
육군	제50보병사단장	정유수	〃
육군	제2군단장	박후성	〃
해병대	제2사단장	최영길	〃
국방부(국직부대)	정보사령관 직무대리	임종방	〃

❑ 1. 15(수) 2차 기관보고 (92명)

소 속 기 관	직 위	성 명	신 문 요 지
국무총리실	국무총리	한덕수	국정조사범위 및 소관업무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비서실	비서실장	손영택	〃
법제처	처장	이완규	〃
대통령비서실	실장	정진석	〃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강의구	〃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실장	장순칠	〃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	조상명	〃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이도운	〃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김주현	〃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	김동조	〃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황종호	〃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정혜전	〃
국가안보실	실장	신원식	〃
국가안보실	제1차장	김태효	〃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강재권	〃
국가안보실	2차장	인성환	〃

소 속 기 관	직 위	성 명	신 문 요 지
국가안보실	3차장	왕윤종	〃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최병옥	
대통령경호처	前 처장	박종준	
대통령경호처	차장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안전본부장	이진하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장○○	
국가정보원	원장	조태용	
국가정보원	제1차장	오호룡	
국가정보원	제2차장	황원진	
국가정보원	제3차장	윤오준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 센터장	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김남우	
기획재정부	경제부총리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보	윤인대	
기획재정부	기조실장	김진명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김동일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소 속 기 관	직 위	성 명	신 문 요 지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병환	
금융감독원	원장	이복현	
외교부	장관	조태열	〃
통일부	장관	김영호	〃
법무부	장관	박성재	〃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김석우	〃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변필건	〃
법무부	교정본부장	신용해	〃
대검찰청	검찰총장	심우정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전무곤	〃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 센터 연구소장	이인수	〃
특별수사본부	특별수사본부장	박세현	〃
특별수사본부	차장검사	김종우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이재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 부장검사	이대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 부장검사	차정현	〃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

소 속 기 관	직 위	성 명	신 문 요 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정영준	〃
행정안전부	의정관	김한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	이용철	〃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박현수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	이동혁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손우승	〃
행정안전부	비서실	황규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빈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획조정실장	조규영	〃
경찰청	청장	조지호	〃
경찰청	청장 직무대행	이호영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우종수	〃
경찰청	기획조정관	도준수	〃
경찰청	경비국장	임정주	〃
경찰청	비서실 경감	최웅길	〃
경찰청	비서실 경장	이성민	〃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담당관	전창훈	〃

소 속 기 관	직 위	성 명	신 문 요 지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이현일	〃
서울경찰청	前 청장	김봉식	〃
서울경찰청	202경비단장	이재성	〃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최창복	〃
서울경찰청	비서실 경사	김병훈	〃
서울경찰청	前 국회경비대장	목현태	〃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주진우	〃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장	황세영	〃
서울경찰청	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
서울경찰청	비서실 경위	여대웅	〃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장	김대성	〃
경기남부경찰청	청장	김준영	〃
경기남부경찰청	과천경찰서장	문진영	〃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박창균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
KTV	원장	이은우	〃

소 속 기 관	직 위	성 명	신 문 요 지
KTV	기획편성부장	이찬구	〃
KTV	방송보도부장	박준석	〃
소방청	청장	허석곤	〃
소방청	차장	이영팔	〃

나. 일반증인 및 참고인

❑ 1월 22일(수) 제1차 청문회

○ 증인(76명)

구 분	성 명	소속기관·직위	비고
1	윤석열	대통령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2	한덕수	국무총리	
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불출석(사유서 제출)
4	조태열	외교부장관	
5	김영호	통일부장관	
6	박성재	법무부장관	
7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8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9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0	김용현	前 국방부장관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11	이상민	前 행정안전부장관	
12	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13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14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15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불출석(사유서 제출)

구 분	성 명	소속기관·직위	비고
16	박종준	前 대통령경호처장	불출석(사유서 제출)
17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불출석(사유서 제출)
18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19	이진하	대통령경호처 안전본부장	
20	장○○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신원보호요청
21	김○○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신원보호요청
22	남○○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신원보호요청
23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24	홍장원	前 국가정보원 제1차장	
25	심우정	검찰총장	불출석(사유서 제출)
26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특별수사본부장)	불출석(사유서 제출)
27	박경선	서울동부구치소장	
28	조지호	경찰청장	불출석(사유서 제출)
29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30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	
31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	
32	방정환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	
33	김상용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34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	
35	이정민	국방부검찰단 대령 (특별수사본부 국방팀장)	불출석(사유서 제출)

구 분	성 명	소속기관·직위	비고
36	양현승	국군심리전단장	
37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38	정진팔	합동참모차장	
39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40	여인형	前 방첩사령관	불출석(사유서 제출)
41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42	정성우	방첩사령부 前 1처장	
43	장상주	방첩사령부 국방부 방첩부대장	
44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불출석(사유서 제출) ※동행명령 거부
45	문상호	前 정보사령관	불출석(사유서 제출) ※동행명령 거부
46	김용군	정보사령부 예비역	불출석(사유서 제출) ※동행명령 거부
47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48	이○○	정보사령부 ○○부대장	신원보호요청
49	정○○	정보사령부 대령	신원보호요청
50	오○○	정보사령부 대령	신원보호요청
51	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	신원보호요청
52	정성욱	정보사령부 대령	신원보호요청
53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54	곽종근	前 특수전사령관	※ 동행명령 수락

구 분	성 명	소속기관·직위	비고
55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	
56	김정근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장	
57	안무성	특수전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장	
58	김세운	특수전사령부 특수작전항공단장	
59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60	이진우	前 수도방위사령관	
61	김진익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62	김광석	육군 제35사단장	
63	이수득	육군 제8사단장	
64	김관수	前 육군 제32사단장	불출석(양해)
65	구삼회	前 육군 제2기갑여단장	불출석(사유서 제출) ※동행명령 집행했으나 수사일정과 중복되어 불출석
66	박○○	육군 제2군단 부군단장	신원보호요청
67	박동만	PDM박동만성형외과 대표	불출석(사유서 제출)
68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69	윤영준	前 현대건설 대표이사	
70	이재용	송도랜드마크시티(유) 책임매니저	
71	박준규	현대건설 책임매니저	

구 분	성 명	소속기관·직위	비고
72	명태균	-	불출석(사유서 제출)
73	양호열	-	신원보호요청
74	김충식	성우회 회원	불출석(사유서 제출)
75	정성길	성우회 회원	불출석(사유서 제출)
76	김성남	성우엔지니어링 대표	

○ 참고인 (4명)

구 분	성 명	소속기관·직위	비고
1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	불출석(양해)
2	강윤석	정보사령부 계획과장	불출석(양해)
3	노정환	법률사무소 행복한동행 대표변호사	불출석(사유서 제출)
4	신용한	서원대학교 교수	

❑ 2월 4일(화) 제2차 청문회

○ 증인 (37명)

구 분	성 명	소속기관·직위	비고
1	윤석열	대통령	불출석(사유서 제출) ※동행명령 거부
2	박성재	법무부장관	
3	김용현	前 국방부장관	불출석(사유서 제출) ※동행명령 거부
4	이상민	前 행정안전부장관	
5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6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불출석(사유서 제출) ※동행명령 거부
7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8	최병옥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9	김대경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	
10	이완규	법제처장	
11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12	손우승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사무관	
13	조지호	경찰청장	불출석(사유서 제출)
14	김봉식	前 서울경찰청장	
15	오부명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16	목현태	서울경찰청 前 국회경비대장	

구 분	성 명	소속기관·직위	비고
17	허석곤	소방청장	
18	이영팔	소방청 차장	
19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20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	
21	방정환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	
22	서동설	합동참모본부 군수부장	
23	여인형	前 방첩사령관	불출석(사유서 제출)
24	나승민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	
25	문상호	前 정보사령관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26	김○○	○○○사령부 대령	신원보호요청
27	박안수	前 육군참모총장	
28	고현석	육군참모차장	
29	곽종근	前 특수전사령관	
30	이진우	前 수도방위사령관	불출석(사유서 제출)
31	구삼회	前 육군 제2기갑여단장	
32	박○○	육군 제2군단 부군단장	신원보호요청
33	양황석	한양대 학군단장	
34	명태균	-	불출석(사유서 제출)

구 분	성 명	소속기관·직위	비고
35	이선진	-	
36	류혁	前 법무부 감찰관	
37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 참고인 (1명)

구 분	성 명	소속기관·직위	비고
1	신용한	서원대학교 교수	

❑ 2월 6일(목) 제3차 청문회

○ 증인 (25명)

구 분	성 명	소속기관·직위	비고
1	윤석열	대통령	불출석(사유서 제출)
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3	한덕수	국무총리	
4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5	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6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7	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중령	신원보호요청
8	박종준	前 대통령경호처장	
9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불출석(사유서 제출)
10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불출석(사유서 제출)
11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불출석(사유서 제출)
12	심우정	검찰총장	불출석(사유서 제출)
13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14	조지호	경찰청장	불출석(사유서 제출)
15	김봉식	前 서울경찰청장	불출석(사유서 제출)
16	김용현	前 국방부장관	불출석(사유서 제출) ※동행명령 거부

구 분	성 명	소속기관·직위	비고
17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18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19	여인형	前 방첩사령관	불출석(사유서 제출) ※동행명령 거부
20	김대우	방첩사령부 前 수사단장	
21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불출석(사유서 제출) ※동행명령 거부
22	문상호	前 정보사령관	불출석(사유서 제출) ※동행명령 거부
23	박안수	前 육군참모총장	
24	곽종근	前 특수전사령관	불출석(사유서 제출)
25	이진우	前 수도방위사령관	

○ 참고인 (1명)

구 분	성 명	소속기관·직위	비고
1	우석진	명지대학교 교수	불출석

❑ 2월 21일(금) 제4차 청문회

○ 증인 (76명)

구 분	성 명	소속기관·직위	비고
1	윤석열	대통령	불출석(사유서 제출) ※동행명령 거부
2	최병옥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3	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중령	신원보호요청
4	김용현	前 국방부장관	불출석(사유서 제출) ※동행명령 거부
5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6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	
7	방정환	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	
8	김철진	국방부 군사보좌관	
9	오영대	국방부 인사기획관	
10	양재응	국방부 국회협력단장	
11	강태훈	국방부 국회협력관	
12	박헌수	국방부조사본부장	
13	김상용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14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불출석(사유서 제출)
15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16	권영환	前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구 분	성 명	소속기관·직위	비고
17	한영철	합동참모본부 대테러특수전과	
18	김으뜸	합동참모본부 해작과 연합해상작전담당	
19	여인형	前 방첩사령관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20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21	박성하	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	
22	나승민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	
23	이재학	방첩사령부 안보수사실장	
24	노영훈	방첩사령부 수사실장	
25	윤비나	방첩사령부 법무실장	
26	구○○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	신원보호요청
27	장상주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국방부)	
28	박석봉	前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합참)	
29	박○○	방첩사령부 방첩대장(정보사)	신원보호요청
30	윤남현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육군본부)	
31	임대환	前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수방사)	
32	김영권	방첩사령부 방첩부대장(특전사)	
33	심○○	방첩사령부 중령 (국가안보실 파견)	신원보호요청
34	방○○	방첩사령부 대위	신원보호요청

구 분	성 명	소속기관·직위	비고
35	정성우	前 방첩사령부 1처장	
36	김대우	前 방첩사령부수사단장	
37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불출석(사유서 제출) ※동행명령 거부
38	문상호	前 정보사령관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39	임종방	정보사령관 직무대리	
40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41	김○○	정보사령부 대령	신원보호요청
42	오○○	정보사령부 대령	신원보호요청
43	정○○	정보사령부 대령	신원보호요청
44	김성호	정보사령부 지휘통신처	
45	박안수	前 육군참모총장	
46	고현석	육군참모차장	
47	조종래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	
48	김승완	육군본부 군사경찰실장	
49	김홍준	육군본부 정책실장	
50	박근태	前 육군참모총장 수행전속부관	
51	강호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52	김지면	육군 제32사단장	

구 분	성 명	소속기관·직위	비고
53	임태호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장	
54	오주열	육군 제2신속대응사단 제201신속대응여단장	
55	박호제	육군 제2기갑여단 제121기계화보병대대 제2중대장	
56	구삼회	前 육군 제2기갑여단장	불출석(사유서 제출) ※동행명령 거부
57	박○○	육군 제2군단 부군단장	신원보호요청
58	조백인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59	김문상	前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장	
60	안경민	수도방위사령부 작전과장	
61	김창학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62	문상원	수도방위사령부 법무실장	
63	오상배	前 수도방위사령부 수행부관	불출석(사유서 제출)
64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65	전진해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작전과장	
66	엄정섭	수도방위사령부 특임군사경찰대대장	
67	남기동	특수전사령부 감찰실장	
68	이상현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	
69	안효영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	

구 분	성 명	소속기관·직위	비고
70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제1특전대대장	
71	반효민	前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제2특전대대장	
72	정구중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특수임무대장	
73	김정근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장	
74	박재웅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 작전참모	
75	안무성	특수전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장	
76	이성운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 대테러작전관	

❑ 2월 25일(화) 제5차 청문회

○ 증인 (65명)

구 분	성 명	소속기관·직위	비고
1	윤석열	대통령	불출석(사유서 제출)
2	한덕수	국무총리	
3	김주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4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5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6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7	박종준	前 대통령경호처장	
8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불출석(사유서 제출)
9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불출석(사유서 제출)
10	김대경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	
11	강병인	대통령경호처 감사관	
12	김○○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신원보호요청
13	송○○	대통령경호처 경호관	신원보호요청
14	홍장원	前 국가정보원 제1차장	불출석(사유서 제출)
15	백종욱	前 국가정보원 제3차장	불출석(사유서 제출)
16	최○○	국가정보원	

구 분	성 명	소속기관·직위	비고
17	김○○	국가정보원	
18	김○○	국가정보원	
19	안○○	국가정보원 직원	신원보호요청
20	심우정	검찰총장	불출석(사유서 제출)
21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	
22	이인수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연구소장	
2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4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2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6	김병환	금융위원장	
27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28	류중재	前 기획재정부 국고과장	
29	이창기	前 한국은행 금융기획팀장	
30	이상민	前 행정안전부장관	
31	김한수	행정안전부 의정관	
32	남제현	행정안전부 경찰국장	
33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34	손우승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사무관	
35	조지호	경찰청장	불출석(사유서 제출)

구 분	성 명	소속기관·직위	비고
36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	
37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	
38	최웅길	경찰청 비서실 경감	
39	이성민	경찰청 비서실 경장	
40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불출석(사유서 제출)
41	이현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42	김봉식	前 서울경찰청장	
43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前 행안부 경찰국장)	
44	주진우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불출석(사유서 제출)
45	박만식	서울경찰청 34기동대장	
46	최창복	前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47	여대웅	서울경찰청 비서실 경위	불출석(사유서 제출)
48	임경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겸 광역수사단장	
49	목현태	前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50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	
51	정일현	영등포경찰서 강력7팀장	
52	오부명	경상북도경찰청장 (前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53	허석곤	소방청장	
54	이영팔	소방청 차장	

구 분	성 명	소속기관·직위	비고
55	박근오	소방청 대응국장	
56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57	오재경	영등포소방서장	
58	서영배	마포소방서장	
59	김용현	前 국방부장관	불출석(사유서 제출) ※동행명령 거부
60	여인형	前 방첩사령관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61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불출석(사유서 제출) ※동행명령 거부
62	문상호	前 정보사령관	불출석 ※동행명령 거부
63	명태균	-	불출석(사유서 제출)
64	김근태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대표	※ 동행명령 수락
65	박종승	한국항공대학교 석좌교수	

○ 참고인 (2명)

구 분	성 명	소속기관·직위	비고
1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불출석
2	노영희	법무법인 강남 변호사	불출석

Ⅲ. 국정조사 실시내용

1. 기관보고 [1월 14일]

(1) 국방부

(가) 보고내용

Ⅰ 주요 상황 [12. 3. (화) ~ 4. (수)]

ㅇ **12. 3. 22:23**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 발표
ㅇ **22:40** 합참, 전군 경계태세 격상
ㅇ **12. 4. 01:03**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
ㅇ **03:20** 투입된 출동병력 철수 지시
ㅇ **04:30**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의결

Ⅱ 주요 조치 [12. 5. (목) ~ 현재]

□ **비상계엄 사태 관련 국방부 입장표명 / 지침 하달** [12. 6. (금), 13:30]

ㅇ 국방부 입장표명
- 비상계엄 사태 관련 **책임통감 및 대국민 사과**
- **추가 계엄발령 요구시 국방부 및 합참**은 **수용 불가**
-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와 **본연의 임무**에 **매진**

ㅇ 국방부 지침 하달
- 비상계엄 관련 **원본자료 보관, 폐기·은폐·조작행위 일체 금지**
- 검찰 등 **내·외부 기관 수사 적극 협조**, 언론·외부기관 접촉은 관련규정 준수
- **병력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

□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지휘조치

○ 작전지휘관회의를 통해 군사대비태세 점검 (12. 7. (토), 12. 14. (토))

- 접적 지·해·공역 북한 특이동향 확인, 작전사령부별 대비태세 점검
- 북한 도발 억제 및 대응 관련 대비지침 하달
  * 위기상황 관리체계 유지, 경계태세 확립 下 도발 유형별 작전수행체계 점검 등

○ 한미 공조를 통한 연합방위태세 확립

- 美 국방수뇌부와 위기관리 및 공동대응체계 공조
  * 연합사령관 화상회의 (12. 12. (목)), 美국방장관 공조통화 · 인태사령관 접견 (12. 20. (금))
- 한미간 고위급 국방협의체 정상 가동
  *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 (NCG) 회의 ('25. 1. 10. (금), 국.정책실장 ↔ 美국.정책부차관대행)

○ 계획된 작전활동 및 교육훈련 정상 시행

- 12. 3. (화) ~ 4. (수) 간 취소된 훈련은 1월까지 대부분 정상 시행
  * 수도군단 포탄사격 (12. 3. (화) → '25. 1. 1. (수) ~ 3. (금)), 1군단 항공사격 (12. 4. (수) → '25. 1. 2. (목)) 등
- 기계획 한미 연합훈련도 계획대로 시행
  * 연합 공중훈련 (12. 16. (월)), 연합 해상초계기 훈련 (12. 26. (목)) 등

□ 비상계엄 수사지원 및 가담자 인사 조치

○ 국방부 수사팀 (군 검사 · 수사관 23명) 편성, 군·검 합동수사 (12. 7. (토) ~)

* 공조수사본부에 군 수사관 (5명) 파견 (12. 20. (금) ~)

○ 주요 가담자 9명 직무정지 (12. 6. (금) ~ 26. (목))

* 수방·특전·방첩사령관 (12. 6. (금)), 방첩사 1처장·수사단장 (12. 8. (일)),
  정보사령관 (12. 10. (화)), 육군총장 (12. 12. (목)), 2기갑여단장·혁신기획관 (12. 26. (목))

○ 주요직위에 대한 직무대리 임명 (8명), 지휘체계 조기 확립

□ 군심 결집 및 부대 안정화 노력

○ 주요지휘관회의로 부대운영 정상화 지침 하달 (12. 12. (목), 12. 27. (금))

* 각군 · 제대별 지휘체계 확립, 정치적 중립 준수, 부대운영 및 훈련 정상화 강조

○ 국직부대 및 소속기관 (19개) 공직기강 점검 (12. 23. (월) ~ '25. 1. 10. (금))

* 국방부 감사관실, 인명사고 예방 및 총기탄약 관리 등 현장확인

○ 출동 장병 및 군인가족 심리적 안정 지원

- PTSD 검사결과 총 1,051명 중 **고위험 2명, 관심 69명 식별, 집중관리**(12. 7.(토)~)
- **군인가족 대상 지자체**(서울·이천·부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연계 상담지원**

Ⅲ 향후 추진

□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및 연합방위체계 지속 유지

○ '25년 예상되는 **북 도발위협**에 **집중 대비**

* 연합 ISR자산 운용 북 정찰위성 발사장 및 핵실험장 일대 24시간 집중감시

○ '25FS연습 체계적 준비, 기계획 연합훈련 지속 시행

* 연합 제병협동사격(1. 3.(금) ~ 21.(화)), 공군 쌍매훈련(1. 20.(월) ~ 24.(금)) 등

○ 美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국방정책 변화 대비, '한미 동맹 연속성' 견지**

□ 대국민 신뢰회복 노력 강화

○ 기소된 軍 주요장성(4명)은 1. 24.(금) 한 보직해임 심의 後 조치

* 육군참모총장 포함 5명 징계번호 부여(1. 8.(수)), 심의 후 징계 조치

○ 군 정체성 확립 및 정치적 중립 준수에 대한 **법규교육 강화**

* 지휘관 주관 특별정신교육(~1월한), 제대별 월 1회 교육

○ 엄정한 지휘체계 확립 下 정상적인 부대운영 집중

- 군 본연의 임무인 작전활동 및 교육훈련 지속 강화
- 장병들의 사기·자신감 회복을 위한 각군 및 제대별 노력 배가

○ 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근원적·종합적 대책 검토 및 추진

* 명령체계 및 제도, 군대 문화, 군 기강 확립 등 문제 식별 및 대책 마련

□ **'25년 국방정책 과제 추진동력 유지 및 예산 조기 집행**

* 한국형 3축체계 강화, 방산수출 확대,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개선 등 32개

Ⅳ 결 언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軍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12·3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 (질의) 2024년 6월 중순경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및 합동참모차장 강호필(현 지상작전사령관)과 식사하면서 김용현이 이 4명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으로 얘기한 것이 맞는지?

- (답변) 맞음. 대장진급 축하, 불자출신 진급 등의 이야기가 있었고, 국군통수권자에 대해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로 이해함.

②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의 임명과 포고령 포고 경위

○ (질의) 계엄 선포 시, 합동참모본부가 통제하는 부대를 명령서에 근거하여 지휘권을 계엄사령관에 넘겼는지?

- (답변)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장성급으로 임명을 하고, 합동참모본부와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음.

○ (질의) 계엄 참고자료는 배도건 장군이 주도해서 작성했는지?

- (답변) 팀장의 지시에 의해 합동참모본부 계엄실무편람을 요약해서 작성함.

○ (지적) 포고령 작성 관련 국방부 내 실무자에 대한 파악이 안된 점은 문제이며, 이는 국방부의 국방부장관 머리 자르기 아닌지 의심됨.

- (답변) 절대 그렇지 않음.

③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 후 상황(2차 계엄 준비) 관련

○ (질의)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 후 결심지원실에 있었던 인원 및 있었던 일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지?

- (답변) 시간대별로 있었던 인원이 다르고, 대통령의 계엄 해제 결정까지 기다림.

○ (질의) 12월 4일 02시경에 계엄사령관으로부터 52·56사단 추가 증원 요원·현재 파견 나간 인원을 파악하라고 지시받았는지?

- (답변) 수도방위사령부에게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함.

○ (질의)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 후인 12월 4일 02시 30분경 여의도공원 및 성산대교 북단에 병력이 있었고, 계엄사령관이 육군본부 장성 및 영관급 34명에 대한 서울 출동 명령을 내린 점, 계엄사 모 중령이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부대에 출동 가능 여부를 문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2차 계엄 시도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국무회의를 통한 계엄해제 전에 받은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들로 보임.

④ 계엄해제 후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지적) 내란혐의 주요 종사자에 대한 직무정지는 故 이○○ 중사 사건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한 국방부 훈령(「국

방 인사관리 훈령」 제40조의2)에 근거했으나, 해당 조치는 법에 근거하지 아니한 조치임.

○ (지적) 차관은 방첩사 신원보안실 나승민 대령, 진성용 대령, 방첩수사단 구민회 중령, 정민식 중령은 즉시 직무배제 해 주기 바람.

○ (지적) 비상계엄 당시 주모자, 적극 가담자, 단순 가담자 등을 조사 구별하여 징계 등 조치가 필요함.

○ (질의) 내란혐의 주요 종사자에 대해 「군인사법」에 따르면 보직해임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 (답변) 사안의 엄중함으로 인해 일반적인 인사조치가 아닌 명확한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반으로 기소 후 조치하도록 지시함.

○ (지적)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사에 통제권을 넘기기 전에 이미 부대들이 움직인 것은 군형법 제5조 반란의 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검토 후 국회에 보고할 것. 또한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같은 민간인도 형법 제33조에 따라 군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란죄와 별개로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여부를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질의) 비상계엄 관련 문건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 (답변)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 연말에 T/F를 구성하면서 공간 등의 조정을 위해 그동안의 세미나 및

팸플릿 책자를 일부 정리했다고 보고받았음.

○ (지적) 이번 기회에 내란을 다시는 할 수 없도록 반란의 씨앗들을 뿌리뽑아야 함.

- (답변) 책임질 부분들은 책임을 지고, 다양한 제도와 보완책을 마련하겠음.

○ (지적) 우리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이번 난관을 극복하고 나아갈 확고한 신념을 국민들 앞에 밝힐 것.

- (답변) 비상계엄 사태에 군이 연루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들게 사죄드리며 이와 관련 책임질 부분은 명확히 책임을 질 것임. 그간 우리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해왔지만, 이번 비상계엄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군이 개입한 것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생각함.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완점을 마련하고 제도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음.

⑤ 내란범죄 수사 및 대통령 체포 관련 사항

○ (질의) 대통령 국외 도피 의혹의 원인이 된 공군 1호기의 서울공항 이륙 사실이 기(旣)계획되었던 항공기 성능 점검 유지비행이 맞는지?

- (답변) 그러함.

○ (질의) 경호처에 배속된 33군사경찰단과 55경비단이 대통령 체포영장 방해에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 (답변) 해당 군 병력이 부여된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통제하겠음.

○ (질의) 차관은 경호처에 배속된 55경비단장에게 2차 영장 집행 시 경찰관의 물리적 충돌과 관련하여 지침을 내렸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 (답변) 영장 발부의 불법성 등에 대한 주장이 있었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부대원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부대장에게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경호처도 이를 수용하여 국방부에 충돌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음.

○ (질의) 공동조사본부에서 55경비단이 관저 출입을 허가했다는 속보를 확인했는지?

- (답변) 확인했으나 사실이 아님. 공동조사본부에서 55경비단장에게 출입 승인을 요청했는데 단장이 '경호처에 승인을 요청해야 된다'라고 공문을 보낸 것을 제가 확인했음. 그리고 경호시설과 관련된 출입 허용은 경호처의 승인이 있어야만 함.

⑥ 드론작전사령부 관련 사항

○ (질의) 대통령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국가안보실을 통해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를 지시한 것이 사실인지?

- (답변) 확인해드릴 수 없으며 대통령실이나 국가안보실로부터 명령을 받은 것은 전혀 없음.

○ (질의) 드론작전사령부 주관 10월 훈련시기와 평양 무인기 보도 시점이 유사하여, 이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답변) 일자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필요함.

○ (질의) 국가안보실 2차장의 드론작전사령부 현장 방문 이유와 드론작전사령관의 국가안보실 보고 이유를 확인해 줄 수 있는지?

-(답변) 군 주요사령부 방문의 일환이었고, 사령관은 드론전력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국가안보실에 방문함.

○ (질의) 드론작전사령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파손 드론의 개수가 지난 10월에는 4대, 11월에는 6대로 집계되는데, 이것 외에도 소형 드론 2대가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보고해줄 수 있는지?

- (답변) 드론 운용시 불시착이 너무 많아 그런 것 같음.

○ (질의) 드론작전사령부 관련 내란 목적 외환유치 의혹이 난무하고 있음. 정찰드론을 포함한 드론 현황과 드론작전사령부 관여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보고해줄 수 있는지?

- (답변) 드론 보유량 등에 대하여 국방부가 파악하겠음.

○ (질의) 12월 31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24년 10월 국가안보

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게 평양 무인기 침투를 지시한 것이 북풍 공작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알고 있는지?

- (답변) 그러한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질의) 12월 8일 드론작전사령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평양에 보낸 드론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있는데, 이는 사실인지?

- (답변)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알고 있음.

○ (지적) 12월 8일 드론작전사령부에서 발생한 화재는 드론과 상관없는 물품이 있는 창고였기에 증거 인멸의 우려는 없음.

⑦ 기타 국정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일체

○ (지적)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여름휴가시 해군 함정을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 및 군단급 무인정찰기 헤론 사업의 추진 부서의 변경과 동 사업에 대한 감사 무마 의혹이 있으니 확인 필요.

○ (질의) 일각에서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연관지어 북풍공작 의혹을 제기하며 안보 불안을 조성하고 우리 군의 군사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각'은 어디를 지칭하는지?

- (답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음.

○ (지적) 우리 군은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대북 전단 살포 의혹 등 왜곡된 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지적)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가안보 관련 답변시 유념할 필요가 있고, 법적 증언과 국회 증언이 다를 경우 위증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가짜뉴스에 대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 (지적) 평양 무인기 투입, 무인기 증거인멸을 위한 컨테이너 화재, 노상원 수첩에 적시된 NLL 북 공격 유도, 정보사령부 블랙요원의 미복귀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

○ (지적) 우리 군의 맹점은 법을 잘 모른다는 점이고, 언론과의 접촉에서도 굉장히 약하다는 점임. 북한군 군복 구입 문제, 계엄 투입 병력의 유언장 작성, 청주공항 및 미국 테러 후 북한의 소행으로 모는 것, 계엄모의를 위해 일부 보직의 연장 등의 억측들이 군을 폄하시키므로, 즉각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지적) 계엄 선포 하루 전 국군의무사령부 예하 모 군병원에서 전시 환자 분류 훈련을 가지고 계엄시 무력사용에 따른 사상자 발생을 염두에 두고 한 훈련이라는 가짜뉴스가 진행되므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질의) 차관과 합동참모의장은 계엄 가능성에 대해 지상작전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에게 한 번이라도 경고한 적이 있는지?

- (답변) 없음.

○ (질의)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12·3계엄특검법

을 의결하였고, 해당 특검법의 혐의에 외환죄를 포함시키면서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무인기 평양 침투, 오물풍선 원점 타격 등을 수사대상에 포함시킴. 해외분쟁지역 파병은 러-우전쟁에서 북한군 파병으로 인한 전장 정보 획득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 사실인지?

- (답변) 정상적인 군사활동이 비상계엄과 연계되는 것은 군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심각한 우려가 있음.

○ (질의) 계엄해제 직전인 12월 4일 03시 21분경 김용현이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및 지상작전사령관에게 고맙다고 말한 것이 사실인지?

- (답변) 당시 화상원격회의에서 수고했다는 말과 안전하게 병력을 복귀시키라는 등의 말을 하였음. 이 화상회의 참여를 비상계엄과 연계시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움.

○ (질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아래 위치한 국방부장관 공관을 경호처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 (답변) 알지 못함.

○ (질의) 지난번 블랙요원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문상호에 대한 인사조치가 있었는지?

- (답변) 신원식 장관 시절 인사조치 부분에 대해 검토한 것은 사실임.

○ (질의) 박종선 사령관님은 777사령관으로서 이번 계엄을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 (답변) 뉴스를 보고 알았음. 당시 12월 3일 일과 이후 부하들과 식사를 하고 21시경 공관으로 복귀했으며, 그때 뉴스를 보고 알게 되었음.

(2) 합동참모본부

(가) 보고내용

Ⅰ 주요 상황[12.3.(화) ~ 4.(수)]

[12.3.(화)]

○22:28 前 장관 합참 전투통제실 위치, 전군 화상회의 연결 지시
* 이후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 우선 화상회의 연결 지시

○22:32 前 장관, 비상계엄 관련 화상회의로 지시(특전사, 수방사)

모든 군사활동은 장관이 책임짐. 명령에 불응하거나 태만한 자는 항명죄로 다스리겠음.

* 이후 미상인원들과 휴대폰으로만 통화

○22:40 합참, 전군 경계태세 O급 격상 및 군사지휘본부 비상소집 지시
* 연합사·유엔사에 합참 조치사항 통보

○22:50(경) 前 장관, 전군 주요지휘관 화상회의 연결 지시
* 작전사, 합동부대, 군단, 함대사, 공군 기능사, 방첩사를 대상으로 23:50경 준비완료 되었으나 별도 회의는 미실시

[12.4.(수)]

○00:37 연합사, 정보감시태세(WATCHCON) 격상(O→O)
* 전구 ISR자산 추가 운용 및 긴급임무 대기시간 단축 등 조치

○03:20 前장관, 지작사,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外 부대 화상회의 연결 해제 지시

○03:21 前장관, 4개부대(지작사,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대상 화상회의로 지시
* 투입병력 안전하게 원소속부대로 복귀

○03:25 합참의장 특전사·수방사 지휘권 환원(03:30부) 요청, 前 장관 승인

○03:28 前 장관, 전투통제실 이석

Ⅱ 주요 조치[12.3.(화) ~ 현재]

□ 12.3.(화)

○22:32 합참 긴급조치반 O형 소집

○22:40 합참, 전군 경계태세 O급 격상, 군사지휘본부 비상소집 지시
* 연합사·유엔사에 합참 경계태세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통보

○ 23:07 합참 - 연합사, 정보감시태세(WATCHCON) 격상 장성급 공조

○ 23:35 단편명령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전군 경계태세 O급 발령) 하달

* 전군 경계태세 O급 발령 下 안정된 군사대비태세 유지

* 조치부호 00건(GP·GOP 및 해강안 경계태세 강화, 한미 ISR자산 추가 운용·협조 등) 시행

□ 12. 4.(수)

○ 00:00 ~ 01:00 합참, 경계태세 격상에 따른 작전사·합동부대 조치사항 등 대비태세 점검

○ 01:13 국회 '계엄해제 결의안' 가결(01:03)後, 합참 상황전문 (합참의장 지시·강조사항) 하달

· 최고 수준의 정보감시형태 유지 下 대북감시·경계태세 유지 철저
· 적 도발 등 우발상황 발생 대비 즉각대응태세 유지下 안정적 군사대비태세 확립
· 중대급 이상 부대이동 시는 합참의 승인을 받을 것

○ 01:20 ~ 02:50 북한군 특이동향 및 대북 감시·경계태세 점검

○ 02:52 합참, 現 상황관련 강조사항 추가 전파

· 전부대 출입통제 강화
· 별도 지시 시까지 감시·경계 등 대비태세 관련 활동 外 모든 부대활동 통제

○ 03:30 ~ 04:30 특전사·수방사 지휘권 환원 後 부대복귀 확인

* 특전사·수방사령관이 부대복귀 관련 지휘보고

○ 04:32 합참, 軍 입장문 언론 공지

· 12월 4일 04:22부, 투입된 병력은 원소속 부대로 복귀하였음.
· 현재까지 북한의 특이동향은 없으며, 대북경계태세는 이상 없음.

○ 05:50 합참의장 주관 주요지휘관 화상회의(작전사·합동부대·군단·함대사·공군 기능사)

* 북 오판 방지차원 군사대비태세 확립, 국민안전 최우선 下 軍 본연의 임무에 충실, 작전기강을 확립하고 중대급 이상 부대이동 합참 통제 下 시행

○ 06:45 ~ 07:20 합참의장-연합사령관 現 상황관련 공조통화

○ 10:30 합참의장 주관 통합상황평가회의 (화상회의 / 합참·작전사·합동부대)

*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명확한 지휘체계 확립 下 명령 및 통제,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등

○ 11:00 단편명령 (비상계엄 해제에 따른 군사대비태세 조정) 하달

* 경계태세 조정 및 조치부호 일부 해제 (00건 → 00건)

□ 12. 5.〔목〕~ 현재

○ 위기조치기구 운용 ('24. 12. 3. ~ 20.) 下 안정적인 군사대비태세 확립

* 1일 2회 통합상황평가회의를 통한 대비태세 점검 및 수도권 일대 부대이동 통제 강화

○ 한미 공조 및 공동대응체계 강화

* 합참의장 - 연합사령관 공조통화 (2회) 및 전략대화 (1회), 2·3성급 공조회의·통화 (3회) 등

○ 계획된 작전활동·교육훈련 정상 시행

* 합참 주관 통합상황조치훈련 (3회), 연합훈련 (19회), 작전사 통제훈련 (5회) 등

○ 지휘·명령체계에 의한 軍心 결집 및 작전기강 확립

* 합참 작전지휘관 회의 ('25. 1. 2.), 합참의장 작전부대 현장지도 (3회) 등

Ⅲ 향후 추진

□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 강화된 경계태세 적용 下 적 기습도발 대비 감시·경계태세 확립

○ 적 핵실험·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 대비 감시·대응태세 유지

□ 한미간 긴밀한 공조를 통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확립

○ 동맹의 연합방위 능력 향상을 위해 '25 FS연습 체계적 준비 및 시행

* 연합사 명령하달 (1. 21.), 12-star Meeting (1. 22.) 등 연습준비 Road-map 정상 추진

○ 旣 계획된 한미연합훈련 정상 시행

* 美 연합공중훈련 (1. 15.), 한미 쌍매훈련 (1. 20. ~ 24.), 한미 제병협동 전투사격 (2. 10. ~ 17.) 등

□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제58차 중앙통방위회의 정상 추진〔2월 초〕

Ⅳ 결 언

現 상황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한 가운데 軍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가안위와 국민 신뢰회복에 전념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계엄 선포 전 군사 활동 관련

○ (질의) 비상계엄 이전에 북한의 군사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군의 활동이나 움직임이 있었는지?

- (답변) 그런 활동 준비나 계획은 전혀 없었음.

○ (질의) 대북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는지?

- (답변) 확인해줄 수 없음. 우리의 정보가 적에게 노출되면 군사 전략상 불리하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것임.

○ (지적) 군이 계엄 발령 시 행하였던 대북 태세 강화를 위한 조치부호를 외환죄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됨. 또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유사시에 사용하려고 했다는 것을 외환유치죄로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임.

- (답변) 북풍·외환유치라는 주장에 대해, 군이 이를 준비하였거나 계획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절대 없음.

○ (질의) 오물풍선과 관련하여, 김용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에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이 있는데 그러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답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관련해서 질책을 받은 적도 없음.

② 계엄 선포 당시 상황 관련

○ (지적)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군령권을 가진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되었어야 하나, 계엄에 동의하지 않아서 패싱된 것으로 보임.

○ (지적) 계엄 시 결심지원실의 자리를 장관과 쿠데타 세력에게 빼앗긴 점, 특수전사령관·방첩사령관·수도방위사령관이 북한 위협에 대한 발언을 하며 이를 이용해 비상계엄을 준비했으나 합동참모의장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음.

○ (질의)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 등 작전부대가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투입되어 국회 봉쇄·서버 탈취·정치인 체포 작전을 시도했는데, 합동참모의장이 이러한 작전 지휘권을 행사했는지?

- (답변) 작전지휘한 사실이 없음.

○ (질의) 실탄과 공포탄을 탄약고에서 불출하고, 워리어플랫폼과 야간투시경을 착용해 국회 유리창을 깨면서 난입한 것이 정상적인 국민의 군대인지?

- (답변) 그것은 국민의 군대가 아님.

③ 기타 국정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일체

○ (질의) 이번 내란에 군 내부에 동조 세력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는지?

- (답변) 몰랐음.

○ (질의) 특검법에서 외환죄 수사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 입장이 있는지?

- (답변) 정상적인 군사활동이 이번에 있는 비상계엄과 연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심각하게 우려를 함. 이것을 비상계엄과 연계시키면 사실 많은 군사활동이 앞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음.

○ (지적) 비상계엄 관련 특별검사 수사범위에 외환죄를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우리 현실을 고려해도 외환의 죄는 성립할 수 없음. 또한 군의 정상적인 활동이 자꾸 계엄 예비조치로 오도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3) 육군본부

(가) 보고내용

Ⅰ 주요 상황 [12. 3.(화) ~ 4.(수)]

○ 22:25 ~ 22:40 경, 비상계엄 상황은 뉴스속보를 통해 인지

○ 22:32, 장관 주관 전군주요지휘관 회의 (육본 미참석)

○ 22:40, 합참 전군경계태세 ○급 발령

* 육본 초기대응반 소집 (22:50) 이후 위기조치반으로 격상 (23:06)
* 위기조치반 소집 후 전군경계태세 ○급 관련 위기조치부호 검토

○ 22:47, 참모총장이 합참으로 인원 이동을 지시

* 정작부장에게 안보폰으로 “임무수행 인원이 부족하니, 부 · 실장과 이를 지원할 차 · 과장급 2 ~ 3명을 구성해서 합참으로 이동” 지시

○ 23:20 ~ 12. 4. 00:00 경, 합참으로 이동을 위한 육본 인원 판단

○ 23:31 ~ 23:34 경, 수방사가 긴급임무헬기의 수방사 작전지역 진입 관련 계엄사령관 승인을 요청하여 관련사항을 참모총장에게 보고 / 승인 (23:33)

* 수방사 작전처장이 육본 정작부장에게 R75 공역으로 긴급임무헬기의 진입에 대한 계엄사령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요청

○ 00:40 ~ 02:40 경, 합참으로 이동 준비

* 차량 및 인원 준비가 가능한 잠정 03시에 본청 동문 앞에서 출발

○ 00:58,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 FAX로 접수

○ 03:00 경, 합참 이동여부 참모총장 최종 승인

○ 03:03, 합참으로 이동인원 출발

* 인원 34명, 대형버스 2대 / 총기 미휴대

Ⅰ 주요 상황 [12. 3. (화) ~ 4. (수)] (계속)

○ 03:28, 계룡대로 복귀

* 03:25, 참모총장이 정책실장을 통해 참모차장에게 복귀를 지시

○ 04:03, 계룡대 복귀 후 위기조치반 편성인원 외 숙소로 복귀

○ 04:30, TV 대통령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해제를 인지하여
육본 위기조치반을 초기대응반으로 하향 (04:34)

○ 06:00, 육본 초기대응반 해제

Ⅱ 주 요 조 치 [12. 5. (목) ~ 현재]

□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부대운영 시행 (육본 지침 하달, 12. 6.)**

* 교육훈련, 출타 등 정상 시행 및 작전근무기강 확립과 사고예방활동 강화

□ **스트레스 관리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예방 활동 강화**

* 상담 / 진료지원 절차 및 여건보장 강조, PTSD 예방활동 메뉴얼 안내 등

Ⅲ 향 후 추 진

□ **군의 정치적 중립 관련 교육시행 / 체계개선 방안 검토**

○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간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체계 개선

○ 양성 · 보수교육간 교육과목 편성, 법령 교육 방안 검토

Ⅳ 결 언

육군은 법과 규정에 의한 제반업무 수행과
야전부대의 전투수행능력 발휘를 극대화하는 가운데,
실전적 교육훈련과 확고한 대비태세 유지 등
오직 군 본연의 임무완수에 매진하겠습니다.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12·3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 (질의)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의 휴가 기간이 겹치는데, 이 기간 중 지상작전사령관이 서울을 방문했는지?

-(답변) 방문하지 않았으며, 언론에 일정을 공개했음. 11월 22일 오전에는 수원지방법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고, 오후에는 공관에 있었으며, 저녁에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장 가족과 식사를 하였음.

○ (지적)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계엄문건 작성으로 조현천 사령관이 도피 후 2023년 3월 29일 귀국 후 체포·구속되었으나, 6월 28일 보석으로 불구속 상태로 있다가 2024년 2월 21일 무혐의 처분을 받음. 이에 따라 12.3 계엄이 2023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판단됨.

②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의 임명과 포고령 포고 경위

○ (지적) 포고문에 워터마크가 찍혀 있으면 김용현 장관이 직접 출력했을 가능성이 있고, 일반 용지일 경우에는 노상원이 작성해서 김용현 장관에게 줬을 가능성이 있음.

③ 비상계엄 선포의 헌법 및 법률 준수 여부

○ (질의)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는지?

- (답변) 계엄 선포 문서의 내용을 자세히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황실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고, 법적인 검토가 완료된 문서라고 전달받았었음.

④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 후 상황(2차 계엄 준비) 관련

○ (질의) 계엄 해제 후 01시 16분부터 01시 47분사이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에서 30분간 7인의 밀실회의가 있었는데, 이때 회의 내용 및 계룡대 육군본부에 출발 대기를 지시하였는지?

- (답변) 특별한 논의는 없었으며 대통령은 길게 침묵하였음. 계룡대 출발 대기 지시는 최초 상황 발생 이후 구성 요원이 없어 올라오라는 지시를 한 것이고, 밀실 회의와는 관계가 없음.

○ (질의) 계엄이 해제된 후 오전 3시경 계엄사령관이 합동참모본부로 육군 참모진의 이동을 승인한 것은 2차 계엄 내지 반란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닌지?

- (답변) 잘 기억나지는 않으나, 상황실의 상황 종료 선언 전이었음.

○ (질의)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 후 2시간동안 무엇을 했는지?

- (답변) 직속상관의 명령이 중요하여 대통령의 상황종료를 기다리고 있었음.

⑤ 지상작전사령부의 계엄 가담 여부

○ (질의) 계엄 실패 후 김용현이 수도방위사령부, 방첩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에 대해 임무 완수에 대한 격려를 표한 것이 맞는지?

- (답변) 맞음. 다만, 첫 화상회의때 지작사는 참석 못했고, 이후 들어와서 전방 대비태세 유지, 북한군 동향 파악, 제대별 위기조치 체계 가동 등을 확인함. 마지막은 합동참모본부 통제 후 1시간 동안 대기만 하고 있었음.

○ (지적) 지금은 특수전사령부·정보사령부 등의 부대이동만 나왔으나, 지상작전사령부도 내란 임무에 가담한 것으로 보임.

- (답변) 지상작전사령부가 병력출동 등 임무를 받거나 관여한 것은 없음.

○ (질의) 12월 4일자 KBS 보도에 의하면 28여단이 전차를 예열하여 출동할 태세를 갖췄다고 하였는데 사실인지?

- (답변) 사실이 아님.

○ (질의) 양구군청과 고성군청에 계엄군이 출동하였는데,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 (답변)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되고 군경합동상황실 구성 준비와 관련해서 사단에서 자체적으로 상황판단 한 것임.

○ (질의) 다른 전방부대는 제외하고 월북 루트가 있는 양구, 고

성에만 출동한 것인지?

- (답변) 군경합동상황실을 운영하고 CCTV 통합관제센터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협조 목적이었음.

○ (질의) 지상작전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지구작전사령관을 하지 않았는지?

- (답변)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지상작전사령관은 제1지구계엄사령부 역할을 하고 예하 군단은 지역계엄사령부 역할을 하는데,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상황실을 구성하다가 종료됨.

○ (질의) 계엄선포 이후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를 운영하여 계엄에 동조하였는지?

-(답변) 실제로 운영되지 않았음. 계엄업무실무편람에 지구사령관 및 지역계엄사령관은 전체 계엄사령관이 임명장을 주어야만 임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받지 못하여 임무를 받지 못함. 그리고 전국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상황실은 만들어야 했고, 아마 각 부대별로 상황실에 C4I 체계 정도만 설치하는 수준 정도만 되었고 나머지 인원에 대한 편성은 전혀 하지 못한 상황이었음.

○ (질의) 22사단 군인들이 민간 군청에 들어간 것은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따른 군경합동상황실 구성에 대한 자동조치부호로 보는 것이 맞는지?

- (답변) 계속적으로 선제적으로 돌아감.

○ (질의) 지구 및 지역계엄사령부는 언제 설치했는지?

- (지작사령관, 2군단장, 35사단장) 경계태세2급 발령으로 그 매뉴얼에 따라 상황실만 설치하고 실제 조직 구성까지는 못하고 상황이 종료됨.

○ (지적) 지구 및 지역별로 상황실을 설치하고 5개 지역사령부를 만들어 보고를 받았음에도 위증하고 있음.

○ (질의) 12월 3일 22시 40분경 김용현 장관 주재로 전군 주요지휘관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참석했는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 (답변) 당시 공관에 있었으며, 도착했을 때 이미 회의가 끝나 참석하지 못했음. 계엄 사실은 공관에서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고, 병력 이동 지시를 한 적은 전혀 없음.

⑥ 기타 국정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일체

○ (질의) 우리 군, 유엔사 모두 합의된 교전수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하부대와 현장지도, 전술토의 때 적의 사소한 도발에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탄을 다 사용해서 박살 내야 된다고 발언한 경위가 무엇인지?

-(답변) 도발 시 원점 타격에 대해 자위권 원칙을 벗어난 대응을 할 수는 없으나, 적의 다양한 도발 유형에 대비한 태세 유지와 계획 발전은 군 본연의 임무와 역할임. 이러한 차원에서 예하 부대에 이를 강조함.

○ (질의) 민주당의 비상계엄 의혹 부풀리기는 3가지로 요약되는데, 이는 '몇 달 전부터 준비했다. 실탄까지 준비해 인명살상도 불사했다. 2차 계엄을 준비했다'임. 이 중 2차 계엄준비를 위하여 합동참모본부로 이동 준비했다는 부분도 34명의 육군본부 간부들이 움직인 정도인지?

- (답변) 그러함. 2차 계엄과의 연계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음.

○ (질의) 제2작전사령부에도 합동참모본부의 경계태세2급과 계엄사의 포고령이 하달되었는데, 비상계엄 선포 전후 2작전사가 행한 준비는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 (답변) 경계태세2급에 따른 일반적인 조치였음.

(4) 국군방첩사령부

(가) 보고내용

Ⅰ 주요 상황 [12. 3.(화) ~ 4.(수)]

○ 12.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22:45경 全 부대원 비상소집 전파, 12.4일 01:00경 소집 완료**

○ 사령관 지시를 받은 수사단장·1처장 통제하 국회, 선관위 등으로 **부대원 164명**(전원 간부) **출발**(12.4일 00:25~01:43)

구 분		인 원	시 간(12.4일)	이동	휴대무기
국 회		대공수사과장 등 49명	00:25~01:05	차량	-
선관위	과천청사	과학수사센터장 등 27명	00:55~01:27		고무탄총 1정
	관악청사	정보보호단장 등 27명	00:56~01:32		가스총 1정
	수원연수원	군사보안실장 등 33명	01:05~01:38		가스총 1정
여론조사 꽃		사이버보안실장 등 28명	01:10~01:43		가스총 1정

* 이외, 사령관 지시와 무관하게 예하부대 실무자 2명이 담당부대 요청으로 국회 동행(미진입)

⇒ 출동 인원 전원 **임무지역 미진입, 인근 휴게소·편의점 등에서 대기**

- 국회 : 수사단장 통제하 12.4일 00:25~01:05간 10개팀(49명)이 비무장(총기 미휴대) 상태로 차량 이용 순차 출발
  * 개인 방호를 위한 방검복·전술장갑 등 착용, 개인별 수갑·포승줄 각각 휴대

  출동 인원들은 여의도 일대에서 대기하며 국회 지역에 일체 미진입, 01:40경부터 철수를 시작하여 02:20경 복귀
- 선관위 등 : 1처장 통제하 12.4일 00:55~01:43간 4개팀(115명)이 사복 착용 상태로 차량 이용 순차 출발

- 과천청사(27명) : 00:55~01:27간 출발, 선바위역 인근 편의점에서 대기(02:50경 복귀)
- 관악청사(27명) : 00:56~01:32간 출발, 사당역 인근 편의점에서 대기(02:54경 복귀)
- 수원연수원(33명) : 01:05~01:38간 출발, 의왕휴게소에서 대기(03:00경 복귀)
- 여론조사 꽃(28명) : 01:10~01:43간 출발, 잠수교 도로상에서 대기(03:18경 복귀)

○ 01:03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가결 직후 **01:06 기획관리실장이 참모장 승인을 받아 임무 중단 및 복귀 지시 전파**

○ 01:40경부터 출동 인원 복귀 시작, **02:20~03:18경 전원 사령부 복귀**

Ⅱ 주 요 조 치 [12. 5. (목) ~ 현재]

□ 검찰 특별수사본부 · 공조수사본부 수사에 적극 협조

○ 연말 인사이동 잠정 연기, 자료 은폐 · 폐기 · 삭제 금지 조치

○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참고인 조사에 성실히 출석(80회), 관련 자료 수천여 건 임의 제출 및 압수**

* 압수수색 : 검찰 '24.12.8~24일 / 공조수사본부 '24.12.31~진행 중

Ⅲ 향 후 추 진

□ 단 한점 의혹도 없도록 검찰 특별수사본부 · 공조수사본부 수사에 충실

□ 국조특위 관련, 법령과 절차를 준수한 가운데 자료 적극 제출

Ⅳ 결 언

방첩사령부 全 부대원들은 現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한 가운데, 수사 및 국정조사에 성심을 다해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직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군 보안 · 방첩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주요 헌법기관 등의 점거 경위

○ (질의) 방첩사령부 법무실장은 선관위 침탈 및 서버를 압수하라는 방첩사령관의 명령에 대해서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이유로 끝까지 반대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 정보저장매체 압수 시 출력 또는 복제가 원칙이며, 정보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는 것은 불가함이 원칙인 점을 논의하였음. 또한, 포고령 발령 이전 행위를 이유로 압수를 포함한 모든 수사 행위는 불가하며, 범죄 혐의를 특정하고 입건 등 정상적인 수사 절차를 거쳐야 함. 이러한 점들을 위반하면 수집한 증거가 위법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압수를 집행한 인원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대답함.

○ (질의) 방첩사령관이 전산실 출입 통제 및 서버를 확보하고 나서 서버를 복제하거나 들고 나와야 한다는 명령에 대응하여 1처장이 법무실장에게 상의한 이유를 확인해줄 수 있는지?

-(답변) 전산실 직원의 도움이나 안내·협조·동의가 없으면 절대로 할 수가 없고, 구조와 배치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전산실 서버 복제 자체가 할 수 없는 임무라고 생각하였으며, 방첩사 서버 용량도 충분치 않으며, 만약에 서버를 갖고 오게 된다면 많은 트럭이 동원되어야 하는 등 다양한 문제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함.

○ (질의) 방첩사령관의 지시에서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면 누가 올 것이라고 언급했는지 확인해줄 수 있는지?

-(답변) 국정원 등 수사기관의 민간 전문가들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음.

○ (질의) 중앙선관위에 대규모의 장비를 대상으로 포렌식 또는 반출이 불가하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지 않았는지?

-(답변) 말씀하신 내용은 맞는데 선관위에 갔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음.

○ (질의) 방첩사가 구비한 포렌식 장비는 5년 단위 주기적으로 도입한 장비이지, 별도로 선관위 서버 압수용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지 않은지?

-(답변) 그러함.

②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에 관한 사항

○ (질의) 계엄 당시 불법체포, 납치, 고문, 사살에 대해서 지시를 받았는지?

-(답변) 그런 사실 없었음.

○ (질의) 계엄 관련해서 체포명단에 김동현 판사가 포함되어 있었는지?

-(답변) 기억이 나지 않음.

○ (질의) 당시에 방첩사에서 투입됐던 방첩사 인원들이 고무총 1

발과 가스총 3발을 들고 있었다는 진술이 사실인지?

-(답변) 기본적으로 합동수사단이 편성되면 보호복, 포승줄, 수갑, 삼단봉 네 가지만 휴대하는 것이고, 고무총과 가스총은 휴대하지 않았음.

(5) 정보사령부

(가) 보고내용

Ⅰ 주요 상황 [12. 3.(화) ~ 4.(수)]

ㅇ 비상계엄 시 소집 인원 : 총 48명 (2개조 편성)

ㅇ 임무 : 중앙선관위 (과천) 서버실 위치 확인 및 출입통제 후 타부대로 인계, 중앙선관위 (과천) 추가 투입 준비

ㅇ 중앙선관위 (과천) 투입 인원 : 계획처장 등 10명

• 사령부 출발 : 12. 3.(화) 20 : 30분, 카니발 2대, 정부청사 인근 대기

* K-5 권총 10정, 9mm권총탄 100발 (차량에 통합보관)

• 중앙선관위 (과천) 정문 도착 : 12. 3.(화) 22 : 30분경

• 중앙선관위 (과천) 철수 : 12. 4.(수) 01 : 32분경

• 사령부 도착 : 12. 4.(수) 02 : 13분경

ㅇ 중앙선관위 (과천) 투입 준비 인원 : 중앙신문단장 등 38명

• OOO여단 소집 : 12. 3.(화) 20 : 00 (여군 3명은 23 : 00경 별도 소집)

* 구삼회 준장 / 방정환 준장, 17 : 38분경 OOO여단 본청 도착

• 준비 : 12. 3.(화) 22 : 30분경, SUV 10대 / 승용차 10대

* OOO여단 소속 31명 (HID 7명 포함), 사령부 소속 7명

• 해산 : 12. 4.(수) 05 : 40분경

* 구삼회 준장 / 방정환 준장, 05 : 47분경 OOO여단에서 퇴영

ㅇ 비상계엄 시 소집된 인원 총 48명은 12. 4.(수) 08 : 20분부로 전원 소속부대(서)에 복귀하여 일상업무 수행

Ⅱ 주 요 조 치 [12. 5. (목) ~ 현재]

□ (교육훈련) 12. 4.(수)부, 부대 내 또는 부대 인근으로 조정

* 중대급 이상 영외 교육훈련은 상급부대 승인 시에만 가능토록 통제

□ (안정화) 비상계엄 소집 인원 대상 상담 지원 및 PTSD 예방 활동

○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및 양성평등담당, 군종장교 상담 지원

○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검사 결과 유증상자 (3명), 민간 전문심리 상담기관 안내 및 심리치료 여건 보장

□ (지휘조치) 주요 직위자 4명 직무배제 조치, 대리근무 체제로 전환

○ 직무배제 : 사령관 (12. 10.부), 중앙신문단장 / ○사업단장 (12. 13.부), 계획처장 (12. 16.부)

○ 직무대리자 (4명) 지휘여건 보장 통해 부대 안정화와 정상화에 진력

Ⅲ 향 후 추 진

□ 확고한 정보지원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인 부대운영 집중

○ 敵 위협 관련 첩보 수집 및 징후경보 전파 등 정보지원태세 확립

○ 425위성 2호기 시험평가 / 3호기 초기운용 (~6월), 4호기 발사 준비

□ 군법 및 군인복무기본법 교육 강화로 軍 기강 확립에 주력

Ⅳ 결 언

상급부대 통제 하 노정(露呈)된 현상을 정밀진단하여 특단의 대책 수립/시행, 환골탈태(換骨奪胎)의 마음으로 지휘체계, 부대구조, 제도 등 全 분야 보완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12·3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 (질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

- (답변) 2024년 5월말에서 6월초 경 육군본부제2군단부군단장이 연락받은 바 있음.

○ (질의) 정보사령관이 속초에 위치한 부대를 방문한 적 있는지?

- (답변) 정보사령관이 휴민트 조직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음.

○ (질의) 24년 10월 말 문상호 사령관으로부터 공작요원 15-20명을 선발하라는 명령이 있었는지?

- (답변) 그러한 사실이 있음. 11월 중순경 인원이 모두 선발됨.

○ (질의) 24년 11월 초 선관위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직원을 체포·감금해서 부정선거를 입증하라는 구체적 임무 하달이 있었는지?

- (답변) 그러함. 정성욱 대령은 그날 나오지 않아 다시 만나서 전달을 했고, 문상호 사령관도 정성욱에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질의)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부정선거 공작이라는 것은 눈치채지 못하였는지? 노상원 수첩에 등장하는 사살은 누구를 말하는지?

- (답변) 그 당시에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었음. 사살에 대해서는 그 당시 자세하게 알지 못함.

○ (질의) 정성욱 대령이 정보사령부 블랙요원 유출 사건으로 신원식 장관으로부터 분리파견된 후, 노상원 씨의 조력을 받아 이를 뒤엎으려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정보사령부 대령의 의견이 있는지?

- (답변) 당시 블랙요원 유출과 관련해 직무분리된 상태였으며, 10월 초 노상원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음. 노상원 사령관은 제가 분리된 상태를 알고 있었고 향후 필요하면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했음. 이후 10월 중순경 특별한 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인원을 선발할 수 있느냐고 물었으나, 여단장이나 사령관한테 보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절했음. 이후 문 사령관이 저에게 그 인원 선발을 지시했으며, 그 이후로는 노상원 사령관이 저한테 지시한 적은 없음.

○ (지적) 계엄당일 17시 30분경부터 계엄을 실질적으로 준비했다고 보는데, 그 근거로 수도방위사령부와 특수전사령부가 CCTV에 17시 29분, 17시 52분에 접속을 했던 것을 확인했음.

○ (질의) 북한군 군복은 언제부터 구매했는지?

- (답변) 지속적으로 구매함.

○ (지적) 북한군 군복을 납품받은 것이 비상계엄과 연관되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음.

② 계엄 선포 전 병력 및 경찰력 동원을 위한 준비사항

○ (지적) 정보사령부 두 대령이 민간인인 노상원의 지시에 따른 것은 잘못이며, 문상호 정보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가 목적임에도 훈련 또는 검열을 목적으로 총기 휴대와 실탄 준비를 하여 철저히 속은 것임.

○ (질의) 한동훈 대표의 발언, 김어준씨의 제보, 브래드 셔먼 미 연방 하원의원의 발언, 정보사령부의 북한 군복 구입 정황상 정보사령부에서 계엄 당시 북한의 공격으로 위장하려는 정황이 사실인지?

- (답변) 정보사령부가 북한 군복을 구입한 것은 정상적인 사업 절차에서 공개되어 진행되었으므로 전혀 사실이 아님. 또한 김어준씨의 제보는 근거가 없어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보임.

③ 주요 헌법기관 등의 점거 경위

○ (질의) 정성욱 대령은 중앙선관위 갈 때 직원을 위협하기 위해 작두를 준비했는지?

- (답변) 제가 준비한 게 아니고 노상원 사령관과 문상호 사령관이 먼저 저희를 호출해서 나갔을 때 노상원 사령관이 물품을 구입하라고 이야기를 했고, 문상호 사령관이 저에게 당시 제일 후배니까 물품을 구매하면 본인이 돈을 주겠다고 해서 구매한 것임.

④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에 관한 사항

○ (질의) 정성욱 대령은 HID 요원 5명을 왜 투입하였는지? 불법 공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인지?

- (답변) 정보를 캐내기 위해 신문할 때 옆에 있거나 호송할 때 안전요원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전달받음.

○ (질의) 계엄당시 HID 요원 포함해서 주로 공작하는 중령, 소령, 부사관급 블랙요원들 38명이 정보사령부 모처에 모여 있지 않았는지? 블랙요원은 국내외서 정보를 수집하는 인원인지? 블랙요원은 첩보원을 가지고 있고, 이 첩보원은 주로 OB, HID 전역자, 탈북자, 조선족 등 다양한 사람들로 쓰고 있는지?

- (답변) 모두 그러함.

○ (질의) 'HID 블랙요원이 현재도 미복귀 상태이고 무기 소지한 채 돌아다닌다'라는 제보를 가지고 보도자료, MBC 보도 등이 있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

- (답변) HID와 블랙요원은 별개이고, 12월 4일 오전 8시 20분에 전원 부대로 복귀함.

⑤ 기타 국정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일체

○ (질의) 배도건 장군은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의 개명을 도와줬는지?

- (답변) 그렇지 않음.

(6) 수도방위사령부

(가) 보고내용

Ⅰ 주요 상황 [12. 3.(화) ~ 4.(수)]

○ '24. 12. 3.(화) 22:30경, 비상계엄 선포를 확인하고, 주요 직위자 대상 상황전파를 실시함.

○ 22:49경, 602항공대대 긴급비행 건의를 접수하였으며, 사전 계획되지 않은 헬기로 승인 보류하였다가, 23:31경 계엄사령부의 승인을 받음.

○ 22:53경, 1경비단 및 군사경찰단에게 출동 지시함.

○ 23:00경, 포고령 1호를 언론을 통해 확인함.

○ 23:10 이후, 1경비단 소속 136명이 국회 일대로 현장 출동하여 23:40경 최초 부대가 도착함.

○ 23:30 이후, 군사경찰단 소속 76명이 국회 일대로 현장 출동하여 00:04경 최초 부대가 도착함.

○ '24. 12. 4.(수) 00:23 이후, 국회 일대로 출동한 병력 212명 중 48명이 국회 울타리 내로 진입하였음. 국회의사당 본청 내로 진입한 인원은 없으며, 당시 총기·탄약은 차량 내 통합 보관하였음.

○ 01:47경, 출동병력 복귀 지시 이후 부대별 집결하여 인원·장비 확인 후 복귀 출발하였으며 04:50경 복귀 완료함.

Ⅱ 주 요 조 치 (12. 5. (목) ~ 현재)

□ 흔들림 없는 軍 본연의 임무수행을 통한 통합방위작전태세 확립

○ 現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 下 대비태세 확립

- 현장 중심의 경계작전 및 적 위협을 기초로 방공작전태세 확립
- 제대별 지휘관 중심으로 규정에 맞는 부대운영과 교육훈련 시행

□ 안정적 부대운영 및 대국민 신뢰 향상 노력

○ 제기능이 통합된 사고예방 컨설팅을 통한 부대관리 시스템 진단

- 비상계엄 관련 출동병력에 대한 전문인력 면담, PTSD검사/조치 진행
- 의료·법무지원 등 전역장병을 포함한 장병 대상 소홀함 없는 지원

○ 대국민 신뢰에 저해되는 악성사고 예방을 위한 지휘관심 경주

Ⅲ 향 후 추 진

□ '25년 부대운영계획 및 사업계획을 추동력 있게 추진

□ 부대운용 활성화로 부대 단결력과 사기 증진 노력 강화

Ⅳ 결 언

수방사 全 장병은'切磋琢磨'의 자세로 본질에 충실한 부대,
안전하고 가슴 따뜻한 부대, 시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부대로서의
수방사의 위상을 최단시간 內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12·3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 (질의)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오물풍선 투하 직후인 11월 22일부터 24일까지 대통령, 김용현, 곽종근, 여인형, 김용대, 강호필, 노상원 중에 만난 사람이 있는지?

- (답변) 그때 휴가를 냈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았음. 그리고 위 사람들을 만난 적이 없음.

○ (질의) 수도방위사령관은 10월 29일 수호신TF단장, 1경비단장, 군사경찰단 등과 여의도 변전소에 간 사실이 있는지?

- (답변) 국가중요시설 72개중 하나인데, 그 중에서 부하들이 여의도 변전소를 가자고 추천해서 다녀옴.

○ (질의) 여의도 변전소가 단전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변전소장의 답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 (답변) 여의도 지역에 단전이 되는데, 우회 선로가 있어서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고 변전소장이 말함.

○ (지적) 대통령은 비상계엄 후 대국민 담화에서 '정말로 비상계엄을 할 생각이었으면 국회의 단전·단수를 했을 것'이라고 발언했으나, 이미 국회 단전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

○ (질의) 24년 2월 수호신TF를 만들었는데 인원은 몇 명인지? 계엄 당일 국회에 몇 명이 출동했는지?

- (답변) 400명이고, 그 중 100명은 전술훈련 참가로 인제에 감. 국회에는 나머지 병력이 출동하고 소총은 차에 두고 내려서 소총 없이 국회 근처에 있었음. 저격수는 없었음.

○ (질의) 공소장에 보면 '이진우는 11월 9일 국방부장관의 공관 2층 식당에서 윤석열,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과 함께 식사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시 부대 운영에 관하여 논의한 이후부터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준비태세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시하였다'라고 되어있는데 맞는지?

- (답변) 그러함.

②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의 동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 (질의) 수도방위사령관은 제1경비단장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을 인정하는지?

- (답변) 여기서 답변하기는 제한되는 상황임.

○ (질의)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은 사령관의 의지인지, 대통령의 지시인지?

- (답변) 공소 제기된 상태이므로 답변이 제한됨.

○ (질의) 수도방위사령관이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으나, 상황이 바뀌어 특수전사령부 소속 병력들이 국회에 들어가 있으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면 국회의사당 출입구에 있던 시민들 사이에서 길을 터 주라

는 명령으로 변경한 것인지?

- (답변) 그러함.

○ (질의) 수도권 부대 2~3만 명 동원은 지상작전사령관의 지휘 또는 동의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이 맞는지?

- (답변) 맞음.

○ (질의) 수도방위사령관은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는지?

- (답변) 계엄 선포 당시 본인과 일부 참모만 있었기에 법적 조언을 들을 상황이 아니었음.

(7) 특수전사령부

(가) 보고내용

Ⅰ 주요 상황 [12. 3.(화) ~ 4.(수)]

○ '24. 12. 3.(화)	22 : 23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22 : 32	국방부장관, 전군주요지휘관 회의
	22 : 40	합참, 전군 경계태세 ○급 발령
	22 : 47 경	특수전사령관, 구두 임무지시 (VTC)
○ '24. 12. 4.(수)	01 : 03	국회 본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
	01 : 09 경	특수전사령관, '임무중지' 지시
	04 : 30	출동병력 복귀 완료

Ⅱ 주요조치 [12. 5.(목) ~ 현재]

□ **비상계엄 관련 조사 및 수사에 적극 협조 : 계속**

* 계엄 관련 자료 폐기 · 은폐 · 조작 일체금지 지시 접수 : '24. 12. 6.(금)

□ **군심 결집 및 부대 안정화를 위한 조치 : 계속**

○ 장병 소통간담회 추진 : '24. 12. 9. ~

* 계층별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확인 및 조치 중

○ 안정화 TF 편성 및 운영 : '24. 12. 19. ~

* 출동병력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선별검사 및 심리치료 중

□ **혹한기 훈련 등 계획된 교육훈련 정상시행 : '25. 1월 ~**

Ⅲ 향 후 추 진

□ 軍 **본연의 임무인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

□ **강인한 교육훈련과 부대 정상화 추진**

Ⅳ 결 언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계엄 선포 전 병력 및 경찰력 동원을 위한 준비사항

○ (질의) 특수전사령관이 10월에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통해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할 수 있다. 본인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를 하겠다”는 발언을 들은 것은 사실인지? 국방부는 원점 타격을 통한 북한 도발 유도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사령관의 진술과 결이 다른 것을 인정하는지?

- (답변) 그러함. 본인은 본인이 들은 것만 말씀드림. 10월 초중순에 해당 연락을 받음.

○ (질의) 서울시 CCTV 안전센터망에 특수전사령부가 계엄 당일 날 500여 회를 임의로 접속해 계속하여 계엄을 준비했다는 보도가 사실인지?

- (답변) 2024년 1월 17일 특수전사령부가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서울시와 협조하여 재해·재난 시와 특별한 국지도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도록 1월 18일부터 2개의 계정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었던 것임.

○ (질의) 특수전사령관은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마치고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 김용현, 여인형, 이진우와 함께 식사한 사실이 있는지? 당시 반국가 세력 이야기라든지,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그래서 여인형, 이진우도 이런 상황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는지?

- (답변) 그러한 사실이 있음. 그때 비상계엄과 비상대권 이야기가 있었음. 저는 당시 계엄이 될 상황이 아니고 될 수도 없으며, 특전사 대원들은 안 따른다고 김용현 장관에게 분명히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말씀드렸음. 그리고 여인형, 이진우도 그때 같은 이야기를 들었음.

○ (질의) 비상계엄을 시도하려는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 (답변) 10월 1일 모임 때 그 이야기를 들음.

○ (지적)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은 비상계엄 직전 여러 차례 대통령과 식사를 하였는데, 사전에 비상계엄 우려 등의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질의) 지난 10년간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던 기관의 설계도면을 이번 24년 7월에 요청했는데 알고 있는지?

- (답변) 수도권 후방지역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작업으로 알고 있음.

○ (질의) 12월 1일 공수여단장 이상현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커졌으니 12월 4일부터 한 달간 있는 제주도 숙영 훈련을 연기하라라고 지시한 적 있는지?

- (답변) 전방 상황의 대비태세를 강조한 것이 맞으며 그것은 10월 이전부터 그러하였음.

○ (질의) 12월 2일 날 1공수여단장, 9공수여단장에게 다음 주에 북한 오물풍선 도발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정보가 있다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

- (답변) 그러함. 강조하여 지시했음.

○ (질의) 특수전사령관은 12월 2일 김현태 707특임단장에게 서울 지역에 북한에 의한 직간접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다, 최근 북한이 한국 내 동조 세력에 의해서 도발 가능성이 있다, 진압작전을 준비해 보자고 지시한 적 있는지?

- (답변) 그러함. 본인이 707에 그렇게 말했음.

○ (질의) 계엄 당일 특수전사령부 항공부대는 계엄이 아닌 패스트로프 훈련을 하기 위해 준비했던 것이 맞는지?

- (답변) 그러함.

②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의 동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 (질의) 특수전사령관은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는지?

- (답변) 참모진 소집이 안 된 상태에서 지시를 받고 움직였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과 여력이 없었음.

○ (질의) 특수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전화 중 가장 납득이 가지 않고 놀라웠던 기억이 무엇이었는지?

- (답변) 12월 4일 00시 30분~40분 경 통화에서 '의결정족수가 채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는 내용이었음. 해당 내용은 본인이 법적 자문 없이도 자체 판단으로 잘못된 지시임을 인지하고 있었음.

○ (질의) 특수전사령관은 특전사 간부가 휴대폰에 메모한 '1) 다급해진 사령관이 보안폰으로 유리창이라도 깨고 들어가라고 지시 2) 본회의장 의원들이 표결하지 못하도록 끌어내고 707특임단을 빨리 투입하라고 지시 3) 전기를 끊거나 의사당 지붕에 내리면 안 되냐는 내용'을 인정하는지?

- (답변) 대통령의 지시내용을 참모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마이크가 켜져 있어 전달된 것이며, 이는 특수전사령관 본인이 지시한 내용이 아님.

○ (질의)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부하들에게 계엄 상황이 아닌 북한 도발 상황이라고 알리고 병력을 동원한 것인지?

- (답변) 그러함.

○ (질의) 12월 4일 01시 52분에 신월지하차도에서 여의도 방향으로 향한 7851-72 차량은 9공수여단 소속인지? 행선지는 어디였는지?

- (답변) 9공수여단 소속이 맞으며 '여론조사 꽃'이 행선지였음.

○ (질의) 707특임단은 왜 살상무기, 실탄 등을 휴대하고 국회로

출동했는지?

- (답변) 12월 3일 11시 09분에 불시 출동태세 점검 지시를 받고 훈련 준비 중이었음. 이후 계엄 선포를 TV로 확인한 이후 22시 31분에 사령관으로부터 출동 지시를 받아 훈련 복장과 장비를 그대로 휴대해서 출발한 것임

○ (질의) 9공수여단은 출동 당시 탄약을 불출한 이유가 무엇인지?

- (답변) 전군 경계태세 2급이 22시 40분부로 발령됨에 따라 신속대응부대에 경계태세에 부합하는 탄약을 불출함.

○ (질의) 출동 시 탄약 불출이 이루어진 경위가 무엇인지?

- (답변)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됨에 따라 군 매뉴얼에 따라 출동 탄약 불출, 선관위 관련 대테러상황으로 인식해서 탄약 불출이 이루어졌고, 계엄 선포와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된 상황에서 탄약 관리 지시를 산하 여단장들에게 명확히 못한 책임이 있음.

○ (질의) 계엄 당시 공포탄을 휴대하였으나, 이것으로 제압이 안될 시에 실탄을 현장에 있는 지휘관이 나눠 주어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

- (답변) 사람이 다치지 않게 하라고 지침을 주었기 때문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음.

○ (질의) 비상계엄 상황 하에서 실탄이 개인별로 분배 되었는지

여부와, 탄약고의 탄이 불출된 것이 경계태세 2급에 따른 행위인지?

- (답변) 탄약고에서 탄이 불출된 것은 경계태세였기 때문이고, 불출하지도 않고 영외에 반출하지도 않아 탄약 제원 카드에 기록하지 않음.

○ (질의) 계엄 당일 출동한 12대의 헬기 중 평상시에 운영하는 긴급대기 및 후속대기 헬기가 있었는지? 원래 긴급대기 및 후속대기 헬기에 M60 기관총과 탄약이 적재되어 있는지 및 총을 거치하였는지?

- (답변) 당시 긴급대기 및 후속대기 헬기가 각 한 대씩 포함되어 있었으며, 상시 기관총과 탄약이 적재되어 있는 헬기이고 총을 거치하지 않음. 기내에 고정되어 있는 철제 캐비닛에 탄약을 보관하며 여기에는 잠금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잠금장치 열쇠는 대대 지휘통제실에서 보관 중이었고 현장에 불출하지 않았음.

○ (질의) 12월 4일 날 국회 앞에 장갑차가 배치되었다고 MBC에서 보도했는데 장갑차를 동원한 사실이 있는지?

- (답변) 없으며, 당시 출동한 차량은 지휘관 경호 차량인 소형 전술차량임.

○ (지적) 비상계엄 출동시 탄약 소지와 관련하여 1공수여단은 간이탄약고에 보관된 탄약을 불출하여 통합 보관하였고, 3공수여

단은 공포탄만 2,200발 휴대하고, 9공수여단은 공포탄도 개인이 소지하지 않았고, 707는 공포탄만 휴대를 했는데 군인들이 누명을 쓰고 있음. 이번 국정조사에서 누명을 벗기 바람.

○ (질의) 계엄 당일 대통령과 두 번 통화했는지?

- (답변) 12월 3일 23시 40분 헬기 이동시 첫 번째, 12월 4일 국회 상황시 두 번째, 12월 6일 등 3번 대통령이 전화했는데, 12월 6일 전화는 제가 받지 못함. 12월 3일 첫번째 통화는 국회로 이동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에 대한 통화임.

○ (질의)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아직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끌어내는 내용의 통화였는지?

- (답변) 그러함. 그런데 도끼라는 용어를 들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음.

○ (질의) 비상계엄 과정에서 헬기를 출동하는 작전을 수행하면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는지? 이는 규정상 허용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날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삭제하였는데, 이것은 증거인멸에 해당됨을 알고 있는지?

- (답변) 예, 제가 직접 만든 것은 아니고 조종사들이 긴급하게 임무를 수행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만든 것을 알고 있음. 규정상 허용되지 않음.

○ (질의) 특수전사령관은 계엄군으로 출동할 병력으로서 명령을

내릴 때 국제평화유지군까지도 구두지시를 내렸는지?

- (답변) 2개 대대에 준비태세를 갖추라고만 했음.

○ (질의) 1공수, 3공수, 9공수 여단이 출동하기 위해 탄약고에서 불출한 탄약이 총 18만 발에 달하고 세열수류탄, 클레이모어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고성, 평화적 계엄이라고 했지만 서울을 제2의 광주로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닌지?

- (답변) 공포탄만 휴대하고 실탄은 개인에게 절대 주지 말라고 지시함.

○ (질의) 탄약과 관련하여 불출된 상황까지 포함해서 정확히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 (답변) 불출된 것까지 포함해서 보고하겠음.

○ (지적) 특수전사령관이 계엄 인지 시점, 대통령의 '도끼로 부수고'란 용어 사용여부, 공포탄·테이저건 사용 건의 여부 등에 대해 발언 기회마다 자꾸 바뀌어 신뢰성 문제가 있음.

- (답변) 12월 1일 6개 확보 장소를 받았을 때 계엄이라고 인식함. 도끼란 용어는 기억에 없으며 무기사용 금지를 지시함.

○ (지적) 707특임단에서 작년 노들섬에서 전개 훈련을 한 것을 두고 계엄을 사전에 준비했다는 의혹, 정보사령부 블랙요원이 계엄 해제 후에도 무장 활동 중이다라는 의혹,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들에 대해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계속 해명할

필요가 있음.

○ (지적) 12월 4일 국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진입과 문을 부수고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와 관련하여 특수전사령관과 1공수여단장 간 진술이 일치되지 않아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움.

③ 계엄해제 의결 후 해제 공고 지연에 관한 사항

○ (질의) 12월 4일 계엄해제 의결 후에도 김용현 장관이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는지?

- (답변) 그러함. 명확하지는 않지만 2시 10분경 그렇게 들었고 제가 그것은 안 된다고 답변했음.

④ 내란범죄 수사주체 논란과 수사상황 점검

○ (질의) 대통령의 변호인은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도 꺼내지 않았고, 사령관들의 진술이 오염된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답변) 두 번째 통화 당시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사항을 조금 전에 그대로 말씀드림.

⑤ 기타 국정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일체

○ (질의) 계엄군 투입 인원들을 입막음하기 위해서 부대 안에 감금하고 출동 전 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 보도됨. 707부대가 실탄과 공포탄, 테이저건 등 약 6,000여발의 탄약을 반출했다는

의혹이 보도됨. 특임대에서 저격수를 배치하였다는 가짜뉴스가 보도됨. 이 모든 것이 사실인지?

- (답변) 모두 사실과 다름.

○ (질의) 국회 등 20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내부설계도 요청은 국가중요지역 데이터베이스 확보를 위한 것인지?

- (답변) 그러함. 그렇지만 내부설계도를 받지 못함.

(8) 국방부조사본부

(가) 보고내용

Ⅰ 주요 상황 [12. 3.(화) ~ 4.(수)]

□ '24. 12. 3.(화)

○ 22:33 비상계엄 상황 지휘관 유선보고

* 23:04부 부대 정위치, 23:29 합참 전투통제실 소집, 다음날 01:56 부대 복귀

○ 22:43~23:52 방첩사에서 군사경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4회)

* 관련 근거가 없어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음

○ 23:42경 방첩사에서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현황 확인 및 이감 요청

* 현황 통보 및 해당 부대에 이감시 군 검찰 지휘/군사법원 승인받는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할 것을 통보

*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군 검찰 사건사무규칙, 각 군 군사경찰 규정에 의거 각 군의 미결수용실은 각 군 및 해당부대에서 관리하며 이감시 군 검찰 지휘, 군사법원 승인의 절차 필요

○ 23:52~00:00 어간 방첩사에서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상 수사2국에 편성된 수사관 10명 파견 요청

* 파견 출발 : 12. 4.(수) 01:08부(비무장, 사복) / 복귀 지시 : 01:15부(국방부 출입문 인근에서 복귀)

□ '24. 12. 4.(수)

○ 00:05 계엄상황실 구성 지원을 위한 소집 지시 접수

* 소집 지시 외 국방부 및 합참에서 추가 지시나 임무 부여는 없었음.

○ 00:37 계엄사령부 치안처 요원 3명 계엄상황실 위치

Ⅱ 주 요 조 치 [12. 5. (목) ~ 현재]

□ 「12. 3. 비상계엄 수사 TF」 운영

○ 12. 9.(월)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본부 자체「12. 3. 비상계엄 수사 TF」를 편성하여 수사 진행 후, 12. 19.(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조수사본부)로 이첩 / 운영 종료

□ 공조수사본부 지원

○ 공조수사본부에서 국방부로 군사법경찰관 지원을 요청하여 12. 20.(금) 부수사관 5명을 파견

Ⅲ 향 후 추 진

□ 공조수사본부 협조下 現 상황 관련 수사 적극 지원

Ⅳ 결 언

국방부조사본부는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군기강 확립 활동 강화 및 관련 수사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 기관보고 [1월 15일]

(1)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가) 보고내용

① 대통령비서실 및 대통령경호처

(서면 대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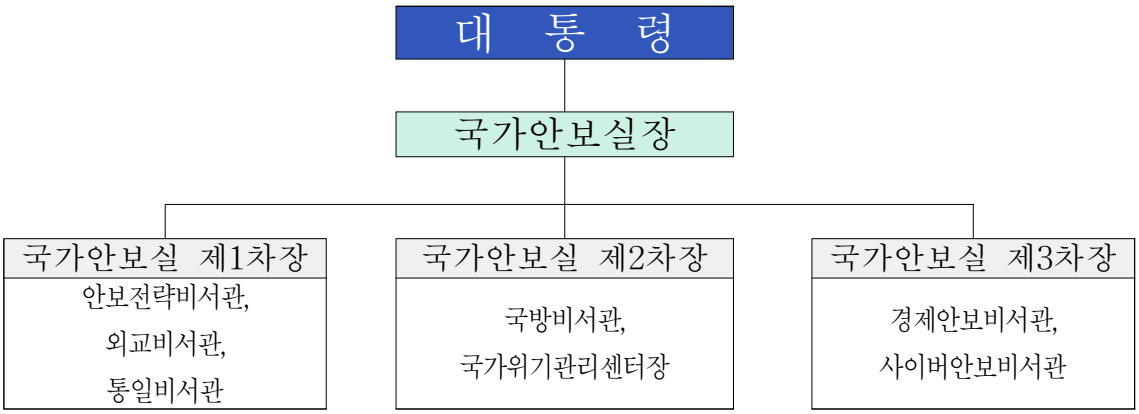
② 국가안보실

Ⅰ. 일반현황

□1 (역할) 국가안보실은「정부조직법」제15조 및「국가안전보장회의법」제8조에 근거,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

○ 안보전략·외교·통일·국방·경제안보 분야의 현안 및 정책 조정·관리, 사이버안보 대응 역량 강화, 국가 위기 관련 상황관리·초기 대응 등 국가안보 전반에 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 수행

□2 (조직) 국가안보실장 산하 1·2·3차장실로 구성



3 (인력) 정원 : 총 48명

○ 정무직 4명(장관급 1명, 차관급 3명)과 일반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하여 총 48명(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4명 포함)

4 (예산) 주요사업비 : 66천만원

○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대통령비서실과 통합 운영

Ⅱ. 주요 업무 현황

□ 외교·안보부처 간 공유 및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중요 사안에 대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체 운영

○ NSC는 「헌법」 제91조 및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 따른 대통령 자문기구로, 실무위-상임위 심의를 거쳐 권한대행에게 결과를 보고

※ 권한대행 임명 직후 관련 매뉴얼에 따라 NSC 전체회의 개최(12.14, 12.27)

○ 북한의 ICBM 발사,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이 있을 경우, 안보실장 주재 긴급 NSC 상임위를 개최, 안보 상황 점검 및 대응방안 수립

□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 北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도발시 압도적 대응

＊ △ 다양한 도발 대비 경계·대응태세 확립, △한국형 3축체계 강화

○ 우주·사이버·전자기 작전역량 강화

○ 연합방위태세 강화 및 한미일 등 국방협력 외연 지속 확대

＊ △ 연합연습·훈련성과 제고, △ 한미일 등 다자안보협력 강화

□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 활동 차단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

□ 국익에 기반한 △주변 4국 외교, △한미일, 한일중 등 소다자 협력,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세안 등 지역별 협력 외교 적극 전개

○ 민생 및 경제 부문 외교성과를 거양하고, 우리 국민 보호 및 재외동포 권익 신장 노력을 강화

□ 규범 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국제연대 동참과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다자외교, 국제개발협력, 공공외교, 기후환경 외교 강화

○ 기후위기 대응, 신기술의 책임있는 사용 등 관련 국제 논의를 주도,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역할을 제고하고 세계적인 親韓 네트워크 구축

□ 헌법 4조에 기초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 수립·추진

○ 국제사회 통일 공공외교 확대로 통일·대북정책지지 확산

○ 북한인권 개선 및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강화

○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정착 추진체계 내실화

○ 국내 통일인프라 확충 및 자유민주주의 통일교육 강화

□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

○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

○ 범정부 역량을 결집, 방산성과 창출 및 방산수출 추동력 강화

□ 장병 복무여건 개선 및 일류 보훈문화 구현

○ 국민 눈높이에 부합되는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 △ 장병 맞춤식 급식체계 구축, △ MZ 세대 눈높이 고려 주거 지원

○ 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

＊ △ 합당한 보수체계 보장, △ 인력구조 개선 및 직업안정성 제고

○ 광복 80주년 기념사업을 통해 국민통합 견인

＊ △ 국민통합의 공간(80주년 특별전시관) 마련,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에 대한 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비상계엄 사전준비 관련

○ (질의) 지난 8일경 민주당 모 의원이 외교 안보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HID 부대를 방문한 것은 북파공작원을 이용해서 내란을 획책한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 방문 시기·목적이 무엇인지?

- (답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외교 안보 및 대북관계를 담당하고 있고, 지난 2023년 6월 1일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 정보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HID에 격려 방문을 하였음.

○ (질의) 충청권에 있는 전쟁지도본부로 사용되는 벙커에서 계엄 당일 아침부터 시설과 통신을 점검하는 등 상황실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알고 있는지?

- (답변) 전혀 모르는 사항임.

○ (질의) 2023년도 당초 대통령이 속초에 소재한 HID 부대를 방문하기로 했다가 취소된 후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방문한 것이라는 제보가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 (답변) 전혀 사실이 아님.

○ (질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산하 위기관리센터에 지난 2023년 12월 1일부터 HID 요원이 파견되어 근무 중으로 파악되는데, 지금까지 국가안보실에서 HID 요원을 차출한 적이 있는지?

- (답변) 해당 요원은 공관에 근무하는 인원으로 제2차장실 소속이 아님.

○ (질의) 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된 HID 요원이 계엄 전후로 정보사령부에 인원 차출이 더 가능한지 문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지?

- (답변) 아는 바가 없음.

○ (질의) 역대 어느 정부도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안보실 차장이 HID 부대를 방문한 적이 없는데, 지난 2023년 6월경 제1차장이 HID를 방문하고, 12월경 HID 요원이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 파견이 되며, 비상계엄에 HID가 등장하는 등 국가안보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답변) 현재 국가안보실에 소속된 인원은 과거 HID 경력이 있기는 하나 현재는 국방부 소속이고, 실제 근무도 2023년 12월이 아닌 3월에 시작하여 계엄과 무관하며,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 모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

○ (질의) 현재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에 근무하는 HID 출신 요원이 위기관리 업무와 무관한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해당 요원의 상급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규모로 업무를 수행중인지?

- (답변) 해당 요원은 국가안보실 1·2·3차장 직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채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움.

② 비상계엄 당시 상황·활동 관련

○ (질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에 지시 사항을 담은 A4 문서를 각 부처 장관들에게 주었는데, 이를 대통령실에서 제작한 것인지?

- (답변) 아는 바가 없어 답변하기 곤란함.

○ (질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대북 업무를 담당하는 HID 요원이 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다고 생각하는지?

- (답변) 경위를 잘 알지 못함.

③ 북 도발 등 외환유치 의혹 관련

○ (질의) 비상계엄 관련 민주당에서 발의한 특검법안 내용 중 외환유치 부분이 있는데, 이와 관련한 민주당의 여러 의혹과 대통령실의 입장문 중 무엇이 사실인지?

- (답변)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국가안보실 명의로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대해 고발조치한 바 있음.

○ (질의) 비상계엄 관련 특별검사 수사범위에 외환죄를 추가하는 것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군사훈련 및 활동을 외환죄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고, 이는 군 차원의 활동 범위 및 결정에 심각한 제한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답변) 정상적인 군사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안보에 매우 저해되는 행위라고 생각하고, 군이 정상적인 작전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질의) 특별검사의 외환죄 관련 수사 과정에서 군사비밀이나 보안 문제가 노출됨으로써 적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이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는지?

- (답변)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제보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군사활동에 대해 제보를 하는 행위는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라고 생각함.

○ (질의) 우크라이나와 협조하여 북한군에 미사일 타격으로 피해를 발생토록 하여 대북 심리전으로 활용하자는 계획 등 정략적으로 전단을 유치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험을 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는지?

- (답변)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함.

○ (지적)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여러 가짜뉴스들이 횡행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④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 (질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1월 11일 대통령이 오찬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비롯한 강경파들이 “무력사용을 해서라도 체포영장을 막겠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파악되

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 (답변)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고, 관할 구역이 아니어서 전혀 들은 바가 없음.

○ (지적) 일부 경호처 수뇌부가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현명한 판단을 한 경호관들을 겁박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사항임.

- (답변) 확인해 보겠음.

⑤ 기타 사항

○ (질의) 계엄 이후 우리나라와 미·중·일과의 관계에 대해 국가안보실의 대처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람.

- (답변) 우선 바이든 행정부와 소통하면서 잘 마무리 하고 있고, 트럼프 신행정부와 국가안보실이 조만간 소통을 개시하기로 협의중이며, 외교부·국방부 차원의 고위급 인사 간 소통이 진행중임.

○ (질의) 2023년 12월 18일 전후로 개최된 대통령경호처 창립기념일을 대통령 생일잔치로 둔갑시켜 삼행시 선발대회, 합창 등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 (답변) 창설기념일 행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나, 세부적인 사항은 기억하기 어려움.

(2) 기획재정부

(가) 보고내용

1 비상계엄에 대한 기획재정부 입장

□ 비상계엄은 **헌법·법률**에 비추어볼 때 **잘못된 결정**이라는 입장

□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외신인도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중할 것**임을 지적하고 **강한 반대의사를 수차례 표명**

* 부총리는 반대 의사를 표명한 회의장에서 가장 먼저 나왔고, 출석 서명요청도 거부

** 부총리는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 23:40, 부총리·한은 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 참석)에서도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한은 총재가 시장 안정과 경제를 위해 만류

□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기재부 1급 회의**에서 계엄 관련 **어떤 지시도 따르지 않고 계엄하에 회의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입장 확인

* 부총리는 대통령실에서 전달받은 예비비 확보 관련 쪽지는 무시하기로 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제출

** 부총리는 12.4일 새벽 목적 적시 없는 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으나, 반대의사를 분명히 한 계엄 하 소집이라 생각하여 불참 통보

2 비상계엄 선포 이후 기획재정부의 시장안정 등을 위한 조치

□ (시장안정) **비상계엄 선언 영향으로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F4 회의를 개최**(23:40경)하여 **긴급 시장안정 메시지 발표**

* 외환시장은 새벽 2시까지 열려 있으며, 당시 환율이 40원 가량 급등(1,403→1,442원/달러)

○ 12.4일(07:00) F4회의에서 **주식시장을 개장**키로 논의하였고, 이후 **F4 회의를** 약 2주간 **매일 개최**하여 **시장 점검** 및 **안정화 조치** 등 논의

□ (대외신인도·경제안정) F4회의(12.3일) 직후 **기재부 1급회의**에서 **향후 대외신인도 관리·경제안정**을 위해 향후 **필요한 조치와 메시지 논의**

○ 12.4일(10:00)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국제사회와 긴밀한 소통 채널 가동** 및 **24시간 경제·금융상황 점검반 운영** 지시

○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 **주요국 재무장관, 국제기구, 글로벌 신평사, 해외 투자자** 대상 **서한 발송**(12.4·16일) 및 **주요 인사 면담**

*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12.5) 면담, 주한 외국상의(12.6) 간담회, 주한 일본대사(12.9) 면담, 美(12.11)·日(12.12) 재무장관 및 글로벌 신평사 화상면담(12.12, 1.9) 등

○ **대외관계장관 간담회**(12.15일) **정례화**를 통한 **통상 불확실성 등 대응**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12.11일)에 **민관 확대 개편** 추진

○ 현재도 엄중한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하에 **대외신인도 관리**와 **경제안정**에 **총력 대응** 중

* (대외신인도) 국제금융협력대사·국제투자협력대사 중심 한국경제설명회(2월) 개최 예정(경제안정) 18조원 경기보강 패키지, 전례없는 신속집행, 내수 취약부문 맞춤형 지원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계엄 당시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 관련

○ (질의) 계엄 당시 최상목 부총리에게 지시사항으로 준 문서 내용 중 예비비의 조속한 확보, 국회 관련 보조금 등의 완전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이 가능한지, 한국은행 대정부 일시대출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 (답변) 법체계와 맞지 않아 할 수 없음. 한국은행 대정부 일시대출금 제도는 재정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용도가 다름.

○ (지적) 비상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불법이 시행되었을 것이고 이를 수행한 공무원은 범법자가 될 수 있었음. 대통령은 예비비를 호주머니 돈으로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듦.

○ (질의) 12월 3일 F4 회의가 비상계엄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

한 목적으로 개최된 것인지

- (답변) 외환시장이 불안정하여 시장 안정 목적으로 긴급히 개최된 회의였음.

○ (질의) F4 회의 전후로 비상계엄 관련 예산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거나 준비한 것이 있는지

- (답변) 전혀 없음.

○ (질의) 비상계엄 이후 F4 회의에서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다가 이른바 “쪽지”를 공유하면서 비상계엄 이후 상황에 대하여 논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입장

- (답변) 참석한 네 명도 그날 밤에야 비상계엄을 알게 되었고, 긴박하게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노력했던 상황임. “쪽지”를 전혀 들은 바 없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 회의를 열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 (질의)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비상계엄 직후 열린 기획재정부 간부회의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쪽지에 기재된 예산상 조치에 대하여 언급 또는 논의한 바 있는지

- (답변) 논의된 바 없음.

② 계엄의 경제적 영향 관련

○ (질의) 계엄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 (답변) 시장의 불확실성을 많이 키웠음.

○ (질의) 계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경제수장들이 발표하지 않아 계엄에 반발한 것인지 옹호한 것인지 알 수 없음.

- (답변)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한국 경제나 국민 일상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였음.

○ (질의) 대통령 탄핵소추 및 체포 후 코스피가 급등하였음. 해야 할 탄핵을 하니 경제가 안정되는 것임. 현재 시장이 불확실하고 대외관계와 환율이 좋지 않은 이유는

- (답변) 정치적 불확실성이 영향을 주고 있고, 다만 체포가 금융시장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3) 법무부

(가) 보고내용

(비공개)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관련

○ (지적) 12월 3일 당시는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고 평온한 상태였으므로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하는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지적

○ (지적)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계엄사령관도 국무회의에서 임명되지 않았으며, 국회가 계엄해제를 의결한 후 즉시 해제하지 않은 점 등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지적

○ (지적) 계엄이 있으면 행정 및 사법사무는 통제할 수 있지만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데, 국회의 무력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내용상 위법이 있다는 지적

② 국무회의 비상계엄 심의 관련

○ (질의)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8시 30분에 대통령실에 도착하였는데, 이 회의에서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한다고 얘기한 국무위원이 누구인지

- (답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고, 저도(박성재 법무부장관) 헌법상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말을 함.

○ (지적)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 되므로 만약 비상계엄을 막고자 했다면 국무회의 심의 자체가 못 열리게 막았어야 한다는 지적

○ (지적)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만 기소하고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데, 국무위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 (질의) 박성재 장관은 국무위원 모임 당시 계엄사령관이 누구인지 알았는지

- (답변) 그 당시 계엄사령관의 이름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포고문'이 자리에 놓여 있었던 것으로 기억함. 이 포고문에는 계엄 종류, 계엄사령관, 일시, 지역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음

○ (질의) 오늘 국정조사에 참석한 국무위원 중에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말하는 포고문을 본 사람이 있는지

- (답변) 없음

③ 수사기관 내란혐의 수사 관련

○ (지적) 12월 3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1처장에게 선관위에서 국정원과 검찰을 지원하라고 지시하고, 정성우 1처장은 대령 7명에게 같은 내용을 전파하였음에도 아직 정성우 1처장

은 입건조차 안되고 있는바, 정성우 1처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 (지적) 서울중앙지검이 비상계엄 직전에 4건의 선거 관련 캐비넷 사건을 선관위가 있는 안양지청으로 송치하였는데, 만약 내란이 성공했다면 정성호 1처장이 말했던 선관위로 나갔을 검찰은 안양지청이었을 것이므로 이 관련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 (질의) 검찰이 선관위 서버를 압수하기 위해서 선관위에 간 사실이 있는지? 2명의 검사가 출발하였다는 제보를 받았으므로 법무부차관은 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음.

- (답변) 검찰은 전혀 연락받은 사실도 없고 간 사실도 없음. 파악을 해보았으나 전혀 사실이 아님.

○ (지적)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 및 담당 부장검사가 각 김용현과 연락을 한 후 김용현은 검찰로 자진 출두를 하였는데, 정보사 수사단 38명의 체포조 부분을 공소장에서 뺀 점과 관련하여 사건 조율을 통해 의도적으로 수사를 축소한 것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 (질의) 노상원의 수첩을 보면 '체포', '사살', '도구 마련' 등의 용어가 나오므로 내란 목적 살인의 예비·음모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검찰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 (답변)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

으나, 해당 증거를 확인한 결과 뚜렷한 물증이나 입증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지적) 노상원은 2015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장인 행세를 하는 김충식과 후원을 주고받는 사이였다는 점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 (질의) 국무위원 11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는지

- (답변) 구체적인 보고를 받지 않아서 알 수 없음

○ (질의) 대통령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주었다는 쪽지에 대해서 수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 (답변) 살펴보도록 하겠음.

○ (질의) 비상계엄 선포 후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안가에 모였는데, 안가 모임을 누가 주선한 것인지

- (답변) 저는 단지 사무실에서 저녁 모임을 알려주어서 갔음

○ (지적) 안가 모임 후 네 명은 동시에 핸드폰 교체하였는데 이는 증거인멸에 해당하고 범죄 혐의가 농후하므로 4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 (지적) 대법원의 내란죄 관련 판례를 보면 '기타 중요 임무 종사자'는 모의·참여 외에 반란에 대한 확실한 인식을 가지고 참여한 것임. 국무위원들은 공통적으로 비상계엄을 사전에 몰랐

고 이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 부처에서 쿠데타를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으므로 내란죄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지적

- (답변)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은 행위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유념해서 수사할 것으로 생각함.

○ (지적) 최근 검찰이 장관들은 무혐의처분 한다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는 특검이 판단할 사안이고 특수본이나 국수본이 면죄부를 줄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

④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 (지적)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로만 소추할 수 있고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공수처의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위법하다는 지적

○ (지적) 공수처는 법원 관할 상 서울중앙지법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사건은 예외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판사에게 영장심사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

○ (지적) 체포영장 발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때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적시하여 법을 임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

○ (지적)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해 불복하려면 체포적부심을 해야 하고, 단순히 체포영장의 불법성만 주장해서는 안된다는 지적

○ (질의)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체포되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 (답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기관 간 혼선이 빚어진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번 계기를 통해서 형사사법 시스템이 안정화되기를 바람.

○ (질의) 경호처 직원이 대통령 관저의 배치도를 유출하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지

- (답변) 구체적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성립할 여지가 있음.

○ (지적) 체포영장에 대해 이의신청을 본 적이 있는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음. 윤석열 대통령이 법적으로 볼 수 없는 여러 제도를 활용하여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지적

⑤ 비상계엄 사전 모의 및 준비 관련

○ (질의) 법무부나 교정본부가 구치소에 빈방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 있는지

- (답변) 없음

○ (질의) 비상계엄 직후 실시한 교정기관장 영상 회의를 개최한

이유가 무엇인지

- (답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지휘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고 수용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

○ (지적) 한 언론사는 새벽에 교정 직원이 비상소집해서 독방을 비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를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언론사는 허위보도를 인정함. 이렇듯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가짜뉴스가 너무 많이 유포·재생산된다는 지적

⑥ 북한 도발 등 외환혐의 관련

○ (질의) 내란특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외환 관련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답변) 제8호를 추가한 이유는 북한을 자극해서 무력행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다는 일종의 내란 예비음모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 것인데, 수사 과정에서 남용될 위험성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⑦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등 비상계엄 원인 관련

○ (지적)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에 주도하에 발의된 탄핵소추안이 29건이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감사원장 등 다수의 중요 정부부처 수장을 탄핵소추하고, 야당 정치인을 조사하거나 대통령 가족에 대한 조사가 소홀했다는 이유로 다수 검사를 탄핵소추하는 등 야당이 탄핵소추로 국정을 마비시켰다는 지적

○ (질의)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

는지

- (답변) 현재 국회에 석명을 요구한 상태로 알고 있음.

○ (지적) 헌재는 선입선출의 원칙대로 빨리 탄핵 심사를 하여 무고 탄핵의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

○ (지적) 비상계엄 전 상황을 보건대 현행법상 대통령의 국회에 대한 견제 권한이 거부권밖에 없는 반면 국회에서는 다수당의 횡포가 과도하여 정상적인 국정수행이 불가능하고 삼권분립의 정신이 몰각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

- (답변) 헌법상 다수결의 원리가 형식적 법치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여야 의원님들께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면 국무위원과 공무원들이 더 좋은 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4) 대검찰청

(가)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 (질의)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건이 10만 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탄핵소추로 3석이 공석인 상황에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 (답변) 현재 중요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어려운 상황임.

② 내란혐의 수사 관련

○ (질의) 검찰이 선관위에 가기로 되어 있다는 지시를 들은 바가 있는지

- (답변) 그런 사실 없음.

○ (지적) 대통령은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이번 내란과 관련하여 검찰과 연결고리가 없을 리가 없으므로 김주현 민정수석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

(5) 법제처

(가)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내란혐의 수사 관련

○ (질의) 비상계엄 직후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민정수석, 법제처장 4인의 안가 모임을 주선한 사람이 누구인지

- (답변) 저는(법제처장) 이상민장관에게 연락 받음.

②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 (질의) 형사소송법 제110조 조항을 공판 단계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집행 시에는 준용 규정이 없으나 수사 단계에서 체포영장 집행 시에는 준용 규정이 있는데 이는 입법 미비인 것인지

- (답변) 학설상 제110조가 물건을 압수·수색할 때만 적용된다고 보는 학자도 있고, 신병과 관련된 때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학자도 있음. 다만 학자들의 논쟁은 현실적인 문제를 접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는 것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실제 본안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로 보임.

③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관련

○ (지적)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관련하여 2016년에는 재적의원의 2/3가 필요하다고 해석하고, 2024년에는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해석함. 이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이고 국회는 유권해석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

○ (지적) 다수의 헌법 학자들 및 헌법학 주석서에 따르면 공직자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행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원천 무효라는 지적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가) 보고내용

Ⅰ. 개 요

○ ’24. 12. 3. 비상계엄 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12. 4. 수사 착수, 12. 11.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와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엄정하게 수사

○ 윤석열(대통령), 김용현(前 국방부장관), 박안수(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고발사건 및 관련 인지사건, 국가수사본부와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이첩받은 사건을 수사

○ 12. 20. 문상호(前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12. 31. 윤석열(대통령) 체포영장 발부(’25. 1. 7. 재발부)

○ 현재 국가수사본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피의자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집행을 준비함과 동시에 이 사건의 신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수사 진행 중임

Ⅱ. 수사 현황

사건명
12·3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내란 범죄 등 사건

○ 주요 피의자

- ① 윤석열(64세, 대통령), ② 김용현(65세, 前 국방부장관), ③ 이상민(59세, 前 행정안전부장관), ④ 박안수(56세, 육군참모총장-직무정지), ⑤ 여인형(55세, 국군방첩사령관-직무정지), ⑥ 문상호(53세, 국군정보사령관-직무정지), ⑦ 조지호(56세, 경찰청장-직무정지), ⑧ 김봉식(58세, 서울경찰청장-직위해제) 등

※ 김용현, 문상호 사건 일부는 검찰과 군검찰에 이첩하였음

○ 주요 피의사실 요지

- 공모하여, 2024. 12. 3.~4.경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하여 성명불상의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에 대한 표결권 행사를 방해[**내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사건 경과

- '24. 12. 5. 고발장 접수

※ '24. 12. 시민단체 등 고발장 및 인지통보 등 37건 추가 접수

- '24. 12. 4.～현재 피의자 및 관련자 등 조사, 주요 피의자 출국금지, 국군방첩사령부 등 압수수색

- '24. 12. 20. 문상호(前 정보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 ’24. 12. 31.　　윤석열(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 ’25. 1. 3.　　윤석열(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 ’25. 1. 7.　　윤석열(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Ⅲ. 향후 계획

○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 진행 예정

(7) 행정안전부

(가) 보고내용

□1 긴급 간부회의 관련

○ **(일시/참석) '24.12.3. 24시경**(前 장관 주재) / 차관 및 주요 실·국장

※ 서울-세종 영상연결

○ **(논의사항)** 행안부 내 **차질 없는 업무 수행** 및 **재난안전 관리 당부**

< 前 장관 주요 당부사항 >

- 행안부 공무원들은 동요하지 말고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것
- 국민 불편이 없도록 행정서비스를 정상 제공할 것
- 특히, 재난안전관리에 유의할 것

□2 지자체 청사 출입문 폐쇄 관련

○ **(1차안내)** 행안부 당직실, 정부 당직총사령실 지시사항("**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소속기관 및 지자체에 안내('24.12.3. 23:25)

○ **(2차안내)** 행안부 당직실, 정부 당직총사령실 **지시사항 변경 통보**('출입폐쇄는 지자체 해당사항 없음', '24.12.4. 02:08경)를 **지자체에 재안내**(02:21)

※ 정부 당직총사령실, '각 청사 모든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조치 해제' 지시(05:33), 행안부 당직실에서 소속기관에 전달(06:08)

□3 이동기지국 차량 관련

○ 사용기관인 **경찰의 요청**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

지국 차량이 구로전화국에서 **출차**(4대)하였으나,

- 이동기지국 개설 요청이 없어 **미운용 상태**로 대기 후 철수(19:14)

4 회의록 관련

○ **(자료 요청)** '24.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통령실 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위해 **대통령실에 관련 자료 요청('24.12.6.)**

- **국무위원 대상**으로 **참석** 및 **발언요지** 등 확인 협조 요청(메일, 공문)

○ **(검토 결과)** 회신 받은 자료에 **안건 및 발언요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24.12.3. 회의록 작성 곤란**

※ '24.12.4. 비상계엄 해제 관련 국무회의의 경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완료('24.12.24.)

5 기록물 관리 및 폐기 금지 관련

○ **(관리철저)** 국가기록원에서 관계기관(대통령실, 국방부 등)에 **'24.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 관리 철저 요청** ('24.12.6.)

○ **(실태점검)** 국가기록원 및 대통령기록관, 18개 기관* 대상 **기록물 실태 점검** 실시('24.12.12.~12.20.)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국방부, 육·해·공군본부, 국군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 **(점검결과)** 기록물 목록* 확인 결과 **특이사항 미발견**,

18개 기관 대상 **기록물 폐기 절차 잠정 중단** 요청('24.12.30.)

* 1개월('24.11.5.~12.4.) 간 생산·접수한 전체 기록물 목록, 약 56만여 건

○ **(폐기금지)** 공수처의 **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요청**('24.12.10.)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후 **폐기금지 결정 관보 게시** 및 **통보**('25.1.15.)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계엄 당일 회의가 국무회의인지 여부

○ (질의) 행정안전부 차관은 계엄 당일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으나 대통령실 등은 이를 국무회의로 주장하고 있음

- (답변) 국무회의로 볼 수 없음

○ (질의)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12월 3일 회의가 제52회 회의로 기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

- (답변) 홈페이지에 기재된 사항에 내용은 없는 상태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보고내용

Ⅰ. 개 요

1 진행경과

○ 12. 3.(화) 22:24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12월3일 22:30경 계엄군 10여명이 중앙선관위 청사 내 투입

○ 22:32경 계엄군 통합관제실 입실

○ 23:06경~23:22경 경찰 순찰차 도착 및 경찰 4명 정문 출입 통제 실시

○ 23:55경부터 경찰 90여명 순차적 추가 투입, 청사 밖 버스 차량 대기

○ 12월 4일 수요일 00:31경~01:29경 계엄군 110여명 추가 청사 내 투입

○ 01:00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 01:30경 계엄군 통합관제실 퇴실

○ 01:39경~01:55경 계엄군 철수

○ 07:11경 경찰 철수

2 중앙위원회 계엄군 투입 현황

○ 중앙위원회 과천청사, 관악청사, 선거연수원에 투입된 계엄군 현황은 다음과 같음.

※ CCTV 및 차량대수로 인원 추정

구분		중앙위원회 과천청사	중앙위원회 관악청사	선거연수원
군	규모(여명)	120	50	130
	투입/철수시간	12.3. 22:30 / 12.4. 01:55	12.4. 00:10 / 12.4. 02:19	12.4. 01:07 / 12.4. 02:23
경찰	규모(여명)	94	-	100
	도착/철수시간	12.3. 23:06 / 12.4. 07:11	-	12.3. 23:17 / 12.4. 07:08

※ 위 시간은(폐쇄망) CCTV 시간을 표준시로 보정한 기록으로 다소 오차가 있을 수 있음

Ⅱ. 주요 조치사항

1 계엄군 활동 및 점거 현황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 최초 투입된 계엄군 10여명은 중앙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행동감시 및 청사 출입통제

○ 추가 투입된 110여명은 1층 로비 등에서 경계작전만 실시

○ 위원회 청사 총 3시간 20여분 동안 점거(서버실 22:34~22:49 총 15분정도)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 계엄군 50여명이 청사 주차장에 진입하였으나 청사내 진입은 없었으며 2시간여 지난 후 철수

※ 관악청사는 무인경비로 운영되어 별도 야간 당직이 없음.

【선거연수원】

○ 계엄군이 탑승한 버스 및 승합차가 연수원 외부에 배치되었으나, 청사내 진입은 미실시

2 위원회 조치사항

○ 12월3일 화요일 23:25경부터 중앙위원회 시설과장 등 6명이 청사밖 순차적으로 도착하여 상황파악

○ 12월4일 수요일 00:40경 시설과장 등 2명이 청사내로 진입하여 상황 파악, 국가지도통신망 수신상태 확인

- 국가지도통신망 수신상태 확인(행정부로부터 통보된 사항 없음)

○ 01:55경 계엄군 완전 철수 후 피해현황 등을 파악한 바 피해상황은 확인되지 않으며, 통합관제센터, 청사 보안관련 강화조치를 마련하여 진행 중

○ 09:30 중앙위원회 간부회의 소집 후 대책회의 실시

○ 12월6일 금요일 09:30 제14차 위원회의 개최 및 위원회 입장 발표

○ 12월6일 금요일 15:00 행안위 위원 대상 통합관제센터

CCTV 자료 비공개 열람 실시

○ 12월12일 목요일 10:00 행안위 위원의 중앙선관위 현장점검 실시

○ 12월12일 목요일 대통령 담화 시 부정선거 주장에 대한 보도자료 배포

○ 12월13일 금요일 10:00 제15차 위원회의 개최 및 대통령 담화(12. 12.)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 관련 사실관계 설명자료 배포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비상계엄 당시 청사 점거 관련

○ (질의) 계엄 당일 정보사, 방첩사, 특전사 세 특수부대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침탈하고, 민간인 노상원이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을 고문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답변)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임이 분명함.

② 비상계엄의 원인으로 언급되는 부정선거 관련

○ (지적)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 시스템이 북한의 해킹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취지의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당시 대통령이 담화한 내용에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적 없음에도, 일각에서 마치 극우 유튜브의 부정선거 주장을 추종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한다고 이야기함.

○ (지적) 우리나라 선거 시스템은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투명하게 정착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사유로 부정선거를 언급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음.

- (답변)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를 차단할 만큼의 여러 가지 방안을 대비하고 강구하고 있다고 생각함.

○ (질의)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방안은?

- (답변)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 과학적으로 반박하는 영상을 만들고 있고, 홍보도 강화하고 있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서버 공개 검증도 수용할 수 있음.

○ (지적) 금일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고,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는 자필 메시지를 작성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적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지적)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 제기는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만의 주장이 아니고, 2017년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 역시 18대 대선에 대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바 있음.

○ (질의) 부정선거 의혹은 과거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

A), 선거관리위원회 3개 기관이 합동으로 보안 점검한 결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보안 취약성이 드러나 증폭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 (답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보안 점검 결과가 발표된 이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후속조치를 했고, 많은 부분을 개선한 상황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짐.

○ (질의) 많은 국민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 객관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점검을 받는 게 어떤지?

- (답변) 주요 기반시설의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 처벌을 받음.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공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나 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서버에 대해 검증을 하겠다고 할 경우 적극적으로 응하겠음.

○ (지적) 스웨덴에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대한민국 선거시스템이 상당히 선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뿌듯했던 기억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림.

- (답변)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도가 의심받게 된 것은 과거 부재자투표제도를 사전투표제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국을 하나의 선거권으로 만들면서 통합선거인명부를 가지게 되었고, 서버의 중요성이 강조되게 됨. 그런데, 사전투표가 실시되어도 이 사전투표마저 전자투표가 아니라 직접 투표하는 것임. 개표 과정에서 개표상황표가 작성되는 부분까지 참관인이 지켜봄. 핵심은 선거의 당락 결정은 실물 투표지에 의해서 개

표소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임.

○ (질의) 금일 오후에 대통령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를 부정선거 은폐 집단이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매도하였는데, 이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입장은?

- (답변) 해당 내용에 대해 신속하게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함.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하였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대법원에 126건의 소송이 진행되었었고, 대법원 선거소송에서 부정 투표지라고 의혹 제기된 부분들이 모두 정상적인 투표지라고 판단을 받음.

○ (질의) 대통령이 페이스북 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이 엉터리고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동일한 시스템으로 선거를 치른 지난 대선도 부정선거고 문제가 많은 거 아닌지?

- (답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더 큰 표차로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텐데, 표차가 줄었다고 생각함.

○ (질의)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를 보면 비상계엄의 이유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전산시스템이 엉망이라고 적시했는데, 과연 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시스템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엉망인지?

- (답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대선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모두 정비함.

③ 비상계엄 이후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 관련

○ (질의) 지난 12월 13일 KBS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약 20억원을 들여 계엄군이 촬영해 간 서버 교체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서버 교체가 아니라 서버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정정보도를 냈는데, 외부 사진 촬영만으로 보안의 취약성이 발생한다는 것이 이해하기 어려움.

- (답변) 서버 재배치가 필요한 이유는 단순히 전자적 보안 문제뿐만 아니라 물리적 보안을 위해서임. 예를 들어, 사진을 찍은 것이 통합선거인명부인 경우 지금처럼 어떤 특정 세력이 서버실을 침투해서 장악했을 때 그 서버만을 훼손시키거나 탈취하는 것이 가능한데, 서버 구조도가 없으면 모든 서버를 다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보안 차원에서라도 서버 재배치가 필요한 것임.

(9) 경찰청

(가) 보고내용

비상계엄 관련 경찰 조치사항

1 12.3. ~ 12.4. 경찰 조치사항

□ 국회 관련 조치사항

○ 12.3. 22:35경 서울경찰청, 5개 기동대 국회 주변 추가배치 지시 (무전)

※ 평상시 국회 및 여·야 당사 등에 1개 기동대 배치 중

○ 22:47 ~ 23:07경 국회 출입 전면 통제

※ 22:47경 국회 통제 무전 지시 / 23:07경 국회의원 등 신분 확인자 출입 조치

○ 23:37경 ~ 12.4. 01:45경 국회 출입 전면 통제

○ 01:45경 국회 관계자는 출입 허용, 일반인은 출입 통제 (무전)

○ 11:00경 일반인 등 출입 통제 전면 해제

< 시간대별 국회주변 기동대 배치 현황 >

22:00~00:00	00:00~01:00	01:00~01:30	01:30~02:25	03:00~	09:00경
6개 기동대	17개 기동대	28개 기동대	32개 기동대	순차적 철수	全 부대 철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련 조치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과천 소재)

- 23:09경 ~ 과천경찰서 경찰관 순차 도착(과천경찰서장 등 23명)

- 23:50경 야간 당직 기동대 1개 제대 도착 → 01:20경 1개 기동대 도착

- 07:05경 경력 철수

○ 선거연수원(수원 소재)

- 23:17경~ 수원서부경찰서 경찰관 순차 도착(수원서부경찰서장 등 48명)

- 00:55경 1개 기동대 도착 → 07:05경 경력 철수

2 비상계엄 수사 및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지원 상황

□ 비상계엄 수사

○ 피의자 : 대통령, 前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52명

※【적용법조】형법 제87조(내란죄)·군형법 제5조(반란)·형법 제99조(일반이적) 등

○ 수사 진행 경과

- <수사체제> ’24.12.6. 120여 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팀장 : 안보수사심의관) → 12.8.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체제로 격상, 총 150여 명 규모로 운영 중

- <공조수사본부> 12.11. 공수처, 경찰청,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수사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 출범

- <송치> 구속 피의자 포함 5명 송치(구속 4명, 불구속 1명)

□ 체포영장 집행 지원 관련

○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12. 31.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5.1.3.08:00경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 시도

- 13:30경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중지·철수 결정

○ <2차 체포영장 발부> 공수처에서 체포영장 재청구하여 1.7. 발부

○ <경호처 관계자 입건> 1. 3. 경호처 처장·차장·경호본부장·경비안전본부장 등 4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

- 1. 11. 경호처 가족부장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입건

(나)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단전단수 등 경찰의 계엄 관련 주요 조치 관련

○ (질의) 계엄 당시 안가에서 받은 지시사항은 무엇이었는지 특히 단전단수 조치는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인지 행안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지시인지 확인

- (답변) 안가에서의 지시사항은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세히 답변할 수 없음. 단전단수 조치는 처음 듣는 이야기임.

○ (질의) 영등포경찰서가 계엄 당시 권총, 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 등 무장 장비를 소지하고 국회로 출동한 것에 대해 설명이 가능한지

- (답변) (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지역 경찰의 기본 휴대 장구로 평소에도 소지하는 장비이며, 비상소집에 따라 출동한 것.

- (답변)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 지역 경찰이 평소에도 해당 장비를 휴대하며, 단순히 무장한 상태로 출동했다기보다는 신고와 순찰 겸 출동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질의) 영등포 경찰서가 계엄 선포 후 1시간 만에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관서 내 경력 대부분을 동원하여 국회로 출동시킨 배경은 무엇인지

- (답변) (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참모들과 논의 후 비상소집을 결정하였고 질서 유지 업무를 위해 출동시킨 것임.

○ (질의) 형사과 인력을 포함해 대규모 인력을 국회로 출동시킨 이유와 어떠한 임무를 부여하였는지

- (답변) (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질서유지 임무 수행을 목표로 출동시켰음. 기능별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지는 않았음.

○ (질의) 방첩사가 경찰 체포조와 접선하기로 한 수소충전소에 형사과와 범예과 경력이 집결한 배경이 무엇인지

- (답변) (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수소충전소에서 형사들이 대기한 것은 담벼락 붕괴 상황 때문이었으며, 방첩사와의 연계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음.

- (답변) (전 서울경찰청장 김봉식) 해당 배치는 서울청에서 지시하지 않았음.

○ (질의)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을 포함하여 내란에 동조한 경찰 조직 내 인사들을 직위해제하는 등 경찰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 (답변)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사실 확인 후 검토하겠음.

○ (질의) 박현수 경찰국장이 계엄 선포 및 내란과 관련된 사전 정보를 갖고 있었는지, 계엄 선포 직후 경찰청 경비국장과 영등포경찰서장과 통화하며 국회 봉쇄나 체포 지원 관련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 (답변) (경찰국장 박현수)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계엄 상황은 자택에서 오후 10시 30분경 알게 되었음.

- (답변) (경비국장 임정주) 박현수 국장과 2회 통화했으나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기억은 없음. 조지호 청장의 포고령에 따른 지시로 전면 봉쇄를 결정했음.

- (답변) (영등포경찰서장 강상문) 박현수 국장과 통화하였으나 단순히 현장 상황 확인과 격려 취지였음.

○ (질의) 박현수 경찰국장이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경찰국이 지휘 계통에 없으면서 경찰청 및 산하 조직 구성원들과 연락을 취한 것이 적절하였는지

- (답변) (경찰국장 박현수) 계엄 선포 직후와 계엄 해제안 의결 직후 각각 두 차례씩 조지호 경찰청장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통화하였음.

○ (질의) 계엄 관련 지시사항을 A4 용지로 된 서류로 받았는지

- (답변) (서울지방경찰청장 김봉식) A4용지로 된 서류로 지시사항을 전달받았으며 자세한 것은 기억하지 못함.

② 계엄과 관련한 후속 수사상황 관련

○ (질의) 과거 계엄 문건 내용을 포함하여 계엄과 관련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반란죄나 일반이적죄로 기소된 사람은 아직 없는지

- (답변)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본인은 수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답변)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현재 국가수사본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공조본에서 담당하고 있음.

○ (질의) 계엄 문건에는 구체적인 군 병력 동원 계획, 언론 통제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문건이 압수수사의 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거나 확보되었는지

- (답변)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구체적인 문건 확보 여부는 본인이 알지 못하며, 국가수사본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겠음.

○ (질의) 조현천 전 사령관의 귀국 및 내란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 과정에 대한 의문이 있음. 관련 통화 내역 확보 및 체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 (답변)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 내용을 국가수사본부에 전달하겠음.

○ (질의) 계엄에 가담한 HID출신 전·현직 인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 (답변)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직접 수사에 관여하고 있지 않으나 전달하겠음.

○ (질의)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 출입을 저지하고, 계엄군의 국회 진입에 대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장의 봉쇄 해제 지시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 (답변) (전 국회경비대장 목현태) 그 당시는 계엄이 테러나 대통령실 주변의 소규모 반란, 휴전선 인근의 국지전 등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졌음. 대통령 담화를 듣지 못했음.

○ (질의) 당시 상황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의 계엄령 지시는 정당한 지시라고 한 인터뷰 내용과 현재도 같은 생각인지

- (답변) (전 국회경비대장 목현태) 국회 내 위급상황 등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었고 서울청 판단에서는 의원과 일반인이 구분되지 않는 급박한 상황에서 국가 중요시설인 국회를 보호하라고 판단하였음. 정당한 지시일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당연히 서울청과 본청에서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했을 것으로 생각하였음.

③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 관련

○ (질의) 1차 경찰 진입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경호처장이

경찰과 경호부대간 협조가 되지 않고 있다는 연락을 하면서 상황에 대한 질문을 하였고 적법하지 않은 임무라 부대 동원할 수 없다고 답변한 것이 맞는지

- (답변)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맞음. 그 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없었고 들어가는 것을 막은 적도 없음.

○ (질의) 이후 12시 54분에 부총리가 다시 체포영장 집행시 충돌이 일어나서는 곤란하다고 하며 국수본에서 추가로 인력 증원이 있었는지 문의하였는지

- (답변)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국수본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증원되는지 물어보았고 증원된 적 없다고 답변하였음.

○ (질의) 위 경제부총리의 충돌 방지 우려 표명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 (답변)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물리적 충돌 방지를 우려하는 직무대행의 판단으로 이해하였고, 경호처장과의 사전 논의 과정에서 소신을 밝혔기 때문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생각함.

○ (질의) 공수처가 체포영장 재집행할 때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해당 공문에 대한 셀프 승인 논란에 대해 알고 있는지

- (답변)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잘 모르고 있었으나 영장

발부 자체가 정당행위로서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함. 55부대장이 관인을 강요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조사할 사항이며 경찰이 위조에 참여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질의) 대통령 관저 배치도와 같은 군사기밀을 경찰 국가수사본부 심의관이 경호처 직원을 몰래 만나 주고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적법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사실관계확인 및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 (답변)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해당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으나 국수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중임. 고소·고발된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음. 경찰청은 언론 보도만으로 모든 의혹에 대한 감찰 조치를 하는 것은 어려움.

(질의) 이상식 의원이 민주당과 국가수사본부 사이 메신저 역할을 하였다는 페이스북 게시글로 인해 국가수사본부가 민주당의 하청기관이 되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음. 이에 대한 경찰청의 조치 여부

- (답변)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국가수사본부에 확인 결과 총경 이상의 간부 중에는 관련된 인물이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음.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로 현재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감찰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음. 경찰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음.

(질의) 체포영장 집행시 경찰기동대나 특공대가 지원되었는지

- (답변)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특공대는 배치되지 않았으며, 경찰기동대는 외곽에서 집회·시위 관련 혼잡 경비와 질서 유지 목적으로 배치되었음.

(질의)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이상식 의원과 대학 동기 관계에 있는데 이상식 의원과 계엄 사태 이후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수사와 관련된 통화는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 (답변)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 12월 이상식 의원과 1·2회 통화하였으며 통화 내용은 법률적인 질문이었음. 본인은 수사 계통에 있지 않아 체포영장이나 계엄 관련 민감한 사안과는 관련 없는 통화였음.

○ (질의) 경호처 차장과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즉각 집행될 필요가 있음. 또한 공조본이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음에도 경호처의 방해로 압수가 집행되지 못하였는데 대통령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해 즉각적인 압수수색 필요

- (답변)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 해당 사실과 관련하여 조치를 취하겠음.

○ (질의) 남태령 트랙터 시위와 관련하여 집시법 위반 사항은 없었는지, 트랙터를 한남동 관저까지 이동하게 한 경위가 무엇인지

- (답변)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 트랙터는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의 일종임. 당시 시위대의 밤샘 시위와 관련하여 안전상 문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시내의 교통경찰의 에코를 받는 조건으로 통행을 허용하였음. 집시법 위반과 관련하여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임.

○ (질의) 민주노총 조합원이 한남동 관저 근처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의 경위와 조치에 대해 설명 바람. 폭행 가담 조합원이 석방된 과정에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가 최현석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통해 석방을 촉구했다는 언론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 바람.

- (답변)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 폭행 사건으로 경찰관이 부상을 입었으나 심각한 상태는 아님. 신원을 확인한 폭행 가담자 2명에 대해 불구속 수사 중임. 석방 촉구 사실이 있었는지 보고받지 못했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조치하겠음.

④ 계엄 이후 국회에서의 위증과 관련된 사항

○ (질의) 김봉식 청장과 조지호 청장이 같은 차량을 타고 안가에서 경찰청으로 이동하였는데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장에서 김봉식 청장을 보지 못했다는 발언은 위증한 것이 아닌지

- (답변) (경찰청 비서실 이성민) 당시 대기 중 차량 출입이 많아 특정인을 확인하지 못했고 대화가 작은 소리로 이루어져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못했음.

(10) 소방청

(가)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계엄시 단전단수 조치 관련

○ (질의) 계엄 당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경찰이 주요 언론사를 단전·단수할 시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은바 있는지 확인

- (답변) 소방청은 협조 요청을 받지 않았음.

○ (질의)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뉴스공장, JTBC에 대한 경찰의 단전·단수 조치 후 소방청은 협조하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

- (답변) 경찰에서 협조 요청을 하면 소방청

○ (질의)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한 것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할 필요

- (답변) 경찰에서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적의 조치하라고 말한 것으로 기억함.

○ (질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주요언론사에 대한 단수·단전 관련 경찰 요청시 협조 지시를 받았고 이를 소방청 차장과 논의 후 서울소방본부장에게 전달한 것이 사실인지

- (답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구체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았음. 서울소방본부장과

통화하였으나 상황판단회의를 위한 정보 수집 차원임.

○ (질의) 서울소방본부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계엄 당일 23시 40분에 소방청 차장이 서울본부장에게 전화하여 포고령 관련 경찰의 협조 요청에 협력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답변) (소방청 차장 이영팔) 경황이 없어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음. 재난 대응 차원에서 전화한 것으로 기억함.

○ (질의) 서울소방본부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계엄 당일 23시 40분에 소방청 차장이 서울본부장에게 전화하여 포고령 관련 경찰의 협조 요청에 협력하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 (답변) (소방청 차장 이영팔) 경황이 없어 정확하게 무슨 말을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음. 재난 대응 차원에서 전화한 것으로 기억함.

○ (질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 소방청장과 차장의 행동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음.

- (답변) (소방청장 허석곤) 재난 대응 체계 내에서 이루어진 행동이며 내란에 동조할 의도는 없었음.

○ (질의) 소방청장이 계엄 선포 당시 소방청의 대응 및 조치에 대해 국민적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설명 필요

- (답변) (소방청장 허석곤) 비상계엄령 선포 후 소방청은 23시 20분부터 23시 53분까지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였음. 이후 시도 소방본부에 긴급구조 출동태세를 강화하고 신속한 상황전파 체계를 강화하라는 긴급지시사항을 공문으로 전달하였음.

(11) 국가정보원

(가)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계엄 원인 및 모의 관련

○ (질의) 2023년 12월 말 국가안보실장 재직 당시 대통령, 신원식 국방부장관, 김용현 경호처장, 김명수 합참의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과의 만찬에서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한 바 있는지

- (답변) 없음.

○ (질의) 2024년 4월 만찬에서 대통령의 비상대권 발언 및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김용현 경호처장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였는지

- (답변) 비상대권 발언을 기억하지 못함.

○ (질의) 2024년 3월 말~4월 초 신원식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김용현 경호처장이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에 대한 입장

- (답변) 비상계엄 모의는 없었고, 저녁을 먹는 격려의 자리였음. 대통령이 나라 걱정을 많이 하였고 참석자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시도록 말씀드림.

○ (질의) 김용현과 장군들이 지속적으로 비상계엄 이야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

- (답변) 공소장이 나온 후에 알았음.

○ (질의) 국가정보원이 모르는 상태에서 국방부가 북풍 공작을 할 수 있는지

- (답변) 생각하기 어려움. 국가정보원은 북풍 공작과 관련된 바 없고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음.

○ (질의) 「국가정보원법」 제4조의 직무 규정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내란·외환·반란의 죄에 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의무가 있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응조치를 취해야 하며, 특전사·정보사·방첩사 등과 협력하고 있는바, 계엄 관련 이야기가 나올 때 수집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답변) 2017년 국내정보 부서가 해편되고 군에 IO가 나가 있지 않아 국가정보원에서 정보 수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임. 법적·현실적 제약이 있었고 직원들이 게을러서 안 한 것은 아님.

○ (질의)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이 보고한 전산시스템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생각하는지

- (답변) 원장이 되기 전에 있었던 일로 여러 시스템에 보안 취약점이 있었고 과거에 선거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판단을 내릴 수 없었다고 결론 내림. 제가 판단하기는 어려움.

② 계엄 선포 전 상황 관련

○ (질의) 12월 3일 대통령이 장관 5명과 국가정보원장을 따로 소집하였는데 왜 불렀다고 했나, 별도 지시사항이 있었나

- (답변) 이유를 듣지 못했으나 안보 관련 사항이 있기 때문으로 추측하며, 지시사항 받은 것은 없음.

○ (질의) 계엄실무편람 상 계엄 선포 이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12월 3일에 개최되거나 개최를 시도한 바 있는지

- (답변) 없음.

○ (질의) 12월 3일 소집된 회의에서 국가정보원장 입장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 (답변) 모두 우려를 표명했고 저도 했음.

○ (지적) 정보위원회에서 10월·11월 북한의 남침 우려, 테러 위협 등에 대한 보고를 한 적이 없어 비상계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

- (답변) 그래서 비상계엄과 외환은 무관한 것으로 보임.

③ 계엄 당시 대통령 지시사항 관련

○ (질의) 국가정보원의 내란 개입이 없어서 명예를 지킬 수 있었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그 의미

- (답변)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장 및 직원의 불법적·위법적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임.

○ (질의) 홍장원 전 차장이 대통령과 통화했고 지시를 받았으며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보고한 바 있는지

- (답변) 사흘 후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고, 보고받은 적 없음.

○ (질의) 김용현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선관위 등에 인력 투입을 지시하며 국가정보원 등에서 민간 전문가가 오면 전산실에 인계하라고 했다는 것은 보았나

- (답변) 공소장이 나온 후에 알았음.

○ (질의) 방첩사령부로부터 어떠한 업무 지시나 지원 임무 부여받은 바 없는지

- (답변) 받은 바 없음.

○ (질의) 홍장원 전 1차장의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다고 말했더니 원장이 얼굴을 돌렸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데 거짓말이라고 보나.

- (답변) 사실이 아님. 12월 6일 홍장원 전 차장의 정보위원 보고 후 야당 위원이 기자 브리핑을 하였는데, 대통령으로부터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것은 그때까지 자신밖에 모르는 일이고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함.

○ (질의) 홍장원 전 1차장이 '인사조치는 대통령의 지시'라고 말한 것에 대해 다른 답변을 하였는데

- (답변) 엄중하고 민감한 시기에 야당 대표에게 전화를 하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한 정치 개입 행위라고 판단하여 대통령에게 교체 건의하고 재가를 받아 교체한 것임.

④ 기타 사항

○ (질의) 국가정보원장이 좌파 유튜버를 조사해서 북한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체포하라고 지시하여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주장이 사실인지

- (답변) 전혀 사실이 아님.

(12) 국무총리실

(가) 주요 질의·답변 내용

① 계엄 당시 상황 및 비상계엄의 위법성 관련

○ (질의)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지 아닌지

- (답변) 사법 당국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할 것이라 생각함. 저희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 (질의)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국민들께 간단히 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람.

- (답변) 이러한 상황에 이르도록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충분히 막지 못한 것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함.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생각함.

○ (질의)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면, 헌법에 위반되고 계엄법에 위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 (답변) 모든 법적인 문제를 제가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상의 흠결 등을 보았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함.

○ (질의)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계엄 건의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하였는지?

- (답변) 전혀 그런 일은 없었음.

○ (질의) 최상목 기재부장관과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대통령으로

부터 페이퍼를 받은 사실을 보았는지?

- (답변) 저는 기억이 나지 않음.

② 국무회의 비상계엄 심의 관련

○ (질의)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 시각은 8시 40분경인지, 또 그 무렵의 국무회의는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라고 인지를 하였는지?

- (답변) 제가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 드렸음. 왜냐하면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계엄에 대해서는 전부 반대를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임.

○ (질의) 12·3 비상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것인지, 그렇다면 위헌이고 계엄법 위반이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왜 못하는지?

- (답변) 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믿고 있음. 사법적인 판단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질의) 국무회의 심의라는 절차를 가지고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인지, 암묵적 동의를 한 것인지 반복적으로 질문이 나오므로 이에 대한 총리의 의견 질의

- (답변) 계엄의 문제에 대해 좀 더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본인이 건의함. 거기에 모인 어떤 국무위원도 찬성한 사람은 없었음.

○ (질의)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포고문이 자리에 놓여 있었다고 그러는데, 총리는 본 적이 없었는지에 대한 질의

- (답변) 본 적 없었음. 있었으면 정식 안건으로서 제기되었어야 했으나, 전연 없었음.

○ (질의) 국무총리 본인이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설득하기 위해 국무위원을 직접 소집했다 말했는데,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 (답변) 없음.

○ (지적) 비상계엄을 막고자 했다면 국무회의로 심의 자체를 막는 것이 더 상식적으로 보이고,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그랬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움.

○ (질의) 현안질의에서 총리는 계엄의 조건에 대해서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맞는지에 대한 질의

- (답변) 그러함.

○ (지적) 계엄 당시 반대한 국무위원은 외교부장관과 기재부장관뿐임.

- (답변) 그렇지 않고 모두가 반대했다고 생각함.

○ (질의) 계엄 당시 총리가 주도하여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워 절차적 요건을 갖춰 준 것이 아닌지?

- (답변) 맞추려고 했으면 안건 및 회의번호를 받고 논의를 거쳤을 것임.

○ (질의) 비상계엄 당시 총리는 계엄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무회의를 꼭 소집해야 한다라고 해서 시간을 끌었는지?

- (답변) 그러함.

○ (질의)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을 소집했을 때 대통령이 지시사항을 A4용지에 나누어준 것이 있는지, 다른 분들에게서 그 용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 (답변) 저는 모르겠음. 저는 받은 바 없음. 다른 분에게서 얘기를 들은 바 없음.

③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관련

○ (질의)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집행당하기 전에 체포영장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하는데, 총리의 생각에 대한 의견

- (답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함.

④ 기타 사항

○ (질의) 대통령권한대행 시절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 협의를 먼저 요구한 이유는?

- (답변) 여야 간의 합의를 하지 않고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임.

○ (질의) 미국 트럼프 체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한다고 보는지?

- (답변) 충실한 준비와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통해 세계에서 사랑받고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함.

2. 청문회 주요 질의·답변 요지

[2025년 1월 22일, 제1차 청문회]

(1) 12·3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가)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4년 3월 말과 4월 초순, 증인이 국방부 장관일 당시 대통령과 국정원장, 방첩사령관과 식사하였다고 들었는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얘기가 있었는지?	○ 지금 민주당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입장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는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음.
○ 증인은 안보실장 취임 후 2023년 10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인사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임명하였는지?	○ 당시 6명이 중장 진급하였고, 그 중 5명이 육사출신이였음. 군 본부에서 추천을 받아 대통령에게 제청 후 재가를 받아 정상적 절차에 의해 선발함.
○ 대통령이 그들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주지는 않았는지? 당시에는 계엄을 예상하지 못하였는지?	○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당시에는 정상적인 진급이였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음.
○ 장관 시절 국방위 회의에서 계엄 시도 정황에 대해 언급하면 이를 부정하였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 발언 당시에는 현실성 없다고 판단하였음.
○ 국방부장관 시절 '23년 12월, '24년 3월 윤대통령이 안보 책임자를 불러 비상대권을 언급	○ 그러함. 본인도 민주당, 시민단체로부터 피고발인이기 때문에 국회증언감정법과 형사소송법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했다고 되어 있는데, 당시 증인은 김용현 장관과 논쟁하고 계엄령은 정치적 솔루션이 아니라고 말했는지?	관련 규정에 따라 증언하지 않겠음.
○ 조태용 증인은 대통령에게 그런 마음 먹지 말라고 진언했다는데, 어떻게 안보실장이 계엄 준비에 대해 모를 수 있는지?	○ 증언하지 않겠음
○ 계엄 전 신원식 국방부장관 재임시절 김용현 경호처장과 계엄에 대하여 입장차이를 보인 것은 계엄 준비를 인지하고 있던거 아닌지?	○ 계엄 현실성이 없다고 보았으나, 현실화되었음.

(나) 박○○ 증인(육군 제2군단 부군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문상호 사령관이 900여단을 매주 방문했다고 발언한 바 있음. 계엄 때 HID 부대가 서울 안가에 투입되었는데 들은 바 있는가. 우이동 안가에 대기중이었던 것은 알고 있나.	○ 보도를 통해서 알았음. 우이동 안가는 처음 들었고 판교에 대기한 것만 알고 있음.
○ 직무배제 이후에 블랙요원 활동에 대해 감지한 바 없었나. 안보실 1차장이 방문한 것은 재직 중에 알고 있었나. 이런 경우가 있는지?	○ 직무배제 이후 직원들과 연락을 차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 소식은 알 수 없었음. ○ 2년 전으로 교육단장할 때 소식을 들었음. 안보실은 처음이었음.

(다) 양호열 증인(대통령경호처 행정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지금 소속과 하는 일은? 경호처 소속으로 있으면서 김용현 장관의 비서관으로 일했는지?	○ 퇴직하고 무직임. 그러함.
○ 김용현 장관이 계엄 해제 후에 노트북과 휴대전화 파쇄하라고 했나.	○ 형사처벌 우려로 증언 및 선서를 거부함.
○ 2024년 9월 경부터 12월 3일까지 증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노상원이 공관을 드나들었나.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는지, 피의자로 조사받았는지?	

(라) 조태용 증인(국가정보원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의 수장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직속 부하가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임무를 하달받았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그 임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게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국가의 최고급 정보를 다루는 부처에서 원장님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	○ 우선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했고, 두 번째로 방첩사를 지원하는 것은 정무직회의 때 어느 정무직이 방첩사가 계엄이 되면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 국정원이 그것을 지원하도록 법이 돼 있다는 얘기 하나는 누가 했는걸 들었음. 그래서 저는 방첩사를 지원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운 거 아닌지?	는 것은 계엄이 되면 국정원이 당연히 하는 일의 하나로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구태여 특별히 물어봐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했음.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의 수장이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직속 부하가 다른 사람도 아닌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임무를 하달받았다라고 보고를 하는데 그 임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게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국가의 최고급 정보를 다루는 부처에서 원장님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운 거 아닌지?	○우선 홍장원 차장이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다고 해서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했고, 두 번째로 방첩사를 지원하는 것은 정무직회의 때 어느 정무직이 방첩사가 계엄이 되면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 국정원이 그것을 지원하도록 법이 돼 있다는 얘기 하나는 누가 했는걸 들었음. 그래서 저는 방첩사를 지원하는 것은 계엄이 되면 국정원이 당연히 하는 일의 하나로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구태여 특별히 물어봐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했음.

(마) 홍장원 증인(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국가정보원장과 전 제1차장과 엇갈린 진술에 대한 입장은?	○12월 6일 정치중립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정보원장 제청으로 경질되었고, 국정원법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정치중립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의무 위반 판단에 근거하여 경질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 국가정보원장과 전 제1차장과 엇갈린 진술에 대한 입장은?	○ 12월 6일 정치중립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정보원장 제청으로 경질되었고, 국정원법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인 정치중립의무 위반 판단에 근거하여 경질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함.

(바) 정성우 증인(전 방첩사령부1처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여인형 사령관이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조사·보고 지시하였는지	○ 방첩사에서 조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어서 인터넷 공개 자료와 대법원 판례 등을 기반으로 사령관에게 보고하였음.
○ 선관위 과천청사 등 4군데에 대한 출동 준비 지시 이후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 방첩사 병력 소집에만 1시간 이상 소요되었고 명령은 23시 50분에 하달되었음. 병력은 출동준비를 하였으나 위법성을 검토하여 진입금지를 명령하였음. 서버복제나 강제조치는 위법성이 크다는 판단 아래 모든 병력이 현장 상황을 기록하고 채증 장비를 휴대하는 것으로 제한하였음.

(사) 이경민 증인(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지난해 3월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에 합동수사본부를 운영하는 훈련을 하면서 계엄 예비 훈련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방첩사령부는 연 2회, 전반기와 후반기에 연습을 하면서 전시 방첩사 4대 임무에 대해 숙달 훈련을 하는데, 해당 임무 중 하나가 일명 합동수사본부 운영임. 정상적인 훈련의 일환이었음.
○ 어느 누구도 합참과 방첩사에서 계엄 연습을 한 것에 대해 위법이다, 계엄을 위한 준비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 없을 것임. 다만, 방첩사가 12.12 사태 이후에 그 문건과 내용을 전혀 업데이트 하지 않은 것이 방첩사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을 한 것임.	○ 알겠음.
○ 지난해 3월 한미연합훈련 때 과거에 비해 규모를 많이 키우고, 기간도 늘렸다고 했는데, 그것이 계엄을 위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판단의 근거임. 과거와는 다르게 훈련한 거 아닌지?	○ 과거와 달리 축소했음.
○ 축소가 아니라 과거와 달리 늘렸다고 보고를 했음.	○ 그런 적 없음.
○ 방첩수사 직제 개편이 계엄 대비라는 의혹이 사실인지?	○ 보안 및 방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방첩수사단을 승격함.

(아) 고동희 증인(정보사령부 계획처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정보사령관과 언제부터 계엄 모의하였는지?	○ 모의하지 않았고 12월 3일 오후 10시경 정보사령관으로부터 들음.

(자) 원천희 증인(정보사령부 계획처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4년 12월 2일 오전 9시 30분 원천희 본부장은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함께 당시 김용현 씨에게 정보사령부 특수부대 현황 보고를 하신 적 있지요?	○ 예, 그러함.
○ 2024년 12월 2일 HID 혹은 판교에 있는 000 특수부대 휴민트 블랙 등 활용에 대해서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 주로 예산 관련해서 장비 위주로 보고를 드렸음.

(차) 방정환 증인(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월 3일 11시 40분 국방혁신기획관실 인원 약 7명과 장관 오찬했는지? 장관이 '계엄' 하시면서 어느 분이 '통로 개척하겠습니다' 했더니 '무슨 통로 개척이야. 국회, 탱크로 밀어	○ 오찬은 했지만, 탱크라든지 장갑차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억이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버려야지’ 이런 말씀 하신 적 없는지? ○ 12월 3일 저녁에 그 회의 마치고 노상원 씨가 쓰던 비화폰 받은 적 있지요?	○ 그 사실은 제가 수사기관에 진술했음.

(2) 계엄선포 원인 및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

(가) 정진팔 증인(합동참모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북 전단 관련 합참 전비태세 검열 시 관련 장비를 은폐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닌지?	○ 심각함.

(나) 이승오 증인(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합참이 통제하는 작전은 보고를 받는지? ○ 합참에 대북전단 살포 내역을 요청했더니 ‘북한의 이용 가능성’이 있어 공개가 제한된다고 답변이 왔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려움.	○ 대북 작전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항을 보고 받고 있음. ○ (답변하지 않음)

(다) 양현승 증인(국군심리전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확성기 방송이 금지되어 있지 않은지?	○6월 4일부로 NSC 결정에 따름.
○법은 남아 있는데, 법 절차를 안지키는 것인지?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님.
○심리전 용도로 비무장지대 내 확성기 사용 시 유엔군 사령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지?	○제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국군심리전단은 합참의 지휘통제를 받아 정상적 절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라) 신용한 참고인(서원대학교 교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참고인은 지난 윤석열 캠프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정책총괄지원실장으로 대통령 후보에게 정책에 대해 직접 보고하고, 전략조정회의, 일일상황점검회의 등 중요 회의에 참석함.
○참고인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대통령이 캠프 때부터 선관위를 불신하고 있었다고 보이는데?	○부정선거 관련 관리대책이라는 문건으로, 대선 때의 생각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 같음.
○통계청장 출신인 유경준 前 의원의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경 대통령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관해 설전을 벌였다고	○명태균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9차례 조사 결과, 윤석열 당시 후보가 5~10% 차이로 이기는 것으로 나왔고, 마지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하는데, 대통령이 자신이 5~10% 차이로 이길 선거인데 부정선거로 인해 간발의 차이로 이겼다고 하였음. 이 근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보고서는 9.1%로 당선이 확실하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통령에게 확신을 심어줬다고 생각함.
○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한 것이 아니라 계엄의 이유를 만들기 위해 부정선거 핑계를 삼은 것이라고 생각함.	○ (답변하지 않음)
○ 명태균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은 것이 계엄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지?	○ 제가 소상히 자료를 제출한 것과 강혜경 씨가 명태균 PC를 돌려달라 한 것, 그리고 명태균 변호인이 휴대폰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한 것 등이 큰 압박이 되었을 거라고 봄.

(마) 이경민 증인(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지난 해 5월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보고된 부정선거 검토 문건을 본 적이 있는가. 해당 문건의 결론은?	○ 최근에 보았고 부정선거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는 결론으로 알고 있음.
○ 방첩사령부가 볼 수 있는 자료를 검토했을 때 부정선거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 결론이 맞나?	○ 당시 방첩사령부 주무부서에서 인터넷 공개자료를 활용해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음.

(바) 정성우 증인(방첩사령부 전 1처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선관위 부정선거 관련 보고 당시 방첩사령관의 반응은?	○ 대법원 판결 내용이 대부분이었음. 부정선거 관련 보고를 받고 '어 그러냐' 하면서 쟁점에 대해서 아니구나 하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알았다, 잘 이해했다는 반응이었음.

(사)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북한에 고의적으로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비행이 있었는지?	○ 전혀 없었다고 생각함.
○ 익명의 제보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정상적인 군의 초계활동이나 경계활동을 전부 북한군의 군사 공격을 유도했다는 식으로 하는 것은 합당한 의혹제기가 아니라고 생각함. 회의 끝나기 전까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밝혀주시길 부탁	○ 군의 작전활동을 확인해주기는 어려우나, 추미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NLL 이남 우리 관할 지역. 우리 관할지역에서 훈련하거나 작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이며, 북한 또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문제제기는 지양될 필요
○ NLL이남에서 아파치 헬기와 같은 우리 군 전력이 활동한 것은 문제 없는 것인지	○ NLL 이남은 우리 관할구역이며, 비행에 문제 없음.
○ 만일 북한이 우리 군의 활동에 대응했다면 그것은 북풍인지	○ 북한이 대응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무력을 행사할 것이며,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이후 북한이 서해 NLL 인근에서 우리 함정과 어선을 대상으로 표적 조준 및 드라이 사격 훈련을 했음. 우리 군은 이에 대응하여 아파치 헬기를 NLL이남에서 비행시켰으며 이는 대북 위협에 대한 정당한 대응 훈련인 것이 아닌지. 또한 중국은 서해의 내해화 전략의 일환으로 서해상에 철구조물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외교적·군사적 대응이 필요함.	우리가 NLL 북쪽으로 넘어가면 이는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측 책임임. 북풍이라는 단어는 부적절함. ○ 그러함.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함.

(아) 조태용 증인(국가정보원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북한에 고의적으로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비행 관련 정보나 첩보 받은 사실이 있는지?	○ 없음.

(자) 이승오 증인(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북전단·무인기 외 다른 군 전력이 북한으로 넘어간 적이 있는지	○ 대북 관련 작전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음.
○ 전력이 북한으로 넘어간 경우 합동참보본부에 보고되는지	○ 일반적으로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맞으나 특수한 상황에는 보고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 아파치 헬기를 가지고 NLL을 따라 위협비행을 하고 북풍을 유도한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에 동의하는지?	○ 동의하지 않음.
○ 원래 헬기가 전방지역의 작전지역을 숙지하기 위해 비행회랑 훈련을 하는지?	○ 일상적으로 하는 비행회랑 훈련임.
○ 해당 훈련을 9.19 합의 이후에 못 해온 게 아닌지? 그러다가 9.19 합의 철회 후 하기 시작한 건지?	○ 그 기간 동안 못 한 건 맞음. 그래서 그 이후에 훈련하기 시작함.
○ 해당 훈련을 가지고 북풍 유도라고 주장할 때, 의혹을 받느니 아예 하지 말자고 하면 누가 좋아지는 일인 것 같은지?	○ 군의 정상적인 훈련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함. 정상적으로 군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차) 이상민 증인(전 행정안전부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행정안전부는 선거 지원의 주무 부서인데, 행안부장관으로 지명을 받을 때 부정선거가 있는지 감시를 잘 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당부가 있었는지?	○ 이것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유 중의 하나기 때문에 증언하지 않겠음.
○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인지, 아니면 윤석열대통령의 말대로 아직 진실을 밝히지 못했으니까 비상계엄을 해서라도 확인이 필요한 건지?	○ 증언하지 않겠음.

(카) 박성재 증인(법무부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인지, 아니면 윤석열대통령의 말대로 아직 진실을 밝히지 못했으니까 비상계엄을 해서라도 확인이 필요한 건지?	○ 부정선거와 관련된 고발장이 들어와 검찰에서 수사 중에 있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님.

(타) 김태효 증인(국가안보실 제1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인지?	○ 제 담당 업무가 아님.
○ 비상계엄을 해서라도 진실 확인이 필요한 건지?	○ 여기에 대해서 안보실의 공식적인 의견은 없음.

(파) 기타 지적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적혔던 NLL 도발 관련 중요한 제보를 받음. ○ 북풍 유도로 의심되는 제보 중, 육군항공사령부 예하부대 12항공여단 소속 아파치항공대대에서 작년 한 해에만 무료 7~8회 가량을 NLL 위협 비행을 했고 특히 북한군 GP 정찰임무를 수행하였음 북풍 유도로 의심되는 근거는 1) 비행항로가 평소가 달라 북한군 기지, 북한 어선과 매우 근접하였다는 점, 2) 평시와 달리 실무장 상태로 비행하였는데, 전시 비축물자였던 실탄까지 사용했다는 증언도 있음. ○ 조종사들은 지휘관 주관의 임무회의에서 실제 항로를 처음 알았고, 낮에 비행하여 북한이 이를 목격하기를 바랐던 것 같다고 증언. 피격이나 추락을 빌미로 북풍공작을 하려고 했던 것 아닌지 의심하였다고 함. ○ 이러한 임무가 2024년 5월에서 6월경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옴. 내부적으로 텔레그램으로 정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공유하고 작전계획이나 항로는 서면으로 상호 전파하고 즉시 파쇄 강조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국방부는 조속히 NLL을 따라서 비행한 헬기의 위치추적체계 기록과 MCRC(공군중앙방공통제소)의 모니터링 기록을 제출해주길 바람.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필요.	

(3) 12·3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여부 및 그 적법성

(가)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 당일 한동훈 대표에게 '피해라' 연락한 적 있는지?	○ 그렇지 않음. 통화한 적도 없음.
○ 계엄 당일 안보실장은 무엇을 하였는지?	○ 계엄 관련해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고, 계엄령 발표하러 대통령이 나가실 바로 그 직전 22시 20분경에 인지하였음.
○ 계엄 전 각 장군들을 불러 참여 여부 확인하셨는지?	○ 없음. 그런 징후 전혀 몰랐음.

(나) 한덕수 증인(국무총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조태열 증인이 도착해서 자리에 앉으니 윤석열 피의자가 '장관님, 비상계엄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말하고 A4 용지를 건넸다라고 증언했는데 기억하는지	○ 구체적인 상황은 기억하지 못함.
○ 외교부장관이 도착하자마자 '비상계엄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면서 A4 용지를 주셨다라고 증언했는데, 맞는지?	○ 제가 물어본 것은 나중에 외교부장관님이 말씀하셔서 인지하게 됨
○ 그 부분을 기억 못한다는 것인지?	○ 기억나지 않음. 그걸 물었다면 계엄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개진하달라는 취지였을 것임.
○ 10분 뒤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도착하여 조태용 증인한테도 '국정원장님, 비상계엄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지 여부도 기억이 안나는지	○ 그렇게 한 적은 없음.
○ 증인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윤석열이 국무회의 소집 의사가 없어서 증인께서 소집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주장. 그러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8시 멤버를 먼저 불렀을까라는 의문. 조태열 증인에게 A4 용지를 줬던 것처럼 각 장관들에게 임무를 하달하려고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서류는 하나도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비상계엄 해제 이후 1시간이 지나서 2시 10분에야 서울청사를 나와 대통령실로 가는데, 그동안 무엇을 확인하고 기다렸는지 의문. 1시에서 2시 사이 대통령 본인 혹은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한 적 있는지?	○ 비서실장과 통화하였음.
○ 무슨 내용으로 비서실장과 통화하였는지?	○ 비서실장도 이러한 사안이 국회에서 해결되었으니 이 상황을 종료시켜야 하므로, 총리도 즉각 용산에 와서 대통령께 건의하자는 취지. 이후 바로 용산으로 출발함.
○ 증인이 2시 30분에 대통령실에 도착했는데, 국회에 제출한 답변을 보면 김용현 장관과 같이 2시반부터 3시20분까지 회의를 했다고 보고했음. 당시 국무위원은 총리님과 김용현 증인 둘 밖에 없었는데?	○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음.
○ 김용현 증인을 본 적이 없는지?	○ 만난 적이 없음.
○ 2시30분에 도착하자마자 대통령과 말씀을 나눴는지?	○ 비서실장과 같이 대통령님께 들어가서 말씀드림.

(다) 조태용 증인(국가정보원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원장께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나 지시받은게 있는지?	○ 체포지시라든지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시받은 바 없음.
○ 그렇다면 홍 전 차장으로부터 '대통령 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는지?	○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보고는 밤에 받았음.
○ 보고 받을 때 홍 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습니다'라고 원장께 이야기를 하였는지?	○ 정치인뿐 아니라 무슨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림.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내용은 보고 받음.
○ 기관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실제 국정원 차원의 어떤 행동과 협조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12·3 계엄에 국정원이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는지?	○ 그러함.
○ 국정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야 하는데, 12월 3일 당일 8시 모임에 갔을 때 비상계엄 필요성을 대통령이 역설할 때도 국정원장은 수긍할 수 밖에 없었는지?	○ 자세한 사항은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함. 우려를 표명했다는 말씀을 드렸음.

(4) 12·3 계엄 선포 후 각 국무위원들의 후속대책 이행 등

(가) 조태용 증인(국가정보원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홍장원 전 차장이 계엄 발표 이후인 22시 53분경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고 당시에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정리해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했다고 아까 얘기를 함. 그런데 대통령께서 정치인을 잡으라고 하거나 대상이 되는 그 명단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신 것은 없다고 함. 원장께서도 그렇게 들으셨는지?	○ 그러함.
○ 대통령이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떻게 정치인을 잡아들여라 이런 의미로 이해를 했냐 하는 질문에는 방첩사령관이랑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됐다고 증언을 했는데, 그렇게 들으셨는지?	○ 그러함. 사람 이름을 불러주었다고 들었음.
○ 원장께서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나 지시 받은게 있는지?	○ 체포지시라든지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시 받은 바 없음.
○ 그렇다면 홍 전 차장으로부터 '대통령 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는지?	○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보고는 밤에 받았음.
○ 보고 받을 때 홍 전 차장이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습니다'	○ 정치인뿐 아니라 무슨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보고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라고 원장께 이야기를 하였는지?	하지 않았다고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림.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말씀이 있었다는 내용은 보고받음.
○ 기관장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는지 여부, 실제 국정원 차원의 어떤 행동과 협조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12·3 계엄에 국정원이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는지?	○ 그러함.
○ 국정원 직원들에게 계엄에 협조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적이 있는지?	○ 정무직 회의때 각 차장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 정리해서 다음날 아침 8시에 만나서 의논하자고 결론 내렸음. 그런데 아침에 만났으나 계엄이 해제되어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었음.
○ 실제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정치인 체포 시도에 국정원이 동원된 것은 확실히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 확실히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음.
○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 대통령으로부터 경질하라는 지시받은 적 있는지?	○ 없음.
○ 오전에 경질은 원장께서 직접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는지?	○ 그러함. 제가 건의드림.
○ 회유하려고 사직서를 반려했다	○ 그렇지 않음. 사직서를 본인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는 것은 사실인지?	받았고 반려한 사실이 없음.
○ 홍장원 전 1차장의 사직서를 받은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 비상계엄이 있었던 다음날인 12월 4일 오후에 저한테 찾아와 홍차장이 야당 대표하고 전화 한번 어떻겠냐고 이야기 했는데, 그 상황에서 그 조언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정치 개입성이라고 생각해 엄중한 시기에 같이 가기 어렵다 판단해 건의 드림.
○ 사직서 내라고 했을 때 홍 차장이 별다른 설명 없이 제출했는지?	○ 본인을 오라고 해서 정무직이라는건 임기가 없는 자리니까 어느때든 그만두려면 그만두는거고 나도 그런 마음이고 이번에 정무직 교체가 있으니 사직서를 내라고 해서 사직서를 받음.

(나) 홍장원 증인(전 국가정보원 1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사직서를 내라고 했을 때 본인 입장을 설명한 적이 있는지?	○ 있음.
○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 12월 5일 오후 4시경 원장님께서 부르셔서 집무실로 감. ‘우리 정무직들이 다 그렇잖아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하면서 사직서를 내달라고 하셨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별도로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지만, 12월 3일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이틀 정도면 비상계엄 현장에 국정원 직원이 한명도 출동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고, 국정원에 지시가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않아 경질되었다고 판단하여 동의함. 이후 대통령의 뜻인지 여쭤봤을 때, '그러면 정무직 인사를 누가 하겠습니까'라고 말씀하심. 그래서 대통령의 뜻이라고 이해함.
○ 추가로 뭔가를 확인한 것은 아닌지?	○ 추가로 확인할 필요 없이 팩트로 알 수 있는 사항임.
○ 계엄 당일 여당 대표였던 한동훈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 언론 보도를 본 적 있으나, 통화한 적은 없음.
○ 계엄 당일 이재명 대표나 우원식 의장과 통화한 적 있는지?	○ 없음.
○ 본인이 생각하는 사직서 제출 이유가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가 유일한 것인지?	○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가장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함.
○ 그 지시를 왜 국정원장을 거치지 않고 1차장한테 바로 했는지?	○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내용 중 하나. 왜 저한테 전화하셨는지 모르겠음.
○ 그런 지시를 국정원장한테 받은 적은 없는 건지?	○ 수년간 국정원에서 근무하면서 대통령님께 직접 뵙고 보고드린 적은 있어도 전화를 받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적은 이번이 처음임.
○ 그 전화에서 구체적인 14명의 명단을 불러줬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기억하고 있는지?	○ 대통령께서는 말씀드린대로 목적어가 없었음. 누구를 잡아라, 체포하라는 말씀이 없으셨음. 다 잡아들여라, 이번에 싹 다 정리해라고 말씀하시고, 이후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말씀하심. 목적어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14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체포 명단이라고 알게 됨.

(다) 김주현 증인(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4년 12월 4일 삼청동 안가에서 4인 회동하려면 안가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지?	○ 보좌관을 통해서 안가를 예약함.
○ 12월 4일 삼청동 모임 이후 용산에서 재차 모임이 있었는지?	○ 바로 귀가하였음. 용산 모임은 없었음.
○ 삼청동 모임의 논의 내용은 무엇인지?	○ 사직한 사람도 있고 계엄이 해제된 상황이었음. 당시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 특별한 논의 없었음. 계엄 이후 대책을 논의한바 없음.

(라) 박성재 증인(법무부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월 4일 저녁 삼청동에서 행정안전부장관·법제처장·민정수석과 함께 모임을 한 후 저녁 9시에 용산에서 다시 모인 것은 아닌지, 모임에서 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논의한 것은 아닌지	○ 용산에서 추가적 모임이 있었다는 것은 허위임. 계엄과 관련된 이야기가 없을 수는 없지만 새로운 계엄을 모의하거나 논의한 것은 아님.

(마) 이상민 증인(前 행정안전부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월 4일 새벽 1시에 서울청사를 나와서 3시에 대통령실에 도착했다고 행적을 제출함. 계엄 해제 의결 직후에 2시간 동안 무엇을 했고 누구를 만났는지?	○ 증언하지 않겠음.
○ 증인의 증언 거부 자체가 증인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죄를 감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날의 진실을 국민들 앞에 소상하게 밝히는 것임.	○ 동의할 수 없음.
○ 12월 3일 23시 37분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한 바 있나. 계엄 건의권자이고 충무계획 주무부처 장관이 비상계엄 중 직접	○ 증언하지 않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지시하니 10분 내에 현장지휘관까지 전파되어 실행 준비함. 선관위 단전·단수 사전 계획한 바 있나? 소방청장과 소방공무원들의 증언과 그날 행적에 따르면 구체적·직접적 지시가 있었음. 이 지시만으로도 증인을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 확정해야 한다고 생각함.	
○ 23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청장에게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압박했을 때 뭐 했는지 기억하나.	○ 증언하지 않겠음.
○ 23시 34분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해서 뭐라고 했나. 3분 뒤인 23시 37분 소방에 전화해서 단전·단수 지원을 지시하고, 0시 30분 윤석열 대통령이 수방사령관을 압박했을 때 긴급간부회의를 가짐.	
0시 39분 경찰이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설치를 요청하는데 계엄 당시 수방사 군 병력이 배치되었던 곳과 정확히 일치함. 수방사, 경찰, 소방, 서울시, 행안부가 함께 통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정황상 통신까지 끊으려 한 것 아닌지 의심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경찰국장을 통해서 경찰 상황을 확인하고, 저녁에 안가에서 회동하는 등 계엄 수습책 논의에 앞장선 것으로 보임. 다음 날 국회에 출석해서 처음으로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변론 방향을 제시함. 계엄을 적극적으로 지휘하고 지원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음. 재범 우려가 있고 혐의도 중하여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동의하는가.	○ 증언하지 않겠음.
○ 12월 4일 안가모임, 이 모임에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에게 연락했던 사람이 이상민 장관 맞는지? 법제처장에게도 연락했는지?	○ 증언하지 않겠음.
○ 이 안가모임에서 대통령은 당연히 ‘이번 법적인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의논을 했을 것으로 보임. 그 후 한동훈 만나고, 12월 7일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거짓말 담화를 했을 것임. 맞지요?	

(바) 김성훈 증인(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전임 정부들에서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통령 내외 외의 사람이 이용한 적이 있는지?	○ 그런 적이 없었음. 다만, 현정부에서 이용내역은 자세히 알기 어려움.

(5) 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의 구체적 경위와 헌법 및 법률 준수 여부

(가) 김철진 증인(국방부 군사보좌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안창명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현장조사 시 12월 3일 저녁 10시 20분 합참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김용현 장관을 만났다고 했는데 같이 있었나?	○ 3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던 길에 1층에서 장관님이 타셨음.
○ 김용현 장관이 합참 전투통제실로 가자 해서 갔고, 22시 20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문까지 진행되는 동안 계속 합참 전투통제실에 김용현 장관이 있었는지?	○ 그러함.
○ 공소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담화를 마치고 한덕수 총리, 조태열 장관, 최상목 부총리에게 문건 지시를 했고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시간은 22시 43분으로 추정됨. 그 시간에 김용현 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음. 즉, 대통령실 국무위원 대기실에 있지 않았음.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바로 받았다는 것이 확실하고,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봄. ○ 최상목 부총리는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계엄발표 후 종이를 접어서 주셨다, 그 종이를 갖고 11시 40분에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갔다고 발언함. 김용현 장관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주었다거나 누가 주었는지 모르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허위임.	

(나) 조태열 증인(외교부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쪽지 준 것을 부인하는 진술을 했음. 증인이 본회의에서 9시쯤 도착해서 집무실로 들어가니 국무위원이 와 있었고 비상계엄 선포할 생각이라고 하면서 종이를 주셨다고 진술하였는데 사실인가.	○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이 다시 진술을 해야 할 때 증인에게 쪽지를 준 사실도 부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명확하게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겠나.	○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답변은 적절하지 않음.
○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나. 대통령이 책임을 면하고자 아랫사람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부인하고 있음. 법정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봄. 명확한 입장을 계속 밝혀주기 바람.	○ 그러함. 본회의에서 그렇게 답변하였음.
○ 네댓명의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증인에게 쪽지를 줄 때 볼 수 있는 상황 아니었나. 김용현, 박성재, 이상민 장관과 한덕수 총리가 모여앉아 있었을 것이므로 못 볼 수가 없는 것임. 국무위원들의 보지 못했다는 진술이 비겁한 것임. 앉아 있는 자리에서 준 것 맞나.	○ 앉자마자 건넸기 때문에 못 봤거나 기억을 못할 수도 있음. 당시 상황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함. 종이를 건네받는 동시에 국무총리의 질문을 받고 바로 반대의견을 말했기 때문에 못 볼 수 있다고 생각함.

(다) 한덕수 증인(국무총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이 쪽지 건네는 것 보았나 안 보았나. 총리가 장관을 보면서 질문을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기 어려울 수 없음.	○ 상황이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전체적인 것들을 기억하기 어려움. 그러한 상황을 이해해주시기 바람.

(라) 박성재 증인(법무부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이 쪽지 건네는 것 못 보았나.	○ 보지 못했음.
○ 계엄 당일 새벽 3시에 대통령실에 들어왔고 그 이전 행적은 제출되지 않았음.	○ 사무실에 있었음.

(마) 이상민 증인(前 행정안전부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이 쪽지 건네는 것 못 보았나.	○ 증감법 제3조제1항과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의해서 증언하지 않겠음.

(바)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월 4일 새벽 비서실장과 합참 회의실에 간 내용과 관련한 의구심이 제기되므로 명확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음.	○ 공조본 조사 받으면서 수사관이 기록 제시해줌. 비서실장과 제가 합참에 들어간 것이 01시 46분, 대통령을 모시고 나온 것이 1시 49분이고 결심지원실은 1분 남짓임. 비서실장이 대통령께 복귀하는 게 좋겠다 하니 바로 승인하셨고 밖에서 1, 2분 기다리다가 대통령이 나오셔서 복귀함.

(6)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의 임명과 포고령 포고 경위

(가) 이승오 증인(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평상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의 방식과 참석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 정규와 긴급으로 구분되는데, 사전에 주관자와 내용 등이 전파가 된 후 진행됨.
○ 12월 3일 22시 28분경 열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 김용현 前 장관이 22시 28분경 회의를 지시하며 수방사, 특전사, 방첩사 등 3개 부대를 우선 연결하라고 지시하였음.
○ 수방사·특전사 사령관만 연결이 되고, 다른 부대는 연결 과정에 있었다면 그 상황이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가 맞는지?	○ 최종적으로 23시 50분경 연결되었고, 당시는 회의를 준비하는 과정이어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라고 보기에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연결하는 과정에서 2차 계엄 준비를 지시하거나 국회·선관위 등에 대한 군 투입 지시가 있었는지?	○ 그런 지시는 없었음.

(나)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과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증인도 알고,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이들이 포고령 1호를 작성했다고	○ 그에 대해 아는 바가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보는지? ○ 안보실은 포고령 1호의 작성에 관여하였는지? ○ 대통령이 줬다는 3건의 문건도 중앙정부 운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안보실이 국방부보다는 이해도가 높음. 이를 작성했는지?	○ 전혀 그렇지 않음. ○ 전혀 관여한 적이 없음.

(7) 계엄 선포 전 병력 및 경찰력 동원을 위한 준비사항

(가) 이상민 증인(행정안전부 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 국방부장관이 삼청동 안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경찰에 관한 이동 및 업무지시 다 넘겨주는데 행안부장관으로서 직무유기 아닌지? ○ 소방청에 전화해서 방송사 단전·단수 지시하였는지?	○ 증언하지 않겠음. ○ 증언하지 않겠음.

(나)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경계태세 2급 발령을 언제 인	○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으나 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지하였는지? ○ 경계태세 발령 후 최대 4시간까지 전파가 지연되었는데 비상 대응 체계에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닌지?	령 후 위기관리센터에서 북한 관련 동향 보고를 받았음. ○ 전파가 지연된 점은 맞고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다) 이승오 증인(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경계태세 발령 사유는 무엇인지, 발령 전에 회의와 요건 검토를 하였는지?	○ 비상계엄 상황에서 적 도발 가능성을 우려하여 발령하였음.

(라) 안무성 증인(특수전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CCTV에 촬영된 차량에 방한물자와 군장 등을 적재한 것은 평시에 작전 대비를 위해 적재해 놓은 그대로인 것 아닌지? ○ 출동 당시 임무와 무관하게 경계태세 발령에 따른 자동화된 대응인데, 야당이 민수용 차량의 탄약 적재와 그 목적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임.	○ 차량에 탄약이 적재된 것은 신속대응부대의 임무 특성상 당연한 것이고 작전 예규에 따른 조치임.
○ 9공수여단이 여론조사 꽃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	○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여론조사 꽃과 중앙선관위 관악청사 확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였는지 ○ 봉쇄와 장악이라는 용어보다는 확보라는 용어가 적절함. 확보는 바괴나 방해로부터 보호하고, 탈취당하지 않도록 부대를 배치하는 전술적 과업을 의미함.	보 지시를 받았음. ○ 위원님의 설명에 동의함. 군의 임무는 확보였음.

(마) 김정근 증인(특수전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3공수여단이 과천 선관위에 투입되었는지, 출동·철수 시각과 임무는 무엇인지) ○ 출동 당시 임무와 무관하게 경계태세 발령에 따른 자동화된 대응인데, 야당이 민수용 차량의 탄약 적재와 그 목적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임.	○ 불순세력으로부터 선관위 내부 핵심 장비와 시설 보호 및 경계 지원 임무였음. 24시경 출발하여 03시 20분 도착하였고 09시 30분에 철수명령을 받고 복귀하였음.

(바) 정성우 증인(전 방첩사령부1처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여인형 사령관이 선관위 전산	○ 전산실 출입 통제를 내렸으며,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실 출입 통제를 지시하면서 국정원 및 검찰이 올 것이라고 언급하였는지(민병덕 위원)	초기 명령에서는 ‘수사기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검찰’이라는 단어는 언급하지 않았음. 민간 전문 분석팀이 올 것이라고 전달받았음.

(8) 주요 헌법기관 등의 점거 경위

(가) 안무성 증인(특수전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12월 4일 00:33분부터 00:39분까지 선관위 관악청사로 지휘차량, 앰뷸런스, 대형버스, 탄약트럭 등이 들어감. 그 날 불출된 탄약 가운데 2만 8000발 싣고 간 것 맞나.	○3만 1000여발을 싣고 갔음.

(나) 김세운 증인(육군본부 특수작전항공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계엄 당일 왜 헬기가 3대씩 나눠서 국회 운동장에 내렸는지?	○최초에 사령부로 들어갈 때부터 3대 규모로 준비를 했었고 이 당시에 착륙장 분석을 했을 때도 운동장에 항공기 3대가 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계획을 유지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안전에 유리하다고 판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함.
○ 최초 계획을 세운 시점이 전날인지?	○ 그렇지 않음. 당일 22시 40분에 목적지가 국회로 결정된 이후에 세움.
○ 최초 계획을 세운 시점이 전날인지?	○ 그렇지 않음. 당일 22시 40분에 목적지가 국회로 결정된 이후에 세움.
○ 목적지가 어디에서 어디로 변경된 것인지?	○ 광주 쪽에 있는 특수전학교에서 국회로 변경되었음.
○ 국회로 변경되었는데, 그때 3대씩 분승해서 날아가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다고 이미 지형정찰이 끝나 있는 상태였는지?	○ 그렇지 않음.

(다) 김정근 증인(제3공수여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3공수여단장은 12월 3일 선관위 중에서도 선거연수원에 갔었지요? 가짜뉴스에 따르면 한미연합작전이 있었다는데 어떤지?	○ 예, 선거연수원에 갔음. 병력은 연수원 내부에 들어가지 않음. 저희들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한미연합작전은 없었으며, 이와 관련 정확한 내용을 모른 채 철수하고 복귀했음.

(9)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에 관한 사항

(가) 홍장원 증인(前 국가정보원 제1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월 3일 20시경 대통령의 전화가 올 테니 전화 대기하라는 것을 누구한테 들었는지?	○ 보좌관을 통해 대통령이 전화를 하라고 했다는 지시를 전달받고, 20시 22분경 대통령에게 전화하였음.
○ 대통령과 한 전화 내용이 무엇인지?	○ 비상계엄 발표사실을 확인하였는지와 방첩사령부를 적극 지원하라는 것이 주요 요지였음.
○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것이니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 방첩사에 필요한 자금과 인원을 무조건 지원하라고 하였음.
○ 그 후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했는지? 무슨 내용이였는지?	○ 23시 6분경 방첩사령관과 통화하였고, 처음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으나, 이재명 등 약 14명을 체포하라는 내용이였음.
○ 조태용 원장에게 이 내용을 보고했는지?	○ 국정원장이 보고받지 않았다고 하므로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엄중하고 민감한 내용인 만큼 지휘 계선 상 어떻게 보고드리지 않을 수 있겠음.
○ 몇 시에 보고했고, 조태용 원장은 이후 어떻게 대응했는지?	○ 23시 30분 정무직회의에서 대통령의 체포 지시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고하지 않았지만, 정황상 관련된 내용을 보고드림.
○ 12월 5일에 조태용 원장이 사	○ 그러함. 국정원장은 제가 정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직서를 내라고 하지 않았는지?	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경질했다고 하나 이는 당일 제게 발언한 내용과 전혀 다름.
○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라, 방첩사 도와서 지원해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는 지시를 전화로 받은 적 있는가?	○ 있음.
○ 제2차 계엄이나 추가적 군사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지?	○ 비상계엄 이후 여러 조치들을 볼 때 대통령이 의지를 꺾고 있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음. 김용현 장관 경질과 그 다음 국방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사람을 볼 때 김용현 장관의 영향력이 사라졌다고 판단하기 어려웠음.
○ 여인형으로부터 체포명단을 받은 것이 맞는지, 우선체포대상 이재명, 조국, 정청래, 양정철, 박찬대, 조해주, 이학영, 양경수, 김어준, 김민욱, 김민석, 김명수. 기억과 일치하는지?	○ 일치함.
○ 윤석열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국정원장에게 어떻게 보고하였는지?	○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는데 원장님께서 아무 말씀도 없었음. 방첩사에서 한동훈과 이재명을 잡으러 다닌다고까지 말씀드렸으나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는 답이 돌아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 지침이 필요했으나 추가적인 지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없이 소파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음. 보고를 안 받은 것이 아니라 보고를 거부한 것임.
○ 정치개입이라고 판단한 지점은 무엇인지?	○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국정원이 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야당에 전달하자는 아이디어를 건의하였을 뿐인데 이를 정치중립 위반으로 판단하였음. 다음날 기자회견까지 개최하며 본인을 경질하며 사법적 책임을 거론함. 조직과 국가 안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제안했을 뿐인데 부당하고 억울함. 특정 명단을 통한 무리한 조치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고 평양에서 보위부가 하는 행태에 가까움.
○ 2017년 조현천 기무사령관 시절에 만든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보면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적시되어 있음. 대통령이 왜 국정원장을 건너뛰고 본인에게 전화했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바로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문건을 보고 그 지시사항 그대로 한 것임. 그렇다고 생각되는지?	○ 해당 문건은 처음 봄.
○ 12월 3일 10시 53분경에 대통	○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내용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령 전화를 받은 이후에 11시 좀 넘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은?	요지는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는 말씀이셨음. 그런데 구체적으로 방첩사를 어떻게 지원하라는 말씀까지는 없으셨기 때문에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을 이행하기 위해서 방첩사령관에게 국정원이 무엇을 도와줄까 하는 것을 확인하고 물어보기 위해서 전화했음.

(나) 조태용 증인(국가정보원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해 증인과 홍장원 증인의 진술이 상이함.	○ 12월 3일 밤 홍장원 증인으로부터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보고를 받지 않았음을 명예를 걸고 확인함.
○ 대통령이 홍장원 증인의 경질을 직접 지시했다는 부분에 대해 증인과 홍장원 증인의 진술이 상이함.	○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지시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저의 건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임.
○ 12월 4일 01시에 정무직 회의가 소집되었는지, 그리고 그 회의에서 방첩사 지원 지시가 있었는지 묻는 한편, 홍장원 1차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고했는지?	○ 12월 3일 11시 30분에 정무직 회의가 소집되었으며, 회의 중 방첩사 지원 지시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홍장원 1차장은 회의 후인 11시 50분경 개인적으로 찾아와 대통령의 방첩사 지원 지시를 보고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홍장원 1차장이 야당대표에게 전화를 할 것을 제안한 것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것인지	○ 민감한 상황에서 평소에 한번도 연락을 하지 않던 야당 대표에게 국정원장이 전화하는 것은 정치개입이라고 판단하였음.
○ 홍장원 1차장은 비상계엄 지시를 거부하여 국정원을 구했음에도 조태용 국정원장은 그를 보직해임하였는데 이는 잘못되었음.	
○ 홍차장과 대통령이 통화할 때 증인이 알고 있었는지?	○ 3시간 동안 모르고 있었음.
○ 최초로 안 것은 언제인지?	○ 대략 저녁 11시 45분에서 50분 정도임.

(다)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측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체포·구금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였음.	○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이며 본인은 검찰 조사에서도 같은 내용을 진술하였음. 야당의 추궁과 무관하게 사실에 근거하여 자발적으로 한 발언임.

(10)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의 동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가) 이승오 증인(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합참은 군 예하부대의 이동을 모두 보고받지 않은지?	○ 합참이 통제하는 부대들은 이동을 보고받고 있음.
○ 대통령과 변호인 측은 군 병력의 출동 지시를 부인하고 있는데, 평상시 군 이동은 국군 통수권자가 지시하는게 맞는지?	○ 부대 이동은 군령권을 가진 사람이 지시할 수 있음.
○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모두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계엄 임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했으나, 대통령이 지시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처럼 보임.	○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할 수 없으나, 군 통수권에 따른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경계태세 2급 발령은 계엄 선포되었기 때문인지?	○ 적의 도발을 대비하거나 적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발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발령함.
○ 경계태세 2급 발령은 계엄 선포되었기 때문인지?	○ 적의 도발을 대비하거나 적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발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발령함.

(나) 김세운 증인(특수전사령부 특수작전항공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도 707특임단과 동일한 내용을 받았는지?	○ 예, 불시 훈련으로 들었음.
○ 그 다음 훈련을 어떻게 진행할지 협의했는지?	○ 훈련 내용을 알아야 항공기를 준비할 수 있으므로, 특임단장과 논의하였고, 경기도 광주 소재의 특수전학교에서 훈련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후 실제 임무장소가 국회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는지?	○ 세부 임무 내용을 고민하기보다 부대를 해당 지역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내는 것에 주안을 두고 준비하였음.

(다) 김현태 증인(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비상계엄 당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불시 점검 훈련을 실시하라는 임무를 받았는지?	○ 그러함.
○ 몇시에 받았고, 이후 어떤 내용의 지시를 받았는지?	○ 오전 11시 9분에 받았고, 특수작전항공단으로부터 항공기 12대가 지원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음.
○ 그렇다면, 증인과 항공단장은 국회로 출동한다고 했을 때 대테러상황이라고 이해했지, 특별히 군이 가서 장악하거나 이런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맞는지?	○ 맞음.

(라) 김정근 증인(특수전사령부 제3공수특전여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3공수여단은 12월 4일부터 3일간 여단 체육대회가 있었는지? ○ 그럼 3공수여단도 3일 야간에 계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한 것이 아닌지?	○ 후반기 여단 체육대회가 계획되어 있었음. ○ 맞음. 사전에 알았다면 체육대회를 취소하거나 조정했을 것임.

(마) 안무성 증인(특수전사령부 제9공수특전여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특전사는 구성원 각각의 특기가 있기 때문에 통상 대대 단위로 휴가를 나가는지?	○ 그러함.
○ 계엄 당일 9공수여단 대부분이 휴가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 12월 2일부터 1개 대대가 일주일 정기휴가, 1개 대대는 열흘 동안 전투휴무 실시 등 대대 전투력의 50%가 출근하지 않았음.

(바) 이진우 증인(前 수도방위사령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이 '네 명이 한 명씩 들쳐 업고 나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해제됐다 해도 내가 두세 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적 있는지?	○ 공소 제기에 관여되어 있어서 답변드리기 곤란함.

(11) 계엄해제 의결 후 해제 공고 지연에 관한 사항

(가) 한덕수 증인(국무총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시30분부터 3시20분까지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는 회의가 공소장에 누락되어 있는데, 이 시간에 2차 쿠데타 시도 포기가 결정이 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 4일 새벽 3시에 군부대가 동원되지 않아 2차 쿠데타를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봐야할 것 같은데 인정하는지?	○ 그렇지 않음. 국회에서 의결해 줘서 바로 이걸 해제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러 대통령한테 갔고, 떠나면서 국무위원들 모두 용산에 모여라고 지시하였음. 그래서 계엄해제 국무회의는 모든 절차나 자료 준비나 개의나 폐회 완벽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함.

(12) 내란범죄 수사주체 논란과 수사상황 점검

(가) 김성훈 증인(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공수처에서 오늘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을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 처음 듣는 내용임.
○ 공수처에서 국정조사특위 위원	○ (답변하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장에게 협조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압수수색은 피압수자한테 통지 없이 나가는 것으로, 쇼를 하듯이 수사하는 것은 수사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임.	
○ 지난 1월 5일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박종준 前 경호처장 또는 증인이 무기사용 명령을 하달한 적 있는지?	○ 전혀 사실이 아님.
○ 그렇다면 대통령이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	○ 다른 사람한테도 확인을 했지만 그런 사실이 없음.
○ 1월 3일 공수처 영장에 대항해서 경호권을 발동했는데,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경호권 발동이었다는 것이 경호처 입장인가.	○ 그러함.
○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비밀 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지라는 질의에 법원행정처장이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는 경우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함. 책임자의 승낙 없이 영장을 집행하려	○ 동의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는 시도를 막는 경호처의 행위가 적법할 수 있는가라는 질의에 그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음. 경호처 영장 불응에 대한 법적인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대통령 직무는 정지되었으나 신분은 현직 대통령이고, 대통령 경호는 법적 근거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임. 서울구치소가 안전한데 왜 대통령을 경호하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맞는 주장인지?	○ 틀린 주장임.
○ 수감자가 구치장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동 소요가 있어 다른 수용자·교도관과 만날 수 있으므로, 법무부도 경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업무 조율 바람.	○ 그렇게 하겠음.
○ 대통령과 가족 경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 대통령께서 구속되시는 사항까지 벌어진 것에 대해서 경호처 책임자로서 송구스러움.
○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비화폰 서버를 관리자에게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삭제 지시한 적이 있는지?	○ 없음. 보안장비이고 비화폰 서버는 비화 특성상 자동 삭제하게 되어 있음.
왜 비화폰 서버 기록과 불출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장을 제출하지 않고 있나.	
○ 압수수색을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 방해하지 않고 관련 법률에 따라 검토함.
○ 관련 법률이 무엇인지?	○ 형사소송법 110조 및 111조임.
○ 지금 대통령이 그 비화폰을 이용해서 범죄, 내란죄라는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됨. 그러면 그 비화폰 내역 중에서 그 당시의 상황과 관계된 내용만 충분히 압수수색할 있는 것 아닌지? 그것이 어떤 국가안보라든지 뭐에 위해가 되고 또 경호에 어떤 위해가 되는지?	○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함.
○ 이는 적법한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함	○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음.
○ 이번에는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길 바람	
○ 1차 체포 당시 대통령이 관저에서 나간 적 있는지?	○ 없음.
○ 본인이 무기 사용에 대해 경호원들에게 지시한 적 있는지?	○ 전혀 없음.
○ 오전 질의에서 비화폰 서버는 즉시 삭제된다고 발언했는데 맞는지?	○ 그러함. 매 2일마다 자동 삭제되도록 세팅되어 있다고 보고받음.
○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달 동안 유지됨. 그래서 경호차장이 12월에 담당자에게 삭제를 지시한 것은 12월 3일 내란 전후	○ 2일마다 자동 삭제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그렇게 알고 있음. CCTV 영상 저장기간이 한 달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기록들을 삭제하기 위한다고 제보를 받았는데 이래도 부정하는지?	
○ 경찰에 조사받을러 갈 때 핸드폰 들고가지 않았는지? 들고가지 않았다면 왜 안들어갔는지?	○ 들고가지 않음. 들고가서 필요도 없고 놓고 가라는 조언을 받음.
○ 대테러팀에 헬멧과 전투복 착용하고 가방에 총기 휴대해서 언론에 노출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적 있는지?	○ 경호법상 확인해드릴 수 없음.
○ 윤갑근 변호사를 국방부장관 공관으로 부른적 있는지?	○ 언론에 그렇게 되어 있음. 본인이 부르지 않았고 참석한 것은 맞음.
○ 민간인이 국방부장관 공관에 와서 경호관들을 대상으로 불법을 강요하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함. 국방부장관 공관을 경호관이 쓰는 것은 무단으로 쓴 것인지?	○ 사전에 협조하였음.
○ 국방부장관 권한대행이 사전 협의한 바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 사전협조해서 2층말고 1층만 사용하도록 하였음.
○ 그 협의라는 것이 지난번 기관 보고에서 지적한 다음에 협의한 것이 아닌지?	○ 순서는 잘 모르겠음.
○ 국방부장관 공관을 무단으로 쓴 것에 대해 지적했는데 그	○ 사전에 실무자에게 협조를 하였고, 그 다음 국방부차관 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순서를 뒤바꿔서 청문회장에서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함	견을 보고받아서 1층 홀만 협조하라고 해서 협조받음.
○ 경호처가 창설된 이래로 경호처가 특정 정파나 이념에 따라 움직인 적이 한번이라도 있는지?	○ 전혀 없음.
○ 대통령 경호업무 중 형법상 내란죄라고 해석될만한 업무가 있는지?	○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음. 다만, 책임자가 승인되지 않은 그 구역에 들어온 것에 대한 정당한 경호임무 수행이었음.
○ 경호처 직원들이 관저를 지키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지킨다는 경호처의 사명 때문 아닌지?	○ 그러함.
○ 윤석열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비난을 받고 문제시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	○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음.
○ 대다수 사람들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 위법성 문제로 계엄이 비판받는다고 이야기 하고 있음. 그런데, 이를 바로잡겠다고 공수처가 나서서 법과 절차를 어기면서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 공수처가 발송한 공문을 보면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55경비단장을 호출하는데, 사전에 보고 받았는지?	○ 보고 받았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알고 승낙해준 것인지?	○ 차후에 알았음.
○ 공수처 관계자에게 불려 간 55단장은 최초에는 수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들었으나, 현장에 가니 승인 공문에 관인을 찍어 달라라고 이야기함.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경호처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시 그 수사관이 '알고 있다'고 하면서 강요하여 해당 공문이 만들어짐. 이건 위법한 것이 아닌지?	○ 저런 형태의 문서는 처음 보았음. 언론에서는 공수처가 55단장으로부터 출입승인을 허가한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지만, 출석요구 장소에서 관인을 갖고 오라고 해서 찍은 것임. 55단장은 그 이후 부대에 들어와 보니 출입 요청에 대한 공식 공문이 접수됐고, 그 이후에 출입승인 허가권은 경호처에 있다는 것을 회신해줬다고 보고 받음.
○ 그것 외에 경호처에서 승인한 적은 없는지?	○ 승인한 적이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왔음
○ 방금 엘리베이터에서 압수수색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뉴스속보에서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오후 3시에 경호처로부터 못한다고 통보받았다고 함. 엘리베이터에서 거짓말한 것인지?	○ 그렇지 않음. 오후 3시 57분에 영장을 권숙현 검사로부터 받음.
○ 오후 3시에 공수처에게 집행을 못한다는 통보를 했는지?	○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후 3시에 통보한 사실이 없음.
○ 뉴스를 보니 공수처가 오후 3시에 집행을 불승인했다고 하는데, 권숙현 검사가 오후 3시 57분에 문자로 영장을 경호처	○ 네.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차장께 보낸건지?	
○ 공수처 브리핑 과정에서 시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바람.	○ 그렇게 하겠음.
○ 96년에 경호처에 입직한 후로 대통령실에 대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허가한 사례가 있는지?	○ 과거 청와대 시절 약 17건의 압수수색이 왔는데 한 번도 허가한 적 없음.
○ 영장이 발부됐는데 그것을 집행하도록 허가한 적이 없다는 건지?	○ 네.
○ 압수수색 관련 질의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 제가 책임자이긴 하지만, 법률적 근거 없이 결정을 내릴 수는 없음. 정부가 바뀌었다고, 경호처장이 바뀌었다고 적용되는 법과 원칙이 바뀌기는 어려움.

(나) 김주현 증인(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월 6일 김용현 장관이 자진 출석하기 전날에 김용현 장관과 통화한 적 있나. 이날의 통화내역을 제출해 줄 수 있나.	○ 통화 내역은 확인해보겠으나 특별히 통화한 기억이 없음.
○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용현 전 장관의 번호를 묻자 김선호 국방부차관이 비화폰을 심우정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총장에게 전달하고,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 김용현에게 두 차례 검찰 출석을 회유함. 김용현이 이찬규 1부장에게 '대통령과 통화 후 말하겠다'고 답변함. 이 과정에서 윤석열이 '김주현 민정수석과 협의하라'고 답변했다는 제보를 받음. 김용현은 이진동 대검 차장과 통화 후 새벽 1시 30분 자진 출석함. 김용현의 셀프 출석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비화폰 서버를 보호하고 있는 것임.	
○ 대통령의 헌재 탄핵서류 잦은 수취거부 본적 있는지? 체포영장 이의신청, 체포영장이 발부된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사례를 본적 있는지?	○ 본 적 없음.
○ 계엄해제 후 대통령과 통화한 적 있는지? 윤갑근이나 석동현과 통화한적 있는지?	○ 통화는 했는데,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음. 윤갑근과 한번 정도 통화함.

(다) 남○○ 증인(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월11일 대통령 주최 오찬에 참석하였는지?	○ 확인해드릴 수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무기사용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확인해줄 수 있는지?	○ 말씀드릴 수 없음
○ 1월 12일 차장 주최로 경호관들 회의가 열렸는데 남부장님께서 차장, 본부장 사퇴하라는 이야기 하셨다는데 맞는지?	○ 제가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음
○ 그 회의 이후 대기발령을 받았는데 그 사유는?	○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들었음
○ 본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지?	○ 억울하지만 수사가 시작되면 수사기관에 가서 밝히도록 하겠음
○ 당시 회의때 차장, 본부장의 무리한 경호요구에 대해 반발을 하며 사퇴하라고 한 것이 대기발령 사유인지?	○ 그 부분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 않겠음.
○ 임무배제를 경호처 차장이 시킨 것인지?	○ 그러함
○ 경호처 차장이 내부 단속에 반대한다고 해서 임무 배제를 당한 것인지?	○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려움. 그러나 차장 주관 회의 때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들은 2차 체포영장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일부는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고 의견을 냈음
○ 경호처 차장을 비롯한 강성 지휘부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과도하게 불법적으로 개입한 것인지?	
○ ‘윤석열 대통령 체포될 때 총 들고 나가서 저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보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는지?	○ 전혀 없음.
○ 1월 10일 국수본 관계자를 만난 이유와 그 때 당시 나눈 이야기에 대해 하실 말씀 있는지?	○ 나라를 걱정하는 지인의 소개로 만남. 1월 3일 체포영장 집행 이후에 경찰의 분위기와 경호처의 분위기에 대해 서로 의견을 30분 가량 나눔.
○ 1월 7,8일 어간에 대통령이 나갔느냐 안 나갔느냐를 두고 논란이 있는데 근접경호를 담당하는 수행부장과 가족부장의 위치추척을 하면 확인될 수 있는지?	○ 해당 사항은 제가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음.

(라) 장○○ 증인(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지금 임무배제 상태인지?	○ 16일에 받은 직무 배제는 효력과 강제력이 없는 지시라는 관련 부서의 답변을 받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임무 수행중
○ 직무배제를 시킨 사람이 경호처 차장인지, 경호본부장인지	○ 경호본부장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본부장이 직무 배제시킨 이유가 2차 영장 집행 때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인지?	○ 그렇게 알고 있음
○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총이라는 단어가 거론된 적이 있는지?	○ 제가 참석한 행사에서는 듣지 못함
○ '윤석열 대통령 체포될 때 총 들고 나가서 저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보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는지?	○ 전혀 없음.

(마) 박성재 증인(법무부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공수처는 헌법기관인지? 아니라면 공수처법에 의해서 설립된 수사기관으로 이해하면 되는지?	○ 헌법기관이 아니며 공수처법에 의해 설립된 수사기관임
○ 공수처가 대통령 내란혐의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 수사 항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직권남용으로 한다는데, 직권남용은 대통령의 불소추 권한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닌지?	○ 소추 대상 범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 공수처가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 현재 검찰과 공수처가 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그 부분이 사법 절차에 의해서 적정성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과정에서 서부지법에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를 예외로 한다고 적시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 법원에서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들었으나, 통상적으로 영장에 쓸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됨
○ 판사가 입법행위를 하였다고 언론에서 이야기 되고 있음	○ 일부 그런 비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형사재판에서 10~20번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 조서가 20개 만들어진 경우 형사재판에서 20개 조서에 대해 각각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고 그와 관련해서 충분한 신문이 이루어지는지?	○ 법정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법정 재판부가 변호인에게 반대신문권 행사 시간을 45분으로 제한하면 적절한 반대신문권 행사가 되는지?	○ 현재 시간을 제한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대통령 탄핵재판의 경우 주요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면서 1시간 반의 증인신문사항 시간을 잡는 경우 변호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45분에 불과함.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정상적인 재판인지?	○ 그걸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요즘은 증인 한 사람에 대해 하루에 증언 절차를 끝내는 것은 아니고 3~4일씩 하는 경우도 있음. 주신문 이틀, 변호인 반대신문 이틀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음.

(바) 곽종근 증인(前 특수전사령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오늘 1차 청문회를 하면서도 공소장 내용과 다르다는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인지?	○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름. 대통령이 도끼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사) 이진우 증인(前 수도방위사령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의 통화내용 중 도끼 등과 같은 용어는 기억에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요?	○ 공소장 관련 내용은 수사중이라 말하기 곤란함.

(13) 계엄 이후 국회의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가) 한덕수 증인(국무총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은 지난 6일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151명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는데, 추가적으로 할말이 있는지?	○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희망이 있음.

(나) 박성재 증인(법무부 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은 지금 탄핵소추된 상황인데, 현재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충실히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각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지 한달이 지났으나 아직 기일이 한번도 잡히지 않아 신속한 기일지정을 신청하고 있음. 국회에서 자료를 내지 않는다면 헌법재판소의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희망함.
○ 헌법재판소가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판단을 내려 국무총리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지난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시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재판 쟁점이 되고 있다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따라 의결정족수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이는 '의사정리권'에 대한 것으로 국회사무처의 '국회법해설'에는 의결정족수 같은 사안을 판단할 권한은 아니라고 나와있음. 동의하는지?	

(14) 2차 계엄 가능성에 관한 사항

(가) 이상민 증인(전 행정안전부 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경찰이 12월 3일 새벽 1시 30분부터 수원 선거연수원을 봉쇄하였고, 계엄 해제 30분 뒤인 12월 4일 새벽 3시 30분에 다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하여 2차 계엄을 준비·대비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생기는데, 이상민 장관 지시인지?	○ 증언하지 않겠음.

(나) 홍장원 증인(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정원의 차장을 역임하신 분이 어떻게 개인의 추정이나 판단에 의해서 2차 계엄이 있을 수 있다고 청문회장에서 말할	○ 이 자리에서 새롭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12월 6일 정보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냐고 질문하셔서 그 자리는 공개적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수 있는지?	인 자리가 아니니 제 의견을 이야기한 것임.

(다)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이 실패했기 때문에 2차 계엄을 조금이라도 생각한 적 있는지?	○ 없음.

(라) 이진우 증인(전 수도방위사령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이 실패했기 때문에 2차 계엄을 통해 다시 되돌리겠다는 생각을 한번이라도 한 적 있는지?	○ 전혀 아님.

(15) 국무위원 탄핵에 관한 사안

(가) 박성재 증인(법무부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로 권한이 일시정지되어 있는데, 그 지위와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는지?	○ 그런 것으로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하여, 국무회의는 비상계엄 심의 절차에 불과한지?	○ 그렇게 알고 있음.
○ 계엄 당일 연락받고 5분 정도 참여하신게 전부인지?	○ 회의라고 할 수 있는 시간은 그 정도였던 것으로 생각함.
○ 탄핵사유 중 2번째가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구금 장소를 확보하는 등 2차·3차 계엄을 준비했다라는 것인데, 사실무근인지?	○ 전혀 사실이 아님.
○ 탄핵사유 중 3번째가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인데, 언론 보도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째려봤다고 탄핵소추 사유가 되냐고 나왔음. 국회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인 적이 있는지?	○ 제안설명하는 기간 동안, 그리고 제안설명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동안에 소리를 지리고 하는 분이 있어서 쳐다본 적은 있으나 이재명 대표를 노려본다던디 아니면 쳐다본 것이 법률적인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음.
○ 탄핵소추 사유의 핵심이 내란죄인데, 탄핵소추 대리인단에서 대통령 탄핵사유처럼 내란죄를 빼서 재판을 진행하거나 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지?	○ 없음.
○ 국회경시를 탄핵사유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내란죄를 뺀다고 하면 탄핵소추 의결을 다시 해야 하는지?	○ 다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이유가 없다고 생각. 헌재에서 빨리 결정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함.

(16) 관저 골프연습시설 설치 의혹에 관한 사항

(가) 김성훈 증인(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지난 11월에 한남동 관저 골프연습시설 관련 정진석 실장이 창고라고 하니까 차장이 창고가 맞다, 내가 증인 선서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한 게 맞는지?	○ 맞음.
○ 2022년 당시 한남동 관저에 골프연습시설을 지은 적이 있는지?	○ 없음.

(나) 박준규 증인(현대건설 책임매니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2년에 한남동 관저에 골프연습시설 공사, 삼청동 안가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 적이 있는지?	○ 예, 저희가 공사한 것 맞음. 저희가 경호처로부터, 발주처인 경호처로부터 공사를 받아서 한 것은 맞는데요, 세부 내용은 저희가 보안각서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곤란함.
○ 공사 내용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질의한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 저희는 민간기업이라 발주처와의 보안 관계에 의해 확인해드릴 수 없음.

(다) 이재용 증인(현대차그룹 사업관리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2년에 한남동 관저에 골프 연습시설 공사, 삼청동 안가에 바 공사를 한 적이 있는지?	○ 보안서약서에 의해 대통령 보안시설에 대해 답변드릴 수 없음.

(라) 윤영준 증인(전 현대건설 대표이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2년에 한남동 관저에 골프 연습시설 공사, 삼청동 안가에 바 공사를 한 적이 있는지?	○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임. 소액 공사라 보고 받은 적 없음.

(마) 이한우 증인(현대건설 대표이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2년에 한남동 관저에 골프 연습시설 공사, 삼청동 안가에 바 공사를 한 적이 있는지?	○ 공사한 것은 맞음. 보안각서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몰라서 확인이 필요함. 저는 전혀 모르는 내용임. 소액 공사라 보고 받은 적 없음.

(17) 기타 대통령경호처 관련 사항

(가) 김성훈 증인(경호처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월 8일 60주년 행사 기념식 때 간호장교들 다 불렀는지	○ 다 부르지 않고 일부만 불렀음
○ 여경까지 불렀고, 30만원 줬다는 제보가 있는데 기쁨조 아닌지?	○ 그렇지 않음. 경호부대에는 군과 경찰이 다 들어 있어서 함께 참여하였음
○ 당연하게 대통령 생일축하 할 수 있고 이게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이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었던 것 같음. 당시 참여했던 군·경 경호부대원들도 함께 즐겁게 함
○ 대통령 휴가 때 폭죽 구매에 경호관들 동원한 적 있는지?	○ 폭죽을 산 적은 있음
○ 1월 11일 경호처 내부 글 삭제 지시한 적 있는지?	○ 직접 삭제 지시한 적 없음.
○ 차장 비서관 김00계장이 기획부에 즉시 글을 내리라고 지시했는데, 차장 지시아닌지?	○ 내용이 부적절하니 다시 검토해서 하라고 하였음.
○ 김00 계장이 기획부에 즉시 글 내리라고 했고 못 내린다고 거부하니까 통신 쪽에다 조치해서 강제로 내린 것 아닌지? 그리고 그다음 날 다시 올린 것인데 맞는지?	○ 과정은 맞음
○ 전임 정부들에서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통령 내외 외의 사람이 이용한 적이 있는지?	○ 그런 적이 없었음. 다만, 현정부에서 이용내역은 자세히 알기 어려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윤석열 대통령 체포될 때 총 들고 나가서 저 불법 세력들에게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보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 있는지?	○ 전혀 없음.
○ 최근에 경호처 간부 20여 명이 사직서를 들고 차장을 찾아가서 같이 사표를 내자라고 하니 차장께서 본인은 거부했다고 하는데 맞는지?	○ 사표 들고 찾아온 적 없음. 일부 직원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음.
○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증인이 경호관들 겁박하고 있는 사실 다 알고 있음.	○ 절대 그런일 없음.
○ 공수처는 압수수색영장을 오늘 집행하려고 했는데, 집행 허가를 받지 못해서 못 했다 이렇게 3시경 발표를 했는데 공수처 검사한테서 3시 57분경에서야 압수수색영장을 전화로 제시받았다는 거지요?	○ 예, 문자로 받음.
○ 2023년도 대통령경호처 60주년 행사에 간호장교들과 90정보통신단이 행사에 투입되고, 합창경연대회도 진행되었는데, 이는 이벤트 회사와 다를게 없지 않은지?	○ 매년 그런 일을 했다면 지적받을만 하지만, 50주년과 60주년 단 두 번만 그런 행사를 하였고, 경호처와 경호부대가 함께 마음을 모아 진행한 행사임.
○ 대통령 생일 등에 경호처가 사적인 연회 베풀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행사를 종종 하고 있는지? 노무현 전 대통령 퇴	○ 역대 정부마다 행사가 있었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안사항으로 확인해드릴 수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임식, 생일 등 때 경호처 직원들이 공연했다는 제보받은 것이 맞는지 확인해줄 수 있는지?	
○ 경호처를 일개 이벤트 회사로 전락시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기관의 명예와 자존심을 추락시키는 행동임. 경호처가 중심을 잡아주기 바람.	○ 알겠음.
○ 김건희에게 비화폰 지급한 적 있나.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비화폰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 확인해드릴 수 없음.
○ 대통령 생일 잔치에 동원된 경호관・군인・경찰에 대해서 친구에게 생일 축하 안 해 주냐고 이야기한 바 있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간 군인들이 대통령 생일잔치에 동원되는 것이 상식적인가. 경호처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동원해서 연예기획사처럼 한 것이 증인임.	○ 당연하다고 생각함. 대통령경호처 60주년 창설 행사였고 외부 초청 행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되어서 자체적으로 한 것임.

(나) 장○○・남○○ 증인(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경호처 위기 극복방안은?	○ 경호처 경호관으로서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 부탁드림.

(18) 기타 국정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관련

(가) 한덕수 증인(국무총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야당에서 시중은행장을 부른 것은 은행·금융의 자율성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금융은 자율성을 충분히 가져야 되므로, 정치권이 금융권을 직접 만나 요청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음.

(나) 이상민 증인(前 행정안전부 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언거부권은 헌법상 권리이고, 국정조사 뿐만 아니라 수사·재판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리인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수많은 증인이 자기 입장에서 진술할 경우 국민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정제된 수사와 재판을 통해 도출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실체적 진실 접근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다)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북한의 핵을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 미국의 정책을 보고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민주당은 단독으로 특검법안	○ 북한이라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수정안을 발의하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내용을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결단을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특검법 수정안 제2조 제1항제6호에 인지된 관련사건은 수사하도록 숨겨둠. 정동영 의원은 외환죄를 포함해서 인지된 수사 부분이 들어가 있고 증거가 나오면 외환죄로 추가 기소하겠다고 하고 있음. 외환죄 포함에 대한 군과 국민적 반대가 있으니 속임수를 써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으로 생각함. 특검법에서 외환죄를 물어서 우리 군 대북정책이나 군사활동에 족쇄를 채우면 좋아할 사람은?	
○ 북한 도발 시에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하게 되는데, 외환유치죄 적용 관련된 부분이 적용되면 현장 군인들이 대응할 때 상당히 위축된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 그런 우려가 많다고 생각함.
○ 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안에 HID 출신을 포함한 TF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안보실장도 잘 모르는 내용인데 윤석열과 김건희가 통제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듬.	

(라) 이승오 증인(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민주당 특검법안에 외환죄가 포함되는 것에 우려가 많았음. 군의 대북정책·군사활동에 대해 외환유치죄를 적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음. 오물풍선 원점타격을 장관이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한 답변. 대북심리전 방송이나 대북 전단은 우리 자산인데 외환유치죄와 연계되어 검토되면 군사활동에 큰 위축이 된다고 생각함.	○ 지시받은 바 없으며 동의함.
○ 비싼 아파치 헬기를 대낮에 NLL 따라서 비행을 시켰다면 그것이 정찰 목적인지, 아니면 대놓고 도발이라고 볼 수 있는지?	○ 주간에 정찰을 해야 적의 표적을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임.
○ 10월 3일, 9일, 10일 북한쪽에 드론을 띄었는데, 북한은 군사도발로 간주하겠다고 함. 북풍공작이 아닌지?	
○ 아파치 헬기 NLL 비행에 관한 내용은?	○ 통상적인 작전훈련으로, NLL이든 MDL이든 그런 근접 지역에서 작전할 때는 실탄을 휴대하지 않을 수 없음.

(마) 이경민 증인(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근 방첩사의 갑작스런 소령급 이하 인사에서 여인형 사령관의 측근들이 요직으로 들어왔다는데 아는지?	○ 예, 언론보도로 알게 되었음. 소령급 인사는 자녀들 학교나 관사 문제 등도 있고, 공수처의 압수수색도 끝나고 해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이번에 실시함.

[2025년 2월 4일, 제2차 청문회]

(1) 12·3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가) 김대경 증인(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실 비화폰 관리 업무를 관리지원본부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화폰은 국정운영상 안보와 보안 유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맞나. 그런데 이번 내란 사태에서는 핵심 통신수단으로 악용되었고 민간인에게도 지급됨.	○ 맞음.
○ 경호처에서 노상원에게 직접 비화폰을 제공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끝번호 '9481' 누구 것인지 기억하는지? 노상원이 썼던 것으로 확인되는 비화폰임. 계엄 전날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주라고 한 사람은 누구인가? 김성훈 차장의 김 모 비서관이 와서 비화폰을 가져간 것 맞나? 민간인 노상원에게 준 것이 사리에 맞는가? 이는 김성훈 차장이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고 함께 공모했다는 증거임.	○ 기억나지 않음. 불출 현황을 확인해 보겠음.
○ 이진우, 여인형에게도 비화폰	○ 본 적은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준 것 맞나? 경호처가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에게 비화폰을 지급하고 함께 공모한 것임. 비화폰 불출대장에 보면 '테스트(특)', '테스트(수)', '테스트(방)' 무엇인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에게 줬다는 것임. '테스트(예)'의 의미는? 노상원에게 간 비화폰임.	
○ 김성훈 차장이 관련 기록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본부장과 실무자들이 버텨서 삭제하지 않았다고 들었음. 12월 13일 김성훈 차장으로부터 불출대장 삭제 지시가 있었던 것 맞나?	○ 수사 진행 중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기 제한됨.

(나) 방정환 증인(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차 청문회 당시 계엄 당일 노상원 씨로부터 비화폰을 받아서 장관실에 제출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음. 노상원 씨에게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들은 적 있나.	○ 폰을 전달한 사실은 있는데 비화폰인지는 확인이 제한됨. ○ 공소 중이어서 답변 제한됨.
○ 12월 3일 오후 3시 음식점에서 노상원, 구삼회 등을 만났는지?	○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노상원이 구삼회 장군이 합수부 단장, 증인이 합수부 부단장을 맡으면 된다고 얘기했는지?	○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할 수 없음.
○ 그날 노상원이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통화한 것을 보았는지?	○ 기억에 없음.
○ 계엄과 관련하여 본인이 문상호와 통화한 적 있는지?	○ 없음.
○ 계엄이 선포될 것은 언제 알았는지?	○ 대통령 담화를 보고 알게 됨.
○ 노상원이 공소장에 보면 합수부 부단장을 맡으라고 했는데, 계엄을 전제하지 않고 합수부라는 말을 할 수 있는지?	○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장관님 지시로 정보부대에 가서 대기하고 명령을 확인하고 임무를 수행하라는 것이었고, 명령을 확인하려고 했으나 명령이 없었고 대기하다가 복귀했을 뿐임.

(다) 곽종근 증인(前 특수전사령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비화폰 받은 바 있나. 어디로부터 받았나?	○ 있음. 경호처에서 받았음.
○ 원래 비화폰을 갖고 있는데 경호처로부터 작년에 또 비화폰을 받았나? 그것은 언제 받았나?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나눠준 비화폰은 비상계엄을 위한	○ 군이 쓰는 직책비화폰과, 별도로 받은 비화폰이 있었음. 사령관으로 보직된 이후에 받았음. 제가 판단하기에는 제한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특별비화폰으로 보이는데?	
○ 비화폰이 2개인데,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통화한 비화폰은 어떤 것인지? 2개가 혼재되어 있는 것인지?	○ 제 기억으로는 혼재되어 있었음.
○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한 것은 경호처에서 지급한 것일 가능성이 큰 것인지?	○ 그 부분은 잘 모르겠음.
○ 2024년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정국이 혼란하여 계엄상황이 있을 테니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국회·선관위 과천청사 등 여섯군데를 장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 그러함. 시설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받았음.

(라) 박○○ 증인(제2군단 부군단장(전 정보사령부 요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4년 5월 말,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지, 어떤 내용이었는지?	○ 뜻밖의 전화였음. 6~7년 동안 연락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의아했음. '한 번 볼 일이 있다'고 했으며 '아직도 고집이 세냐'고 물었음. 당시에는 전화의 의도를 알지 못했으나 계엄 사태 이후 이해가 되었음.
○ 노상원이 증인을 신뢰하지 않	○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는다는 것을 감지하고 문상호를 통해 직무에서 배제한 것은 아닌지	
○5월 통화 이후 한 달 뒤에 정보사에서 기밀 유출 간첩 사건이 발생했고, 관련자가 20년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정보사령관이 유임된 것은 노상원과 함께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노상원 수첩에 등장하는 '정치인 납치', '수거 대상' 등의 표현은 정보사에서 사용하는 용어인지?	○정보사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님. 본인이 아는 노상원의 성향상 노상원이라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로 생각됨. 과거에도 노상원의 지시가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음.
○김용현은 왜 방첩사가 있음에도 정보사령부와 노상원을 활용한 것인지? 정보사령부의 휴민트 조직이 계엄과 관련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방첩사는 무력과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계엄과 맞지 않음. 계엄과 관련된 작전이나 무력을 동원하기에 정보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나, 정보사의 휴민트 조직은 법적으로 계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음. 계엄 임무에 휴민트 조직을 동원하는 것 자체가 불법임.

(마) 박안수 증인(전 육군참모총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경호처에서 받은 비화폰이 있는지?	○ 없음
○ 그동안 군에서 받은 비화폰으로만 통화한 것인지?	○ 그러함
○ 24년 11월 6일 육군 정작부 작전과를 통해서 합참전시계엄계획문건을 찾은 사실이 있는지?	○ 기억이 나질 않음. 위원님께 확인해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음.

(바) 이선진 증인(무속인)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2년 2월부터 24년 1월까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수십 차례 방문했는지?	○ 그러함
○ 처음에는 개인적인 운세를 물어봤는데 2024년부터 나랏일을 언급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 2023년부터 그러하였음
○ 배신자 색출을 위한 군인 명단을 제시하면서 점괘를 의뢰했다고 하는데 그런 적이 있는지? 또한, 군인이라는걸 인지하였는지	○ 그러함. 군인이라고 설명을 다 해줬으며, 문제를 만들었을 때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지 질문을 많이 하심
○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는지?	○ 전혀 없었음
○ 그 군인들은 몇 명 정도였으며 군인들을 어떻게 알려줬는지?	○ 수십 차례 오실때마다 군인을 많이 물어보셨고, 아주 많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숫자로 기억함. 펜으로 적어오셨고, 사주를 보고 뭔가 잘 몰랐을 때 얼굴을 보고 싶다고 하면 네이버로 찾아서 사진을 몇차례 보여줬음.
○ 특징적으로 기억 나는 군인이 있으며, 어떤 것을 물었는지?	○ 전혀 없음. 군인들마다의 운을 많이 물어보심. 군인이 뭔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운이 나빠서 올라가다가 멈춰지지 않을 것인지 질문하심
○ 이에 대한 노상원 전 사령관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게 나왔다고 말씀하심
○ 김용현 장관에 대해 언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김용현 장관은 어떻게 아셨는지?	○ 처음에는 이름과 생년월일을 가지고 오셔서, 제가 보통 군인이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나중에 장관이 될 것이라고 했음. 장관 이전의 일이었음. 이후 이 사람이 장관이 될 것 같은데 문제가 되지 않겠냐고 질문하셨고, 문제 없을 것 같다고 답변하니 이 사람과 뭔가 함께 문제를 만들어서 했을 경우 다시 나랏일을 할수 있고 복직할 수 잇을 것 같다고 말씀하심
○ 본인이 전 정보사령관이었다는 이야기를 한 적 있는지?	○ 투스타로 전역했다고 말씀하셨고, 정권이 바뀌면서 옷을 벗고 나왔다고 말씀하심.
○ 군 내부에서 김 전 장관의 지	○ 그런 적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위를 강화하거나 특정 세력을 제거한다는, 느낌도 혹시 받으신 적이 있는지?	
○ 중요한 일이 계엄이라고 인지한 근거는?	○ 항상 오실 때마다 군인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함. 나이가 어린 분도 나이가 많은 분들도 뭔가 마다하지 않고 다 적어 가지고 오셔서 군인에 관한 질문을 많이 하심. 그래서 어쩌면 진작부터 계획적으로 뭔가 만들고 그 사람들을 파악하려고 물은 것이 아닌가 생각함
○ 노상원이 처음 방문했을 때 누구의 소개로 왔다고 했는지?	○ 친구와 같이 왔었고 친구의 소개로 왔다고 말함.
○ 노상원이 준 명단의 인물을 네이버에 검색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유명인이 아닌지?	○ 저는 해당 인물들을 잘 알지 못했음.
○ 혹시 요즘 뉴스에 나오는 인물도 포함되어 있는지?	○ 기억이 나지 않음.
○ 노상원이 말한 배신할 것 같은 인물은 기억이 나는지?	○ 이름이 전혀 기억나지 않음.
○ 노상원이 제시한 인물 중 몇 명을 명리학을 공부할 때 노트에 적어본 적이 있다고 했는데, 해당 노트가 내란 준비 가담자를 밝혀내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	○ 공부를 하면서 예를 든다고 적어둔 노트가 있었는데, 이사하면서 분실한 것 같음.
○ 노상원이 김용현과 계엄을 모	○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의하며 몇몇 인물에 대해 배반할지 안 할지 점을 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노상원이 본인이 나랏일을 할 수 있는지 언제 물어보았는지?	○ 23년도부터는 그런 질문을 몇 번 하셨던 것으로 기억함.
○ 윤석열 대통령이 1년을 남겨놓고 탄핵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 시점이 언제였고 노상원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 그날이 a4용지를 가지고 온 날이었고, 노상원은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단호하게 자름.
○ 김건희 여사에 대해 점을 본 바 있는지?	○ 아님.
○ 24년부터 개인적으로 못마땅한 질문을 해서 노상원과 연락을 끊었다고 했는데, 못마땅한 질문이 무엇이었는지?	○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이라 밝힐 수가 없음.

(사) 이상민 증인(前 행정안전부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월 5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과의 일정이 있을 수 있다. 점심 무렵에 연락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바 있는데 맞는지?	○ 당시 회의록 확인하면 될 것 같음.
○ 이상민장관 용산 대통령실 도착 시간이 대략 20시 40분으로	○ 증언하지 않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추정되고 계엄 문건을 그 시간에 받았을텐데, 공소장에는 23시 34분에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한 것으로 나옴. 약 2시간 이상의 시차가 존재하는데 이 시간 동안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지?	
○ 단전·단수와 관련해 행안부 직원이나 경찰청 직원과 통화한 적이 있는지?	○ 증언하지 않겠음.
○ KBS와 통화나 연락한 적 있는지?	○ 증언하지 않겠음.

(아) 손우승 증인(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사무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비상계엄 당일 이상민 장관이 집무실 나오면서 점심 때 대통령이 찾을 수 있으니 조기 복귀를 위해 교통편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적 있는지?	○ 지시한 적 있음.
○ 이상민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사전에 미리 알고 있던 것임. 이상민장관의 용산 도착 시간이 대략 20시 40분 무렵인데 서울청사로 복귀한 건 언제쯤인지?	○ 대략 23시 30분으로 기억하고 있음.
○ 서울청사에서 행안부 직원 중에 다른 특정인을 만나거나 별	○ 기억나는 건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도로 찾은 행안부 직원이 있는지?	

(자) 나승민 증인(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비상계엄 당일 방첩사령관이 군판사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보라는 지시를 했다는데 왜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보는지? 계엄이 지속될 때 군사법원의 재판부 구성을 위해 미리 준비하라 지시한 것 아닌지?	○ 방첩사령관이 자정 무렵 저를 불러서 대령 1명, 중령 2명, 소령 1명 총 4명의 인적사항을 불러줬고, 제가 사무실에 복귀한 후 인적사항을 확인해보니 모두 군판사였음. 개인적인 판단으로 계엄 상황에서 군판사 임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인사조치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음.
○ 방첩사에서 여인형 사령관이 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측근들을 데려왔는데, 소현기와 김철진임. 이 두사람이 방첩 출신인지?	○ 일반 작전부대원임.
○ 그러한 분들이 핵심 요직을 맡는 경우가 있음?	○ 참모장은 과거에 작전부대에서 많이 왔고, 기획관리실장도 안보지원사령부 때 1명 온 것으로 기억함.
○ 나승민 실장은 임기제에 또 임기제인지?	○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두 번째 임기를 누가 해 줬는지?	○ 여인형 사령관이 추천해 신원식 장관님이 승인해주심.
○ 군판사들이 어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는지?	○ 사건은 몰랐음.
○ 중앙군사법원의 세 명은 박정훈 대령의 재판 주심 판사와 배석 판사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박정훈 대령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임. ○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통해서 군사법원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도록 재판부를 감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을 담당하였는지는 몰랐고, 다만 중앙군사법원 소속이라는 것까지만 파악했음.

(차) 구삼회 증인(前 육군 제2기갑여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노상원씨와 롯데리아 음식점에서 만나서 구삼회 장군이 단장이라는 말을 했는지?	○ 수사중인 사항으로 답변이 제한됨.
○ 진급 실패하고 힘들었을 때 김용현 장관이 곧 중용해 줄 것이며, TF 임무 맡길 것이라는 말을 누구에게 들었는지?	○ 노상원 장군으로부터 들었음.
○ 노상원은 민간인인데, 어떻게	○ 그 부분은 장관 지시로 이해했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현역 장군이 민간인의 지시와 업무를 따를 수 있는지?	고 모든 행동을 했음.

(카) 김선호 증인 (국방부장관 권한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정훈 대령의 영장을 기각한 윤모 중령은 이후 전출이 되었는데 혹시 영장기각과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바 있는지 확인해주기를 바람.	○ 알겠음.
○ 국회 본청 건물 1층에 협력단 사무실이 있는데, 김용현 공소장에 따르면 수방사가 국회에 들어올 때 필요하면 국회에 파견된 협력단장의 도움을 받으라고 적시되어있는 사실을 알고 있나? 실제로 국회협력단 인원들이 cctv에 찍혀있고, 계엄 전날인 12월 2일 김용현 장관이 협력단 사무실에 상당히 오랜 기간 체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나? 이에 대해 협력단이 계엄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됨.	○ 협력단과 관련한 세부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며, 관련 내용은 수사를 통해 정확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함.
○ 현재 협력단 사무실은 폐쇄되어 있는데, 협력단장이 비상계	○ 기존에 쓰던 물품을 꺼낼 수 있도록 승인을 요청했는데 협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엄 다음날인 4일 오전 폐쇄된 협력관실에 출입했다는 제보가 있음.	조가 되지 않았다고 들었음.
○ 협력단장이 협력단 사무실을 들어간 12월 4일 오전 10시 45분 경, 국회사무총장이 국회 군 경출입통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던 상황에 몰래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증거 은폐 등을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됨.	○ 협력단장이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확인하고 파악하겠음.

(타) 김○○ 증인(○○○사령부 대령)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작년에 노상원과 통화적 있는지?	○ 그러함.
○ 작년에 노상원과 만난 적 있는지? 또는 구치소에 면회 간 적 있는지?	○ 만난 적 없음. 면회간 적 없음.
○ 노상원의 수첩에 등장하는 표현과 같이 미군을 살해해서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도록 유도한다는 의혹을 알고 있는지?	○ 기사를 통해 인지하고 있음.
○ 증인이 노상원의 비서실장 출신으로서 그러한 의혹에 관여했다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 심경이 어떠한지?	○ 그러한 오해를 받고 있어서 억울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은 동맹국과 합동 근무하는 곳에 근무하다고 최근에 보직이 변경되었음. 보직 변경 사유가 무엇인지?	○ 연말에 정상적인 보직 심의에 의해 변경됨.
○ 정보사는 한미 동맹의 핵심적인 자리이고, 계엄을 직접 담당하는 조직도 아닌데, 그러한 조직까지 내란 위험에 노출시킨 상황에 대한 증인의 견해는?	○ 저희 부대가 미군 사살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상상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함.

(2) 계엄선포 원인 및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

(가) 인성환 증인(국가안보실 2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사건'을 주도했다는 제보가 있음. 안보실은 북 관련 군사작전이 있을 때 보고를 받는지	○ 안보실은 군사작전 자체를 직접 관장하지 않고, 보고받은바 없음. 전현직 드론사령관을 각 1회 만난 사실은 있으나 안보실이 어떠한 작전을 주도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나) 김선호 증인(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북한과 관련된 접경지역 군사	○ 접경지역 및 북한 관련 군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작전이 있을 경우 국방부에 보고되는지, 해당 내용을 미군과도 공유하는지, 군사 적합도 판정을 마치지 않은 장비가 작전에 투입될 수 있는지	작전은 국방부에 보고되며 한미연합사에도 사전 협의가 이루어짐. 무인기·대북전단과 같은 심리전 작전이 합동참모본부를 패싱한 채 진행될 수 없음. 군사 적합도 판정을 거치지 않은 장비는 작전에 사용될 수 없음.

(다) 김용빈 증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4년 4월 감사원의 선관위 채용 비리 조사에서 총 1200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되었고 고위관계자 27명에 대한 수사요청과 28명에 대한 권익위 고발 조치가 이루어짐. 해당 채용비리 관련 인원들이 현재도 근무 중인지	○ 일부 직원은 계속 근무 중. 감사원과 선관위의 시각 차이가 있음. 감사원은 행정부의 인사 기준을 선관위에 적용하려 하나,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자체 기준이 있음. 감사원법에 따라 수사 개시 통보가 온 경우 선관위 자체 징계 조치를 할 수 없어 중단된 상태로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 2023년 7~9월 선관위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 및 개표 시스템이 해킹에 취약하다는 보안 점검 결과가 있었음. 또한 2023년 10월 8일, 중앙선관위 직원의 업무용 PC가 악성코드에 감염	○ 해당 PC는 내부망이 아닌 외부망(인터넷 연결 가능) PC였음. 직원이 내부망의 일부 자료를 외부망 PC로 옮긴 후, 외부망 PC가 감염된 것으로 국정원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되어 자료가 다크웹에 유출되는 사건이 잇었는데 정확한 유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서 조사 중이며, 현재까지 국민이 걱정할 정도의 유출은 아닌 것으로 판단함. 내부망 자료를 외부망으로 옮긴 것과 관련하여 보안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음.
○ 선관위 서버실 관리 인력이 신원조회가 없음에도 자유롭게 출입하는 몬제가 있음. 12·3 계엄 당시 계엄군을 서버실로 안내한 인원이 외부 용역업체 직원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 서버실 운영은 외부 용역업체와 33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고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원래 일반경쟁입찰을 시도했으나 두 차례 유찰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함. 서버실 유지보수 업체 직원은 원칙적으로 서버 접근 권한이 없음. 그러나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되었어 있는데, 규칙 개정을 통해 신원조회 절차를 마련하고 보안점검을 강화하겠음.
○ 선관위 채용 비리와 관련하여 현재 기소된 사건이 몇건인지	○ 4건이며 나머지 사안에 대한 수사도 진행중임. 일부 잘못된 점이 있음을 인정함.
○ 2020년 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2024년 22대 국회의원선거까지 4개 주요 선거에서 선거 무효 소송이 몇 건이었는지, 그 중 선거무효 판결이 몇건이나 있었는지	○ 2020년 21대 총선에서 126건의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단 한 건도 인용되지 않음. 민경욱 전 의원도 대법원에서 패소하였음.
○ 선거는 민주주의 핵심이며, 선	○ 동의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거의 생명은 공정성이고, 선관위의 존재 이유는 공정한 선거 관리라는 점에 동의하는지?	
○ 시스템적으로 선거를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공정하게 관리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 있어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이를 설명하고 납득하는 책임도 중앙선관위에 있는지?	○ 그러함
○ 계엄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부정선거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음.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의혹이 커졌고, 이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이 증가하였음. 이러한 갈등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선관위에 부정선거가 없다고 국민을 설득할 책임이 있음.	○
○ 헌법재판소에서 21대 총선 인천 연수을 선거구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하였는데, 계엄이라는 방식이 잘못되었으니 탄핵의 쟁점이 아니라는 논리로 보임. 그러나, 계엄과 내란죄 판단에 있어 부정선거 유무는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임.	○
○ 부정선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나, 어떤	○ 이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통해 충분히 설명 드렸음. 말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지점에서 국민들이 선거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있고 판결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는지 말씀드리고 싶음. 구체적으로, 투표용지 발급기의 USB 케이블 연결 문제로 동일한 일련번호의 투표지가 두 장 발급된 문제, 투표함의 봉인에 비잔류형 특수봉인지를 사용해서 봉인의 연속성이 파괴될 수 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었는데, 이러한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설명을 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상단 또는 하단 일부가 붙어 있는 관외 사전투표지에 대한 선관위의 설명을 대법원이 그대로 인정한 점, 투표관리관의 인영을 현미경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점,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 수와 투표수가 맞지 않다는 점 등에 대해 대법원이 숫자에 가깝다고 판결한 점, 참관인이 투표 분류기를 촬영하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방송한 점 등에 대해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어 이에 대해 선관위가 국민들을 설득하고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어 보임.	하신 부분 중 일부 선거 관리의 잘못된 부분 때문에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게 되는 선거관리상 하자가 있다는 점도 인정함. 제가 들어와서 22대 국선 준비 과정에서 문제된 부분의 상당수를 개선했음. 구체적으로, 사전투표 관리관의 날인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하지 않은 부분만 받아들이지 않고 나머지는 선거관리지침을 전부 개정해서 성공적으로 22대 국선을 치뤘다고 봄. 혹시 선관위에서 22대 국선에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가 나와 있는게 있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직접 날인하자고 2번 요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음. 시간, 비용관계상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다음 선거부터 할 수 있는지?	○ 당시에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렸음. 법상으로 사전투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제한을 할 수밖에 없음. 읍면동에 사전투표소를 하나씩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특정 사전투표소에 사람이 몰려 이를 확대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인원뿐만아니라 사전투표소와 서버를 연결하는 전용 회선을 더 늘려서 깔아야 함. 이때 보안의 취약성이 문제될 수 있음. 전국적인 단위에서 사전투표제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다른 제도를 활용할 것인지 등 제도개선 차원에서의 논의는 적극적으로 동의함. 다만, 단순히 사전투표소에 대해 사인 날인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기술적, 물리적 부분들을 감안하면 좋은 방법이 되지 않아 규칙으로 바꿔놓은 것임. 법을 비교해보면 본투표에 관련한 투표관리관의 날인 방법과 사전투표관리관의 날인 방법이 마치 동일하게 사인 날인하는 식으로 같이 되어 있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나, 심지어는 본투표소에 있어서도 투표관리관이 현장 관리를 필요로 해서 법상으로 미리 100매 범위 이내에서는 날인을 먼저 해 두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는 본인 확인을 하고 해당 관할 투표지를 받아야 해서 미리 찍을 수 없어서 그런 규정을 둘 수 없음.
○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전투표를 독려했는데, 선거에 이기고 나서 무력을 동원해 선관위를 침탈했음. 그 사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뢰를 상실한 만한 무슨 커다란 변고가 있었는지?	○ 해당 사항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자세하게 밝혀지고, 판단되리라 믿고 선관위 입장에서는 계엄 상황이더라도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했다는 것 자체가 위헌, 위법이라고 생각함.
○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이 사전투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전투표와 본투표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음. 사전투표와 본투표를 붙여서 하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는데,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하면 부정선거론자들의 의구심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라 생각함. 어떻게 생각하는지?	○ 상당히 일리있는 말씀이라 생각함. 과거에도 부정선거론이 계속 존재해왔는데, 2014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면서 부정선거 주장이 강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사전투표 제도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내부적으로	○ 실질적으로 검토를 이미 했었고, 2024년 22대 국회의원선거즈음 유권자 의식조사를 통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진지하게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국민들의 의견도 청취함. 해당 결과를 보면 78%에 해당하는 국민들이 사전투표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유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저희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자거나 그런 의견은 드릴 수가 없고, 입법권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생각함.
○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의 이유 중 일부를 부정선거로 들고 있는데, 만약 선거관리 시스템이 해킹이 되더라도 현장에서 실물투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결괏값이 달라질 수 없는 것이 아닌지?	○ 그러함.
○ 해킹을 통한 부정선거의 시도가 있을 수는 있어도 현행 제도에서 부정선거의 시도는 성공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	○ 동의함.
○ 잘못된 망상에 의한 계엄이 선포됨으로써 대한민국 선거제도가 위기에 봉착하였음. 투표 결과에 대해 신뢰를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선관위 및 여야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 위원님 말씀에 공감함. 다만, 사전투표제의 일정 부분이 본투표와 사전투표에서 구분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관리사무를 책임지고 있는 선관위에서 제도개선에 먼저 앞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님을 고려 바람. 여야 의원들께서 개선책을 잘 마련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주시길 바람.
○ 사전투표에서 투표인명부와 투표자 수가 달라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가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투표 행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음.
○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감사할 수 있나?	○ 할 수 없음.
○ 국가정보원법과 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국정원은 중앙선관위의 보안 점검을 수행할 권한이 없음. 그러나 국정원이 선관위의 네트워크 정보와 보안 자료를 직접 제공 받았으며, 선거 직전 2023년 선관위 보안감사 보고서 수정 과정에서 정치적 개입 의혹이 제기됨.	○ 국정원 보안 점검 과정에서 선관위 나름대로 방어를 했다고 생각하며, 1차와 2차 보고서의 실질적 내용은 동일하지만 일부 기밀 정보 마스킹 등의 수정이 있었음.

(라) 김○○ 증인(○○○사령부 대령)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노상원과 언제 통화했는지?	○ 작년에 총 5차례 통화했으며, 마지막 통화는 2024년 11월 10일임..
○ 마지막 통화에서 노상원이 뭐라고 하였는지?	○ 카카오톡 프로필에 있는 반려견을 물으며 약 30초간 짧은 대화를 하였음.
○ '미군 살해'라는 표현을 쓸 때, 미군 부대 내에서 미군을 살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지?	○ 예.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그렇다면 우리 군 내에서 미군을 살해하는 것이 더 쉬우므로, 노상원이 증인에게 재차 전화를 한 것이라고 생각함.	○ 작년에 총 5차례 통화는 했지만, 4번은 의례적인 안부전화였음.
○ 12월 3일 밤에 증인은 어디 있었는지?	○ 상황실에 있었음.
○ 해당 장소에 동맹국 요원들이 있지 않았는지?	○ 연합 근무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음.
○ 당시 사령관은 경계태세를 오히려 늦추지 않았는지?	○ 경계태세는 저의 소관이 아니어서 답변드릴 수 없음.
○ 외부 침투를 막기 위해 오히려 경계를 강화해야는데, 오히려 경계태세를 느슨하게 유지하지 않았는지?	○ 그렇지는 않음.
○ 미군 살해의 타겟이 증인이 있는 곳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노상원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모른다는 뜻인지?	○ 그러함. 우리 부대는 위병소부터 내부 시스템까지 외부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

(3) 12·3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여부 및 그 적법성

(가) 이상민 증인(前 행정안전부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비상계엄 선포 즈음해서 행안부장관으로서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참석자와 국무회의 시간, 발언 요지 등을 기록으로 남겨놓을 것을 지시한 바 있	○ 증언하지 않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나? 국무회의 참석자에게 서명을 요구한 것이 한덕수 총리인가 본인인가?	
○ 12월 3일 울산 회의 일정 중간에 상경했다고 12월 5일 국회 행안위에서 진술한 바 있음. 윤석열로부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전화를 받았나. 비화폰으로 통화했나.	○ 증언하지 않겠음.
○ 9시까지 대통령 집무실에 모였던 8시 멤버들은 도착한 순서대로 박성재, 김영호, 이상민, 한덕수, 조태열, 조태용임. 이 자리에서 윤석열이 22시 KBS 생방송이 확정되었다고 발언한 바 있는지?	○ 증언하지 않겠음.
○ 윤석열에게 국무회의는 계획에도 없었고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장관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 결과만 남은 것임.	

(나) 이완규 증인(법제처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번 계엄 내용적으로 위헌인지?	○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판단할 것.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계엄의 이유 여덟가지가 대한민국의 법제처장이자 개인적인 법률가로서 비상계엄의 선포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 법원에서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며, 재판 진행중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4) 12·3 계엄 선포 후 각 국무위원들의 후속대책 이행 등

(가) 이상민 증인(前 행정안전부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 직전 윤석열로부터 경향신문·한겨레신문·MBC·JTBC·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는 내용의 문건을 받아본 바 있는지? 김용현은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한덕수, 조태용 또한 계엄지시서를 받아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인정하는지? 계엄 선포 후에 소방청장에게 경찰의 언론사 단전·단수 요청에 협조하라고 지시한 바 있나?	○ 증언하지 않겠음.
○ 12월 4일 왜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보자고 전화했는지?	○ 증언하지 않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핸드폰 교체는 왜 했는지?	○ 교체하지 않았음.
○ 대통령 지시사항 받았는지?	○ 증언하지 않겠음.
○ 김용현장관은 이상민장관에게 대통령 지시사항을 주었다고 정확하게 진술함.	○ 증언하지 않겠음.
○ 계엄이 선포되자 행안부장관으로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였는지?	○ 증언하지 않겠음.

(나) 허석곤 증인(소방청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월 3일 23시 37분경 이상민 증인이 경찰이 언론사 단전·단수 요청하면 소방청에서 적의 조치하라고 한 바 있나? 이상민 증인은 부정하고 있는데 둘 중 누가 거짓말 하는 것인가?	○ 그렇게 기억하고 있음. 제 기억에 따라 증언했음.
○ 경찰 요청 시라는 단서를 달아서 경향, 한겨레, MBC 등에 대해 단전·단수 지시를 하라고 협조를 내린 적 있는지?	○ 경찰 요청이 오면 소방에서 적의 조치하라고 말했음. 단전·단수는 소방업무가 아니고, 당시 옆에 있던 간부들도 이에 동의해 단전·단수 지시를 일절 하지 않음.
○ 이상민장관은 '안전에 각별히	○ 제 기억에 우선 소방 대응사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유의해달라’라고 이야기 했다던데 단전·단수 용어를 들었는지?	을 물으셨고, 이에 대해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리니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것이 있냐고 물으셔서 없다고 대답하였음. 이후 언론사 다섯 곳을 말씀하시고 경찰 요청이 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음
○ 계엄 시에 왜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는지?	○ 당시 급박한 상황이었고, 소방청은 상황판단 회의를 하면서 언론을 통해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음. 소방청 차원에서는 다수 사상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서 그쪽의 상황관리가 우선이었음. 단전·단수는 소방업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상자가 발생하면 본연의 소방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음.
○ 기본적인 복무의 업무지침이 아니더라도 장관께서 급박하게 말씀하시면 그것도 소방업무라고 파악하고 계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지?	○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음. 단전은 한국전력에서 하는 것이고, 단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임.
○ 국회에 군인들이 야간투시경을 착용하고 온 것을 봤으면 딴전·단수를 전제로 한 것이라는 판단 할 수 있는 것 아닌지?	○ 그렇게 판단하지 않음.

(다) 김봉식 증인(前 서울경찰청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3일 밤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에게 조지호 청장과 함께 계엄지시문건을 각각 건네받았나? 언론사 선관위 국회에 대해서 단전·단수 협조에 관해 적혀 있었나. 검찰 공소장에 윤석열이 행안부장관에게 단전·단수 지시가 담긴 문건을 건네줬다고까지 나와 있음.	○ 공소사실과 관련되어 답변하기 곤란함. 전혀 들은 바가 없고 아는 바가 없음.

(라) 이창용 증인(한국은행 총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비상계엄 언제 알았나? F4 회의는 몇 시에 했고 누구로부터 연락받았나? 어디서 회의했고 주관은 누가 했나? 최상목 부총리는 뭐라고 이야기했나? 회의 내용은? 예비비 확보 등 비상계엄 지시사항에 대해서 논의한 바 없나.	○ 12월 3일에 TV 보고 알았음. 11시 40분에 시작했음. 최상목 부총리로부터 연락받음. 은행연합회에서 했음. 주관은 항상 기재부에서 하고 있음. 최상목 부총리는 계엄 상황에 동의할 수 없어서 나왔다고 하고 사임하겠다고 해서 말림. 어떻게 하면 외환시장을 진정시키는지, 주식시장 열어야 하는지 여부를 논의함. 전혀 없었음. 시장 안정을 위해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하고, 아침에 다시 만나서 회의하자고 했음.
○ 비상계엄 이후 경제적 손실은 정도였나? 다음 날 7시 회의 내용은?	○ 계엄 해제된 상태였고 환율이 안정되기 시작해서 주식시장 열기로 했음. F4 회의는 예비비 등 예산과 관계 없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논의할 수도 없었음. 경제적 효과는 진행 중이어서 이 단계에서 말할 수 없고 상당한 데미지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음.
○ F4회의 당시 부총리가 사표를 제출하겠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 시장을 안정시킨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하였음.
○ F4회의 회의록이 존재하는지, 오후 7시40분경의 추가회의에 대한 회의록도 없는지	○ 비공식 회의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음.
○ 무제한 유동성 공급 방안이 F4 회의 직후 발표되었는데, 실제 구체적인 논의는 7시 회의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 무제한 공급 원칙은 11시 40분 F4 회의에서 결정되었고, 구체적인 방안은 7시 회의에서 논의됨.
○ F4 회의에서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계엄과 관련하여 위헌성 등을 논의하였는지.	○ 4 회의에서는 환율 및 금융시장 안정 논의에 집중하였고 계엄 관련 논의는 없었음. 계엄이 경제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음.
○ 계엄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는	○ 개인적으로 의견은 있지만 법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지 ○ 기재부가 계엄 당시 신속한 자금 마련을 지시받았는데 예비비를 즉시 마련할 방법이 있었는지, 대정부 일시대출제도(50조 규모)를 활용할 가능성은 있는지, 계엄 이후 기재부가 한은에 일시대출을 요청했을 경우 승인했을 것인지 ○ 계엄당일 밤 11시40분경 있었던 F4 회의에서 외환 및 주식시장 개장 여부 논의하였는데, 순수한 금융시장 안정 관련 논의를 한 것이지, 계엄 관련 기재부 장관이 받았다는 쪽지 예비비나 일시대출과 관련한 언급이 전혀 없었나?	률 전문가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움. ○ 한국은행을 통한 예비비 조달은 불가능함.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를 활용할 가능성은 있으나 한국은행이 용도를 심사해야 하며, 계엄 자금으로 요청했을 경우 거부했을 것임. 계엄과 관련된 요청이라면 거부했을 것임. ○ 없었음.

(마) 인성환 증인(국가안보실 2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월 3일 밤 10시30분부터 계엄이 해제된 새벽 1시까지 2시간 30분동안 어디에 계셨는지?	○ 처음 사무실에 간 것이 밤 11시 10분 정도였고, 10시 48분에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비서실장님 방에 올라갔음. 그 이후 안보실장님 방에서 12시부터 1시까지 국회에서의 계엄해제 요구안을 시청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윤석열 피고인이 수방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진두지휘한 사실을 전혀 몰랐는지?	○ 언론에 나오는 것과 같이 결심지원실 이야기는 CCTV를 보고 알았음. 전투통제실에 있었던 시간은 10분밖에 안되고 결심지원실에는 그 절반 정도 머물렀으며 중요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함.
○ 윤석열 피고인으로부터 '국회에 병력을 얼마나 넣었냐', '1000명' 과 같은 이야기를 그 10분 안에 들은 적 없는지?	○ 없음.
○ 계엄 해제 이후 법령집을 찾았는데, 2차장님이 가져다 주신 것인지?	○ 그렇지 않음. 법령집을 찾으셨던 기억은 있음.
○ 왜 찾으셨다고 생각하셨는지?	○ 그 이유는 알지 못함.

(바) 김대경 증인(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은 지금까지 몇 분의 대통령을 모셨는지?	○ 총 일곱 분의 대통령을 모셨음.
○ 일곱 분 모두 안가를 사용하였는지?	○ 정확히는 알지 못하나 많이 사용하신 것으로 알고 있음.
○ 증인은 안가의 관리와 관련이 있는지?	○ 보직을 받은 이후로는 관련이 있음.
○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사전에 보고없이 안가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지?	○ 시설물 관리는 담당하지만, 안가 사용 절차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드리기 어려움.
○ 안가 사용 승인과 관련된 결정은 누가 하는지?	○ 제 소관이 아니어서 즉답을 드리기 어려움.
○ 안가는 대통령 부부 외에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지? 혹여 과거에 사용한 적이 있는지?	○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 12월 4일 안가에 4명이 모였는데, 대통령이 안가에 가기로 되어 있었는지?	○ 제 소관이 아니고, 관여한 바가 없어 말씀드릴 수 없음.

(사) 이완규 증인(법제처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안가에 집합해라”는 연락을 누구에게 받았는지?	○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받았음..
○ 대통령이 올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 전혀 생각하지 않았음.
○ 안가를 이용하는데 대통령이 온다는 생각을 왜 하지 않았는지?	○ 절차를 몰랐기 때문에 대통령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음.
○ 12월 4일 대통령 안가에 갈 때 대통령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았는지?	○ 대통령이 올거라고 전혀 몰랐고, 이상민 장관의 전화를 받아서 갔음.
○ 안가 4인 회동에 대해, 법제처장이 먼저 이상민 장관에게 전	○ 계엄에 대해 궁금해서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고, 오전에 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화하지 않았나?	화가 왔음. 그 후 오후에 전화가 와서 저녁에 시간 되는지 물어봐서 안가에 갔음.
○ 안가 회동 밝혀지고 나서 핸드폰 교체했는가?	○ 그러함.

(아) 류혁 증인(전 법무부 감찰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 선포 당시 법무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길 바람.	○ 언론보도를 보고 계엄 선포 여부를 알게 되었음. 실국장 단톡방에서 비상소집이 있었고 법무부 청사에 12시쯤 들어갔음.
○ 과천에 도착하여 회의 안건을 받은 것은 없나?	○ 계엄 관련 회의인지에 대한 본인의 질의에 장관은 “예 그래요”라고 대답하였고 이후 지시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직의 뜻을 전하고 박차고 나왔음.
○ 법무부장관이 계엄 관련 후속조치를 위한 행위라는 언급이 있었나?	○ 당시 ‘예, 그래요’ 라는 말씀이 있었고 그 이후 실국장들과 통화를 해본바에 따르면 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논의하는 회의였던 것으로 보임. 그 당시 박성재 장관의 행위는 계엄선포를 불법으로 생각하거나 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엄선포에 의구심을 가진 사람으로 보기는 어려웠음.
○ 사직서를 바로 제출한 이유는 무엇인지?	○ 계엄령의 내용, 포고문의 형태 등을 볼 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폭력적이고 독재적인 언어를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그것을 따를지 여부는 본인에 달린 것이라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함.
○ 사직서 제출 당시 장관의 표정과 태도, 내용은 어떠하였나?	○ 화난 목소리로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였음.

(5) 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의 구체적 경위와 헌법 및 법률 준수 여부

(가)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법 제5조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끔 되어 있는데, 심의 안건을 보면 계엄사령관 임명과 관련된 안건이 없음. 국무회의에서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임명과 관련된 심의가 있었다는 것은 현재까지 파악 못함.
○ 심의 안건을 올리려면 국방부	○ 그런 문건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에서 작성을 해야 될텐데, 관련 문서가 없는지?	
○ 강호필 지작사령관도 지작사 예하 계엄군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는바, 합참의장이 김용현에게 12월 4일 03시 25분에 수방사 지휘를 환원받았다는 업무보고 문건이 나옴. 계엄군 지정이 없었는데 합참의장이 지휘권을 계엄사에게 합참으로 환원한 것인지?	○ 계엄사령부가 운영이 되는 상태에서 관련 부대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03시 25분은 장관이 관련 부대 투입인원에게 VTC를 통해 정상적으로 부대복귀를 명령한 시점으로 이해하고 있음.
○ 이는 군형법 제20조의 불법진퇴에 해당하며, 합동참모본부 역시 해당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	

(나) 박안수 증인(전 육군참모총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 내 군부대를 계엄군으로 운용할 경우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함.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정보사를 계엄군으로 지정하고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나?	○ 그런 과정은 없었고, 장관님께 대통령께 지휘·감독권을 위임받으셨냐 여쭤보니 그렇다고 답하였음.
○ 강호필 지작사령관도 지작사 예하 계엄군이 없다고 답변한	○ 계엄사령부가 운영이 되는 상태에서 관련 부대들이 임무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바 있는바, 합참의장이 김용현에게 12월 4일 03시 25분에 수방사 지휘를 환원받았다는 업무보고 문건이 나옴. 계엄군 지정이 없었는데 합참의장이 지휘권을 계엄사에게 합참으로 환원한 것인지?	수행하고 있었으며, 03시 25분은 장관이 관련 부대 투입인원에게 VCT를 통해 정상적으로 부대복귀를 명령한 시점으로 이해하고 있음.

(6)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의 임명과 포고령 포고 경위

(가) 박안수 증인(前 육군참모총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으로부터 12월 3일 포고령 하달했느냐는 전화를 받고 뭐라고 답변했는지?	○ 하달되었고,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라고 해서 알겠다고 말씀드림.
○ 경찰청장에게 전화해서 포고령 내용을 다 설명했는지?	○ 다 설명할 겨를은 없었고, 포고령 하달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장관님 말씀하신 것 알려드림.
○ 계엄사령관으로서 포고령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고 사인한 것은 맞는지?	○ 솔직히 포고령의 내용이 맥락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한 것은 아니었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었음.
○ 경호처에서 비화폰 받았는지?	○ 받지 않음.
○ 김용현장관에 의하면 12월 3일에 국무위원회에 계엄선포문을	○ 보았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배포를 했는데, 증인은 계엄선포문을 보았는지?	
○ 그 당시 증인은 어디에 있었는지?	○ 그 시점은 계엄선포 후 전군지휘관회의가 끝난 상황으로 전투통제실에 있었음.
○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당시 군인들이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것임을 미리 알았다고 주장함. 증인은 계엄 지시가 부당한 지시라고 생각을 했는지?	○ 당시에는 대통령의 지시가 법적·절차적 이상이 없었다고 생각함.
○ 증인은 계엄사령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 육군참모를 올라오라고 지시한 것은 맞으나 병력 투입 등과 관련하여서는 저에게 보고된 바가 전혀 없음.

(나)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선포를 위한 결심절차, 계엄사령부 편성 등은 계엄법, 국방전쟁수행지침 등 관련 계획문서에 따라 절차가 진행되는 게 맞는지?	○ 맞음.
○ 계엄법 5조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 심의 거쳐 임명하게끔 하고 있음. 그러나 국무	○ 확인하지 못함. 관련 문서가 국방부 내에는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회의 심의안건에는 계엄사령관 임명과 관련한 안건은 없음.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임명 관련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7) 계엄선포 전 병력 및 경찰력 동원을 위한 준비사항

(가)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서 '선거의 부정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점검하는 차원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군과 경찰이 투입되고, 영장 없이 당직 직원 5명이 구속되고 휴대폰이 압수되었음. 비례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는지	○ 개인적 의견으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함.

(나)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3 내란 당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화암사 매표소 인근에 특수요원들이 대기중이었으며, HID 속초 돼지부대 요원들 몇 명이 동원되었나?	○ 내용을 이 자리에서 처음 들음.
○ 12월 2일 오전 문상호 정보사	○ 파악하고 있지 못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령관이 계획에 없던 대통령실 상부 보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파악 되었는지? ○ 각 특전사 여단별 1개 대대씩 운영되는 신속대응부대는 평시에도 실탄, 장비 등을 일체화하고 있는데, 이 인원이 출동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 출동인원들은 훈련현장 출동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훈련을 위한 출동의 준비태세였음.

(다) 양황석 증인(한양대 학군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3년 10월 26일 야간에 부대원 소집을 통해 부대원들에게 대북전단 살포 작전이 11월 1일 전에 있을 것이며 북한이 책임을 물을 경우 민간단체가 살포한 것으로 해명할 예정이라고 하고, 합참 전비검열 때도 관련 장비를 은폐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린적 있는지?	○ 사실이 아님.

(라) 구삼회 증인(前 육군 제2기갑여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은 전차·장갑차 부대를 지휘하는 장군인데 계엄 선포 직	○ 수사 중인 사안이라 진술이 제한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전에 왜 정보사령부 판교 사무실에 있었던 것인지? ○ 기갑부대를 계엄군으로 동원하려고 했는지?	○ 전혀 사실이 아님.

(마)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각 특전사 여단별 1개 대대씩 운영되는 신속대응부대는 평시에도 실탄, 장비 등을 일체화하고 있는데, 이 인원이 출동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 신속대응부대는 그 당시 경계태세 2급이 같이 선포되다 보니, 평상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던 탄이 그대로 같이 나간 것임. 비상계엄령 때문이 아니라, 장소도 국회가 아닌 관악청사 쪽으로 임무를 부여받고 갔던 부대들임.

(8) 주요 헌법기관 등의 점거 경위

(가) 오부명 증인(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회가 12월 4일 새벽 1시 1분에 계엄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국회 전면 차단이 유지되었고, 실제 봉쇄가 해제된 것은 약 40분이 지난	○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새벽 1시 45분경이 맞는지?	
○ 증인이 새벽 1시 11분 전화, 1시 15분 문자로 국회 봉쇄 해제 건의를 했음에도 경찰청장은 임정주 경비국장을 통해 계속 전면 차단하라는 지시를 하였는지?	○ 그러함.
○ 이후 증인의 건의에도 별도의 지침이 없어 새벽 1시 45분경 서울청 자체적으로 국회 출입 허가 결정을 내린게 맞는지?	○ 서울청장이 결정해서 무전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나중에 듣기로 서울청장이 해제 직전 경찰청장과 통화했다는 사실을 확인함.
○ 새벽 1시 54분경, 임정주 경비국장이 증인에게 “서울청이 자체적으로 전면 차단을 해제한 것이 잘한 결정이었다”고 이야기 했는지?	○ 전화가 왔었음.

(나) 김봉식 증인(前 서울경찰청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도 경찰청장이 국회 봉쇄 유지를 고수하였는데, 통화 및 문자 내역을 확인해 보니, 증인이 해제를 결정하였음. 당시 입장이 어떠했는지?	○ 새벽 1시 40분이 지나면서 계엄군이 상당 부분 철수하는 상황이 되면서 해제를 해도 될 것 같다고 서울청 차원에서 자체 판단함.
○ 경찰청장의 지시가 없었는지?	○ 경찰청장에게 전화로 건의한 이후 해제된 것으로 기억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그럼 증인이 자체 해제 결정을 내리고, 경찰청장한테 건의한 후 해제가 되었다는 것인지?	○ 예.
○ 경찰이 계엄군을 위해 국회의 문을 열어주고 안내해주는 상황은 누가 지시한 것인지?	○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서울청장으로서 지휘책임을 통감함. 다만, 현장의 직원들은 포고령 등의 위법적인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지시에 따라 움직인 것임.

(다) 김용빈 증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왜 계엄이 있었으며, 선관위를 왜 침탈했다고 생각하는지?	○ 답변 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음.
○ 윤석열 대통령이 재판소에서 엉터리투표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것인지?	○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 되었던 것임.
○ 이번에 국정원에서 검사를 할 때 선관위가 전산시스템 모두 개방했었는지?	○ 선관위에서는 조치를 취해주고 자료를 제출했음.
○ 계엄군이 선관위 당직자 5명의 핸드폰을 압수했다고 선관위에게 자료를 받았는데, 맞는지?	○ 맞음.

(라) 박안수 증인(전 육군참모총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건 이유가 무엇인지?	○ 안보실장 통화 당시 병력 추가 투입이나 철수를 말씀하셔서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 연결이 잘 안되었음.
○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로 무슨 이야기를 했나?	○ 병력들의 위치, 추가 투입하면 안된다는 말씀 전달, 국회 내 일반 시민들과의 이격 상황 등을 확인하였음.
○ 진술 내용을 보면 박안수 사령관이 '들어가라. 왜 못들어가냐.'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이와 전혀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음.	○ 전혀 그런 사실이 없음.

(9)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에 관한 사항

(가) 박현수 증인(행정안전부 경찰국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00시 41분에 강상문 영등포서장에게 전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 국회 주변이 혼잡스러워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 전화함.
○ 국회 주변 질서유지는 기동대	○ 당시에는 영등포서장이 전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역할이고 당시 기동대 총괄 지휘는 서울청에서 하고 있었는데, 영등포서에 전화한 이유가 무엇인지?	관장을 한다고 생각했음.
○ 계엄당시 영등포서 형사 60명이 정치인 체포조로 동원 되었는데, 형사 배치 관련해 강상문 서장과 통화할 때 이야기 했는지?	○ 체포조는 전혀 인지하지 못함.
○ 이상민 전 장관이 서울청사에서 퇴청하기전에 혹은 퇴청하면서 경찰청장에게 상황파악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지?	○ 전혀 그런 바 없음.

(나) 곽종근 증인(前 특수전사령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당일 이진우 사령관과 몇번 통화했으며, 내용이 무엇인지?	○ 정확히 횟수는 기억을 못하겠으나 헬기 때 관련 공역 문제 때문에 전화했고, 1여단과 707 관련으로 중간에 한두 번씩 전화했음. 내용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협조 문제때문이었던 내용이 있었음.
○ 국회의원 체포와 관련해서 통화한 적 있나?	○ 관련해서 통화하거나 논의한 적 없음
○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가서	○ 그렇게 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진술할 때 소신을 가지고 정확하게 진술해줄 수 있는지?	

(10)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의 동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가) 곽종근 증인(前 특수전사령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12월 6일 현역군인과 어울리지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뷰함. 현역 군인이 외부 인터뷰할 때 상급부대 사전승인 필요한 것 알고 있었나. 누가 먼저 연락했나. 그 전에 통화한 적 없나.	○ 알았음. 당일날 민주당에서 항의방문 온다고 해서 내려간 것임. 12월 6일 오전에 통화한 것은 제가 맞음. 김병주 의원과 통화했음.
○ 12월 6일 유튜브에서 사령관은 의원을 끌어내라는 의미냐고 묻자 동의함. 최초에 한 말과 몇 초 사이에 바뀜. 12월 5일 야간 예하 모 지휘관과 통화하면서 “내일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부하들이 다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울면서 말한 적 있나? ‘특단의 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12월 6일에 인터뷰한	○ 12월 5일 부하들과 얘기한 사항들이 있었는데 특단의 조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와 연관된 것은 아니었음. 5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비화폰은 녹음이 안 되니까 당당하게 가라고 얘기해서 진실을 감추고 입을 닫으라고 이해를 했음. 이 상황이 그렇게 갈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대로 밝히겠다고 마음을 먹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것인데 특단의 조치가 이와 관계 있나?	
○ 12월 10일에 오전 회의 마치고 점심 먹고 휴식 어디 가서 취했나. 누가 들어왔나? 민주당 전문위원과 의원들이 들어오지 않았나? 제보에 따르면 사령관이 회유당했다고 함. 박범계 의원이 요구한 게 무엇인가. '녹취하겠다, JTBC 방송 촬영하겠다' 기억나지 않나? 공익신고자로 추천해주겠다는 이야기 있었나?	○ 3층 회의실에서 쉬었음. 대화는 있었음. 누구의 사주를 받거나 요구를 받거나 한 사항은 아니었음. 유튜브 내용은 스스로 판단해서 한 내용이 분명함. '의원'과 '요원'의 문제는 요원은 12월 4일 01시부터 들어갔던 707특임단 요원 인원들을 빼내라는 것이 맞음.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것도 00시 20분부터 35분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 맞음. 707특임단장과 작전요원 빼내라는 말을 하고 있었는데 김병주 위원께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거죠?"라고 되물으셔서 두 가지 다 사실이 맞기 때문에 맞다고 답변한 것임.
○ 윤석열 피고인이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증인에게 지시한 적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분명히 지시한 것인가. 김용현 피고인은 요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답변했으나, 증인은 국방위에서 190명이 아직 다 찼는지 확인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족수가 차기 전에 끌어내라고 이야기했	○ 명확히 지시하셨음. 대통령께서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하셨고,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함. 당시 시점에서는 요원들이 본관에 들어가있지도 않은 상황이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음. 당시 맥락상 국회의원 외의 표적물이 따로 있었나?	
○ 윤석열 피고인은 본인이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철수하라고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가? 누구의 판단으로 철수한 것인가?	○ 지시받은 바 없음. 철수 지시는 01시 01분에 비상계엄 해제안 의결된 상황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서 국회, 선관위,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다고 답변함. 김용현 전 장관이 “알았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답변함.
○ 윤석열 피고인은 국회의 질서 예방용으로 군이 들어갔다고 말했음. 경내 안팎으로 국회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있었는데 군이 개입할 만큼 치안이 우려되었나?	○ 비상계엄 상황 전이나 중간에 어느 누구로부터 질서를 유지하라, 시민을 보호하라, 경고용이라는 말을 들은 바 없음.
○ 국회를 확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현장 지휘관들의 판단에 따른 철수 지시와 후속 조치를 자신들이 조치를 취했다고 가로채기를 한다는 뜻인가?	○ 시설을 확보하라는 의미는 그 의미를 구현하기 위해서 해야 할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지침을 두는데 그런 것이 없었음. 현장에 있는 지휘관, 707 특임단장과 작전요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하고 대응한 결과물임.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님. 동의함.
○ 본인이 먼저 양심고백을 하겠다 해서 의원들에게 갔다는 것	○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했음. 그렇게 보실 수도 있으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이 사실인가. 민감한 시기에 특정 정당 의원들과 여러 논의를 하는 것이 오해를 살 만한데 그런 생각하지 않았나?	당시에는 경황이 없는 상태였음.
○ 01시 02분 경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결의안이 통과된 것 언제 알았나? 무슨 조치 했나? 병력을 철수시키겠다는 것은 사령관이 먼저 결심하고 김용현 전 장관에게 건의한 것 맞나?	○ 2분 정도 뒤 01시 03분경임. 바로 김용현 전 장관과 전화 통화했고 국회·선관위·민주당사·여론조사 꽃 출동 임무 중지하고 철수시키겠다고 말씀드리고 철수시킴. 맞음.
○ 김용현 전 장관이 “좀 더 있었으면 좋을 텐데”라고 말했나. 대통령이 본인이 지시해서 철수했다는 것은 거짓인가?	○ “알았다. 조금만 더 버텼으면 좋았을 걸” 하고 전화 끊고 철수 지시 시작함. 내부에서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지시를 직접 지시받지는 않았음. 이진우 사령관도 특전사 철수하는 것 보고 따라서 철수했다고 함.
○ 윤석열 변호인이 ‘요원’을 끌어내라를 ‘의원’을 끌어내라로 둔갑시켰다는 말에 동의하나? 의원을 끌어내라는 것이 정확한 것 아닌가?	○ 동의할 수 없음. 정확함.
○ 계엄 선포 후 대통령과 비화폰으로 몇 회 통화하였는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 12월 3일 23시45분경 첫 통화는 헬기 관련 투입 보고였음. 4일 00:20~00:30에 이루어진 두 번째 통화에서 대통령이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요원을 끌어내라는 군 철수 지시는 없었으며, 본인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철수를 결정하였음. 12월 6일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 전화가 왔으나 받지 않았음.
○ 특전사를 출동시킨 이유가 계엄 때문인지, 국회 질서 유지 목적은 아닌지	○ 계엄 때문에 출동하였음. 국회 질서 유지 목적이 아닌 본관 시설 확보 목적이었음.
○ 707특임부대는 언제 국회에 도착하였는지, 본관 출입문으로 이동한 이유는 무엇인지	○ 23시 47분경 헬기장 착륙 후 국회의사당 본관으로 이동하였고 출입문 중심으로 시설 확보 및 경계를 위한 이동이었음.
○ 국회의원 출입을 제한하고 본회의 개회를 막으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국회 본관을 확보하라는 지시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 출입 제한 및 본회의 방해 지시는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작용할 수 있었음. 국회 본관을 확보하라는 명령만 받았으며, 명확한 행위 제한 지시는 없었음.
○ 결국, 대통령과 국방부는 '질서 유지'라는 명목으로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것인데 평화로운 계엄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 계엄이 평화롭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음.
○ 질서 유지를 위해 실탄이 불출되었는지, 특전사 병력이 개인적으로 실탄을 소지하였는지	○ 실탄은 개인이 소지하지 않고 통합 보관했음 대통령이 '질서 유지, 시민 보호, 경고용'으로 특전사를 배치했다고 주장했으나, 본인은 그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런 지시를 받은 적 없음.
○ 대통령이 00시 20~40분경 직접 전화해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말을 했는지? 계엄 해제 방해 의도가 맞는 것 아닌지	○ 비화폰으로 대통령과 직접 통화했고, 대통령이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사실임. 본인은 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작전 중지를 명령함.
○ 검찰에서 진술할 때 사실대로 증언했는지, 특정 목적이나 회유가 있지 않았는지, 부하들에 대해 어떠한 생각인지	○ 검찰에서 사실 그대로 증언했으며, 특정 목적 없이 진실을 말하고 있음. 예하 여단장들과 작전요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했으며, 이들이 계엄 해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결정을 내렸음. 부하 장교 및 장병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함.
○ 계엄 당일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하였는지 각 통화의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 두번 통화하였음. 첫 통화에서 대통령이 국회 이동상황을 확인하였고 두 번째 통화에서 의결정족수가 안 된 것 같으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
○ 김병주위원과 박선원 위원과의 인터뷰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와 함께 707특임대 요원을 철수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한 것 아닌지, 왜 청문회에서 진술을 번복하는지	○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맞으나 707요원 철수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명령한 것임 인터뷰에서 "두 가지 모두 사실"이라고 말했으나, 지시받았다는 의미는 아니었음.
○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로 보호해 주겠다, JTBC인터	○ 공익신고자로 보호해 주겠다는 말을 한 것은 맞음. 현장에 기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뷰를 주선하겠다고 회유당한 것은 아닌지	자가 있었던 것도 맞음.
○ 김용현 전 국방자관이 소집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가 실제로 개최된 것인지?	○ 화상회의는 열려 있었으나, 국방장관은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에게 개별적으로 비화폰으로 지시를 하였음. 나가서 임무 수행해도 좋다는 지시를 받고 나간 이후의 회의상황에 대해 알지 못함.

(나) 박안수 증인(전 육군참모총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 해제 결의 직후 대통령이 집무실로 호출하였는지	○ 대통령이 결심실 방문 후 장관과 함께 회의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았음. 02시50분~03시 사이에 대통령이 철수지시함.
○ 결심실을 떠나 대통령 집무실로 김용현 장관과 가서 3시 경 군 철수 지시 받은 것인지?	○ 그러함
○ 군을 철수하라는 지시는 그때 처음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그때가 처음이며, 시간은 2시50분에서 3시 사이였음
○ 2차계엄 관련해서 육군본부에서 3시경에 합참으로 군 병력을 이동시킨 것에 대한 질문 받았는데, 본인이 3시에 지시한 것이 맞다는 것이 확인되었는	○ 지시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 정책실장 보고에 의하면 정책실장이 육군본부로 전화를 받아 '이동한다고 합니다'라고 보고한 것이라고 들었음. 다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지?	당시에는 육군본부의 움직임에 대해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
○ 본인이 최종적으로 움직이라고 승인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임	○ 정책실장 말씀은 그렇지만, 거기 관심 가질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음
○ 대통령이 군을 철수시키라고 했던 시점과 본인이 그 승인을 한 시점이 전후로 어떤 것이 더 빠른 시점인지?	○ 승인한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말씀하신 시간은 2시50분에서 3시 사이였고 그 전에 병력은 이미 다 철수되었음
○ 군병력이 완벽하게 철수가 된 것은 새벽 4시 이후인데?	○ 그러함. 저는 수방사, 특전사와 언론에 나오는 국회에 있는 병력이 전부인줄 알고 있었고 새벽 2시경 안보실장님이 전화해 그 병력들이 투입되면 안된다고 말씀하셔서 지금 병력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림
○ 2시경에 신원식 안보실장이 본인에게 전화한 것인지?	○ 그러함
○ 통화로 군을 철수시키라고 이야기 한 것인지?	○ 군이 안전한 곳에 있어야 하므로 투입하지 말라고 말씀하심. 당시 제가 병력을 통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리니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음. 그래서 저는 수방사령관, 특전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병력이 안전한 지역에 있는 것을 확인한 상태에서 대통령실로 갔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안보실장 이외에 용산 쪽과 통화한 사람이 있는지?	○ 안보실장과 2번 통화하고, 그 이외에는 통화한 바 없음
○ 2번 통화하였는데 어떤 내용이었는지?	○ 주로 병력 철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음. 특전사령관과 수방사령관 두 분에게 전화하면 철수할 것 같아서 전화 했는데, 수방사령관은 전화가 잘 되지 않아 2~3번 전화하였음. 특전사령관에게 국회 내 안전한 곳에 있고 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국민들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안한다는 사실을 확인받음
○ 안전한 곳에 빠져있으라는 것이 병력 철수 지시는 아니라고 보임	○ 투입하지 말라는 것이니 철수한 것임.
○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는 계속 군은 가야 되기 때문에 계엄사령부도 마지막까지 계속 존속시키고 마지막까지, 그래서 또 육본도 3시에 출발시킨 거 아닌지? 지난번과 말이 달라진 것 같음	○ 그렇지 않음. 제가 이전에 군이 가야한다고 말씀드린 것은 군 전체가 아니라 상황실을 말씀드린 것임. 상황실은 가야하나, 병력을 통제하거나 운용하지 않아 실장님 전화 받았을 때도 확인해서 이상 없다고 말씀드렸음. 상황실의 경우 상급자가 상황종료를 해야 끝나는 것임. 그래서 육군본부는 와도 계획도 없고 임무 수행을 위한 훈련도 안하고 매뉴얼도 없어서 와도 임무수행을 하지 못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함. 그래서 육본의 움직임을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었음. 전날 합참에서 상황실 구성 이후 육군본부에 대해 임무를 알려주거나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단순히 올라오라는 지시만 한 상태에서 진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병력을 통제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장군들 13명, 영관급 21명을 육군본부에서 1시 30분에 준비해서 3시에 출발시켰는데 이것에 병력통제 아닌지?	○ 그 부분은 계엄 상황실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전날 22시 40분에서 23시 사이 상황실에는 아무도 없었음
○ 상황실을 만든 목적이 군 통제 아닌지?	○ 그러함. 보고를 받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참모요원이 필요하거나 사령부가 구성이 돼야 함.
○ 그 자체가 2차계엄을 준비한 것임	○ 그렇지 않음 22시 47분의 그 이야기는 장관님께서 계엄사령관은 상황실을 준비하라고 명확하게 지시하셨고, 그래서 내려가서 준비하는데 계엄과의 지원도 없고 계엄과도 아직 오지 않아 오라고 한 것 뿐임.
○ 03시경 정책실장에게 참모들이 육군본부에서 출발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는지?	○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현재 상황실이 구성 중이니 출발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기억은 있음.
○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국방부	○ 그 결정은 위에서 해야 되는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장관을 찾으러 가니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오고 있었다고 했음. 본인은 계엄이 해제되었으니 군인을 철수시켜야 된다고 말하려고 간 것인지?	문제고, 다만 참모들간의 회의에서 군인을 철수시켜야 된다는 말이 나왔음을 전해주기 위해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철수명령은 새벽 3시에 내려옴. 결국 계엄해제 시점과 군인 철수시점에 여전히 2시간의 공백이 있음.	○

(다) 고석현 증인(육군참모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월 3일 22시 40분에 전군 경계태세 2급 발령이 되었는데, 경계태세 격상을 언제 인지하였는지?	○ 23시 20분쯤임.
○ 단편명령 제24-43호가 전군에 공문으로 전파되었는데, 해군·공군·해병대 다 받았는데 육군만 접수가 안되었다고 함. 왜 안왔는지?	○ 잘 모르겠음.
○ 왜 접수가 안되었는지 확인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닌지?	○ 구두로 처음에 전파가 되었고 그 다음에 문건이 왔는지는 확인을 안 해봄.
○ 비상계엄 당일 23시 20분경 차장은 총장의 지시에 따라 계엄참모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군	○ 최초 총장이 지시가 변경·취소되었다는 보고가 없었고, 03시에 총장에게 승인을 받고자 했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참부장이 차량이나 장비가 03시경 준비된다는 말을 듣고 03시에 육군본부에서 출발하기로 하고 모인 인원은 일단 해산함. 그런데 그 와중에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이 있었음. 차장은 상황이 변화하였음에도 03시 출발 계획을 그대로 이행한 이유는?	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같이 있던 정책실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출발을 시킴.
○ 육군본부에서 인원이 03시경 출발한 부분이 마치 국민에게 2차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었음.	○ 그때 당시에 육군본부에는 어떤 정보도 공유되지 않음. 단지 뉴스 하나만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제한적이었음. 그래서 총장에게 연락을 시도했던 것임.
○ 3성 장군으로서 뉴스에 나오는 상황을 토대로 스스로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 당시 올라가는 인원이 어떤 작전을 수행하는지 등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고 단지 올라오라는 지시만 있었을 뿐임. 상황공유가 일절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한 정무적 판단이 상당히 곤란했음.

(라) 김봉식 증인(전 서울경찰청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 당일 국회에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것이 위법하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도 출	○ 포고령 이전에는 국회 출입을 허용했으나, 이후 급박한 상황에서 상급청 지시에 따라야 할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입차단을 강행하였나?	지 판단이 필요했음. 법무부나 대검의 공식 입장이 없었으며, 경찰이 즉각 결정해야 했기에 상급청의 지시를 어기는 것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나 이를 현장 직원들에게 강요하기는 어려웠음.

(마) 오부명 증인(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 당일 서울청 8층 상황지휘센터에서 당시 참모들 대다수가 국회에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는 것이 위헌·위법하다는 건의를 했으나 서울청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음. 당시 증인은 어떤 의견을 냈나?	○ 처음 1차 차단 조치를 했을 때는 위법한 출입조치를 보고 저와 참모들이 청장님께 건의를 드렸고 청장님께서 그 의견을 수렴하여 1차 차단해제가 이루어졌음.
○ 계엄 당일 조지호 청장이 포고령을 인지한 밤 11시 37분 국회가 다시 전면 봉쇄 되었나?	○ 그러함.
○ 계엄 당일 밤 11시 41분부터 48분까지 7분 사이에 총 세 차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과 통화하며 국회 전면차단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나?	○ 한 번은 통화가 잘 안되서 총 세 번 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두번째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때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면서 전면통제를 유지시켰나?	○ 당시에는 조지호청장님의 말씀은 듣지 못했고 본청장 지시대로 하라는 말만 들었음.

(11) 계엄해제 의결 후 해제 공고 지연에 관한 사항

(가) 인성환 증인(국가안보실 2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 해제 이후 법령집을 찾았는데, 2차장님이 가져다 주신 것인지?	○ 그렇지 않음. 법령집을 찾으셨던 기억은 있음.
○ 왜 찾으셨다고 생각하셨는지?	○ 그 이유는 알지 못함

(나) 곽종근 증인(前 특수전사령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이 유튜브에 나와서 설명한 영상을 보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 요원들을 밖으로 좀 빼내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질의답변 과정에서 본관 안에는 요원들이 들어가 있지도 않았고 빼낼 요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함. 왜 말이 이렇게	○ 유튜브에서 말한 발언은 제가 인원 및 요원이라는 표현을 같이 써서 발생한 문제임. 김용현 장관이 의사당에 있는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말씀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바뀌는건지? ○ 공포탄, 테이저건 사용 금지와 관련해 증언이 갈리고 있는데, 누가 공포탄이나 테이저건 사용을 금지한 건지? ○ 공소장에는 특전사령관이 계엄사령관에게 사용을 건의했고, 계엄사령관이 거부했다고 나와 있는데, 정확히 답변해야 함.

(다)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월 4일 새벽 결심지원실에 대통령과 함께 있었는지?	○ 없었음.

(라) 박안수 증인(前 육군참모총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결심지원실에서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지?	○ 정확히 기억하지 못함.
○ 12.3. 내란 이후 증인은 국회 및 수사기관에서 같은 질문을 여러번 받았을 텐데 기억을 못할리 없다고 생각함.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 여러번 생각을 했지만 특별히 기억나는 말이 없고,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웠으며, 특정한 토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님.
○ 결심지원실에 사람이 많았는지?	○ 처음에는 조금 많았지만 나중에는 본인을 포함한 3명만 남아 있었음.
○ 김용현 前장관은 뭐라고 말했는지?	○ 그 부분도 잘 모르겠음.

(12) 내란범죄 수사주체 논란과 수사상황 점검

(가) 이상민 증인(행정안전부 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수사기관에는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는지?	○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에 24시경 대통령 집무실로 다시 들어온 이상민 장관에게 언론사를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비상계엄 선포 이후 조치사항을 지시하였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됨. 이는 장관이 검찰이나 공수처에 추가 진술을 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 공소장은 검사의 주장일 뿐이며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음

(나) 이완규 증인(법제처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이 없으며,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니면 재직 중 소추되지 않으므로 공수처가 대통령을 수사하거나 기소할 권한이 없다는 다수 의견이 존재함. 따라서 공수처가 검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부지법에 직접 청구한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고 봄.	○ 헌법은 영장청구권을 공소권을 가진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므로, 다수설에 따라 공소권이 없는 공수처 검사의 검사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움. 검사의 그러한 영장청구에 대한 최종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리게 될 것으로 생각됨.

(13) 기타 국정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일체

(가) 김용빈 증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중앙선관위 시스템의 미비점과 개선점을 공개해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소쿠리투표로 지탄이 있었을 때도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는데, 비리나 문제점에 대해서 외부기관의 감사받으면 개선이 되는 것이지 왜 독립성이 저해되는 것인가?	○ 헌법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외부 통제, 내부 통제 다 문제가 있음.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겸하고 있는데 한 달에 몇 번 출근하나? 시스템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함. 비상근 체제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상호 독립적이어야 할 법원과 선관위가 한 몸처럼 이어져 있다는 비판도 제기됨.	○ 1달에 1번 정도 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그 외에 월 2회 정도 출근함.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입법적 사항임.
○ 채용비리 관련 감사원 감사에서 선관위 사무차장·사무총장 자녀 채용 시 자리를 일부러 만들어서 뽑았고 면접위원 전원을 친분이 있는 내부직원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로 구성하는 등 경력경쟁 채용에서만 800여건의 규정위반이 발견됨. 외부통제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함.	
○ <더 플랜>이라는 다큐멘터리에서 김어준의 주장에 따르면 부정선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어떤 것이 문제인지 설명해달라.	○ <더 플랜>에서 주장했던 대부분의 내용은 전산조작의 가능성, k값으로 보정한다는 내용이었음. 당시 선거소송이나 관련된 형사소송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이 밝혀진 것으로 알고 있음.
○ 선관위가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함. 선관위의 노력이 없으면 탄핵정국 이후에도 정치적 혼란,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함.	○ 본인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개선하고 정리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함.
○ 소쿠리투표 등이 논란이 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서 7년간 162회 중 104회 채용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확인됨. 문제를 인정하고 재발 방지 노력하고 있나?	○ 소쿠리투표 등은 선관위 책임이 맞음. 채용비리 의혹 일부 있었던 것 맞으나, 권익위 적발한 내용은 실제 정리된 것은 4건 정도이고 나머지는 입건조차 되지 않음.
○ 전산서버도 관리 허술하다는 것이 국정원 점검 결과 나타남. 잘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해가자는 것임.	○ 동의함.
○ 선관위원장을 대법관 중 1명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겸직하다 보니 제대로 된 책임자가 없음. 헌법기관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나오고 있음.	
○ 사전투표 제도가 사실상 1차, 2차 투표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제도가 기형적으로 운영되면서 주권이 동일 시점에서 행사되지 않고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투표의 등가성이 침해받는다는 주장인데 공감하나? 해외 사례 등 고려하여 대안을 같이 고민해보면 좋겠음.	○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은 알고 있음.
○ 스카이데일리에서 보도한 중국인 해커 99명 체포 뉴스가 가짜뉴스 맞는지?	○ 가짜뉴스 맞음.
○ 지난 5년 간 150건의 부정선거 소송에서 선관위가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론이 지속되는 이유는?	○ 선관위가 대응을 소극적으로 한 점도 있음.
○ 부정선거론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선관위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여러 방안을 고려해보겠음.
○ 선관위원장의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위원의 구성 중 그나마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 대법원장이 지명	○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한 3명이 아닌지?	
○ 중앙선관위, 지방선관위를 비롯하여 법관이 맡는 것은 가장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취지도 있음.	○ 공감함. 다만, 책임성이나 효율성의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음. 만약 제도 개선을 한다면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함.
○ 국민들의 상당수가 부정선거 의혹을 갖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선거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사전투표제의 문제점을 고려해 본투표를 금·토·일 3일간 실시하는 등의 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사전투표제 시행 시 일정 부분 통합선거인명부를 전자정보로 관리하는 영역이 생길 수 밖에 없음. 선거 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모든 절차가 명확히 운영될 필요가 있으나, 선관위가 특정 방향의 제도 변경을 제안하기는 어렵고, 사전투표제 개선 논의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해주시길 바람.
○ 선거결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려는 선관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것은 선관위 자체의 부패에 더해 지역이나 중앙선관위 위원장을 법관이 맡는 부분에 대한 삼권분립의 문제도 있음. 선관위에서 앞서서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치권에서 여야가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풀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함.	○ 동의함.

(나)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정보사령부가 계엄과 관련해 불법적으로 동원되었다면, 군검찰단에서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직무대행으로서 군 검찰단에 수사지시할 의향이 있는지	○ 의견을 참고하여 군 검찰단에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
○ 현재 휴전선에서 우리 군이 상황을 충분히 통제하고 있는지, 합참의장과 직무대행 간의 협조체계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지	○ 휴전선 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우리 군이 상황을 장악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안심해도 좋은 상황임. 합참의장과의 협력도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국방상 문제는 없음.
○ 스카이데일리라는 인터넷 매체가 지난 1월 16일에 계엄 당일 미군과 계엄군이 합동으로 작전을 펼쳐 선관위 연수원에서 선거조작을 한 중국인 해커 99명을 체포해서 일본 오키타와 미군기지로 이송했다는 기사를 냈는데, 계엄군이든 국군이든 이런 작전을 수행한 바 있는지?	○ 없음.
○ 이에 대해 주한미군과 미국 국방부는 강력하게 부인하는 입장을 냈는데, 대한민국 국방부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 별도로 국방부가 대응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담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해제결의안이 의결되고 2차, 3차 계엄을 계속 추진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있고, 추가 출동 인원을 검토까지 했는데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계엄사령부가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내용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졌고, 03시 어간에 병력을 철수하고 완전히 종결시켰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 종료가 됐던 것으로 파악함. 그것이 2차, 3차라는 또 다른 차원의 계엄과 연계된 것이 아니라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졌던 계엄사령부 상황실 내의 상황으로 파악함.
○ 2024년 10월부터 군 사이버 정찰 TF가 운용되었고, 방첩사·정보사·777사 등이 방첩정보협의회를 구축하였는데, 국방부는 2018년 5월에 사이버 심리전을 공식적으로 폐지한 바 있는지?	○ 예.
○ 사이버 정찰 TF는 고려대 사이버국방학과를 졸업한 최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되어 서울 시내 카페를 돌며 해킹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데, 2000개의 표적은 북한이나 중국, 러시아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민간인 사찰 및 외교적 문제 비화 우려가 있으므로, 국방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 정찰 TF는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업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고, 민간 사찰과 관련된 사이버 심리전은 사실이 아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또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방첩사령부 내 인지전을 위해서 TF 조직 신설을 검토를 지시하고, 당시 참모장 소형기 소장이 인지전 전담팀 신설을 추진하며, 인지전 전문가를 전담팀장으로 내정했다는 등 의혹에 대해 국방부와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촉구함.	○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인지전이 국제적으로 이슈화되어 그와 관련있는 다양한 기관이 인지전에 대한 임무, 기능,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노력하는 과정이고, 별도의 여론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님.
○ 국방부에서 제출한 계엄 시 탄약 및 수류탄 일체 불출 현황 자료마다 차이가 존재하는바, 특히 1월 13일 보고와 14일 국정조사 자료 간에 약 3만 발의 차이가 발생해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 및 설명이 필요함.	○ 보고된 탄약 수량 차이를 인지하고 있으며, 탄종별 계산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 추가 조사를 지시한 상태인바, 정확한 수치가 확인되면 다시 보고드리겠음.

(다) 김대경 증인(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민간인 노상원에 대한 비화폰은 경호처에서 지급한 게 맞는지?	○ 보안 목적상 말씀 드리기가 곤란함.
○ 노상원씨가 사용한 비화폰 반납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 구체적인 운영 현황을 말씀 드리기가 곤란함.
○ 김성훈 차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에 대해 하실 말씀 있는지?	○ 해당 사안에 대해 여기서 말씀 드리기가 곤란함.

(라) 곽종근 증인(前 특수전사령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월 5일 자정 무렵에 예하 지휘관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내일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	○ 12월 5일 저녁에 김용현 장관이 비화폰으로 전화해서 '이것은 녹음이 되지 않는 전화니까 당당하게 가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는 의미로 읽혀서 진실을 밝혀야겠다는 의미로 말한 것임.
○ 박범계의원으로부터 공익신고자를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내용을 쓰고 서명도 했는데, 공익신고자 선정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 그 뒤로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어떻게 됐는지 모름.
○ 공익신고자 신고 접수를 하게 되면 본인에게 전화 연락이 오게 되어 있는데 못 받은 건지?	○ 12월 16일 이후로 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모름.
○ 12월 6일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다고 했는데 왜 왔다고 생각하는지?	○ 제가 참모들과 같이 있었는데, 그때 했던 말이 지금 상황과 관련해 여러 가지 당부나 보안 이런 것을 얘기하셨을 거라고 유추함.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지 않음.

(마) 이완규 증인(법제처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할 어떤 법적인 의무가 있는지?	○ 해당 사항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검토해야 할 문제임.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권한대행께서 여야 합의를 요청하면서 임명을 보류해 놓은 이 조치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할 거라 믿지 않음. 왜냐하면 권한대행께서 여야의 합의를 요구한 이유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기 때문임.
○ 통상적으로 여당 1명, 야당 1명 추천하고 마지막 1명을 추천할 때 여야 합의로 추천을 해 왔는데, 만약에 단순 표결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다수당이 3명 다 추천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됨. 이는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는 얘기 아닌지?	○ 맞음. 예를 들어,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재판소의 모델인데 독일은 의회에서 헌법재판관들을 선출하지만 재적 2/3로 선출함. 재적 2/3로 선출하도록 한 이유가 여야가 반드시 합의하라는 것임. 우리 국회가 그동안 여야 합의로 했던 관행은 독일법의 취지가 반영된 것인데, 이런 취지에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청한 것은 정당한 권한 행사이므로 이것을 불법이라 판단할 것으로 믿지 않음.
○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 당시 민주당의 반대로 대법원장이	○ 알고 있음. 8인 체제로도 충분히 판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지명했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탄핵재판이 이어진 전례가 있는데 알고 있는지?	미 선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림.
○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임명권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기 때문에 사정변경이나 새로운 사유를 들어 임명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닌지?	○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임.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이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저는 납득하기 어려움.
○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청문회를 개최했고 청문회 개최 이후에 본회의에서 투표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 실질적으로 합의가 됐느냐는 표결 시점으로 판단해야 될 것이고 표결 시점에서 합의가 있었는가는 아마 헌법재판소의 심리에서 판단할 것이라 생각함.
○ 헌법재판관으로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면 민주당이 임명하거나 추천한 재판관이 6명이 됨. 헌법재판관은 균형 있게 구성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만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권위가 가질 것임	○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의 취지에 공감함.
○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가 여야 간 합의된 후보라고 주장하는데, 여야 합의의 기준 시점은 표결 시점이어야 하므로 마은혁 후보는 여야 간 합의된 후보가 아님. 이에 대한 견해는?	○ 공감함. 헌법재판관은 국민 대표성이 있어야 하므로 헌법재판관의 국회 추천에 있어서 의석수대로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움. 추가로, 의원내각제인 독일과 달리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를 채택하고 있고 헌법에 직접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를 대통령은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움.
○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이 제도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하면?	○ 헌법재판과 형사소송이 서로 중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이 엄격한 증거 법칙에 따라 운영되는 절차이므로 충실한 심리를 보장하고자 재량으로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임.
○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대한 사례도 존재함.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 당한 손준성 검사의 경우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하여 항소심 절차가 진행되어 탄핵심판이 정지되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 만약 형사소송의 진행 경과를 고려하지 않고 탄핵심판을 진행했을 경우 헌재와 항소심 재판부가 서로 모순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었음. 따라서 법원에서 형사재판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대통령 탄핵심판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이 합당함. 이에 대한 견해는?	○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탄핵심판의 정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재량 사항이므로 적절히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함.
○ 12월 4일 이상민 장관, 박성재	○ 특별히 한 얘기가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이 모인 안가 모임에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 12월 3일 계엄이 있었고, 12월 4일 주요 인물이 모였는데 특별히 한 얘기가 없다는 말은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음. 이 네 명의 인물이 이번 계엄의 주요 주체라고 생각함.	○ 전혀 사실이 아님.
○ 헌법이 공직자 탄핵제도를 두는 취지가 무엇이라고 보는지?	○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그 직을 계속 수행하게 둘 수 없을 때에 최종적으로 국회가 나서는 제도라고 생각함.
○ 감사원장, 법관, 검사와 관련하여 탄핵제도를 두는 이유는 인사권자의 부당한 인사로부터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아닌지?	○ 그러함.
○ 제22대 국회부터는 탄핵제도를 행정부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활용하기 시작함.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 대하여 29의 탄핵소추를 함. 특히 현재 탄핵소추의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과는 무관하게 발의되는 순간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임. 이에 대한 견해는?	○ 한가지 문제는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빨리 결정을 내려주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였고, 탄핵소추를 의결한 입장에서는 6개월 이상 직무를 장기간 정지시키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음. 추가로 한덕수 총리를 탄핵할 때 의결정족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의결정족수가 잘못되었다고 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단하면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가 되어 최상목 권한대행의 국정행위가 전부 문제가 될 여지도 있음.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탄핵소추에 대한 결정을 내려주어야 할 것임.

(바) 박안수 증인(前 육군참모총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회에서 비상계엄해제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추가 계엄을 하려 했던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음. 추가 출동 인원에 대해서 02시 36분에 52사단은 200명 추가 가능하고, 56사단은 300명 가능하다고 보고했다는데 알고 계신지?	○ 전혀 모르는 내용임.
○ 2신속대응사단까지 출동을 시키려고 검토를 했는데, 2신속대응사단의 출동 요건은 나중에 알았다고 한 건지?	○ 제가 나중에 알았다는 말씀을 드린 건 잘 기억이 안 남.

(사) 이창용 증인(한국은행 총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비상계엄이 대한민국 경제에	○ 현재까지 비상계엄의 경제적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영향을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외환시장에 가장 큰 충격을 주었고, 12월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경제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약 70원의 환율 상승분 중 30원이 비상계엄의 영향으로 추정함.
○ 한국은행 대정부 일시대출금은 기재부의 요청시 거의 자동으로 제공되는 구조인바, 예비비를 정상적인 예산 절차 없이 한국은행 대출을 통해 조달하려 한 것이 아닌지, 나아가 내란 자금의 마련 가능성까지 의심됨.	○ 일시대출금은 단기자금으로만 사용되며, 그러한 요청이 왔을 때 실무자가 이를 점검하고 우려하시는 일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임.
○ 2024. 12. 13. 1공수여단의 강남본부 방문 협조 공문과 관련하여, 비상계엄 속에 한국은행 장악이 계획되었을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됨.	

(아) 이영팔 증인(소방청 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허석곤 청장의 전화를 옆에서 들었는지, 혹은 차장님께 직접 이야기했는지?	○ 내부 상황이 복잡해서 전화는 들을 수 없었고, 단전·단수가 우리의 업무냐는 것을 질문했음.

(자) 박○○ 증인(육군 제2군단 부군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문상호 사령관이 법정에서 대통령에게 계엄 반대했다고 했는데, 가능한 이야기인지?	○ 대통령 만난 적 없는 것으로 알고있음.
○ 오로지 김용현·노상원을 통해서 문상호 사령관이 명령 지시 받은것인지?	○ 그러함.
○ 증인의 경험상 노상원이 상상 밖의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있는지?	○ 2016년 속초 부대장, HID 부대장 할 때 당시 노상원 사령관이 대북 업무 진행중에 임무 끝나고 요원의 제거 지시를 함. 제거 방법은 폭사를 지시했고, 원격폭파조끼를 입혀서 임무 끝나고 폭사시키라고 지시하였음. 이러한 반인륜적인 면을 보았기에 계엄 수첩의 용어가 전혀 낯설지 않았음.
○ 김용현은 왜 노상원을 가까이 두었는지와, 노상원의 수첩 메모는 김용현과의 대화 결과 아닌지?	○ 김용현 장관과 노상원 사령관이 수도방위사령부에서 친밀해졌다 이야기를 들었고, 노상원 사령관이 부하를 대할때와 자기에게 도움이 되거나 마음에 드는 상급자에게 대할때가 다르다고 들었음.
○ 2016년도에 특수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요원들을 노상원이라는 사람이 격려를 못 할지언정 폭파시키라 했다는 말이 사실인	○ 사실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지? ○ 노상원 수첩에 있는 백령도 작전에 대해, 노상원은 그정도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하는지?	○ 본인에게 내린 지시를 생각해봤을 때 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음.

(차) 구삼회 증인(前 육군 제2기갑여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소속이 제2기갑여단장인데 판교 정보사에 휴가 없이 있을 수 있는지?	○ 그날은 정식으로 2일간 휴가를 내고 갔음.
○ 노상원과 함께 아기보살에게 간 적이 있는지?	○ 전혀 없음.
○ 노상원이 어떤 형태로 진급을 도와주겠다고 했는지? 세평을 없애주는 대가로 금전을 가지고 오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는지?	○ 수사중인 사항이라 답변이 제한됨.

(카) 최병옥 증인(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결심실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있었나?	○ 최초에 여러 인원들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음.
○ 11시10분쯤 용산 출근했을 때	○ 알지 못하며, 대통령실에 계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나?	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 법전을 찾는 내용은 들었으나,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했고 기억이 나지 않음.
○ 결심지원실에 마지막에 대통령, 장관, 계엄사령관 3명만 나중에 남아있었는지?	○ 그러함.
○ 김용현 장관 보좌관 신다윗을 전투통제실이나 결심지원실에서 못 봤는지?	○ 신다윗이라는 사람을 모름.

(타) 이선진 증인(무속인)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노상원 씨가 어떤 일을 일으키면서 같이 할 사람들에 대해 점을 봤던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본인은 어떻게 될 지에 대한 점은 보지 않았나?	○ 본인이 어떻게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지, 다시 나랏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사업가를 통해 고문 자리가 왔다고 하여 처음에 고민을 조금 하셨음.
○ 노상원 씨가 굿은 요청하지 않았나?	○ 하지 않았음.

(파) 신용한 참고인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한겨레21의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실에 역술인 출신	○ 소수종교, 신흥종교, 역술인 관리를 하였으며, 대통령실 직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4급 행정관이 채용되었다는 보도가 있음.	들, 대통령 내외와의 궁합 등을 봤다는 제보를 받았음.
○ 해당 보도에서는 대통령실의 굿과 관련된 여러가지 일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관련한 제보가 있는지?	○ 5대 명산에서 같은 날, 같은 시에 동시에 굿을 했으며, 실제 한 곳에서 4000만원 정도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음.
○ 참고인은 국가무속에 대한 제보에 대해서 신뢰하는지?	○ 실제 그 분야에 계신 분이 관련 협회 관계자분들과 확인하여 직접 제보를 주셨고 실제 현장에서도 체크가 되었기 때문임.
○ 굿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 좋은 일을 기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대부분일텐데 10월에도 택일을 받아서 국가적 큰 거사에 대한 굿을 했다는 제보가 있어 최종 확인중에 있음.
○ 참고인은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굿과 무속에 집착한 이유를 무엇으로 보나? 굿과 무속을 통해 자신들의 권력을 영구히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보며 그러한 비정상적 믿음이 계엄과 내란으로 이어졌다고 봄.	○ 동의함.

(14) 2차 계엄 가능성에 관한 질의

(가)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차계엄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	○ 없었음.
○ 작년 12월 24일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이 계엄 해제 이후에 군인 제복을 입은 군인이 11명, 사복 입은 군인이 2명 정도, 약 13명이 국회의장 공관을 배회하고 CCTV에 지금 다 기록이 남아 있는데, 정황상 이 인원들이 국회의장을 체포해서 2차계엄 시도를 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운영 자체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인원들에 대해 신원조회를 하지 않고 있는지?	○ 인원들을 파악했고 이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음.
○ 이 사람들이 공관에서 배회한 이유가 무엇인지?	○ 의장님 공관이 아니고 관저 경계 강화를 경호처에서 요청받아, 관련된 1경비단 요원이 그 외곽 경계를 가면서 경계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그 CCTV에 찍힌 것으로 확인함.

(나) 박안수 증인(전 육군참모총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다시 선포하겠다는 언급을 들은 사실이 있나?	○ 그런 사실 없음. 출동 가용 인원 파악 사실 등은 1시 14분부터 다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함.
○ 계엄 해제 이후 선관위에 투입할 병력을 파악하라는 지시 및 특수전사령관, 수방사령관, 201부대 등의 출동대기 지시가 왜 계속되었는지? 이는 결심지원실에서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재선포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 그 얘기를 들은 기억은 전혀 없음. 10분간 간단한 현안보고, 법령집 보시는 시간, 좀 빨랐지만 좀 길게 느껴지는 그런 침묵도 조금 있었음.
○ 12월 4일 1시16분에 윤석열대통령이 전투통제실로 들어오면서 증인을 결심지원실로 따라 들어오라라고 하였는지?	○ 부르지는 않았고 복도에 나가 있다가 오시길래 복도에 계신 분들과 오신 분들이 다 같이 그냥 쭉 들어갔음.
○ 12월 4일 2시40분경 대통령 집무실과 연결된 대접견실로 들어갔다고 답변하였는데, 김용현은 바로 집무실로 들어갔는지?	○ 예. 같이 들어갔음.
○ 대접견실에 한덕수총리 있었나?	○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음.
○ 내란 주범들이 국회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즉각 반응하여 결심실 및 대통령실로 같이 이동하였는데, 정작 비상계엄 해제는 한참 뒤로 미뤄졌음. 3시경	○ 국회 계엄해제 의결 이후 장관을 찾던 도중 대통령을 만남. 여러 사람들과 같이 들어갔다가 이후 장관과 저에게 남으라고 그러셨음. 이후 장관이 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윤석열이 증인에게 철수 지시하기 전까지 2시간 동안 국회의 의결을 불법으로 몰아세우고 계엄을 이어갈 궁리를 했던 것이라 생각함.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는 과정이 있었음.

(다)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시 13분경에 김용현 전 장관이 선관위에 병력 재투입이 가능한지 문의했고 본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나?	○ 그러함.

(15)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발언

(가) 별도 증인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얼마나 찾아 냈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 동일한 증인을 반복해서 불러내고, 여당의 견을 반영해주지 않은 것은 편파적이며 진실 규명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 특히, 이 자리에 나와 본래 자리에서 수행할 임무를 수행 못하면서 발생하는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손실을 보완하고 있는지 고민할 필요 ○ 동행명령장도 2번 발령했는데, 대상자들을 구치소에서 수사받고 있으면서 방어권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음. 응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 발령하는 것은 부적절함. 이러한 점들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반성할 필요	

[2025년 2월 21일. 제3차 청문회]

(1) 12·3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가) 이진우 증인(전 수도방위사령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는지, 공소장에 따르면, 11월 9일 국방부장관 공관 식사 자리에서 윤석열이 계엄을 언급했고, 김용현이 '수방사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묻자 출동태세를 갖추겠다고 답변했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전 모의가 아닌지?	○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답변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답변하지 않겠음.

(나) 오○○ 증인(HID 출신 중령)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위기관리센터 근무하였는지?	○ 그러함.
○ 언제부터 안보실에 근무했는지?	○ 실질적으로 근무한 것은 23년 3월 마지막주이고, 그때부터 쭉 근무하였음.
○ 대위, 소령, 중령 때 각각 HID 부대에서 근무하였는지?	○ 그러함.
○ HID에서 별도의 TF를 4명에서 구성하고 있는지?	○ 별도의 TF라기 보다는 팀 단위로 일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팀장은 국정원 출신 최 모 2급 공무원이 하고 있는지?	○ 업무와 직제에 관한 사항은 확인해드리기가 제한됨
○ 국정원 2명, 방첩사 1명이 있는지?	○ 확인해 드리기 제한됨
○ TF의 임무가 무엇인지?	○ TF의 업무에 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가 없음
○ TF의 상급자가 누구이며 누구에게 주로 보고했는지?	○ 차장·실장급에 보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담당하는 일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지 못함
○ 김태효 1차장에게 보고했는지?	○ 그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보고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주로 누구에게 보고했고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는 얼마에 한번씩 보고했는지?	○ 정확하게 알지 못함.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전혀 업무보고가 이루이지 않았으나, 대통령은 알지 못하겠음
○ 비화폰 가지고 업무 수행하시는지? 또한 팀장이 가지고 있는지?	○ 팀장과 본인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음
○ 팀별로 청와대, 국정원 출신, HID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 업무 분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제한됨
○ 비상계엄 당시 이 팀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었는지?	○ 본인은 영내에서 운동을 하고 퇴근하려던 찰나 뉴스를 보고 알아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나머지 인원은 전부 다 귀가하여서 집에 있었을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노상원이 정보사령관 할 때 오중령의 직책은?	○ 2016년 초 합동대 교육을 마치고 정보사 예하 정보부대로 복귀하였는데 성남 소재 부대에서 보직을 받았음

(다) 박종준 증인(前 대통령경호처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월 3일 삼청동 안가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만났는데 본인이 연락한 것인지?	○ 그러함. 조지호, 김봉식 청장은 제가 연락하였고,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제가 연락하지 않았음.
○ 증인이 면담하는 자리에 같이 동석하였는지?	○ 동석하지 않고 별채에서 대기함.
○ 면담 시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림.
○ 증인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지?	○ 비상계엄 당일 오후 9시 50분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고 곧 국무위원이 들어올 것이므로 출입절차 및 경호에 신경을 쓰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인지하였음.
○ 증인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고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했는지?	○ 큰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비서실장이 이 사실을 아는지 묻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음.
○ 비서실장 또는 수석과 이 문제	○ 비서실장과는 연락은 닿지 않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에 대해 논의했는지?	고, 김태효 안보1차장과 비상계엄의 대해 우려의 의견을 공유하였음.
○ 본인도 경찰 출신인데 조지호·김봉식 청장에게 왜 대통령이 호출한 것인지 묻지 않았는지?	○ 통상적으로 경호하는 사람이 비공식 모임의 사유에 대해 탐문하거나 참석자에 대해 따로 연락하는 것은 금기시됨.
○ 조지호 청장에게도 비화폰 발급하였는지?	○ 그러함.
○ 언제 발급하였는지?	○ 제가 대통령실에 오기 전에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발급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역대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처럼 정부위원에게 이렇게 많은 비화폰이 발급된 사례가 없고 심지어 민간인인 노상원에게도 발급함.	○ 비화폰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화폰은 국정연락 기능 및 경호 기능이 있어 정부가 일반적으로 출범하면 전체 정부위원에게 일시에 발급함.

(라) 김명수 증인(합동참모의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야당에서 사이버사령부가 사이버 내란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사전에 모의한 사실이 있는지?	○ 준비 및 계획한 정황이 없음.
○ 사이버정찰TF를 운영한 것은 사실인지? 운영 목적은 무엇인지?	○ 그러함. 해외에 거점에 대한 대비를 위한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과거에도 사이버정찰TF를 운영한 적 있는지?	○ 그러함.
○ 19년에도 4개월간 사이버정찰TF를 운영했고 주요임무에 있어 24년 사이버정찰TF와 차이가 없음. 사이버정찰TF가 비상계엄과는 무관한 것 아닌지?	○ 비상계엄과 무관함.
○ 사이버작전사령부는 사이버 심리전·인지전 관련 임무 수행을 못하는지?	○ 2018년 5월 법률이 개정되어 못하게 되었음.
○ 24년 8월 을지훈련 중에 인지전 훈련을 실행하고 사령관 지시로 SNS장악 훈련을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지?	○ 그러한 사실 없음.
○ 최근 5년간 매해 시나리오식 사이버훈련을 해왔고 이는 당연히 해야될 훈련이 아닌지?	○ 그러함.
○ 23년 3월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이버사령부를 방문했고 사이버공격 양상 변화에 따른 공제적·선제적·능동적 작전 계획을 발전시키라고 지시했음. 이는 19년에 수립된 국가사이버안보전략과 다르지 않음.	○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음.

(마) 김태효 증인(국가안보실 제1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에게 일일 안보 정보 보고 안합니까?	○ 네. 안합니다.
○ 며칠간격으로 보고 하는지?	○ 자주 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보고는 없습니다.
○ 특수정보부대 방문한 적 있습니까?	○ 지휘통제실에 머문 시간이 3분 정도 밖에 안되었고, 대통령을 모시고 대통령실로 돌아감
○ 오모 중령이 속한 팀은 무엇인가?	○ 소규모의 정보융합팀을 만들면서 국가위기관리센터 소속으로 함
○ 격려방문과 정보융합팀은 계엄준비와 관련이 없는 것이 맞는지?	○ 계엄과의 연관성은 없음

(바)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이 심리전 지휘 목적으로 24년 5월에 방첩정보협의회를 결성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와 관련된 사항을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지?	○ 그런 협의회는 아니고, 관련 기관들이 보안·방첩 분야에 대한 임무 기능 역할을 좀 제고시키기 위한 협의회로서 이렇게 운영됐던 것으로 제가 나중에 확인했음.
○ 방첩정보협의회 신설을 위해 최초로 23년 1월 방첩사, 정보사, 사이버사, 777사령관들이 모였는데. 신설 이유는 무엇이	○ 방첩·보안 관련된 관련 기관들이 그거에 대한 업무에 대한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협의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라고 생각하는지? 노조·야당·언론사·선관위 등 반국가 세력, 국가 위해 세력 등에 대한 색출과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를 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지? 이 협의회는 24년 1월 실무회으를 끝으로 협의회는 개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를 운영한 것으로 제가 확인했음. 노조 색출 등은 사실이 아님. .

(2) 계엄선포 원인 및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

(가) 한덕수 증인(국무총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정조사특위의 목적은 비상계엄의 원인을 반성하고 타당한 대응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생각함. 국무총리는 국회의 과도한 탄핵소추 발의, 대통령이 재의요구할 수밖에 없는 과도한 입법권한 행사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하는 입장 밝힌 바 있나? 윤석열 정부 탄핵안 발의가 총 29건, 7명의 검사에 대해서 탄핵했는데 이재명 피고인과 민주당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였음. ‘잘못된 탄핵소추안 발의’라고 발언한 바 있나?	○ 헌법에는 국무위원을 15인 이상 30인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탄핵한 분을 제외하면 16명임. 국정이 마비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음. 원인이 그런 것으로 탄핵된 것이라면 적절치 않고, 공정하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재의요구한 것이 총 38건인데, 재의요구할 수밖에 없는 법률안을 계속 의결하고 있음.	
○ 탄핵소추 제도에 대해서 근본적 변경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미국은 직무정지 제도가 없음. 탄핵소추를 하더라도 권한행사가 정지되지 않도록 규정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	○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봤을 때 앞으로 존경받고 발전하는 나라가 되려면 정치권, 노사관계, 공무원의 일하는 자세를 포함한 모든 분야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함. 우리 정부부터 야당을 쫓아다니면서 설득하고 노사관계도 합리적인 쪽으로 해야 함.
○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임. 동의하는지?	○ 현재 국무위원이 16명밖에 남지 않아 국정이 마비될 가능성이 큼. 국회가 신중해야함.
○ 윤석열 정부에서 총 29건의 탄핵안이 발의되었으며, 22대 국회에서만 18건이 발의되었음. 검사 7명에 대한 탄핵은 이재명 사건 및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 담당 검사들이었음. 결국, 특정 사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탄핵소추였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공정한 탄핵 사유가 아니었다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 윤석열 대통령이 총 38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였음. 이는 여야 간 의석 차이로 인해 상임위-법사위-본회	○ 국회가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음. 행정부가 국정운영을 정상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의에서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를 탄핵 사유로 삼으려는 전략으로 보임.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덕수 및 최상목 권한대행도 재의요구를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피함.
○ 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제도가 있지만, 탄핵이 인용된 사례가 없고, 직무정지 제도가 없음. 우리나라는 탄핵소추만으로 직무정지가 되므로, 이를 악용하여 방통위원장·검사 등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정치적 목적이 작용할 가능성이 큼. 탄핵소추 절차를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 우리나라가 G7 수준의 경제강국으로 발전하려면 모든 분야가 변화해야 함. 노사관계, 정치권, 공무원의 행태가 바뀌지 않으면 성장률을 4~5%로 끌어올리는 것은 불가능함. 정치권도 변화해야 하며, 탄핵제도의 남용을 막는 논의가 필요함.
○ 22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협치적 답변을 한 적이 있는지, 야당 의원을 직접 찾아가 대화한 적 있는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을 대변하는 역할이 아니라 독립적인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것 아닌지	○ 찾아가 대화했고 여당 의원도 많이 만났음.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위해 4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해 왔음.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최선을 다해왔음.
○ 야당의 탄핵소추로 인해 국정운영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 미국과 달리 한국은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직무정지가 즉각 이루어지고, 헌재 판결이 오래 걸림. 이로 인해 국정 운영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는 것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현임.
○ 탄핵된 국무위원들의 업무 수행에서 위법행위나 업무 태만이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 탄핵된 모든 국무위원의 사유를 검토하지는 않았으나, 대부분은 수십 년간 국가를 위해 봉사해 온 인물들이었음.
○ 과거 국회가 단독으로 예산 감액안을 처리한 사례가 있는지?	○ 이번이 처음이라고 생각함.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여야 협상을 유도하는 제도도 존재하지만,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 비상계엄 직전에 야당이 정부 예산안에 대해 4조 1천억원을 단독 삭감한 것이 비상계엄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생각함. 이는 헌정 사상 최초가 아닌지?	○ 그러함.
○ 야당은 25년에 들어서자 다시 삭감한 예산에 대한 추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새로운 필요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산 삭감을 삭감할 때부터 당연히 예정되어 있던 것임. 이에 대한 견해는?	○ 경제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여정 협의체를 통해 국가와 국민에 도움이 되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그 후 추경을 하는 식으로 결정하려는 것은 정부 기능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행태임. 이번 국정조사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함. 예산안 삭감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2/3 이상으로	○ 국회선진화법을 좀 더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은 항상 필요함. 또한 그 전에 재정이 얼마나 국가의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정치권이 깊이 생각하고, 여야 모두 국익을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나) 최상목 증인(대통령 권한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야당이 정부 예산을 단독으로 감액하면서 증액 없이 삭감만 한 것이 정부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 당시 삭감된 예산이 그대로 통과됐다면 정부 운영이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바 있음.

(다) 정진석 증인(대통령 비서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탄핵 남발, 감액 예산안, 특검법, 일방적인 법률 추진, 행정부 공무원 겁박 등이 국정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음.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어떻게 느꼈는지	○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있어 상당한 고민과 고뇌를 하고 있었음. 국회의 과도한 입법권 행사와 탄핵 남발로 인해 국정 운영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었음. 특히, 입법권 남용으로 인해 삼권분립 원칙이 흔들리고 있었음. 헌법 수호자로서 대통령이 이러한 위기 상황을 인식했고, 비상계엄 조치 발동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함.
○ 이번에 4조 1천억원 예산 삭감	○ 예산이란 우리 몸에 피가 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의 의미에 대해 설명하면?	듯이 국정의 각 분야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도록 하는 것인데, 이에 차질이 빚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유감스러운 상황임.
○ 대통령은 담화에서 국회의 일방통행식 독주를 느꼈고 비상계엄이 국회의 해악질에 대해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고뇌의 찬 결단이라고 했는데, 증인도 이에 공감하는지?	○ 이번 계엄이 적절했는가 아닌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고, 계엄 전의 상황, 법적 근거 등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함.
○ 야당이 정부와 국정을 협조하지 않는다고 계엄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그 이전에 정부가 국정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야당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하였어야 함.	○ 계엄 직전 상황은 이미 국회의 본령인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상황이었음. 제 말의 취지는 비상계엄을 야당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야정 모두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자는 것임.

(라)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한민국 수호 장성들의 모임인 “대수장”이 부정선거 교육을 통해 현역 군인들과 지휘관들을 현혹시켜 거사에 끌어들인 것이 12.3. 계엄의 실체임. 2024년 10월부터 민간인 노상원은 정성욱 정보사 대령에게	○ 언론에 나왔던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예비역 장성을 대상으로 한 부정선거 교육자료를 준비하도록 지시하였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나?	
○ 정성욱 대령에 따르면 노상원이 미리 진급자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여 계엄에 가담할 군인들을 포섭하고 회유하는데 활용했다고 함. 다른 현역 군인들도 대수장과 연관됐을 가능성을 짚어볼 필요가 있음.	○ 대수장은 군 및 국방부와 관련 없는 단체임. 진급 명단이 확보되었다는 것은 근거없는 사실임.

(3) 12·3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여부 및 그 적법성

(가) 최상목 증인(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포고령 외의 다른 문서를 본 적 있나? 계엄선포문을 본 적, 받은 적 있나? 이 내용에 대해서 심의가 있었던 것도 아닌가? 계엄과 관련한 절차적 위법이 있나?	○ 전혀 없음. 아님.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음.
○ 실체적 요건인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나? 국회의 권한 남용과 선거부정 의혹으로 군사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나?	○ 비상계엄은 잘못된 결정이었고, 당시 반대했다고 말씀드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무회의 당시 계엄에 반대하였는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사표를 내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 입장이 변함없는지?	○ 반대하였음. 직에 연연하지 않겠음. 당시의 결연한 의지는 여전함.

(나) 한덕수 증인(국무총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월 23일 헌재에서 김용현이 12월 3일 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는데 동의하나?	○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많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음.
○ 비상계엄선포문 본 적은 있나? 집어서 뒷주머니에 넣은 것 아닌가?	○ 선포되는 당시에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마치고 출근을 해서 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음. 나중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고,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설명을 드림.
○ 당시 11명 참석자 중에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다고 하는데?	○ 1명도 들어본 적이 없음. 모두 반대하고 걱정하고 문제를 제기함.
○ 대통령실에서 행안부로 간 공문은 행안부에서 국무회의 의안번호와 회의록이 없다고 하니까 보낸 것임. 김용현은 한	○ 이 내용을 상당히 후에 보게 되었고 행안부도 동의하지 않는 내용으로 알고 있음. 최종적인 모든 정리는 행안부 의정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시간 반 동안 국무회의 심의를 했다고 하지만, 시작 시간 22시 17분부터 22분까지 5분으로 기재되어 있음. 해제안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고 의안번호, 제출자, 제출 연월일도 있음. 해당 의안번호가 2123호이므로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었다면 의안번호가 2122호여야 맞으나, 2122호는 개정법률안 관련 회의록이어서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아님. 헌법 제892조, 제89조, 정부조직법 제12조, 국무회의 규정 제3조에도 강제조항으로 명시되어 있음. ‘국무회의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분명히 밝혀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계엄선포와 관련된 국무회의는 실제적으로 없었던 것인가? 계엄이 애초에 불법이었다는 것임.	관이 하게 되어 있음.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려움.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는 모르겠음. 그 자리에 있었던 국무위원 누구도 정식의 국무회의로서 진행되지 않았다는 데에 생각이 같음.
○ 헌법재판소에서 김용현 장관이 계엄 선포 전에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조태용 원장도 계엄 문건을 받아보았다고 진술했는데 사실인지?	○ 계엄 관련 어떠한 지시나 서류도 받은 바가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은 왜 김용현 장관이 한덕수 총리와 관련하여 위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전혀 모르겠음.
○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이 주도한 비상계엄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경고로 느끼지는 않는지?	○ 제가 경험한 일에 대해 팩트만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음.
○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 및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후에도 내란 세력이 비상계엄을 지속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진상 파악을 위한 핵심 인물임. 정권의 일원이자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말을 삼가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제는 국민 앞에 진실해야 할 때임. 만약 그날의 진상에 대해 아직 증언하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 그동안 국회 상임위원회나 국정조사에서 진술한 바에 대해 모두 진실만 말씀드렸고, 제 마지막 소임을 충실히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 국무회의 당시 계엄에 반대하였는지?	○ 반대하였음.

(다) 정진석 증인(대통령 비서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당시 국무회의 배석자로서 김용현이 대통령을 계엄으로 몰고 간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했는지, 김용현에게 직접 비판적인 언급을 한 적이 있는지?	○ 본인은 국무회의 배석자가 아님.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김용현과 별다른 접촉이 없었음. 계엄에 찬성한 적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계엄에 찬성하였는지? ○ 왜 대통령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나를 밟고 가라. 이건 안 된다'라고 말하지 못했는지? ○ 경제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대통령이 비상계엄 조치를 하겠다면 무조건 막았어야함. 왜 지금와서 후회한다고 하는 것인지? ○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관련하여 통상의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는 못했지만, 국무회의의 목적, 심의 결과의 비구속력으로 인해 실체적인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 나중에 그렇게라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을 총리님을 포함한 많은 국무위원들이 했음. ○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함. ○ 예, 그렇게 생각함.

(4) 12·3 계엄 선포 후 각 국무위원들의 후속대책 이행 등

(가) 최상목 증인(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 지시문건에 대해서 변호사가 그 내용을 보지 않았다고 진술하라고 조력했는지? 윤석열이 이름을 부르면서 "상목아, 이거 참고해" 이렇게 말	○ 아님. 사실대로 말씀드림. 기획재정부장관이라고 부르셨고 옆에서 누군가가 참고자료라고 전달했음. 지시라고 생각하지는 않았고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했나. 그 당시에 대통령의 지시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받았고 내용은 보지 않았나.	참고자료라고 생각함. 들어가면서 제 얼굴을 보시더니 참고하라고 하면서 옆의 누군가가 접힌 상태의 쪽지를 주었음. 당시는 계엄이라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고 외환시장을 모니터링하느라 정신이 없었음.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지시문건을 받았다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는데 권한대행 것은 뉴스 보고 존재를 알았다고 말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	○1급 회의가 끝날 때쯤, 1시 50분경 확인이 되었음.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함.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내용이어서 답변하지 못함.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해산시키고 국회를 대체하는 기구라면 위헌적 기구가 아닌가? 12·3 비상계엄이 위법이라는데 동의하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국회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열 수 있는데 당시는 국회가 열려 있었고 국회에 보고·승인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위법임.	○그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함.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내용이어서 말씀드릴 수 없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자리에서도 반대했음.
○12·3 계엄 전후에 김건희 여사와 통화한 적 있나? 비상계엄 언제 알았나?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쪽지를 주었고 F4 회의는 언제 소집했나?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음. 9시 55분 정도에 대접견실에 들어가서 처음 알았음. 10시 40분 경, 비서실에 소집하라고 이야기했음.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F4 회의 내용이 무엇인지? 쪽지 문서에 따른 예비비 확보를 위한 회의로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나?	금융·외환시장 안정 조치를 하기 위한 회의임. F4 회의는 재정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회의가 아님.
회의는 몇 분간 진행되었나? 그 이후에는 무엇을 했나? 1급 회의 내용은 무엇이었나? 성명서 낸 것은 있나? 1급 회의 자료가 있나?	1시간 정도 했음. 그러고 청사로 가서 기획재정부 1급 회의를 했음. 계엄 때 있었던 상황과 F4 회의 내용을 얘기하고 사의 표명과 한은 총재의 만류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계엄 관련 어떤 사항도 응하지 않겠다고 얘기함. 성명서는 내지 않았음. 국회에서 계엄 해제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회의는 1시에 시작해서 1시 사오십 분까지 했음.
○ 그 이후에는 무엇을 했나? 국가비상시국이고 비상계엄이 해제가 안 된 상황인데 그곳을 지켜야 했던 것 아닌가?	○ 긴급경제장관회의 발표문과 자료를 검토했고, F4 회의를 아침 7시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증권시장을 여는 시각과 열지 여부를 논의함. 1급 회의 끝나고 집으로 왔고 2시 30분경 외환시장 모니터링 등을 했음.
○ 문건에 대해서 받았는데 주머니에 넣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비상계엄 상황에서 대통령이 준 지시 문서를 부총리가 안 봤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고, 안	○ 그 당시는 초현실적인 상황이었음. 내용은 보지 못했고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주었음. 한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1시 50분경 차관보가 리마인드 시켜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봤다면 직무유기임. 언제 다시 받았나?	내용을 보니까 계엄 관련 문건으로 인지해서 우리는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하고 내용을 보지 않았음.
○ 기재부 지시사항 문서를 문언 그대로 봤을 때는 임무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시 주체가 대통령인가? 국방부장관이 준 것이라고 볼 수 없지 않나? 국방부장관은 헌재 심판에서 업무 요청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볼 수 없지 않나?	○ 당시에는 참고하라고 받았고 수사중인 사항임. 대통령이 참고하라고 하시고 옆에 있는 실무자가 주었음. 저는 제가 겪은 기억에 준해서 말씀드린 것임.
○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가? 대통령 입장에서 자금을 마련하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재부장관이 한국은행 총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대정부 일시대출금 제도가 있음. 한국은행 총재가 당시 50조까지 가능했다고 발언하였고, 지금까지 기재부가 거절했을 때 거절한 적이 없다고 함.	○ 문장이 이해가 안 감. 완전히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저것과 연결시키는 것은 이해가 안 감.
○ 이 제도를 이용해서 계엄자금 마련하라고 했다면? 공문 하나면 가능한데, 요청했다면 거부했겠나? 반대 입장을 기자회견을 했나, 성명서를 발표했나?	○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가능하지 않음. 기재부는 당시 계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어떤 것도 응하지 않기로 얘기했음. 회의 내에서 그렇게 얘기함.
○ 국회 관련 보조금, 지원금, 각	○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종 임금 완전 차단할 것은 가능한가? 불법인가? 국가비상입법기구 설치는 가능한가? 지시문서의 목표는 계엄의 통치자금을 마련하라, 윤석열 입맛에 맞는 법안을 찍어내는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라는 것으로 보임. 통치기구를 만들려면 자금이 필요했고 예산을 세우라고 한 것임. 어떻게 보이나?	정확히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움.
○ 지시사항 받을 때 이름을 불렀나 직책을 불렀나? ‘기재부장관’이라고 부르면서 줬으면 문서를 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을 텐데? 대통령이 문서를 준 적도 없고 언론을 통해 알았다는 것은 거짓말인가?	○ ‘기재부장관’이라고 부르신 것으로 기억함.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님.
○ 쪽지 문건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국무위원으로서 중차대한 계엄이 선포되었음에도 확인을 안 했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음.	○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고, 사퇴하겠다고 생각했고 계엄에 반대했으나, 시장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생각만 있었음.
○ 김용현 전 장관은 문건을 본인이 작성해서 보고했다고 진술하고 있음. 민생살리기 법안이 많이 있었고 경제가 어려워서 비상경제 조치를 하기 위한 기구를 편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데 동의하나? 평소에도 재정경제명령 등 비상 조치를	○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 저는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말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각종 회의에서 이런 말씀 들은 적 있나? 재정경제명령을 하고 그 기구를 기획재정부에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음. 기재부장관도 모르고 국방부장관이 직접 작성해서 전달했다는 것임.	
○ 대통령이 문건을 직접 전달했는지, 어떻게 접어서 보관하였는지?	○ 접은 상태로 받았고, 쪽지 형태로 가로로 두 번 접고 한번 더 접혀있었음.
○ 문건을 받아 국무회의에 갈 때 서류가방 없이 갔는지?	○ 사복 차림으로 갔음.
○ 문건을 받은 후 즉시 따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지, 기재부 직원들에게 따르지 않겠다고 한 것이 맞는지	○ 문건 내용을 다 보기 전에 따를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나중에 봤을 때 더욱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음.
○ 대통령 지시문건에 적힌 예비비 확보·국회 자금 차단·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지시사항은 단기간에 실행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하루이틀 안에 끝내려고 했다는 대통령 주장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 예비비 확보, 국회 자금 차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에 대해 내용을 잘 알지 못함.
○ 대행에게 전달된 쪽지를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게 사실인지?	○ 제 기억에 따라 답변한 것임.
○ 대통령이 지시한 문건을 본인이 몰랐다고 하는 게 가능한지	○ 답변하기 어려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월 3일 비상계엄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민께 사과할 생각 있는지?	○ 국무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렸고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민생과 국정안정을 위해 최선 다할 것. 나름대로 공직의 자세를 유지하고 노력하고 있음.
○ 1급 회의를 F4회의에 이어 1시반에서 2시반 사이에 하였는지?	○ 그러함. 1시 40분 정도에 했음
○ 참석자는 몇 명 정도 됐는지?	○ 1급이 6명, 1·2차관과 저를 포함해 총 9명 정도였음
○ 이후 2시반에 퇴근해서 집에서 모니터링 했다고 했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참석하지 않았는지?	○ 집에서 계속 모니터링 했고 해제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음.
○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 하지 않은 이유는?	○ 2시 좀 넘어서 목적을 적시하지 않고 국무회의장으로 오라는 문자를 받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계엄과 관련돼서는 제가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고 1급들하고 얘기를 했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전화로 굳이 안 가겠다고 불참 통보를 함.
○ 최 대행께서는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하지만 제가 봤을 때 F4 회의에서 뭐가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1급 회의에서 뭐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왜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는 참석	○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했는데 해제 국무회의는 못 갔는지 등과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것이 이해충돌과 관련된 것은 아닌지 규명될 필요	

(나)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용현 피고인이 비상입법기구에 대해서 어떻게 진술했는지? ○ 국회 해산과 국회 기능을 마비하기 위한 조치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변명하고 있는 것이 문제임.	○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음.

(다) 김주현 증인(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화해서 본인이 안가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 대통령비서실장으로부터 안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에 보좌관을 통해 진행하였음.

(라) 정진석 증인(대통령비서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비서실에서 안가를 사용	○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 안가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 대통령 없이도 사용하는지?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에게 승인해주어서, 수석들이 가끔 사용함. ○ 그러함. 사례가 많지는 않으나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사항임.

(마) 박종준 증인(前 대통령경호처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안가는 누가 관리하는지? ○ 그럼 안가의 사용 승인권자가 경호처장인지? ○ 대통령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의 출입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지?	○ 대통령경호처장이 관리함. ○ 제가 직접 승인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예컨대 수석비서관들이 사용한다고 하면 출입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함. ○ 정진석 증인이 증언한 수석비서관들이 사용하는 안가는 대통령이 주로 사용하는 안가가 아닌 제가 주로 대기하는 별채를 의미한 것임.

(5) 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의 구체적 경위와 헌법 및 법률 준수 여부

(가) 이진우 증인(전 수도방위사령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4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정에	○ 그 '지금도'의 의미는, 그 당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서 비상계엄이 지금도 적법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인지	에는 적법하다고 생각했다는 뜻임.
○ 왜 그렇게 적법하다고 생각했는지, 군인이기 때문에 법을 모르고 따랐다는 말인지?	○ 군인이기 때문임. 기회를 주시면 설명하겠음.
○ 윤석열이 법률 전문가니까 합법 계엄이었을 거라 판단했고, '나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인지?	○ 그 부분도 기회를 주시면 설명하겠음.

(나) 최상목 증인(대통령 권한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을 깬 것은 군중을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이게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는지?	○ 대통령 관련 사항들은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어려움.
○ 대통령이 '군이 부당한 지시를 안 따를 거라 생각하고 비상계엄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런 비상계엄이 존재한다고 보는지?	○ 공직자로서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어려움.

(6)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의 임명과 포고령 포고 경위

(가) 박안수 증인(전 육군참모총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사령관이 계엄수행군을 지정해야 하는데 수방사, 특전사 등에 계엄수행을 지시했는지? 그러면 이 지휘관들이 계엄사령관의 지정없이 군을 투입한 것임. ○ 합참의장은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는데 계엄사령관과 협의했는지?	○ 제가 지정하지 않았음. 수방사, 특전사 출동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함. ○ 협의하지 않음.

(7) 계엄선포 전 병력 및 경찰력 동원을 위한 준비사항

(가)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경계태세 2급 발동상황과 비상계엄 상황과의 연관관계는?	○ 의장으로서 군사적 상황에서 우리의 대비 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 판단에서 경계태세를 발령한 것으로 비상계엄 지원과는 무관한 것임.

(나) 김명수 증인(합동참모의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이 없었으면 합참의장은 12월 3일 합참 지휘통제실 나오실 일도 없었고 경계태세 2급 발령도 할 일이 없었을 것임. 경계태세 2급 발령한 것이 계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 취지인지?	○ 적의 도발과 오판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방어 태세를 튼튼히 해야 되는 것이 합참의장의 기본적인 임무라고 생각하고 이에 집중한 것이지, 계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님.

(다) 이진우 증인(前 수도방위사령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수방사는 22년 3월부터 서울시 승인하에 CCTV를 볼 수 있는 계정을 받아 4개 부대 직통실을 운영하고 있는지?	○ 그러함.
○ 모 언론사는 수방사가 계엄작전 수행을 위해 서울시 CCTV 활용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지휘했다고 하는데 동의하는지?	○ 동의하지 않음. 그 시스템은 경찰과 협력을 위해서 평시에도 구축된 것임.
○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열람 시스템을 보면 CCTV를 한번 열람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같은 지역 그룹 내에 있는 모든 CCTV의 로그기록이 자동 생성되어 로그기록이 6회가 남게 됨. 실제로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수방사의 CCTV 열람	○ 말씀의 취지에 공감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은 41회임에도 로그기록은 430회가 남음. 과대포장된 수치를 통해서 수방사가 CCTV를 보며 현장을 지휘·통제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음.	
○ 계엄이라는 말은 중국 연나라 때 처음 등장함. 대통령은 경고성 계엄·계몽성 계엄이라고 주장하는데, 경고성 계엄·계몽성 계엄이 존재할 수 있는지?	○ 계엄의 연혁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음. 다만 계엄이라는 것이 얼마나 경제나 대외 신임도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는 분명하다고 생각함.

(8) 주요 헌법기관 등의 점거 경위

(가) 이진우 증인(전 수도방위사령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윤석열과 김용현이 증인에게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해제 결의안을 저지하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하였는지?	○ 그 진술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며, 재판에서 다룰 것이다. 여기서는 답변하지 않겠음.
○ 김용현 장관은 4차 변론기일에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진술했고,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누구를 체포하라거나 의원의 본관 출입과 의결을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는지?	○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제한됨. 당시 2시간은 수십년이 압축된 시간으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을 들었는지 스스로 기억나지 않아 12월 31일 마지막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에 의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음.
○ 조사받을 때까지는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었다는 것인지?	○ 답변드리지 않겠음

(9)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에 관한 사항

(가) 김대우 증인(방첩사령부 전 수사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 당일 23시경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를 빨리 구성하라는 지시받았나?	○ 받았음.
○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조국, 김민석, 김민웅 등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서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 구금시설로 이동하라는 지시도 받았나?	○ 정확히 체포하라는 말은 없었으나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키라고 들었음.
○ 수방사 B1벙커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한 것인가?	○ 그전에 수방사 B1벙커가 구금시설로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수방사로 이송시키라고 하였음.
○ 14명의 이름은 본인이 직접 들었나?	○ 직접 듣고 받아적었음.
○ 본인이 적은 14명의 명단과 홍장원 국정원차장이 이야기한 14명의 명단이 같은가?	○ 정확히 알지 못함.
○ 이번 계엄과 관련하여 실무적인 작업을 한 곳은 수사조정과인가?	○ 주로 수사조정과장을 통하여 지시하였음.
○ 공소장에 기재된 체포조 운용 계획과 관련하여 수사관을 5명, 10명씩 해서 25명을 꾸리라는 지시는 여인형 사령관의 지시	○ 예, 저한테 직접 전화가 왔고 중간에 출동조를 출동시키는 과정에서 한 6~7개 조 정도 출동시켰을 때 전화를 받고 다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에 따른 것인지?	시 전파했음. 지금까지 14명 명단은 다 잊고 3명만 집중하라고 해서 불러주신 3명만 전파하였음.
○ 지난 국방위 회의에서는 명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답하였는데, 그 이후 회의에서는 그런 워딩이 없었다고 상반되게 진술하였는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 ‘잡아서 이송시켜라’는 지시는 있었으나 체포라는 정확한 용어는 쓰지 않았음.
○ 잡아들이라는 말과 체포하라는 말은 같은 말 아닌가?	○ 제가 수사관들한테 지시한 것은 ‘우리는 직접 체포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있는 특전사나 경찰에서 체포를 하면 그 신병을 인계받아서 단순히 수방사로 이송시키는 임무만 수행하면 된다’라고 지시하였음.
○ 방첩사 문건에는 분명히 체포 명단이라고 써있고, 거기에 증인이 부서를 한 것 같음.	○ 그런적이 전혀 없음.
○ 대통령의 공소장에 따르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30분 후인 12월 3일 23시경 국방부장관에게 받은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하여 수방사 B1 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명령했다고 적혀있음. 이를 인정하는지?	○ 공소장은 저의 진술을 근거로 했을 것인데, 수방사로 이송하라는 지시였음.
○ 또한, 증인이 여인형에게 전화를 받고 4분 후인 23시 4분경	○ 맞으나, 군사기밀수사실장에게 사령관이 직접 같은 지시를 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방첩사 수사단장실에서 방첩사 안보실장 및 수사조정과장에게 경찰에 호송차를 요청하고 조사본부 구금시설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적혀 있음. 맞는지?	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추가적으로 확인해보라는 차원에서 지시한 것임.
○ 계엄 당시 출동조 단체 대화방에 체포대상자를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라는 공지가 있었음.	○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폐기 지시에 대하여 실장들 3명이 이야기해서 폐기하면 안된다고 하여 사령관에게 보고하였고, 체포 명단도 복원함
○방첩사 수사단장이 그 당시에 대형 간첩단을 적발해 가지고 이것들을 싹 잡아야 되는데 방첩사조차 혼자 못 잡을 정도로 많아 국정원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대통령의 '싹 잡아들여 정리해라' 이것은 틀린 말인지?	○예, 그런 것은 없었음.
○여인형 사령관은 이미 계엄 선포 전인 21시 20분 증인에게 방첩사 복귀명령을 내리고, 정치인 등 체포를 위해. 22시 30분 조지호 청장에게 체포 대상들의 위치 확인 요청을 했으며, 23시에는 증인에게 '체포조 구성을 하라' 이런 직접 지시도 내렸는지?	○체포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고 조사본부 100명 그리고 경찰 100명 병력을 요청받아 합동수사단을 꾸리라고 지시을 받았으며 수사관들에게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음. 그리고 수사관 49명 출발한 모든 수사관들에게 직접 가서 체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지시함. 수사관들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정문에서 많이 떨어진 대로변에 승차한 채로 대기조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방첩사령관이 14명의 체포자 명단을 하달한 후 00시 30분경 체포조가 방첩사에 출동했나요? 방첩사에서 B1벙커를 왜 점검했는지?	치함. ○ 예, 10개조가 출동했음. 다만, 저희가 직접 체포하려는 것은 아님.

(10)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의 동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가) 박안수 증인(전 육군참모총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금년 1월 23일 윤석열 탄핵심판 4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은 계엄해제안이 의결되자 김용현 전 장관과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즉시 집무실로 불러서 군 철수를 지시했다'고 진술했고, 김용현 장관도 이를 인정함. 그런데, 결심실에서 회의가 끝난 직후 행적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군 철수 지시를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받아서 했는지 말씀해주시길 바람	○ 1월 23일에 진술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억나지는 않음. 2시경 수방사령관에게 병력 출동 여부를 확인한 것이 아니라 2시경에 안보실장님이 병력이 투입되면 안된다고 말씀하셔서 통화하게 됨. 통화하니 수방사령관께서 국회 주변에 국민과 안전하게 이격되어 있다고 알려주었고, 1개 부대는 국민이 계셔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심
○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바로 철수하지 않고 국회 인근 여의도 공원과 성수대교 북단	○ 본인이 그때까지 병력을 어디에 운용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지시하거나 통제하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에 대기시켰는지?	그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음.
○ 본인이 대기시킨 것 아닌지?	○ 본인은 안보실장께서 병력이 투입되면 안된다고 말씀하셔서 확인을 했을 뿐
○ 그렇다면 왜 계엄사령관으로서 철수 지시를 내리지 않았는지?	○ 그때까지 병력을 투입하고 어떠한 목적으로 운용한 것이 아니고, 안전한 곳에 있다고 하여 곧 차를 타고 오겠다고 생각함. 또한, 구체적인 임무를 주지 않아 지시를 내리지 않음
○ 그 시간은 이미 1시간 반이나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말이 앞뒤가 맞지 않음	○ 그때 그렇게 확인하였고, 안보실장님께 전화해서 다 안전한 곳에 있다고 말씀드림. 대통령님이 결심실에 오셔서 15분 가량 계셨는데 장관님도 말씀하시고 법령집도 오래 보심. 이후 대통령님께서 호출하셔서 2시 42분경 출발해 50분경 도착함. 옆방에 여러명과 있다 부르셔서 들어가니 철수하라고 해서 합참으로 감.
○ 철수 지시를 누구에게 받았는지?	○ 대통령께 2시 50분쯤 받음
○ 2차 계엄을 준비하다 여의치 않아서 철수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은지?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 계엄 해제 이후 곧바로 철수하지 않고 대기시키고, 확인하고 출동을 준비한 것은 그러한 행적이 보이는 것이 아닌지?	○ 추가 준비한 사항은 없었고, 확인하지 않았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사단에도 전화하고 수방사령관에게 전화로 추가 확인하지 않았는지?	○ 그렇지 않음. 이진우 사령관에게는 최초에 지휘소 개소 여부 보고받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보실장님 통화한 이후에 전화드렸는데 전화가 잘 안되었음. 어떻게 통화했을 때 병력이 안전한 곳에 있다고 하여 안심했음. 그다음에는 그 앞에 경찰 병력이 필요한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수방사령관께서 서울 담당이시니까 서울청장님하고 좀 협조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한 적은 있어도 병력을 특정 장소로 이동시킨 적은 없음.
○ 육군본부에서 34명의 장성과 영관급도 출동 대기시키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한 것은 누구의 지시인지?	○ 이것은 22시 50분경 상황실 구성을 토의하다 계엄과를 중심으로 상황실을 구성하고 육군본부에서 올라와서 인수인계를 하자는 말이 나왔고, 전화 받아 정작부장에게 육군본부에서 올라오는 것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내림. 지시 자체는 제가 했는데, 3시쯤 참모차장이 전화 와서 제가 전화를 안받아서 정책실장에게 전화해 정책실장이 승인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누구에게 전화받았는지?	○ 정작부장과 통화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음
○ 국회 인근 안전지역에 있다고 확인한 시간이 몇시인지? 그리고 그때까지 대기시킨 인원을 철수시키라는 것을 대통령이 결심하고 지시내렸다는 것인지?	○ 2시 4분에서 18분 사이에 확인하였음. 대통령이 어디에 어떤 병력이 있다라는 말씀은 안하시고 병력 철수 하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내려왔음. 당시에 국회에만 병력이 있는줄 알고 있었음

(나) 이진우 증인(前 수도방위사령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내란 혐의 관련해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의 유무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 알고 있는지?	○ 알고 있음
○ 최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이 바뀌고 있는 것에 대해 알고 있는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제한됨
○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이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조사 청문회, 변론기일을 거치면서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김용현 장관은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언급하였음	○
○ 김용현 장관은 4차 변론기일에	○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서 의원이 아니라 요원을 빼내라고 진술했고,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이진우 수방사령관은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누구를 체포하라거나 의원의 본관 출입과 의결을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는지?	변드리기는 제한됨. 당시 2시간은 수십년이 압축된 시간으로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을 들었는지 스스로 기억나지 않아 12월 31일 마지막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에 의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음.
○ 조사받을 때까지는 그런 지시를 받은 기억이 없었다는 것인지?	○ 답변드리지 않겠음
○ 증인은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당일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거나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바다 없다고 했는데 맞는지?	○ 헌법재판소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음.
○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군이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는데, 증인은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적법한 지시를 한 것이라고 믿고 따랐다고 했음. 결국 증인이 수행한 계엄 업무는 불법적인 것이 됨. 이에 대한 견해는?	○ 저 같은 기동부대의 전술 지휘관이 대통령 또는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사항을 위법이라고 판단하는 것도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생각하면 국회 수호 업무를 하는 수방사로서 특전사 헬기를 격추하고 교전했어야 되는데 그러한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음.
○ 증인은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계엄이 위헌·위법임을 판단할 여지가 없었다고 했는데 어떤 취지인지?	○ 군에 대한 문민통제 체제에서 야전의 사령관이 대통령이나 장관의 지시가 위법이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반기를 들면 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는 항명이고 오히려 더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진술함.
○ 증인은 군인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명령을 따를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데, 대통령의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 대통령의 명령은 직접적으로 없었으나, 계엄선포 관련 대국민담화를 전략적 지침으로 이해함.
○ 대통령의 명령은 대국민담화 외에는 없었는지?	○ 그러함.
○ 비상계엄은 평시가 전시로 전환되는 것인데, 부하들에게 소총을 차에 두고 내리라고 명령한 이유가 무엇인지?	○ 전시상황으로 이해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국제법과 국내법을 고려해 지시함.
○ 12월 1일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계엄 선포를 유추할 수 있는 어떤 지시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 없었음
○ 소총을 내려놓고 지시한 이유는 무엇인가?	○ 많은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소총을 내려놓고 내리라고 해서 심적부담이 있어서 계엄사령관 등에 총을 지참안하고 내렸다고 보고했더니 잘 했다고해서 심적 안도감이 들었음

(다) 김명수 증인(합동참모의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은 1월 14일 국정조사 회의에서 수방사·특전사의 작전	○ 뒤에 말한 부분은 맞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지휘권을 계엄사로 인계할 때는 법령의 절차에 의해 장관과 통수권자의 승인을 받아 인계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12월 4일 03시 25분에 수방사·특전사의 작전지휘권을 환원받았다고 말함. 맞는지?	
○ 지휘권을 계엄사에 인계한 시점은 언제인지?	○ 이미 제가 들어왔을 때 지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음.
○ 증인이 지휘권을 인계하는 절차가 없었는데 다시 이를 환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임. 만약 이를 늦게라도 알았으면 지휘권을 인계하는 정식 절차를 밟던지 아니면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건의했어야 함.	○ 우선 계엄군 지휘권과 부대 지휘권은 엄격히 분리되어 있는데,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수방사와 특전사가 계엄사의 통제하에 있었고 그에 대한 상황을 늦게 파악한 것은 인정함. 법령적인 부분을 떠나 누가 부대지휘권을 가지는 지 불명확하였고, 국민과 부대의 안전을 위해 합참이 부대 지휘권을 갖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장관님께 건의하여 지휘권을 환원받았던 것임. 항상 계엄 지휘권과 부대 지휘권이 통합된 상황을 가정하고 연습하였는데, 만약 분리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의 고민이 필요함.
○ 경계태세 2급은 몇 시에 누가 발령하였는지?	○ 제가 22시 40분에 구두지시로 발령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이나 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	○ 아님.
○ 당시 북한 관련 상황이 전혀 없었는데 왜 발령하였는지?	○ 당시 상황에 대한 판단이 안되는 상태에서 선제적으로 경계태세를 높여 안보를 강화해 놓아야 하겠다고 생각함.
○ 지금까지 북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된 전례가 없음. 이는 실탄까지 전군에 분배하는 등 민간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임. 오히려 전군을 계엄군으로 동원하기 위해 준비태세를 갖춘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음.	○ 전군이 비상계엄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되었다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음. 모호한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할 것은 일단 경계를 강화하는 것이고 그래야 군의 이동 등을 통제할 수가 있음. 북한 관련 상황에 대해서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지만, 국가 내부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음. 이는 합참의장의 고유한 판단 및 권한 사항임.
○ 증인의 휘하에 계엄과가 있고 계엄이 선포되면 합참의장이 당연히 계엄사령관이 되어야 했음에도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된 점에 대해서 왜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는지?	○ 계엄 선포시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된 다는 부분은 현재 장성급 장교로 지정하기로 재정되었음.
○ 경계태세 2급 발령 상부에 보고했는지?	○ 보고 계통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음
○ 발령 시에는 상황평가 안하고	○ 적 도발의 오판을 방지하고 상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해제할때만 상황평가 안하였으므로, 비상계엄을 지원하기 위한 경계태세 2급 발령으로 보임	황이 모호함에 따라 상황파악을 위해 경계태세를 상향한 것이므로 동의하지 않음

(라) 김대우 증인(前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4년 12월 7일 신성범 정보위원장실에서 진술한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에 따르면, 방첩사는 합수본부장 임명을 대비해 준비했고, 계엄선포 후에도 계속 장관의 지시를 받았고, 국회와 선관위에 새벽 1시경 병력을 보냈으며, 체포조 관련해서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명단을 주었다고 하였는데, 증인이 이해하고 있는 상황과 동일한지?	○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관한 부분은 맞으나,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음.
○ 그렇다면 국회와 선관위에 새벽 1시경 병력을 보냈다는 것은 알고 있는지?	○ 선관위에 대해서는 몰랐음.
○ 그러면, B1 벙커 수감시설 조사 지시만 들었는지?	○ 아님. 수방사로 이송하라는 지시와 B1 벙커가 구금시설로 가능한지에 대한 지시는 본인이 아닌 군사기밀수사실장에게 직접 내려진 것임.

(11) 계엄해제 의결 후 해제 공고 지연에 관한 사항

(가) 정진석 증인(대통령비서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회 계엄해제 이후에 한덕수 총리와 통화하였는지?	○ 그러함.
○ 어떤 내용이었는지?	○ 계엄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하니 다시 국무위원을 소집해 달라는 요청을 했음.
○ 2시 넘어서 통화하였다고 했는데, 결심실에 대통령을 보러 간 것 후에 통화한 것인지?	○ 그러함.
○ 결심실에 간 이유는?	○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안보실장이 대통령을 모시고 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안보실장과 함께 간 것임.
○ 3분만에 결심실에서 나와서 대통령실로 이동하였는지?	○ 그러함.
○ 증인은 계속해서 대통령에게 국회 의결에 따라 계엄해제를 건의드린 것인지?	○ 그러함.
○ 박안수 증인이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신원식 실장과 통화하였고 그 직후 대통령실에 회의가 소집되었다고 하여 동행했다고 진술했는데, 그 회의는 정진석 증인이 모집한 것인지?	○ 아님.
○ 한덕수 총리가 2시 30분에 도	○ 제가 배석하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착하여 대통령과 면담하였는데 다른 배석자가 있는지?	
○ 정리하면 한덕수 총리,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계엄해제를 위해 움직인 반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장관, 박완수 육군참모총장은 2시 50분 병력 철수 지시를 내리기 전까지 비상계엄을 해제할 결심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 제 기억으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건에 대해 바로 승인하시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음.
○ 고개를 끄덕인게 아니라 대통령이 바로 승인하였는지?	○ 그러함. 승인하셨기 때문에 제가 국무회의를 소집하였던 것임.
○ 이는 2차 계엄을 시도했는지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국회 계엄해제 의결 후 병력 철수 시점까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장관, 박완수 육군참모총장이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들은 사람들의 거짓 없는 진술이 필요함.	○ 2차 계엄은 들어본 바가 전혀 없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바는 계엄해제를 해야 한다는 건의에 대통령이 바로 승인하셨다는 점임.
○ 한덕수 총리는 지난 1차 청문회에서 증인과 통화하며 “이걸 종료시켜야 한다. 우리가 가서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하자”고 말했다고 증언하였는데, 증인은 방금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총리에게 전화했다고 하였음. 둘 중	○ 그게 그렇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누가 사실인지?	
○ 증인이 증언한대로 대통령이 결심지원실에서 계엄 해제를 결심했다면, 바로 철수 지시를 하면 되는데, 굳이 3시까지 기다렸다가 철수를 지시한 것인지	○ 결심지원실에서는 계엄 해제에 대한 애기를 하지 않았음.
○ 아까는 “계엄 해제를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대통령한테 이야기 했더니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증언하지 않았는지?	○ 그런 의도를 가지고 대통령을 집무실로 모셔와야겠다고 생각한 것임.
○ 증인은 아까 총리가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를 간곡하게 진언했다고 증언하였는데, 계엄을 해제하려는 대통령한테 계엄을 해제하자고 진언을 한다는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는지?	○ 계엄 해제를 제가 먼저 건의를 드렸고, 대통령이 승인을 하였지만 총리 앞에서는 승인하지 않아서, 총리가 진언을 드린 것임.
○ 대통령이 즉시 비상계엄 해제를 하려했다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정황이 넘쳐남. 해제하려는 사람이 왜 결심지원실에서 40분간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과 논의했겠는지?	○ 저는 결심지원실에 3분 정도만 있었고, 수사기록・출입기록・CCTV에 다 남아 있음.
○ 결심지원실에서 있었던 일 등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람.	○ 지휘통제실에 머문 시간이 3분 정도 밖에 안되었고, 대통령을 모시고 대통령실로 돌아감.

(나) 박안수 증인(전 육군참모총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헌법재판소 제4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은 계엄 해제 즉시 군 철수를 지시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증인의 답변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 군 철수 지시를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오전 2시 50분이었음. 대통령이 말하는 즉시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겠음.
○ 합참 결심지원실에 대통령, 장관, 계엄사령관이 있었는데, 무슨 얘기를 나눈 것 같은지?	○ 대통령이 법령집을 보면서 장관 등와 말을 하고 있었고, 30분경 비서실장이 와서 대통령을 모시고 나갔음. 2차 계엄모의를 한 것 같지는 않음.

(12) 내란범죄 수사주체 논란과 수사상황 점검

(가) 김선호 증인(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현재 증거보전을 하고 있는지, 계엄 관련 증거 인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 증거인멸한 적 없음.
○ 국방부에서 자체적으로 감찰 및 조사를 하고 있는지, 계엄 과정에서 군이 동원된 이유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 현재 수사가 진행중으로 국방부가 이에 대해 별도로 조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특검이 국가 안보를 해치는 방식으로 무작위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 그러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봄.
○ 심우정 검찰총장이 증인에게 김용현 장관의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는지?	○ 전화번호를 달라는게 아니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음.
○ 증인은 김용현 장관의 비화폰 번호를 전달한 것인지?	○ 맞음.
○ 현재 수사받고 있는 군인이 몇 명인지?	○ 정식 수사 개시된 인물은 29명임.
○ 그 외 조사받고 있는 군인은 몇 명인지?	○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나, 수 백 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군인은 법령에 따라 명령을 받아들이고 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 포고령은 명령에 해당하고 포고령이 지시한 사랑을 따를 의무가 있음. 부당한 명령에	○ 어떠한 방법으로든 빨리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지만, 극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사태에 대해 명령의 부당성을 판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 수사 또는 참고인 조사를 받는 것 자체로도 일상 및 업무에 상당한 부담이 됨. 이 상태로 두어도 되는 것인지?	

(나)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검찰이 경찰의 체포조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데, 박현수 경찰국장과 같은 내란의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가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 방금 내용을 처음 파악하였음. 관련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며 해당 내용 검토하겠음.
○ 12월 8일 새벽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출석 전에 이진동 차장과 통화한 것이 사실인지? 어떤 이유로 통화한 것인지?	○ 김용현 전 장관의 신병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었음. 김용현 전 장관이 군사보호시설 내에 있어서 영장이 있어도 체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설득을 통해 출석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통화하였음.
○ 김용현 전 장관이 노상원의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이번 내란 사건의 주요 인물들	○ 경호처 차장에 대한 수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이고, 내란 수사와는 별개 사건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이 모두 비화폰을 사용했음이 밝혀졌는데, 그렇다면 비화폰 서버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 김용현이 이진동 차장과 통화했는데, 그때 쓰인 폰이 노상원에게 김용현이 주라고 지시해서 경호처가 제공한 비화폰이라는 것을 인지했는지?	○ 어제 방송을 보고 인지함
○ 12월 4일 노상원이 그 폰으로 통화했는데, 이 비화폰이야말로 내란 공범들 간 긴밀한 통화가 이루어져서 고의적으로 막는 것 아닌지?	○ 전혀 그렇지 않음
○ 노상원이 지급한 비화폰으로 서로 통화했는데, 내란죄의 공범 관련성을 인지하는 것임. 따라서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도 인지 수사 해야하는 것 아닌지?	○ 전부 다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검찰이 수사하면 안되는지?	○ 구체적으로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이냐는 말씀 못드리나 나온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수사팀이 아니라 알지는 못함.
○ 경호차장이 노상원에게 비화폰을 지급하고, 이 사건에 사용되었으면 공범 김용현의 지시에 따른 것임. 그렇다면 공모하고	○ 앞으로 수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는 것은 부적절함. 그러나 이 사안이 엄중한 것을 알고 검찰에서 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공동 실행한 의혹이 있어 당연히 인지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또한 범행에 공여된 비화폰에 대해 압수할 수 있는 것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자리에서 국정조사위원으로서 증인에게 드린 말씀을 잘 인지하셔서 수사 방향 정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람.	○ 잘 유념하겠음.
○ 규정이나 법리가 불명확할 때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하는게 원칙인지?	○ 그러함.
○ 윤석열 대통령 대한 구속기소 과정에서 검사장 회의가 있었는데 참여하셨을 것이라 봄. 당시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 여부,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법리적인 논의에 대해 검사장들 간 의견이 분분했는지?	○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는 적절하지 않으나 다양한 의견이 나온 것은 맞음.
○ 검사장들도 의견이 분분했다면 보수적으로, 피의자의 이익으로 해석해서 불구속으로 경찰에게 수사를 돌려보냈어야 한다고 생각함. 공수처는 행안부장관의 단전·단수 지시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경찰로 내려보냄. 이에 공수처의 기본적 법리 검토 능력에 의문이 듦.	○
직권남용은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할 수 없고 행안부장관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직권남용 미수죄로 수사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내란죄는 은 아예 수사권이 없는 걸로 명시되어 있어서 경찰에서 수사하는 게 순리이므로 불법수사에 해당함. 이후 검찰이 담당해야 할 공소 유지 차원에서 법리적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법리적으로 확립되지 않았으면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고 생각함.	
○ 1심 재판은 일주일에 몇 번씩 열릴 것 같은지?	○ 재판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음.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를 보면 일주일에 4번 재판하였음. 탄핵 재판이 끝나고 종결된 상황 하에서도 당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구속이 되면 6개월 내에 1심 재판을 마쳐야 하는지?	○ 그러함.
○ 당시 6개월이라는 구속기한을 맞추기 위해 역산해서 일주일에 4번 재판했음. 비상계엄과 관련된 조사 인원이 많고 이분들에 대한 증인 신청이 다 인용되고 반대신문권을 다 보장하면 역산해서 6개월 내 일주일에 3~4번 재판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대로 된 재판이 될 수 있는지?	○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헌법재판소도 탄핵 심판을 주 2회씩, 검찰도 형사재판을 주 3~4회씩 하면 새로운 내용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거나 새로 검토해서 증인을 신청할 수 없는데 이는 적법 절차 및 방어권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 이는 법원에서 고민할 사항으로 보임.
○ 공소유지 차원에서 검찰의 공소유지는 진실을 밝히는 데도 목적이 있으나, 당사자의 방어권도 보장해야 하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검토해주길 바람	○ 유념하겠음.
○ 김용현과 출석을 조율하기 위해 통화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였는지?	○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음.
○ 김용현과 통화를 할 때 증인이 먼저 걸었는지?	○ 제가 건 것으로 기억함.
○ 통화한 시각이 몇시인지?	○ 저녁이었던 것으로 기억함.
○ 증인은 위증을 하고 있음. 12월 6일 21시 09분에 김용현 장관이 증인에게 전화를 하였음.	○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전화를 하였음.
○ 김용현 장관이 전화하기 직전인 21시 07분 증인에게 문자를 보냄.	○ 문자 한 것도 있는거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전화를 하였음.
○ 통화를 녹취하였는지?	○ 따로 녹취하지 않음.
○ 20시 40분에서 21시 사이에 이찬규 검찰 특수본 부장검사가	○ 기억이 나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김용현 장관에게 출석을 회유하는 전화를 하자 장관은 대통령과 통화 후 말하겠다고 답변함. 이찬규 부장검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지?	
○ 김용현의 군사보좌관인 김철진이 김용현의 비화폰을 가르쳐 주고 거기에 전화를 걸었는지?	○ 김철진이 누구인지 모름. 저는 국방부 협조를 받아 수사팀으로부터 전화번호를 받음.
○ 왜 개인 휴대전화가 아닌 비화폰 번호를 가르쳐 준 것인지? 녹취를 못하게 하려던 것 아닌지?	○ 제가 알기로는 김용현 장관이 쓰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연락이 안되서 비화폰을 가르쳐 준 것으로 알고 있음.
○ 통화한 사람이 김용현 한 사람이었는지?	○ 그러함.
○ 대검에 김용현 장관이 출석하여 수사하는 일련의 과정에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이 개입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그건 잘 모르겠고,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용현 장관의 신병 확보인데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득할 수 밖에 없었음.
○ 장관의 출석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대검이 먼저 전화를 했어야 하는데, 반대로 김용현 장관이 먼저 전화를 걸었음.	○ 제 기억으로는 제가 전화를 걸었는데, 어쨌든 통화의 주요한 내용은 김용현 장관의 출석을 설득하는 것이었음.
○ 김용현장관에게 먼저 연락 연락했는지?	○ 제가 먼저 문자를 보내 가지고 통화를 하자고 그랬고 그다음 전화가 온 것으로 확인됐고, 신병확보가 급해서 12월 5일날 오전의 저희가 먼저 출국금지를 했고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것임

(다) 박종준 증인(前 대통령경호처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차벽을 설치하고 철조망을 보수하라고 지사하였는지?	○ 제가 지시한 것이 맞음. 1차 체포영장 집행 경과를 고려할 때 정문 안에서 물리력으로 대치할 우려를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고, 철조망은 부분적으로 낡은 부분이 있어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함.
○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알고 있는지?	○ 알고 있음.
○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난 법사위 회의에서 모 위원의 질의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답변 내용을 고려하면 경호처가 출입을 허가하지 않았따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할 수도 있다는 의미임. 증인은 출입을 허가한적 있는지?	○ 없음.
○ 그렇다면, 위법한 집행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고,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면 경호처의 출입	○ 예. 참고로 체포영장 집행 전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법리 검토를 지시하였고, 군사기밀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거부도 적법하므로 처벌하지 않거나, 위법성 논란이 있다면 공수처와 경호처 모두 처벌되어야 함. 증인은 이 점을 명확히 하고 당당하게 대응하기 바람.	설에 대한 수색영장의 경우 시설장의 허가가 없으면 진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음.

(라) 김주현 증인(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지난 청문회에서 증인은 대통령 또는 김용현 장관과 통화한 적 없다고 했는데 그러한 진술은 유효한지?	○ 그 당시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12월 6일 당시 김용현 장관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통화한 기억이 없음.

(마) 별도 증인 없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방첩사 대령 4명과 검찰, 국정원 개입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를 촉구함. ○ 윤석열은 군을 사유화를 통해 사이버 내란도 동시에 전개하면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고 판단함. 여인형 정보사령관은 내란 당일 방첩사 1처장에게 검찰과 국정원 지원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라고 지시했음. 여러명이 방첩사령관이 검찰과 국정원을 언급한 사실을 진술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수사기관이라는 용어로 바꿔 공소장에 적시했는데 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됨. ○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탄핵변론에서 서버를 단순히 확인하는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서버 확보는 단말기 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통제하라는 의미임.	

(1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관련 사항

(가) 최상목 증인(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나? 권한대행이 헌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재가 인용결정을 하면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 해야 한다는 것 이해하나?	○ 탄핵 관련 부분은 국회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 것으로 생각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나, 아직 결정이 없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없음.
○ 헌법재판소의 임명 결정이 나오면 재판관을 임명하겠나? 헌	○ 아까 답변드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한 공문이 있는데 왜 합의가 없었다고 말하나? 헌재의 임명 결정이 나오면 즉시 임명하는 것이 헌정질서를 빨리 복구하는 방법임.	
○ 헌법재판관은 헌정사상 여당 1명, 야당 1명, 여야 합의 1명으로 국회에서 추천해왔던 것을 알고 있나? 여야 합의를 통해서 임명해야 한다는 기본적 대전제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동의한다고 생각함. 여야 합의 기준시점이 핵심 쟁점인데, 국회에서 표결하는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함. 인사청문 과정에서 적정 후보가 아니라고 생각되면 그런 의사는 철회될 수 있기 때문임. 사정 변경이 있었고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는 입장에서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헌재 심리 중이나, 당시의 판단은 여야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판단임. 지금이라도 합의해 주시면 임명하겠음.
○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박근혜정부 비서관 시절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 관련 수사를 받았고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발언함. 과거 사건과 연계해서	○ K-스포츠재단 관련된 건 관여한 것이 전혀 없고, 미르재단 관련된 부분은 쟁점 없다고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수사를 통해 괴롭히겠다는 의사로 판단됨. 실질적으로 관여되거나 수사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나?	
○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되고 있음. 재판관 9명 임명 방식은 국민의 다양한 견해를 녹여내자는 취지이지, 민감한 사항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라는 취지는 아님.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임.	
○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례적으로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고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윤 대통령 직접 신문을 금지하는 등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함. 탄핵심판 사유 중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고, 증거신청을 예단을 가지고 계속 기각하고 있음. 문형배 권한대행의 SNS,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 논란, 이미선 재판관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이런 편향성을 보고 헌법재판소의 내재적 한계이고 다양성의 범	○ 헌재의 심리 중이고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나? ○ 헌재 재판관 임명 관련, 정치적 성향이나 개인적 소견에 대해 문제 제기하면서 헌법재판소 공정성을 탄핵하고 있으나, 현재 대행도 여야 합의로 선출한 것임. 탄핵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한 흔들기로 생각함. 마은혁 재판관도 여야 합의했으나 합의를 깨고 인사청문회 참여하지 않음.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보냈으면 국회의 의사가 아닌가? 국민주권을 위임받아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 안 하는 것이 헌법 위반 아닌가? ○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정족수에 대해 논란이 많았고, 헌재 주석서 등에서도 200명이라고 밝히고 있음. 헌재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부총리는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됨.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대행은 하고 있는 게 맞으나, 국가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은 행사하면 안 되는 것임.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 헌법재판소	○ 여야 합의 관행을 존중해서 임명을 한 것이고, 여야 합의를 기다리고 있음. 구체적인 법률 논점은 헌재의 심리 중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재판관 임명해서 그 재판관이 판결하는 것의 효력에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임.	

(나) 한덕수 증인(국무총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헌법재판소의 공정성,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되고 있음. 재판관 9명 임명 방식은 국민의 다양한 견해를 녹여내자는 취지이지, 민감한 사항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라는 취지는 아님.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임. ○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례적으로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고 증인신문 시간을 제한하고 윤 대통령 직접 신문을 금지하는 등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함. 탄핵심판 사유 중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고, 증거신청을 예단을 가지고 계속 기각하고 있음. 문형배 권한대행의 SNS,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 논란, 이미선 재판관 친동생 이상희 변호	○ 헌법재판소 판결은 공정하고 절차적 정당성, 상식에 맞아야 함.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여부의 논쟁, 헌법재판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 방안, 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 여야 합의로 임명하는 절차에 예외를 두지 않았던 것인지에 대해 국민과 학자들, 재판관님들이 잘 아시리라 생각함.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니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사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등 이런 편향성을 보고 헌법재판소의 내재적 한계이고 다양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나?	우리나라의 중대한 국민적 의견의 분열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고 있음.

(14) 기타 국정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일체

(가) 최상목 증인(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폭동 사실은 언제 알았나? 5시간 반 후에나 안 것이 적절한가? 국가 체계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나?	○상상할 수 없는 불법 폭력 사태라고 생각하고 강한 유감 표시하고 있음. 재발하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하고 있음. 9시 50분 정도에 경찰청에서 보고 받았고 1시간 정도 전에 알았음. 그런 부분에 내부적 반성이 많았음. 지금은 경찰청과 핫라인 구축하고 있음.
○1월 31일 내란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함. 여야합의가 안 되었고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달라.	○특검법은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이므로 보충성·예외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재판 절차가 시작되어 별도의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의견과, 일부 위헌적 요소와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컸음.
○ GDP 6조 3천억원이 날아갔는데 알고 있나? 소상공인들 엄청 힘들다고 소비 절벽 이야기하고 있음.	○ 추정치의 근거는 알 수 없음.
○ 부총리는 대통령권한대행이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현재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200명(3분의 2)인지, 151명(과반)인지 논란이 많음. 헌법재판소 주석서와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에 따르면 탄핵소추 정족수는 200명임.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를 151명으로 보고 표결을 강행하여 헌재에서 해당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헌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면 안됨.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면 나중에 판결 효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헌법 및 법률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음.
○ 헌법 제111조는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한 자를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고, 영문 번역본에도 'Based upo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라는 문구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가 없으므로,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의 임명 의무가 명확함. 따라서,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위반 아닌지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 및 법률 위반이라는 점을 인정하는지?	○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기본 방향은 말씀드렸음. 아직 결정이 나오기 전이므로 예단하여 답변하기 어려움.
○ 경찰국장 박현수가 내란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데, 이를 알고도 승진 인사를 한 것인지? 탄핵된 행안부 장관 대신 차관의 의견을 받아서 인사를 한 것인지?	○ 그런 구체적인 사항은 알지 못했음. 국정 안정 차원에서 연말·연초 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진행한 것임.
○ "서부지법 폭동은 상상할 수 없는 사태이며,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하였는데 지금도 같은 입장인지? 그렇다면 12·3 비상계엄도 헌법 파괴행위이고 위법하다고 생각하는지?	○ 그러함. 사법적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위법함.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도 내 상식으로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하며, 반대했음.
○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는 불복 절차가 없다는 것 알고 있는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라고 결정하면 지체 없이 임명할 것인지?	○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없기 때문에 미리 예단해서 말할 수 없음.
○ 치안정감 인사 관련 대통령실과 협의하였는지	○ 검증 절차는 진행했지만, 인사 내용과 관련된 협의는 없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이 치안정감 인사를 주도하였음.
○ 정무직이 아닌 인사는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경찰청 치안정감에 대한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지	○ 국정 운영과 치안 공백을 막기 위해 인사가 필요했음. 치안정감은 정무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 서울경찰청장은 사실상 정무직인데, 직무대행 체제에서 이런 인사가 가능한지, 치안정감 보직을 이동하는 것도 방법인데, 왜 그 선택을 하지 않았는지?	○ 서울청장이 공석인 것 자체에 대해 문제라고 생각함. 행안부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 차장이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임.
○ 치안감 승진은 보통 3년이 걸리는데, 이번에 1년 만에 3명이 승진하였음. 파악하고 있었는지?	○ 행안부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 차장이 협의한 내용을 승인한 것임.
○ 연말 연초 국정 안정을 위해 경찰 인사를 단행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정국 혼란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박현수를 승진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 행안부장관직무대행과 경찰청장직무대행이 해당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임. 필요하면 행안위 등에 보고하겠음.
○ 대통령의 권한 중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과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 구분됨.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원수의 권한이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에도 민주당이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논	○ 위원님이 법률 전문가시니까,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리를 주장하여 임명이 무산됨. 따라서 지금 민주당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과거와 모순되는 것임. 야당은 치안정감 인사에 대해 “대행의 대행이 추천하는 인사는 비상식적” 이라고 비판하나 헌법재판관은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함. 헌법재판소 재판 결과를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1명을 추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8명의 재판관으로도 재판 진행이 가능하므로, 굳이 임명을 서두를 필요가 없음.	
○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문서를 즉시 확인하지 않은 점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음. 첫 문장만 보고 무시하라고 결정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 "정치적 불확실성의 원인은 내란인지? 계엄인지? 아니면 대통령 탄핵인지	
○ 헌재가 탄핵 심판을 빨리 진행해야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제가 안정됨. 최상목 대행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인정했으므로, 신속한 탄핵심판이 필요함. 헌재의 결정을 지연시	○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히 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키거나 불복하는 것은 경제 회복과 모순되는 것임.	
○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도 권한대행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있으므로 헌재 결정이 있은 후 곧바로 임명할 필요	
○ 경찰 인사를 진행할지 여부는 행안부 차관이 이야기 한 것인지?	○ 그러함.
○ 경찰 인사안을 만든 것은 경찰청 차장인지?	○ 행안부장관 직무대행에게 물어보니 의논을 해서 만들었음.
○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알고 있던 것 아닌지?	○ 그런 의혹은 사후에 알게 됨.
○ 이번에 승진했던 박현수 국장이 비상계엄 당일 오후에 조지호 청장 만난 사실 알고 있는지?	○ 전혀 모르고 있음.
○ 오후 4시경 만났는데, 왜 만났는지 알고 있는지?	○ 알지 못함.
○ 경찰 인사안을 협의하기 위해 만났다고 하는데, 승진할 사람이 내란 동조 핵심인 조지호 청장과 인사안을 협의하고 셀프 승진하는게 말이 되지 않음. 대행께서 이 부분을 꼭 점검해 보길 바람	○ 행안부 직무대행으로 하여금 확인해보라고 말씀드리겠음.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므로 확인해서 추후 답변드리겠음.
○ 헌법재판소가 여야 합의를 확인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말씀	○ 삼단논법으로 말씀하시길래 답변 드린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하셨는데?	
○ 마은혁 후보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주문이 나왔음에도 여야합의가 필요하다거나 법무부장관 또는 법제처장의 의견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 아닌지. 마은혁 후보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주문이 나오면 임명할 것인지?	○ 언론에 법무부, 법제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렇게 이야기 한 적이 없음. 그리고 아직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움.
○ 법원이나 헌재에서 결정을 하면 그에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고 정치적 안정을 줘서 경제와 민생이 안정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 유념하겠음.
○ 계엄과 전혀 무관해보이는데 특검을 거부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지 이해가 가지 않음.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법에 따라서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에 귀속한다는 것이 법무부의 일관된 답변이고 또 헌재 선고는 법제처의 법령 해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법제처의 답변임. 법의 근거가 명확한 만큼 권한대행께서도 법의 판단을 하시길 촉구함	○ 그렇게 하겠음.

(나) 한덕수 증인(국무총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할 때 의결정족수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임. 마은혁 후보자 임명문제에 대해서는 한 달 만에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변론을 재개하였으나, 탄핵 의결정족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심리기일조차 잡지 않음. 어떻게 생각하나?	○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 변호사를 통해서 헌재가 하루 빨리 구체적 정족수에 대한 결정을 해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정식 문서로 제시하고 있음.
○ 탄핵 의결정족수가 200석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가 됨. 무효인 탄핵소추에 기해서 후임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하는 문제가 생기고 재판관 임명이 원천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판단이 먼저 나오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판단이 나오는 것이 논리적 수순이라고 생각함.	
○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54일 만에 첫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또 내란죄는 뺐음. 실질적으로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것을 내란죄로 의율한 것인데 이 부분이 빠진 것은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함.	○ 고도의 헌법 해석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헌법재판소가 최종적 결론을 내는 기관이고 모든 헌법재판관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서 임명하는 최고의 헌법기구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 결정을 내려주리라 믿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현재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의 진행 경과는?	○ 변론준비기일을 두 번 하였고, 2월 19일에 첫 변론기일을 잡았음.
○ 청구인 측에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부분에 대한 철회 요청이 있었는데?	○ 변론준비기일 등을 거치며 쟁점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보고받았으나, 정확한 내용은 파악하지 못함.
○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시 의결정족수 논란에 대한 견해는?	○ 많은 전문가들이 쟁점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안임에는 분명함. 또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음. 다만, 여러모로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저에 대한 일로 논란을 가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여 국회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헌재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중임.
○ 현재 야당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어느 권한대행도 본인이 생각하는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믿으므로 지나친 탄핵소추는 자제되기를 바람.
○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에 일단 직무정지가 되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는데, 증인의 견해는?	○ 제도를 만들었던 취지나 다른 나라의 탄핵심판제도 운용 현황과 비교할 때 다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함.
○ 탄핵소추가 의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최종 판단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를 유지하도록	○ 이는 국회의 결정사항이지만, 그 사람이 계속해서 국가에 해를 끼치는 상황이 아니라면 국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가 운용을 위해서 직무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다)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내란특검법 제19조에 규정된 압수수색에 관한 특례 조항은 형사소송법 제110조를 예외를 하자는 조항인데, “국정원, 국방부, 합참, 각 군,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는 국가정보원법, 군사기밀 보호법을 이유로 이 법에 따른 압수, 수색 또는 검증 등 수사 및 재판에 필요한 증거의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함. 법원행정처가 이러한 특례 조항이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조항이다, 무제한적 압수수색을 허용할 경우에 국가안전보장에 여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내란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된다면 국방부, 합참 그리고 각 군에 무제한 압수수색이 가해지고 재판 기록이 공개되면 많은 기밀이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내란특검법 제19조가 국가안보에 어떠한	○ 군사작전 전 분야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하게 되는 것으로, 군사작전에 심대한 위축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염려를 제시하여 재의요구안에 반영되어 있음. 여태까지 군사작전 수행이 수사의 대상이 되었던 적은 없음. 수사의 대상이 된다면 향후 모든 군사작전 수행 시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판단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 각 부대에서 정상적인 훈련과 행동도 신변에 위해가 가해질까 봐 두려워해서 군기가 서지 않고 지휘권이 서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인지한 사항이 있는지?	○ 비상계엄 관련 진실을 밝히고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숨김없이 임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보안 분야들이 노출되는 것도 우려점으로 보고 있음. 작전이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위축됨이 없도록 독려하겠음.
○ 다영역작전은 기존의 지상·해상·공중뿐만 아니라 사이버·인지 영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군이 허위·조작 정보로부터 독립적인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노력이 필요함. 특히 최근 외신을 가장한 가짜뉴스가 국내에서 무분별하게 유포되며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어, 국방부의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 국방부와 관련 기관들은 다영역작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연구와 대비책을 마련 중이며, 허위 정보 확산에 따른 군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겠음.
○ 국회협력단 폐쇄이후 12월 4일 10시 15분경 국회협력단장이 국회협력단에 1회 출입하였다고 지난번에 보고하였는데, 그것 이외에도 12월 4일 21시 26분경에도 출입한 기록이 있는데, 어떤지?	○ 다시 확인해서 보고하겠음.

(라) 이진우 증인(전 수도방위사령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월 6일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유튜브 출연에 대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먼저 제안한 것이 맞는지? 이에 대해 이진우 사령관은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반대한 것이 맞는지?	○ 그러함.

(마) 김대우 증인(방첩사령부 수사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월 3일 23시경,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국수본에서 100명을 지원할 것이니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라'고 지시하였는지 ○ 국수본부장이 보고 시간을 의도적으로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음.	○ 그러함. 조사본부 100명도 같이 언급되었음. 이에 따라 23시32분경 국수본에 인력과 차량 지원을 요청하였음.

(바)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민주당이 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했는데, 민생, 마약 사건 등의 실질적인 수사	○ 지장이 있음. 압수수색 건수가 3분의 1 정도 줄었음. 수사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에 지장이 있는지	용이 없어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음.
○ 강제적인 압수수색이 줄어든다는 것은 대규모 조직적인 범죄나 계획적 범죄 혹은 서민 상대 범죄에 지장이 생긴다는 것 아닌지?	○ 그러함.
○ 어렵겠지만 치안 부분과 검찰 수사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람	○ 그렇게 하겠음.

(사) 김명수 증인(합동참모의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군인기본복무법을 읽어본 적이 있는지?	○ 읽어본 적은 있는데 그렇게 깊게 사고해본 적은 없음.
○ 군인도 이제 법률을 잘 숙지할 필요가 있음. 여단급에 법무장교를 한 명씩 둘 필요가 있음.	○ 유념하겠음.

(아) 정진석 증인(대통령비서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비상계엄 이전 거대 민주당으로 인한 국가기능의 심각한 훼손이 있었다고 봄. 인사정보관리단 운영비 3억 3,000만원이	○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전액 삭감되어 실질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국가의 인사검증 기능에 지장이 생긴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검찰 특활비 및 특정업무경비 삭감에 따른 검찰 압수수색이 1/3 감소하였음. 감사원 감사 역시 실질적인 출장비가 없어 현장조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임. 이는 공수처와의 형평도 문제됨. 대통령 비서실 특활비 삭감 관련 비서실 운영과 관련한 실질적인 애로사항이 있는지?	○ 비서실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나, 특활비가 전액 삭감되어 과거와 같은 활동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점이 많음.
○ 이번 12·3 내란은 과거 쿠데타들과 달리 군 병력이 국회에 직접 투입된 중대한 사건이며, 검찰도 국헌문란과 내란으로 결론 내렸음. 대통령은 정치적·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은 이미 12·12 담화를 통해 국민에게 사과했으며, 현재 사법적 판단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내란죄로 공식화하는 데 동의하기 어려움.
○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는 것이 맞으나, 경찰과 국방부 장관등 인사는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경찰 인사는 연말 정기 인사의 일환으로, 치안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고위직 인사를 최소화하여 진행하였음.

(자) 오○○ 증인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중령)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가안보실 내 비밀 TF와 관련하여 TF의 장은 2급 공무원인 최 모 씨였나?	○ 확인해드릴 수 없음.
○ TF의 업무는 무엇이었나?	○ 확인해드릴 수 없음.
○ TF는 김건희 여사에게 따로 보고하지 않았나?	○ 업무에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음.
○ TF는 대통령 보고를 수행하였나? 대통령이 통제한 특별 조직인가?	○ 대통령 보고를 수행하였는지 말씀드릴 수 없고, 조직의 형성에 대하여는 저도 잘 알지 못함.
○ 김태효 1차장이 2023년 6월 1일 HID 부대를 방문하였나?	○ 그러함.
○ HID 방문을 오 중령이 주선하였나?	○ 지시가 있었고 제가 그 부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연락 정도를 담당하였음.
○ 누구의 지시가 있었나?	○ 팀 상부로부터 지시가 있었고, 업무 계선에 대하여는 확인 드리기 어려움.
○ 대통령이 가기로 했는데 취소되어 1차장이 가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되나? 이후 비상계엄에 HID가 왜 관여된 것인가?	○ 대통령 및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고 팀 업무와도 관련이 없음.
○ 노상원과는 자주 연락하였나?	○ 연락한바 없음.
○ HID 요원이 안보실에 가게된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인데, 누구의 추천에 의한 것인가?	○ 드물게 선발이 된 건 맞으나 선발 과정에 누가 어떻게 작용했는지 알지 못함. 명령에 따라 가게 된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최 모 2급은 현 김태효 1차장과 MB정부 때 같이 근무하며 아주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 타인의 개인적 친분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님.

(차) 박종준 증인(전 대통령경호처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성훈 차장의 직원 사적 동원 의혹 등에 대한 직원 투서가 많이 있었는지 여부	○ 부하 직원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2025년 2월 21일, 제4차 청문회]

(1) 12·3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가) 오○○ 증인(정보사령부 중령)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정보 분석 전문인지? 공작 전문인지?	○ 공작 전문이라는 용어는 제가 잘 모르겠음. 정보 분석 전문임.
○ 김태효 차장이 합참에 와 가지고 공작관 임무를 했다고 안보실로 불러들였다 해서 물어보는 것임.	○ 그것은....(질의 위원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감)

(나) 심○○ 증인(정보사령부 중령)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어떤 업무 맡아왔는지?	○ 방첩사에서 당시 기획파트에서 근무했음.
○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함께 종북척결TF를 운영하고 있는지?	○ 아님.

(다) 임종방 증인(정보사령관 직무대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정보사령부는 절대 내란에 개입되면 안 되는 곳이며 정보	○ 예. 알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자산이 많이 손상됐는데 잘 세워 주시라는 말씀을 드림.	

(라) 이승오 증인(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장관 보고시 정보본부장과 같이 들어가는지? ○ 독대보고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 정보본부장, 본인(작전본부장), 군사보좌관이 같이 들어감. ○ 특별한 호출이 있을 경우에 함.

(마) 김철진 증인(국방부 군사보좌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신원식 장관시절 보다 김용현 장관시절에 독대보다 많이 늘었는지?	○ 비교는 정확하게 못 하지만 독대보고가 있었음.

(바) 박○○ 증인(2군단 부군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16년 부대원들에게 폭탄 조끼 입혀서 폭사시키라고 했을 때 노상원이 정보본부장, 김용현이 작전본부장이었는지?	○ 맞음.
○ 노상원 수첩이 사실상 김용현	○ 제 선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작전 지시 문건으로 봐도 되는지?	음.

(사) 방정환 증인(국방부 국방혁신기획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구삼회 준장 녹취록을 보면 국방부에 근무하는 다른 장군이 전화해서 장관이 TF로 조만간 이삼 일 내에 쓴다고 연락이 있었다고 했는데, 본인이 구삼회 준장에게 이야기하였는지?	○ 구삼회와 통화한 적은 있으나, 계엄 관련 이야기를 한 적 없음.
○ 노상원이 증거를 없애 달라고 몇 번 부탁이 있어 타임라인, 블랙박스를 지웠다고 했는데, 이런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 연락을 받은 적도 없고 그렇게 한 적도 없음.
○ 상황이 종료되고 몇 시까지 대기하다 나왔는지? 제2기갑여단장은 제2기갑여단으로 가지 않았는지?	○ 상황 종료되고 05시 30분경에 나왔음. 그 시간까지 같이 있었음.

(아) 이경민 증인(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 당일 21시 20분 경 방첩사령관실에서 정성우 1처장과 함께 있으면서 여인형 사령관이 김용현과 통화내용 중 비상	○ 계엄이란 말은 들은 적 없고 조금 늦어질 거란 것은 국무회의로 받아들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계엄이 조금 늦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같이 있으면서 김용현 장관과 경찰청장과 통화하는 내용이나 김대우 단장에게 체포조 명단 불러주는 것 등 들은 것이 있는지?	○ 통화내용을 들은 바 없음.
○ 다음 날 8시 반쯤 이송, 구금이라는 지시 없이 맹목적 출동이었다는 진술을 해 줄 수 있는 부대원 몇 명에게 메모하라 하여 증거인멸을 지시한 것 없는지?	○ 없었음.
○ '계엄 예상 못함' 이란 문건 작성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 여인형 사령관이 불러 준 것을 수첩에 받아 적고 비서실에 A4에 정리해서 보고하도록 함.

(자) 정성우 증인(전 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 선포 1시간 전 당시 계엄 선포에 대해 '어르신들이 반대하겠지' 라는 여인형 사령관의 말이 있었는지?	○ 예.
○ '한덕수 총리가 잘 타이를 겁니다', 라는 이경민 참모장의 발언이 있었는지?	○ 타이른다는 말보다는 반대한다는 의미로 기억함.

(차) 강호필 증인(지상작전사령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노상원과 같이 근무한 적 있지 않는가?	○ 예. 여인형 수첩에 지상작전사령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음. 또한 6월 안가 모임 이후 안가 모임이 계속 있었으나 이후 본인은 참가한 적 없음.

(2) 계엄선포 원인 및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

(가)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월 3일 이후에 북한이 오물풍선을 몇 번 날렸는지?	○ 그 이후에는 날린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북한이 소음방송을 현재도 하고 있는지?	○ 하고 있음.

(나) 홍창식 증인(국방부 법무관리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선포시 국무회의 심의 부분과 관련하여 형식과 절차는 다소 미비하였더라도 실질이 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	○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은 규범적인 판단이라는데 동의하는지?	

(3) 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의 임명과 포고령 포고 경위

(가) 김철진 증인(국방부 군사보좌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포고령이 들어있는 노란 봉투에 대통령실이라고 적혀있었는지?	○ 네. 그렇게 들었음.

(나) 권영환 증인(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포고령 1호를 보면, '국회에 대한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 일단 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음.
○ 계엄을 선포하려면, 포고문, 공고문, 담화문, 포고령 등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계엄담당과장으로서 이 내용을 아는지?	○ 포고문을 작성하려면 대통령의 서명이 들어간 공고문이 있어야 함. 그런데 저는 포고문, 공고문, 담화문, 포고령 등의 작성 경위 및 서명 여부 등에 대해서는 당시에는 전혀 보거나 알지 못하였음.

(다) 홍창식 증인(국방부 법무관리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용현 전 장관이 포고령 작성 시 조언을 했는지?	○ 조언한 적 없음.
○ 포고령 1호를 보면, '국회에 대한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지?	○ 헌법의 내용과 충돌됨.

(라) 김으뜸 증인(합동참모본부 해작과 연합해상작전담당)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포고령이 들어있는 노란 봉투에 대통령실이라고 적혀있는 것을 봤는지?	○ 계엄 당일하고 전일에 장관님이 들고 다니는 걸 보았는데, 봉투를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모르고, 어디서 온 봉투인지 정확히 모름.

(마) 김승완 증인(육군 군사경찰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사 치안처장이라는 것 언제 알게 되었는지?	○ 당시에는 몰랐고, 나중에 언론이나 그 이후에 알았음.

(바) 이경민 증인(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첩사령관이 12월 4일 아침 비상계엄 해제후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 이경민 참모장에게 지시하여 문서를 작성한 것인지?	○ 예, 사령관이 저를 불러 내가 계엄을 미리 알았더라면 휴가를 갔겠느냐고 하면서, 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한 내용을 불러주었음. 그 후 제가 자필로 정리를 해서 사령관에게 드렸고, 사령관은 그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비서실 중령이 용지에 타이핑을 한 것임. 이는 흔적 지우기라기보다 당일 행정을 정리한 것으로 생각함.

(사) 이승오 증인(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통령은 합참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에 있었지요? 합참 간부도 결심지원실에 들어갔는지?	○ 예, 대통령은 결심지원실에 있었음. 다만, 작전본부장인 저는 결심지원실에는 들어가지 않고, 지휘통제실에서 준비태세 등 임무를 하고 있었음. 합참은 이번 계엄업무에는 관여하지 않음.
○ 대통령이 합참의장 및 간부를 결심지원실에 출입시키지 않은 것은, 계엄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경계태세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닌지?	○ 합참의장이 답변했던 것처럼 대비 태세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이 계엄 당일에 합참은 배제시키고 육군을 통해서 계엄 업무 및 임무를 부여했음. 그래서 육참 총장이 계엄사령관이 된거고 합참은 임수 수행에서 제외된 것임	○ 결론적으로 합참이 계엄 관련된 내용에 대해 한 활동은 없음.
○ 합참은 계엄에서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었는데 이에 동의하는지?	○ 답변드리기 어려움.

(아) 박안수 증인(육군참모총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선포 및 준비 관련하여 증인은 합참 계엄과장에게 일머리가 없다고 3번이나 면박을 줬다고 계엄과장은 진술했는데, 어떤지요?	○ 제가 3번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계엄과를 지원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계엄관련 준비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음.

(4) 계엄선포 전 병력 및 경찰력 동원을 위한 준비사항

(가) 이상현 증인(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 선포 이전에 특전사령관으로부터 1개 대대는 국회의사	○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보안폰으로 받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당, 1개 대대는 의원회관으로 보내서 건물 안에 있는 인원을 퇴장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나) 이승오 증인(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 당일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 타격 등 강력 대응을 준비했는지?	○ 그렇지 않음.

(다) 이경민 증인(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여인형 사령관이 증인에게 제시한 문건에서는 12월 3일 오물풍선 부양 가능성이 높고 합참에서 강력히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니 참모장과 처·실장은 통신축선상 대기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사실인지?	○ 그 문건에 대해 잘 모르겠음.

(라) 임태호 증인(제2신속대응사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경계태세 2급에 맞추어 무엇을	○ 기본적인 출동 준비를 하고 있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하고 있었는지, 헬리콥터가 준비되고 있었는지? ○ 계엄 해제 이후 병사들이 취침을 못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은 어떠한지?	었고, 헬리콥터는 전혀 없었음. ○ 출동 해제 후 실제 취침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보임. 복장도 해제해야 하고 장비들도 정리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마) 오주열 증인(제2신속대응사단 제201신속대응여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경계태세 2급에 맞추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헬리콥터가 준비되고 있었는지?	○ 조치부호에 의한 조치사항들만 이루어졌고 헬리콥터는 준비된 바 없으며 병사들의 핸드폰을 수거하는 조치 등이 이루어졌음.
○ 계엄 해제 이후 병사들이 취침을 못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은 어떠한지?	○ 03시 이후 출동 해제가 이루어졌고, 예하 대대에 취침하도록 지시하였음.

(바) 김창학 증인(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월 3일 국회협력단으로부터 길 안내를 받았는지? ○ 국회협력단장이나 국회협력관과 통화한 적이 있는지	○ 길 안내를 받았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음. ○ 통화한 적 없음.

(사) 조성현 증인(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월 3일 국회협력단으로부터 길 안내를 받았는지?	○ 길 안내를 받지 않았음.
○ 국회협력단장이나 국회협력관과 통화한 적이 있는지?	○ 통화한 적 없음.

(5) 주요 헌법기관 등의 점거 경위

(가) 이성운 증인(707특임단 대테러작전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707특임단이 12월 3일 국회 출동시 케이블 타이를 소지하였는데, 평상시 훈련에서 소지하는 것인지?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 저는 그때 그 자리에는 없었음. 다만, 오늘 청문회에서 보여준 타이는 두가지 종류가 있음. 케이블타이는 사람 포박용이고, 대형 재생 케이블타이는 특수작전시 우발적 상황에서 무언가를 고정할 때 사용함. 두 타이는 평상시 훈련시 휴대하고 있으며, 오늘 청문회장에서 시연된 타이는 사람 포박용인 케이블타이임.

(나) 김영권 증인(특전사 방첩부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 당일 지휘통제실에서 특전사령관, 작전처장과 함께 있으면서 사령관이 '코드원'이라는 사람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사령관이 '예, 들어가겠습니다'하는 말을 들었는지?	○ '코드원'이라는 말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고 주임원사로부터 들었음. 당시 특전사가 국회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들어가라는 말은 국회를 말한 것으로 인식함.

(다) 남기동 증인(특전사 작전처장·감찰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 당일 지휘통제실에서 특전사령관, 작전처장과 함께 있으면서 사령관이 '코드원'이라는 사람과 통화한 사실이 있는지? 사령관이 '예, 들어가겠습니다'하는 말을 들었는지?	○ 당시 사령관이 통화한 내용을 들었고, 사령관이 '충성'하면서 전화를 받음.

(라) 이상현 증인(1공수여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 당일 사령관이 상부 지시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필요하면 전기를 차단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지요?	○ 예, 그러함. 이 내용은 저의 차에는 작전참모를 포함하여 4명이 탑승하고 있었음. ○ 1대대장에게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전달했는데, 다소 당혹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스러웠음. 707특임단과 달리 우리는 야시경이나 휴대낭도 없었음. 이것이 정치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부대원들을 건물 밖으로 나오라고 통제했음. 그리고 부대 복귀한 후에 부대를 위해서 상황일지를 절대 수정하지 말라고 지시하였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문서위조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함.

(6)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에 관한 사항

(가) 김대우 증인(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방첩사가 부여받은 임무가 체포인지, 인계받은 후 이송인지?	○ 잡아서 이송시키라는 임무를 받았고 본인의 판단하에 특전사나 경찰에서 병력을 인계해주면 신병을 인계받아서 수방사로 이송시키는 임무를 부여함.
○ 49명의 체포조가 어떤 차량을 타고 국회에 왔는지? 승합차를 가져온 이유는?	○ 10대의 차량이고 그 중 2대 정도는 승합차였음. 수사차량은 승용차만 있는 게 아니라 물건을 많이 실을 때가 있어 승합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차도 있음.
○ 국방조사본부에 인원 21명을 요청했는지, 10명을 요청했는지?	○ 조사본부는 못 온다는 보고만 받음.
○ 계엄 시 매뉴얼에 따른 합수본부에 대한 수사관 요청은 당연한 것인지?	○ 맞음.
○ 위치추적만 지시하였는지, 체포 및 구금에 관련하여서도 지시하였는지?	○ 체포 및 구금 등 관련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지시는 군사기밀수사실장에게 직접 지시하였고, 위치추적만 지시한 것이 아님.
○ 12월 4일 새벽 1시경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에게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으셨는지,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지?	○ 네. 00시 30분경으로 기억함. 일단 14명에 대하여 바로 구금은 어려울 것 같으니 3명부터 먼저 이송하라는 의도로 파악하였음.
○ 14명을 체포하기 위하여 조를 편성한 것은 맞는지?	○ 아님. 한 차에 5명밖에 타지 못하므로 그냥 1조, 2조 보내다 보니까 총 10대 차량에 49명이 가게 된 것임.
○ 출동 당일 차량 10대에 각각 49명이 분승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이 탑승할 공간이 없어 보이는데, 실제로 누구를 호송하겠다는 직접적인 인식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출동한 것 아닌지?	○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일단 바로 출동하라는 지시가 있었음.
○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정치인 등 체포를 지시한 적이 없고	○ 사령관으로부터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김대우가 체포 지시로 이해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어떤지?	저는 부대원들에게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음. 우리는 체포가 아닌 이송만 하는 것이다라고 말함. 그리고 실제 체포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음.
○ 계엄 선포시 방첩사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는 것이 주 임무 아닌지?	○ 그러함.
○ 계엄이 선포되면 사령관의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합동수사본부 유관기관(국가정보원, 경찰, 국방부조사본부) 등 협조 요청을 하는 것은 본래의 명시 과업인지?	○ 그러함.
○ 방첩사는 오래 전부터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대한 훈련을 해왔는지? 2024년 3월에도 3일 동안 합동수사본부 운영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을 했는지?	○ 그러함.
○ 비상계엄 당시 49명의 수사관은 명확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출동한 것이 맞는지?	○ 그러함.
○ 체포와 구금의 전 과정을 방첩사가 주도했다고 보는데, 맞는지?	○ 네,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음.

(나) 박헌수 증인(국방부조사본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출동한 인원은 10명인지?	○출동한 인원은 수사관 10명이고, 출동대상인원은 수사관 10명과 그 밖의 인원 11명 포함해서 총 21명임.

(다) 구민회 증인(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국방조사본부 수사관 지원 요청은 어떻게 했는지?	○합동수사본부 기획과장 자격으로 국회로 국방조사본부 수사관으로 출동하라고 하였고, 현장에 방첩사 수사관들과 임무에 임하라고 지시하였음.
○국정원, 국방부조사본부, 경찰, 방첩사가 체포명단 14명에 대한 체포 인지를 거의 동시에 한 것이 맞는지?	○맞음.
○조사본부와 경찰에 명단을 전파하였는지?	○명단 전파는 하지 않았음.
○조사본부와 경찰에 무엇을 전파하였는지?	○합수단 구성을 위한 수사관 파견, 구금시설, 호송차량 지원에 대해 전파하였음.
○B1 벙커에 몇 명 정도 구금한다고 얘기 했는지?	○14명에 대해서 구금해야 된다고 판단했는데 구금시설의 현황을 몰라서 조사본부에 구금시설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과 통화했던 이현일 영등포경찰서 계장은 방첩사에서 ‘국회 쪽으로 출동을 가는데 체포 인력이 온다. 현장이 혼란스러우니 길 안내를 위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증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증언을 했는데 이는 사실인지?	○ 길 안내를 요청한 사실이 없음.
○ 비상계엄 당시 형사 50명이 방첩사를 만나려고 국회 수소충전소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는지?	○ 네, 그렇게 들었음.
○ 경찰이 체포하고 방첩사가 이송·구금을 하는 체포작전을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
○ 12월 4일 증인은 국수본 수사계획계장에게 체포조 편성을 위한 수사관 명단을 요청했고, 0시 13분과 35분 두차례의 통화를 통해 10명의 명단을 받았지요? 그리고 0시 48분경 영등포경찰서 강력팀에 ‘조별로 나누어서 합류를 하라’, ‘조별 명단과 연락처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는지?	○ 예, 맞음.
○ 그런데 영등포경찰서에서는 50명의 수사관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 제가 처음에 국수본과 통화할 때는 10명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영등포경찰서 강력팀과 통화하니 50명이 국회 민원실 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처 수소충전소 앞에 모여있다고 했음. 특별히 제가 수소충전소에 모여있으라고 말한 사실은 없음.

(라)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현태 707단장은 국회 출동 시 소지한 케이블 타이는 출입문을 폐쇄하려는 용도로 동반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케이블 타이로 출입문을 폐쇄할 수 없는 것으로 무슨 용도로 부대원들이 소지하였다고 보이는지?	○ 제가 운용해본 적이 없어서 대답하기 곤란함.
○ 탄핵심판에서 유력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는데,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진술 외에 유일한 객관적 증거임. 알아볼 수 없게 흘려쓴 메모에 대한 의견은?	○ 재판 과정에서 정확히 판단할 것임.

(마) 노영훈 증인(방첩사 군사기밀수사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B1 벙커	○ 그러한 지시를 하였었고, 미결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에 가서 50여명을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는지?	수용소라는 정상적인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1 벙커에 구금하는 것은 추후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했음. ○ 00시 30분경부터 확인을 해보았는데 화장실 문제, CCTV 등 관리 시스템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B1 벙커는 구금시설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보고하였음.
○B1 벙커에 가서 구금시설 가능여부와 인원에 대해서 몇 명으로 알고 갔는지?	○50명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구금대상 언급없이 50여 명 구금시설 확인하라고 함.
○B1벙커에 구금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지? ○수방사 내 구금시설이 있지 않은지?	○아님. 인권침해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그것을 복안으로 두고 출동함. 미결수용소를 보려고 도착했으나, 장병 3명이 수용되어 있어 출입이 안된다고 하였고, 그즈음 계엄해제가 의결되어 미결수용소를 확인하지 않았음.

(바) 구○○ 증인(방첩사 수사조정과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김대우 수사단장으로부터 정치	○정치인이라는 얘기는 듣지 못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했고, 체포한다는 지시와 명단을 불러 주셔서 받아적음
○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조국, 김민석, 김민웅, 김명수, 김어준, 박찬대 이런 사람들이 명단에 있었는지?	○ 맞음.
○ 위 명단을 메모한 것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는지?	○ 제출되어 있음.
○ 체포 명단 중 긴급하게 3명을 우선 체포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는지?	○ 명령이 내려온 것은 확인하지 못했고 김대우 단장이 현장 수사관들에게 지시한 것은 보았음.

(사) 이재학 증인(국군방첩사령부 안보수사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대우 단장이 구민회 중령에게 14명 명단, 수첩에 있는 명단 이른바 체포명단을 설명하는 걸 들은 적 있는지?	○ 예.
○ 다음 날 오전 10시에 김대우 단장으로부터 인원 증거 조작 전화가 왔는지?	○ ‘사령관님 지시다. 출동한 인원들 중에서 좀 똘똘한 인원들이 자료 정리를 해 놔라. 우리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자료 정리를 해 놔라’ 그렇게 저한테 지시함.

(7)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의 동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가) 이상현 증인(1공수여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받은 것이 스피커를 통해서 전달되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상황일지를 보고 특정 부분은 본인이 발언한 것 같지 않은데 해당 부분을 삭제할 수 없는지를 질의했고, 공문서 위조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씀드림.
○ 전기를 끊어라라는 얘기를 들었는지	○ 대통령이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라고 하셨고, 잠시 뜸을 들인 후 '필요하면 전기라도 끊어라'라고 하셨음.

(나) 김창학 증인(수방사 군사경찰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수방사령관이 국회협력단장을 만나서 '게이트를 하나 받은 다음에 그곳을 차단하라'고 지시했는지? 국회협력단장을 만났는지?	○ 그러함. 00시 03분에 전화로 지시함. 국회협력단장은 만나지 못함.

(다) 양재응 증인(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월 2일 오전 이진우사령관 국방부장관 보고 사항에 국회 협력단 지원을 받아 국회의사당 등에 병력 세밀 배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12월 2일 오후에 국회협력단장은 김용현 장관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했는지?	○ 12월 2일 13시 50분경에 김용현 장관이 국회협력단 사무실로 방문함. 다만 오후에 온 것은 계엄 관련이 아닌 본회의 일정 때문에 온 것임.
○ 계엄 발동 직후 22시 45분에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전화받았는지?	○ 그러함. 특전사와 수방사령관과 통화하라는 내용이었음. 이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8차례 전화를 수신했으며, 병력을 안내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계속적으로 들었으며 거듭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함. 특전사와는 통화한 적 없음.
○ 아무 내용도 없이 통화했다는 게 말이 안된다는 지적	
○ 8차례 수방사령관 전화 받았는지	○ 부대 안내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어렵다고 대답함
○ 증인의 발언과 상반되게 수방사령관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계속해서 양재응을 만나라고 지시함. 12월 3일 23:28분 국회협력단실 도착 이후 계속 협력단실에 있었는지?	○ 상황 파악을 위해서 로텐더홀에 한 번 올라갔고, 이외에는 대부분 국회협력단실에서 대기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월 4일 1시 35분 김창학 군사경찰단장은 선발대/후발대 지휘관에게 국회 안으로 들어가 양재응 장군을 만나라고 거듭 지시함. 이러한 점이 이상하다는 지적	
○ 특임단이 4층에서 갑자기 지하 1층으로 내려간 것이 협력단의 지원 없이는 없었는지	○ 지원 없었음.
○ 폐쇄된 협력단실 왜 들어갔는지	○ 폐쇄될 거라는 뉴스를 보고 마지막으로 들어가서 전열기구 확인하고 소지품을 주머니에 챙겨서 나옴
○ 협력단 직원들이 곽종근 사령관이나 김현태 단장 등과 통화한 적 있는지	○ 없음.
○ 압수수색을 받았는지?	○ 압수수색했었지만 수방사 1경비단장, 군사경찰단장을 만난 사실이 없음.
○ 국회 단전·단수 장치가 어딨는지?	○ 모름.

(라) 강태훈 증인(국방부 국회협력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회협력관 및 국회협력단은 계엄 당시 군과 통화한 적이 있는지?	○ 없음.

(마)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회의사당 출입은 외곽 경비를 위한 출동이라고 수방사령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측 질의에 동의했지만, 국가중요시설 경계협정서 문건에 의하면 비상시 국회외곽경비를 위해 수방사 52사단이 출동하게 되어 있음. 계엄 당시 52사단이 아닌 군사경찰단이 출동했고 외곽뿐만 아니라 경내로 진입했으니 협약서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	○ 협약서를 확인해보지 못했으나 거기에 52사단이라고 명기되어 있으면 52사단이 출동하는 게 맞음.
○ 국방부의 자료요청에 대한 답변내용과 다르게,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단체 대화방을 만듦. 국회, 헌재를 상대로 위증한 특임단장에 대해 조치하기 바람.	○ 기소가 된 이후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직해임 등 관련 조치를 할 생각임.
○ 방첩사 수사단장,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방첩사 수사실장, 특수전사령부 1공수단장의 발언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군 투입은 질서유지를 위해서라는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각각의 진술이 있으니깐 판단될 것으로 생각함.
○ 12월 12일에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내용을 보면 단전을 하지 않았다고 했으나, 동영상을 보면 군인들이 소방호스로 문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묶는 행위, 불을 꺼서 방화셔터가 내려간 것 등을 볼 때 단전은 이루어진 것임.	
○ 현장에 출동한 지휘관들은 상황판단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으로 군인들이 상급자 지휘관들의 명령에 따라 출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게 되면 전시에 싸울 군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혼란스러웠던 부분은 이해되나 정확히 전후좌우 관계가 사법적인 것이 정리되면 그때 관련 인원들에 대해 검토하겠음.

(바) 이승오 증인(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경계태세 상향 이유는 무엇인지?	○ 경계태세 상향은 계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님.
○ 현장에 출동한 지휘관들은 비상계엄도 마찬가지고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대한 상황도 모르고 두 가지 상황이 혼재된 가운데 과거에 훈련했던 관습대로 임무지역에 출동한 것 아닌지?	
○ 계엄 당일 22시 40분에 경계태세 2급을 발령했는지? 발령시 상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는지?	○ 구두지시를 받고 일단 C4I체계로 하달함. 그때는 안되어 있었음.
○ B/L탄 개봉을 승인했다 이 이	○ B/L탄을 개봉했다는 것은 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야기는 유사시 쏘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나?	인 휴대를 할 수 있다 하는 쪽임.

(사) 김홍준 증인(육군본부 정책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한영철 중령을 어떻게 만났는지?	○ 이게 계엄상황실이면 '여기 작전부에서 혹시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제가 옆방으로 가니까 한영철 중령이 들어왔음.

(아) 반효민 증인(1공수여단 중령)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월 4일 00시 20분경 제1공수여단장으로부터 의원회관으로 가서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는지?	○ 예. 의원회관으로 이동하라고 했음.
○ 그 10분 후에는 또 의원회관 말고 의사당으로 가라, 담을 넘어라 이렇게 지시했습니까?	○ 맞음.
○ 이상현 여단장이 00시 40분경에도 반 중령에게 재차 전화를 해서 본관으로 가서 애들이 지금 의결하는 모양이야, 문짝을 부숴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 그렇게 지시한 바 있는지?	○ 예.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00시 49분경에 또 전화를 해서 국회 앞쪽은 사람들이 많으니 뒤로 가서라도 넘어가라, 가서 문짝 부숴서라도 의원들 끄집어내. 이렇게 지시했습니까?	○ 예.

(자) 이성운 증인(707특임여단 작전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 당일 부대가 훈련을 하러 나갔는지, 특수전학교에서 훈련을 하고 당시 복장으로 국회에 온 것이 맞는지?	○ 저는 전국철도노조 파업 현장에 가 있었으므로 국회에 있지 않았지만 복장은 말씀하신 내용이 맞음.

(차) 김형기 증인(1공수여단 1특전대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출동명령을 받을 당시 왜 국회로 출동해야 되는지 상황에 대한 지시나 어떤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으나 통상 신속대응부대라든지 대테러팀들은 대테러 상황으로 생각한 것인지?	○ 임무를 물어보니 국회로 가자라는 답변만 받음.
○ 대테러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군인들이 일부 폭행 또는 기물파손 등의 상황을 겪었을 때 어땠는지?	○ 임무도 모른 채 많은 인력들과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해 마음의 상처를 받았음.

(카) 박안수 증인(육군참모총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곽 전 사령관이 공포탄 사용 금지를 내렸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비상계엄이 미리 준비됐다라고 생각하나? ○ 이진우 사령관이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로 왜 그렇게 국회에 빨리 못 들어가냐 그렇게 다그침을 당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 지휘관으로서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음. 예하 부대의 건의도 들어오고 하니까 저에게 건의한 것 같음. ○ 계엄 준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음 ○ 3일 날은 통화한 적이 없음.

(8) 계엄해제 의결 후 해제 공고 지연에 관한 사항

(가) 박안수 증인(육군참모총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합참 계엄과장이 국회가 계엄해제결의를 했으니깐 지체 없이 해제해야 한다고 알려 줬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 당시 계엄과장이 전달한 내용은 규정을 알려 주는 것으로 이해했음. 또한 본인은 해제 권한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장관에게 바로 올라가기는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됨.

(나) 권영환 증인(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군인은 국회에서 계엄해제 의결하면 의결하자마자 거기에 따르는지, 계엄 해제 명령에 따르는지?	○ 계엄이 해제되고 안되고의 문제와 그건 좀 다르다고 생각됨.
○ 군인은 계엄해제는 명에 의해서 해야 함.	
○ 계엄사령부가 구성되는 참모진은 총 몇 명인지?	○ 약 200여 명 정도임.
○ 상황실을 구성하고 있던 인원은 20여 명으로 계엄상황실이 구성되었다고 보는지?	○ 계엄상황실 구성을 지원하고 있었음.

(9) 2차 계엄 가능성에 관한 사항

(가) 권영환 증인(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해제의결 이후에 계엄사령관이 '일을 되게끔 하라'라는 말을 어떤 의미를 받아들였는지? 계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했는지?	○ 그러함.
○ 계엄사령관이 '일머리가 없다'고 질책을 한 것이 몇 번인지?	○ 총 3번 있었음. 계엄 해제 의결 전 1번, 합참 출입 기자들 관련하여서 1번, 계엄 해제 의결 후 정진팔 계엄사 부사령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등에게 계엄법에 따라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1번 있었음.
○ 계엄사에서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수방사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고 제2신속대응사단 추가 출동을 요구한 내용이 무엇인지?	○ 계엄 당일 합참 전비차장이 자신에게 2신속대응사단 예하 201·203여단이 출동은 아니며 출동을 지시하면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전달함. 따라서 본인은 한영철 중령과 대테러특수전과장에게 이 내용을 계엄사 작전처에 전달하라고 함. 그 뒤에 출동을 한다면 출동 수단, 복장 등에 대해 문의하니 돌아온 답변은 '체육복 입고 자고 있으면 돼'라는 답변이 돌아옴.
○ 계엄사에 52사단, 56사단 인원이 출동 가능하다고 보고된 내용은 무엇인지?	○ 해당 내용에 관해서 보고를 받거나 한 적은 없어 잘못 파악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추정을 함. 합참 작전처장은 계엄 당시 해당 내용이 아닌 국회에 출동한 특전사와 수방사 현황을 파악하라고 지시를 해서 대테러특수전과장에게 전달했고 본인 나름대로도 파악함.
○ 12월 4일 계엄해제 의결이 된 후 2신속사단 예하 201, 303여단에 만약 출동을 지시하면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전달하	○ 예, 계엄해제 의결이 된 후 합참 전비차장으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어 이것을 한중령에게 전달한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라고 한영철중령에게 말한 적 있지요?	'만약 출동을 지시하면' 이라는 표현을 써서 저도 굉장히 의아스러웠음.

(나) 안경민 증인(수도방위사령부 작전과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월 4일 2시경에 수방사 추가 출동 인원파악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 해당 사항을 수방사령관에게 보고했는지?	○ 계엄상황실 한 중령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받았음. 이름과 직책은 밝히기 제한됨. ○ 수방사령관은 국회 일대 현장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 작전처장에게 계엄상황실이 이런 사항을 요구한다고 보고하고 52·56사단에 상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함.

(다) 조종래 증인(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시 소집명령서 받았는지? 구두로 지시받았는지?	○ 구두로 총장으로부터 받음.
○ 계엄 해제 의결되었지만 새벽 3시에 늦게 출발한 것은 그 전날 이미 받은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는 과정이었지 새롭게 2차·3파 계엄을 하기 위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	○ 최초 지시에 변동이 없어 준비하는 과정의 연속이었음.

(라) 한영철 증인(합동참모본부 대테러특수전과)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12월 4일 2시 반 정도에 어디에 전화했는지?	○201신속대응여단, 2사단 본부에 전화함.
○무슨 내용을 전달하였는지? 누구로부터 지시받았는지?	○2신속대응사단이 출동 준비 명령이 내려지면 준비 완료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소요시간을 파악해 달라고 지시 받음. 수방사에 대한 출동 인원이나 지금 출동되어 있는 인원에 대하여 확인 요청함. 2신속대응사단에 대한 부분은 계엄과장을 통해서 지시받고, 수방사에 대한 확인은 육본 정책실장한테 받음.
○계엄 때 2신속대응사단 예하의 부대와 수방사 52·56사단 등에 출동 준비 여부 확인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2신속대응사단에 대한 출동준비 소요 시간을 파악해 달라고 지시한 것은 계엄과장이고 수방사의 출동 가용 병력을 확인해 달라고 한 것은 육본 정책실장임.
○당시 201신속대응여단이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출발하면 얼마나 걸리냐라고 물어본 것인지?	○출발 이동시간을 물어본 게 아니라 출동 준비 명령을 하달했을 때 출동 준비가 완료되는 데까지 소요시간을 물어본 것임.
○계엄 해제 이후에 수방사 가용 인원을 확인했는데 그 이유는 육본 정책실장이 명령해서인지?	○정책실장이 수방사의 출동 가용 병력을 좀 확인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수방사에 전달함.

(마) 박안수 증인(육군참모총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상황실이 구성되려면 200명이 있어야 되는데 20명밖에 없었으니 상황실을 한 번도 구성 못한 것 아닌지? 계엄상황실 구성도 없이 2차 계엄을 할 수 있는지?	○ 20여 명으로 상황실 구성되었다고 보고받고 그런게 있나 보다 생각함.
○ 계엄 해제는 국회에서 의결하면 해제되는지, 명령을 받아서 해제되는지?	○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조치하였음.
○ 탄약 불출과 관련하여 탄약 불출이 비상계엄을 지원하기 위해서나 2차 계엄을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치부호에 의해서 탄약을 탄약고에서 꺼낸 것 아닌지?	
○ 계엄이 선포되어서 발동이 되면 합참 인원으로 계엄상황실을 구성해야 하는데, 왜 추가적으로 육본에 있는 인원을 차출한 것인지?	○ 계엄과장과 육본 편성과 연계해 대화를 나눔. (※박안수 증인의 답변과 동시에 권영환 증인(전 합참 계엄과장)은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답함) ○ 육본 정작부 과장하고 상황실 구성 관련 대화를 많이 나눔.
○ 계엄사 2실 8처의 직책을 맡을 현 육군본부 인원 구성과 출동 지시를 했고, 계엄사 기조실장으로 임명된 합참 전비태세검	○ 상황실 구성 요원을 소집하라는 지시한 바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열실 차장 이재식 준장에게 계엄사 구성 군인과 군무원 소집 지시 사실이 있는지?	
○ 계엄상황실 구성 관련 누가 인사명령을 내었는지?	○ 잘은 모르지만, 상황이 발생하면 문자 공지 등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됨.
○ 계엄 공식 해제가 4시 30분이고, 4시 20분에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그때까지 해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 안한 것이 맞는지?	○ 2시 50분 경에 철수하라는 말 외에는 없었음.
○ 계엄사령관이 3시에 육본에서 올라오라고 지시하였는지?	○ 전날 22시 47분, 57분에 지시한 것임.
○ 대테러 합참과장이 육본 정책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예하부대에 가용인원과 준비태세를 확인하였는데 그 육본 정책실장한테는 누가 지시한 것인지?	○ 정확히 알지 못함. 00시 31분에 군병력에 대해 토의한 사항이 있었음.

(바) 김홍준 증인(육본 정책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해제 의결후에도 출동한 병력을 확인하는 등 하였지요?	○ 예, 그냥 그 당시의 상황을 확인해서 보고하기 위함.

(사) 오주열 증인(201신속여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해제 의결후에 한영철 중령으로부터 만약 출동명령을 하면 출동할 수 있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등에 대한 통화를 한 적이 있는지?	○ 제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고, 그와 관련해서 출동준비 등을 지시한 사실이 없음. ※ 오주열 증인의 이 답변 후 한영철 중령은 오주열 여단장에게 직접 전화한 것이 아니라, 201여단 부대 상황실에 전했다고 말함.

(아) 이승오 증인(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월 4일 새벽 합참에서 대대급 이상은 합참 통제하에 둔다라고 지시한 것이 언제인가요?	○ 아마, 그 내용은 합참에서 지시한 사항을 옮긴 시간인 것 같음. 그리고 12월 3일 23시 35분경 합참에서 중대급 이상에 대해 최초로 단편명령을 내린 적은 있음.

(10) 내란범죄 수사주체 논란과 수사상황 점검

(가) 장상주 증인(국방부 방첩부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3 비상계엄 전에 지휘관이 대통령,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듣거나 인지한 적이 있는지?	○ 없음.
○ 대통령, 국방부장관이 합참 지휘통제실에 위치해 있을 때 여인형 방첩사령관이나 소형기 방첩사 참모장에게 해당 사실을 보고했는지?	○ 보고한 적 없음.

(나) 윤남현 증인(육군본부 방첩부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사령관이 육군본부 참모들을 새벽에 계룡대에서 올라오라고 불렀는데, 해당 정보를 인지했는지?	○ 계엄 당일 개인 사정 때문에 휴가를 가 있어서 알지 못함. 본인이 복귀(12월 4일 00시 40분)했을 때는 다수의 인원들이 올라가는 준비를 해서 전투통제실에 없었음. 해당 지시는 22시 40분~50분 경 이루어졌다고 전해 들음.

(11) 기타 국정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일체

(가) 박안수 증인(육군참모총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방부 제공 자료에 의하면 계엄사령부로부터 합동수사본부 설치 지시가 하달되지 않았다고 했으나, 방첩사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계엄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 개소되었는지 결과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함. 어떠한 것이 사실인지?	○ 합동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한 적은 없고 나중에 설치됐다는 최초 보고는 받음.
○ 노상원의 수첩에 4차례나 언급된 사실을 알고있는지?	○ 모르고 있었음.
○ 11월 6일 17시경에 합참 전시계엄계획이라는 문건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사실이 기억나는지?	○ 국정감사 끝나고 육군본부 차원에서 한번 체크한 적이 있는데 합참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음.
○ 전속부관들의 필수적인 준수사항은 자기가 모시는 분이 통화시에 자리를 비켜 통화하는 내용을 듣지 않는 것이 기본 예의로 교육을 받는데, 옆에서 통화내용을 들었는지 묻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에 맞지 않는 것임.	
○ 국방위원장이 출장 복귀 후 비상계엄 상황을 보고 받기 위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연락단장을 부른 것이고, 연락단장이 사전 준비를 아는 상황이면 출장 등을 금지시켰을 것임. ○ 군인은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대외 언론에 나가려면 국방부장관 허락을 득하게 되어 있는데,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른 절차를 밟으라는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방송 촬영한 것은 잘못임.	

(나) 윤비나 증인(국군방첩사령부 법무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월 4일 00시에 합동수사본부 편성 준비회의 배석을 요청받았는지? 방첩사 작성 문건에는 배석 조치가 적혀 있음.	○ 배석 요청받은 바 없음.

(다) 홍창식 증인(국방부 법무관리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공수처에서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한 것 있냐고 했을 때 없다고 했음. 절차가 잘못된 수사는 결과가 아무리 공정해	○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도 위법한 재판인지?	
○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공익신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지? 형법은 공익신고 대상이 아닌데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	○ 권익위원장이 해당 제보를 공수처 또는 검찰에 이첩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적의 판단하리라고 봄.
○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는 증인신문을 다 거친 후 수사기록을 받아볼 수 있는 등 피의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데 반하여 이번 탄핵심판에서는 일반 절차를 어기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의견은?	○ 일반적인 형사재판의 경우에 대하여 답변함
○ 홍장원 전 차장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통화 내역에 대한 증언 중 CCTV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견은?	○ 증명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함

(라)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해서 군의 명예 실추가 되지 않도록 보직 해임해서 전역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지?	○ 제도적인 한계가 있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 12·3 내란 사태는 내란과 동시에 군형법상의 군사반란죄에도 해당한다라고 보는데 직무대행님 생각은?	○ 반란죄가 적용이 안 된다고 파악함.
○ 김용현 전 장관이 특전사령관	○ 전국 계엄에서 장관이 그 권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과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작전을 하달·지시한 것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지휘체계를 일탈한 것이 아닌지?	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것이 팩트라면 장관은 그 부대를 지휘할 수 있음.
○ 김용현이 경호처장일 당시에 2층짜리 독채형 숙소에 대해서 경호처가 주요 인사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자고 요청을 했었는데 이 사실 알고 있는지?	○ 예. 확인했음.
○ 대통령 경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인근의 콘도형 숙소 자체도 폐쇄되는 것임.	○ 그게 다 같이 사용하는 시설로 해서 진행이 된 걸로 확인을 하고 있음.
○ 이번 국정조사 통해 느낀 것은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서도 국가의 핵심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여되는 기관과 대상을 최소한으로 했다는 것임. 행정부는 국무위원들이 사전에 계엄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 확인됨. 국무위원들에게 미리 계엄을 알리지 않으려고 한 것은 대통령이 의도한 바임. 결국 국무회의가 의결 정족수 등의 형식적 절차는 갖추되 절차적 엄격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간소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답변드릴 영역이 아닌 것 같음.
○ 합참 계엄과장은 포고문 작성에 본인이 관여한 바 없다고	○ 명확한 팩트는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이 안 된 것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하는데, 합참을 계엄 업무에서 제외시키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두면서 그렇게 조치가 된 것으로 이해하는데, 차관 견해는?	고,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되면서 거기에 관련한 일련의 준비과정이 있었던 것임.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에 따르면 당시 국무회의의 실질은 있었고, 다만 부서나 회의록 작성 등의 행정조치는 미흡했다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회의 이후에도 보완하는 경우들이 있음. 국정원장 또한 계엄 관련 어떠한 사실도 미리 알지 못했음. 핵심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계엄에서 철저히 분리시키려는게 대통령의 의도였던 것임.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의 경우 대통령 지시가 없는데 마치 자기가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지시를 받은 것처럼 하다가, 그런 사실이 없다는게 드러나니까 이상한 메모를 들고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음. 정리하면 계엄에 정보기관인 국정원도 관여된 바 없음이 정확한 팩트임.	

(마) 고현석 증인(육군 참모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현태 단장이 육군본부로부터 파키스탄 지휘참모대학에 지원해 보라는 연락을 받아서 지원하게 되었다는데 누가 지원하라고 연락하였는지?	○ 처음 듣는 얘기인데 확인해 보겠음.

(바) 정OO 증인(정보사령부 대령)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지난해 11월 18일 정보사 중령 1명과 소령 1명을 몽골로 출장 보냈는데, 몽골 방첩당국이 이들을 체포하였는지?	○ 국정원과 협조해서 석방하는데 노력함.
○ 정 대령이 석방에 상당한 노력을 하고 이 과정에서 정보사 특수처장이 몽골 군사정보국 대표를 긴급 초청했다고 하는데 맞는지?	○ 업무 교류때문으로 알고 있음.

(사) 오OO 증인(정보사령부 대령)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혁신 TF가 계엄과 관련된 것인지?	○ 계엄과 상관없고 시설, 인원, 문서관리시스템 강화 목적임.

(아) 권영환 증인(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오늘 청문회 30분 전에 미리 만나자는 임종득의원실의 통화가 있었다고 제보를 받았는데 어떤가요?	○ 예, 어제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정상적인 절차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고, 실제 30분전에 만나지 않았음.
○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한겨레신문에 났던 기사내용에 대해 법적근거 등에 대해 물었는지?	○ 예, 법적근거 등을 물었으며, 당시 압박감을 느꼈음.

(자) 양재웅 증인(국방부 국회협력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은 12월 4일 오후 9시경 성일종 국방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위원장이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통화한 내용을 들은 적이 있지요? 그 내용 중 내일(12월 5일) 개최될 국방위원회 회의 얘기를 하면서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사퇴 얘기도 있지요?	○ 예,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성일종 위원장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위원장이 장관과 통화하면서 사퇴 얘기하는 것을 들었음.
○ 국회협력단장 직위 몫의 비화폰이 2021년 12월 1일에 불출돼서 현재까지 반납되지 않았다는 게 국군지휘통신부에 확인을 거친 결과임.	○ 비화폰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음.

(차) 강호필 증인(지상작전사령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4년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끊임없는 도발로 인해 군의 대비태세가 강화되었었는데, 이러한 대비태세 강화가 북풍 조성을 위한 것이었는지?	○ 오물·쓰레기 풍선 사건이 증가하면서 위기조치기구 소집 횟수가 증가했으나, 이를 북풍과 연계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음.

[2025년 2월 25일, 제5차 청문회]

(1) 12·3 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여부

(가) 김태효 증인(국가안보실 제1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3년 3월 대통령의 사이버 분야 활동 강화 지시, 5월 대북 심리전·사이버전 강화 조직을 재구축한 바 있음. 안보실 내 현안대응 TF는 정치적 반대세력 척결을 최우선 목표로 해킹·감시·감청 업무를 했고 실무 담당자가 노성원임. 노상원을 알고 있나? 이명박 정부 시절 노상원과 함께 대북특수공작단 설치하려고 했나? 국정원 방첩국 산하조직에 야당 감시·탄압 역할을 맡겼나? 방첩사에서 나온 기획 특기자가 현안대응 TF에 있다는 것이고, 국정원에서는 몇 명 나와 있는지?	○ 일면식도 없고 모르는 사이임. 제가 전혀 모르는 사항을 질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답할 수 없음. ○ 윤 정부 출범 후 정보비서관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규모 3~4명 규모 분석팀 운영하고 있음. 두 명 나와있고 심 모 중령은 모르는 사람임.
○ 2023년 6월 HID 방문 시 국정원 대북공작국장과 같이 갔나? 공작팀이라는 것이고 현안대응 팀장도 군정 담당인가?	○ 예산과 조직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임. 근무수당과 관련된 하루의 미팅이었고 그 이후 접촉한 적이 없음.

(나)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4년 3월 삼청동 안가에서 이루어진 만찬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대권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는지?	○ 비상한 조치로 기억하고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러한 취지였음.
○ 당시 증인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였는데, 다른 참석자 중 반대 의사를 표명한 사람이 없는지?	○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제 기억으로는 조태용 원장은 동의를 해서 말씀하신 후 대통령이 다른 화제를 꺼내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과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은 특별히 답변하지 않았음.
○ 증인은 2024년 3월 이후에 다른 장소에서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용을 들은 적 있는지?	○ 들은적 없음.
○ 우리 군은 상명하복이 확실한 조직인데,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등 내란의 주요 인물이 대통령과의 만찬 이후 당시 국방부장관인 증인에게 중간 보고를 안한 것은 기괴한 일이라고 생각함.	○ 그게 매우 아쉬움. 저에게 보고가 되었다면 대통령께 말씀드려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것으로 생각함.
○ 의도적으로 증인을 계엄에서 배제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 배제했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움. 다만, 그때나 지금이나 대통령께서 느끼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나, 그 해법으로 비상계엄을 한다는 것은 동의하지 않고, 이는 사법적 판단이 어떻게 나든 관계없음.

(다) 김근태 증인(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대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수장 대표로 24년 8월에 취임하였는지?	○ 그러함.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아는지 여부 및 어떤 근무 연이 있는지?	○ 알고 있으나 같이 근무한 적은 없음.
○ 얼마나 자주 소통하였는지?	○ 1년에 한두차례 정도 했고 그냥 안부 전하는 수준이었음.
○ 김용현 전 장관, 구삼회 등을 아는지 여부 및 어떤 근무 연이 있는지?	○ 본인이 야전사령관 할 때 참모를 했음.
○ 당시 김용현은 관리처장이었고 구삼회는 전속부관이었음. 그런데, 구삼회의 진급을 불명예 퇴직한 OB에 불과한 노상원에게 부탁하셨던데?	○ 그런 적 없음. 예비역들이 현역들 진급 관련해 부탁한 적이 없음.
○ 해당 본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음.	○ 그런 적이 없음.
○ 김용현을 데리고 있었는데, 그를 두고 노상원에게 인사를 부탁했다는 것은 이례적임.	
○ 대수장은 헌법을 수호하는지?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자문 집단임.
○ 증인께서는 전략위원으로 계셨는데 전략위원이었던 신원식 전 국방부장관은 안보실장까지 올라감.	○ 저 이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윤석열 대선캠프에 합류하였는지?	○ 캠프에는 합류하지 않고 포럼 활동은 같이 한 적 있음.
○ 항공우주산업 사외이사로 선임된 대수장 사무총장이었던 조성직이 국방전직교육원장으로 임명되었는데?	○ 저와는 관련 없음. 저 앞에 대수장 사무총장을 했음.
○ 김정수는 한국국방연구원장에도 앉았는데?	○ 아는 후배들임.
○ 장재언 박사를 아는지 여부 및 그 경위	○ 대수장 대표일 때, 24년 9월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는 말들이 있어 와서 한번 설명해봐라 해서 설명한 적이 있음.
○ 그때 점심식사 자리에 노상원도 있었는지?	○ 있었음.
○ 당시 부정선거 자료 들고왔는지? 제보에 의하면 당시 현역 부하들에게 시켜서 만든 부정선거 자료를 공유했다던데?	○ 그런 적 없음.

(라) 김봉식 증인(전 서울경찰청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월 3일 안가모임에서 대통령이 가족사를 얘기했다고 했는데 김건희 여사 얘기였는지? 명태균 얘기였는지?	○ 그런 얘기는 아니었음.
○ 어떤 얘기를 했는지?	○ 계엄 사유와 관련하여 가족사를 말한 적은 없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음.

(2) 계엄선포 원인 및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

(가)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윤석열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 이유가 탄핵, 예산 삭감을 언급하면서 국가비상사태에 준한다고 언급함. 보안 유지상 직접 법률을 공부했다고 전해지는데 알고 있나? 실질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되는지는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적의 행동이 먼저임. 전시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오판하지 않도록 직언드린다'고 한 바 있음.	○ 자세한 것은 기억이 잘 안 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내란의 실질적 이유가 전혀 수사가 안 되어 있음. 명태균 구속 전 김건희와의 육성 통화 녹음을 USB에 담아서 대통령실과 윤석열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전해지는데 맞나?	○ 잘 모르겠음.
○ 명태균 사건을 중앙지검이 이첩받았는데 내란의 숨은 동기는 바로 이것임.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제대로 된 수사할 용의 있나?	○ 철저히 하겠음.
○ 명태균 황금폰에서 드러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의 통화 내용에서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는 내란의 실질적인 동기가 드러났다고 봄.	○ 계엄 선포 동기가 명태균과 관련되어 있다는 자료는 확인되고 있지 않음.
○ 검찰 공소장에는 24.11.24. 윤석열이 명태균을 언급하며 이게 나라냐,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는 내용 등이 있음. 공범 김용현의 공소장에도 설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명태균 사건과 내란사건은 연결된다고 생각함.	

(나) 김봉식 증인(전 서울경찰청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의 계엄 선포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가정사 때문이다'라고 증언하였나? 유사한 느낌을 받았나? 건강상의 이유 또는 부인을 해방시켜 주고 싶다 그런 얘기를 들었나?	○ 국회 측 의원님들이 물어서 '예, 아니요'로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계엄 사유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답변한 적은 없음. 전혀 아님.

(다) 한덕수 증인(국무총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970년 관세청 사무관으로 시작해서 2007년 4월부터 2008년까지 제38대 국무총리, 김대중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및 주미대사 까지 지낸 증인의 경험에 비추어 윤석열 정부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삼권분립의 정신이 올바르게 지켜졌다고 생각하는지?	○ 한마디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행정부가 일을 하는 정치적인 상황은 2007년 국무총리를 했을 때하고는 좀 다르다고 어려웠다고 생각함.
○ 과거에 비추어 봤을 때 지금과 같이 29번의 탄핵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지?	○ 이는 행정부에는 매우 큰 부담이 되고,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미국과도 다른 점이 많은 제도이며, 행정부가 원활히 작동하기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고 생각함.
○ 다수결의 원칙은 당연히 다수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나,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지 않도록 소수의 권리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22대 국회는 소수에 대한 존중 없이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독재가 행해지고 있다고 생각함.	○ 자유를 요구하려면 책임이 뒤따르듯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결정과정은 동시에 소수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함. 언제라도 정치권의 큰 타협과 조정, 상호에 대한 배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 여당도 노력을 해야 하고 다수당의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믿고 있음.
○ 증인은 국회의 일방적인 다수결 표결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방식이고 대의민주주의의 올바른 집행이라고 생각하는지?	
○ 지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고려하면 지금 헌법재판소의 심리 속도는 엄청 빠른 것임. 거대 야당은 이것이 조속한 국정 안정처럼 포장하고, 다수로 밀어붙이는 입법 폭주를 하고 있으며, 뚜렷한 이유 없이 장관들은 물론 검사와 감사원장까지 스물아홉 번이나 탄핵했음.	○ 매우 어려웠다 하는 말씀을 솔직히 드림. 그러나 과거에 우리 정치인들께서 국가의 어려움에 대한 돌파구를 항상 마련해 주셨듯이 서로 간의 반목과 대립보다는 대화와 조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후대를 위해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함.
○ 지난 2년 반 동안 국정의 어려움에 대한 평가를 해주기 바람.	

(라) 박종승 증인(한국항공대학교 석좌교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평양에 4대를 보냈는데 해당 사업은 전력화 사업이 아니고, 단기간에 저가 대량제작이 가능하도록 하고, 비행 시험을 통해 장거리 비행이 가능함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 맞는지?	○ 전력화사업 아님.
○ ADD제직 당시 드론사에 무상증여 방식으로 제공하였는데, 그 당시 전력화에 사용되는지 알았는지?	○ 몰랐음. 연구소장이 북한 위협에 대해 단기적으로 기술적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가능성 연구였음.
○ 이것이 전투용으로 군사작전에 활용되었음. 우리나라 획득 절차 관련법에 따라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 자체 연구 개발에서 기술적 가능성을 본 것으로 전력화한 사례는 본 적이 없음.
○ 항전·항법 장비가 중국산인 것은 알았는지?	○ 뉴스를 통해서 처음 인지를 하고 이례적이라고 생각했음. 그 이전 중국산 cctv가 육본에서 문제가 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당시 실무자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 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음.

(3) 12·3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여부 및 그 적법성

(가) 한덕수 증인(국무총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12월 3일 대통령이 국무총리 비롯한 국무위원과 국정원장 따로 불렀는데 국무회의 소집을 대통령께 건의한 것은 총리가 맞나?	○국무위원 모아서 의견 들어야 한다고 건의한 것은 맞음.
○경찰 조사에서 국무회의 마친 후 국무위원 참석한 사인 정도 받으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맞나?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제가 한 것은 아니고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음. 저도 사인은 안 했음.
○헌법재판소 10차 변론기일 때 강의구 부속실장의 진술 내용을 보면 12월 5일 계엄선포문 출력해서 한덕수 총리, 김용현 전 장관 서명을 받고 7일에 대통령까지 서명받았으나 8일 총기라 없던 일로 하자고 전화했다고 했고 증인은 이를 인정함. 부속실장이 대통령 지시라고 서명을 해 달라 한 것인지?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사후 부서나 어떤 것도 하지 않았음.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받은 문서가 있는지 묻기에 소지하고 있던 계엄선포문 두 장 중 한 장을 강 실장에게 보냈고 강 실장이 한 장 겉표지에 서명 요청하기에 이 문서가 소지하고 있었던 문서가 맞다는 의미로 서명한 것임. 사후에라도 서명하는 것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서명 부분 파기해달라고 요청함.
○8일 부속실장과 통화한 시간을 기억하나? 사후 공문서 조작까	○7일 또는 8일로 기억함. 수사기관에 상세히 진술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지 가담하는 것은 부담스러웠던 것 아닌가? 총 세 번의 가짜 국무회의 개최 시도가 있었음. 대통령 계획에 없던 국무회의를 연 것, 국무위원 서명을 받아 정당화하려 한 것, 계엄선포문 사후 조작하기 위해 서명했던 것임. 일관되게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충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임.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부서한 일은 절대 없음. 질문 받은 내용은 실제와 다름.
○ 증인은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개의와 종료 선언도 없었으며 약 5분만에 끝냈고 회의록도 없었다 발언하였음.	○ 예, 절차적·실체적 흠결이 있었음.
○ 그렇다면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 몇 가지 팩트가 분명히 있고, 그 팩트에 따라서 각자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제가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믿고 있음.
○ 국가의 최고 회의 의결기구인데 개의·종료 선언, 회의 절차와 과정 및 내용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판단은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지?	○ 그런 생각은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이 헌법적 또는 법적으로 어떠냐 하는 것은 수사와 사법절차의 과정에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비상계엄 당일 날 집무실에 도착했을 때 어떠한 분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는지?	○ 처음에는 뭐 때문에 부르시는지 모르고 갔지만,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경황이 없었고,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계엄이라는 것이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대통령이 하지 않는 쪽으로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의견을 들어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음. ○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바꾸시도록 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민들께 송구스럽고 제 자신도 안타깝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음.
○ 대통령이 발언한 것처럼 계엄은 비상대권이기 때문에 국무회의 심의를 안해도 된다고 판단한 것 아니겠는지?	○ 대통령의 생각은 각료들하고는 좀 다를 수 있음. 다만, 하나의 사실은 국무위원 대부분이 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심의가 제대로 됐느냐 안됐느냐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분명한 절차적·실체적 흠결은 있었음.

(4) 12·3 계엄 선포 후 각 국무위원들의 후속대책 이행 등

(가) 윤인대 증인(기획재정부 차관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12월 3일 21시 55분부터 경제부총리와 같이 있었는지?	○아님. 경제부총리로부터 F4 회의를 소집하라는 지시에 따라 은행회관에 가서 경제부총리를 만난 것은 23시 30분경임.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한테 준 쪽지를 언제 건네받았는지?	○23시 30분경 만나고 5분 안쪽에서 건네받았음.
○그러면 F4 회의 중에 받은 것인지?	○회의 시작은 23시 40분이였음.
○1급 회의는 언제 시작했는지?	○00시 55분정도. 거의 1시경이 되어 회의가 시작하였음.
○쪽지의 내용을 본 기억이 없는지?	○23시 30분경 쪽지를 건네받은 걸 주머니에 넣었다가 밖에 잠깐 나온 상태에서 쪽지를 보고 내용을 인지하였음.
○내용을 인지한 후 부총리한테 뭐라고 보고하였는지?	○당시 F4 회의를 통해 환율 안정 메시지 발신 등이 너무 급박한 상황이라서, 내용을 본 순간 내 소관이 아니다 정도만 인식하였음.
○예비비 확보, 국회 관련 보조금·지원금 등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도 보고를 안했는지?	○제 담당은 아니였으며, 당시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이었고 긴급하게 윗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최상목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옆의 실무자를 통해서	○그냥 들고 있으라는 말만 들었고, 질의하신 내용은 사후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쪽지를 받았다고 하고, 대통령은 쪽지를 준적이 없다고 하는데, 증인이 들은건 무엇인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음.
○ 최상목 부총리가 지시 문건을 22시 20분에 받았고, 22시 30분에 윤인대 차관보에게 주었음. 1급 회의가 끝날 때 어떻게 처리할지 물어보니 “무시해”라고 답변을 들은 것이 맞는지?	○ 맞음.
○ 이는 최상목 부총리가 F4 회의에 지시를 하려다가 그 와중엑 계엄이 해제되어 이를 무시하라고 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음.	
○ 부총리는 이 지시 문건에 대해 10일 정도 지난 12월 13일에 있다고 답변함.	○ 맞음.

(나) 한덕수 증인(국무총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은 국가비상입법기구 설치와 관련하여 당시에 알고 있었는지?	○ 전혀 몰랐음.

(다) 윤인대 증인(기획재정부 차관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내란을 언제 알았는지?	○ 10시 30분경 티비를 보고 앎.
○ 기재부장관으로부터 대통령 지시사항 쪽지를 받았는지?	○ 11시 30분경 F4 회의를 위해서 모였을 때 제가 받았음.
○ 예비비 확보 관련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보고 어떻게 느꼈는지?	○ 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하였음.
○ F4 회의에서 뭘 논의했는지?	○ 그 때는 환율이 급변하고 있어 시장 안정이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환율 안정을 위한 시장 안정 메시지가 가장 주요한 내용이었음.
○ F4회의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공유하지 않았는지?	○ 당시 회의에서는 해당 사항을 논의하지 않았음.
○ F4회의가 끝나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 회의가 끝날때쯤 쪽지를 어떻게 할지 장관께 여쭤봤는데 이미 계엄이 해제가 되었고, 우리는 계엄을 반대하기로 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무시하라고 하여 제가 보관하였고 원본은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음.
○ 비상입법기구와 관련해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기구가 국회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가 매우 어려워 긴급재정경제명령 발동을 위한 기구라고 언급함. 당시 대한민국 경제에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할 정도의 특정한 사안이 있었는지?	○ 해당사항은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음.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생각하기 쉽지 않음.

(라) 김복현 증인(금융감독원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월 3일 본인 휴가였는지?	○ 휴가는 아니고 개인적인 사정인데 처가 아파서 오후에 일찍 퇴근함.
○ 비상계엄 당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 비현실적이고 실감이 안 났음.
○ F4회의 당시 최상목장관이 사임의사를 밝혔다는데 금융감독원장을 거취를 고민안했는지?	○ 장관이 그만두시면 저도 같이 그만두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림. 어쨌든 당시 상황에선 한국은행 총재도 좀 말리시는 상황이었음.

(마) 김병완 증인(금융위원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비상계엄 당시 금융위원장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 놀라웠음. 대외 신인도나 시장에 굉장히 충격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음.

(바) 이창기 증인(한국은행 전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기재부로부터 대정부 일시대출 요청을 받은 바가 있는지?	○ 없음.
○ 지금까지 한번도 거절한 적이 없는 것 맞는지?	○ 그런 것으로 알고 있음. 항상 세출 예산 집행의 과부족시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만 요청하여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음.
○5조의 여유분이 있는 것은 맞는지?	○5조의 여유분이 있었던 것은 맞음.

(5) 계엄 선포 전 병력 등의 동원을 위한 준비사항

(가) 이영팔 증인(소방청 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계엄 당일 소방청장으로부터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받은 것인가?	○지시를 받은바 없음.
○청장과 이상민장관 통화 3분 뒤 소방청 차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과 통화하면서 계엄 관련 경찰청 협조 시 잘 협력해줬으면 좋겠다, 서울본부에서 협력할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는 말을 함. 그럼에도 지시받은 것이 없는지?	○단전·단수와 같은 지시 등은 한적이 없고, 현장상황 등을 물은 것임.

(나) 오재경 증인(영등포소방서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당일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본청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나? 본부장에게 무엇을 보고했나?	○ 본부장에게는 제가 연락을 하였고, 청에서는 문의전화를 한 통 받았음. 1시 20분 좀 넘어서, 관할 내 구급 2건 이외 특이사항 없으며 지켜보고 있다는 내용을 보고하였음.
○ 본청에서 연락온 것은 어떤 것인가?	○ 1시 넘어서 국회 내에 구급대원이 다수 투입되었다는 비상상황 속보가 뜨자, 당시 내용 확인을 위하여 청에서 전화가 왔음. 내용 파악을 해본 결과, 국회 내 구급상황이 1건 있었고, 들어간 직후 뉴스 보도가 있었고, 그 외에는 국회 내 특이사항이 없다고 보고하였음.
○ 재난본부장으로부터 경찰 연락시 협조하라는 이야기 들은바 없나?	○ 서울본부장에 대한 상황보고 이후 본부장은 “예, 알겠습니다” 이후 별도의 말은 없었음.

(다) 서영배 증인(마포소방서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 당일 재난본부장 또는 본청으로부터 통화한 사실 있나?	○ 연락받거나, 지시 받은바 없음

(라) 김태효 증인(국가안보실 제1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가안보실에 반국가세력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는 야당탄압 TF가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가짜뉴스가 아닌지?	○ 이미 제도의 취지와 사실관계를 충분히 소명함.
○ 해당 TF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하면?	○ 국가안보실의 정보융합팀은 임기 초부터 공개적으로 출범한 조직으로, 대북·해외 관련 정보가 모이면 이를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분석하여 안보실장과 제가 참고하려는 조직임. 별도로 대통령께 보고하는 절차는 없음. 팀에는 방첩사 인원이 근무한 일절 적이 없음. 정보사 소속의 한 명이 있지만 공작 역할이 해제된 사람임. 노상원이란 사람은 처음 들어보았음.

(6)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에 관한 사항

(가) 이현일 증인(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방첩사의 경찰 100명 지원해달라는 요청에 7분만에 서울청에서 명단작성을 요청함. 실무자 본인 판단으로 7분만에 가능한	○ 과장이 23시 39분에 전화할 당시 명단을 준비만 해달라고 했으며, 청장님께는 23시 59분쯤 보고한 것으로 앎.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건지? 당연히 청장승인을 받아야되는 것 아닌지?	
○ 12월 4일 00시 38분경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최대한 시간을 끌라'고 지시한 바를 전달 받았는지?	○ 국수본에서 자체적으로 1시경 회의를 할 때 알게 되었음.
○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지시에도 체포조 협력을 중단하지 않은 이유는 본부장의 권한을 뛰어넘는 누군가가 '체포조에 협력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일 수밖에 없음. 국수본부장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은 경찰청장밖에 없지 않은지?	○ 그러함.
○ 방첩사의 요청 25분만에 긴급체포조가 출동하였는데 이는 소극적으로 명령을 이행한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임. 경찰의 체포조 운영 증거는 차고 넘침. 관련자를 직무배제하고 내란세력들을 발본색원해야 함.	○ 방첩사로 연락받기 전부터 영등포서 형사들이 국회주변에서 대기중이었음. 계엄법에 따라 신속히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불법인지 몰랐기 때문임.

(나) 강상문 증인(영등포경찰서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3. 박현수 직무대리로부터 전화를 받았나? 무슨 통화하였나? 국회의원 체포 관련 이야기 없었나?	○ 현장이 어떠냐, 고생하신다 정도 짧게 통화했으며, 국회의원 체포 관련 이야기는 없었음.

(다) 임정주 증인(경찰청 경비국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3. 23시 10분 박현수 직무대리와 통화할 때 어떠한 대화를 하였나? ○ 23시 35분에 통화하였나?	○ 상황을 물어봐 오길래, 출근중이고 상황 파악중이라고 답변함. ○ 기억은 나지 않지만 통화했다고 들었음. 전화가 오자마자 바쁘니까 끊으라고 하고 7~8초 정도 통화한 것으로 들었음.

(라) 박현수 증인(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4차례,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18차례, 임정주 국장과 2차례, 강상문 서장과도 통화를 한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 때 체포 또는 봉쇄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적 없나?	○ 없었음.

(7)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의 동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가) 임경우 증인(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당일 서울청은 국수본으로부터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할 수사관 100명 요청을 받고, 명단작성 및 출동대기 지시를 한 것이 맞나?	○ 경계강화 발령에 따라 출동대기 지시했음.
○ 명단 104명 중 수사관 81명이 집합하여, 방첩사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 출동할 수 있는 상태로 대기 완료하였음.	○ 체포나 합수부 파견에 대해 요청받지 못했고, 명단 작성 지시에 따라 명단 작성했음.
○ 0시 10분 손제한 수사차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수사2계장으로부터 수사관 100명 명단작성 요청 보고받은적 있나? 이를 청장에게 보고하였나?	○ 보고받은 적은 있으나, 합수부 파견이라는 지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음.

(나) 이호영 증인(경찰청장 직무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채증 관련 자료를 확인해보니, 각 서별로 채증이 되어있는데?	○ 경비안전계장은 사전에 장비점검·확인 등 사전계획에 따른 무전 등을 하는 역할임.
○ 채증영상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는?	○ 통상적인 개인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이 고려되었다고 생각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당일 채증영상을 한 것은 맞으나 영상이 지금까지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의미인지?	○ 무전 시는 계엄선포 2시간반 전으로 전장연 집회 대기 상태였으며, 그 이후의 영상기록 존재에 대하여는 확인해보지 못했음.
○ 232명의 채증조가 있었고, 93건의 집중적인 확대 생산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 중대별 6~7명 정도 채증조가 있어 촬영을 하고, 모두 제출하지는 않음. 국민의 얼굴이 찍힌 것을 외부에 함부로 제출할 수 없다고 생각함.
○ 방첩사 체포조 파견명단 100명, 영등포서 형사 50명 긴급체포 동원, 국회 봉쇄·침탈 등 경찰이 내란이 깊숙이 발을 들였음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 및 인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 및 인사조치를 해달라.	○ 말씀에 공감하고, 국민께 송구스러움. 다만 현 시점에서 한 번에 인사조치하기는 어려움. 수사진행 경과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겠음.

(다) 정일현 증인(영등포경찰서 강력7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 당시 방첩사 지원하라는 지시를 누구에게 어떻게 받아서 수소충전소로 출동하였나?	○ 지시를 받지는 않았고, 저희는 비상소집을 이유로 집합하였는데 갑자기 방첩사쪽에 협조하라는 연락을 받음.
○ 구○○ 팀장과의 통화 당시 50명이 있었고, 그 50명이 방첩사와 함께 임무를 수행한다는 사	○ 저와 통화할 때는 그런 내용은 없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실은 알고 있었나? ○ 사복으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나? ○ 구○○ 과장은 영등포 형사가 먼저 50명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음. 결과적으로 50명은 방첩사 지원을 위한 대기 인력이었나?	○ 지시받지 않았음. ○ 저는 10명으로만 알고 있었음.

(8) 국회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행위에 관한 사항

(가) 최창복 증인(前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계엄날 22시 46분경 김봉식 서울청장으로부터 국회 전면차단 지시 받았는지?	○ 그러함.
○ 그 지시 받은 이후 경비 지휘무전망을 통해 국회 진입자들 전원 차단하라는 지시 했는지?	○ 22시 46분경 차단한 적이 있음.
○ 국회의원 포함 전면 차단인지?	○ 안에서 밖은 막지 않았고, 밖에서 안은 막았음. 당시 의원님에 대한 인식은 없었음.
○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모두 들어가는게 차단되어 있었고 경비지휘 무전망에 확실하게 녹음되어 있는 사항 아닌지?	○ 그러함.
○ 일시적으로 공공안전차장 등	○ 10분이 아니라 약 30분 정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참모들이 문제제기하니까 10분 정도 국회의원, 보좌진들 출입 허용하다 다시 청장이 지시 해서 포고령에 따라 통제 지시 했는지	허용하고 이후 지시 내려옴.
○ 30분 뒤 다시 지시를 해서 경비지휘 무전망을 통해 '각 출입문 현 시간부터 재차 통제, 전원통제입니다. 국회의원 포함 전부 통제'라는 전면금지 지시 내렸는지?	○ 그러함.
○ 객관적 증거에 따라 출입 차단했다는 지시 내렸다는 것은 완전히 증명이 되는지?	○ 그러함. 당시 5개 부대로 하여금 10개 문에 배치하였음. 그래서 차단을 지시하였음
○ 국회 둘러싼 모든 문에 경찰 배치했고,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모든 인원들을 차단한 것인지?	○ 그렇게 지시하였음.
○ 이게 국회 봉쇄가 아닌지?	○ 봉쇄에 해당함.
○ 질서유지가 아니라 못들어가게 차단한 것 아닌지?	○ 목적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음.
○ 표결까지 못하게 막은거 아닌지?	○ 결과론적으로 그러함.
○ 간부들이 문제제기 있어서 잠시라도 풀린거 아닌지?	○ 그러함.
○ 비상계엄 당일 체증조 운용을 누구 지시로 하였는지?	○ 체증조는 별도로 운용하지 않았는데, 일부 부대가 촬영을 했으나 내용을 파기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32명이나 운용을 한 것 아닌지?	○ 채증조는 여러 부대에 6명씩 상시적으로 있음.
○ 채증조의 운용은 누구의 지시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했다는 뜻인지?	○ 별도로 지시한 적 없음.
○ 현장에 집회나 시위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채증을 하는지?	○ 각 부대별로 운용하고 있음.
○ 본인의 송출 기록을 보니 07시 58분에 “조치는 깔끔하게 잘 되었습니다. 우리 병력은 후미에 있는 채증조, 지도부도 전부 대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라고 말하였음. 본인의 기록이 있는데도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것인지?	○ 거짓말이 아님.

(나) 김봉식 증인(前 서울경찰청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3일 헌재 출석해 1차 국회 봉쇄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답변했는데, 질서유지가 왜 필요한지?	○ 형사재판 관계로 증언하지 않겠음.
○ 윤석열 측이 오늘 헌재에서 국회 봉쇄 없었다고 답변했는데 동의하는지?	○ 포고령 이후 국회 전면 차단했던 것이 사실임.
○ 1차 봉쇄 당시 국회 상황 보면 왜 질서유지가 필요한지 의문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2차 봉쇄는 포고령에 근거해서 하였다고 했는데, 당시 생활안전차장이 만류했다고 들었는데 왜 강행했는지?	○그 부분은 논란이 있어 재판 과정에서 진술할 예정. 당시 본청 지시가 있는 상태에서 포고령이 뭔지 당황하는 순간이었음. 이에 대해 약간의 의견 교환이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함.

(다) 목현태 증인(前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국회의장 입장시키기 위해 4번이나 의장을 찾았는지?	○그러함.
○당시 국회의원들을 국회 안으로 입장시키기 위해 노력했는지?	○그러함. 다만, 전체적인 지시는 차단을 원칙으로 함. 신원이 명확한, 아는 의원이 오시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함.
○당일 사무총장과 몇차례 통화하였는지?	○수차례 하였음.
○당시 4번 통화하였는데 사무총장이 당시 무엇을 지시하였는지? 국회의원 출입허가하라고 했는지?	○국회의원 출입 허가하라고 했음.
○당시 제 선에서는 할 수 없고 상부 지시로 막아야 한다고 했는지?	○그러함.
○목현태 대장은 국회 봉쇄하는데 제일 앞장선 사람임.	○제대장이 의장님께서 곧 5분 뒤에 들어오신다고 하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사무총장의 국회 개방 지시 따랐는지?	○ 그렇지 않음.
○ 1월 15일 기관보고 당시 본인은 국가 주요 시설인 국회를 보호했고 국회의장의 국회 입장을 위해 4번이나 찾았다고 진술하였음. 맞는지?	○ 그러함.
○ 국회의장을 찾은 이유가 입장을 시키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국회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것인지?	○ 입장을 시켜드리기 위해 찾았음.
○ 그 시간이 몇시였는지?	○ 다시 출근을 하면서 전화로 의장님께서 곧 돌아오실 것이라는 내용을 들었음.
○ 그런 이야기가 다 전파됐으면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 그런 부분은 안타까움. 찾았으나 위치 확인이 되지 않았음.
○ 본 위원이 국회에 들어오려고 할 때 약 11시 25분경이었는데, 그때는 밖에서만 막았음. 재시도할 때는 약 40~45분경이었는데 그때는 경찰이 안과 밖을 다 막고 있었음. 알고 있는지?	○ 알고 있음.
○ 12월 4일 00시 17분경에 국회의 경력, 병력의 배치도를 보면 국회의원 출입을 재통제를 했고 또 위헌적 불법 계엄이 절정에 치닫던 그런 때인데 현장	○ 국회경비대 관내, 안쪽 부분은 언제든지 본인이 현장 책임자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지휘책임자 영등포서장이 경내 밖에서 지휘했고 경내 안에서는 목 총경이 지휘함. 이것을 보면 현장 지휘자로서의, 적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 해당 약도를 보면 총경께서 적극적으로 의장을 비롯한 개별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은 것이라고 보면 되는 것 아닌지? 국회경비대장이 현장 지휘책임자라고 써있는데?	○ 그것만으로 그러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맞지 않음. 저는 언제든지 국회를 책임지는 책임자로 명명한 것 같음.
○ 총경께서 적극적으로 의원들 진입을 막았다고 볼 수밖에 없음.	○ 의장님을 네 번이나 찾은 것은 의장님이 국회의 수장이시니 당연히 들어와서 국회를 통할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임. 또, 제 직원들을 통해 아는 국회의원이 들어오면 그분들을 넣어드려라고 해서 넣어드린 분도 계심.
○ 본 위원은 3번 시도해서 못들어왔음.	○ 직원들을 시켜서 국회사무처 직원분들이나 의원들을 들여보낸 적이 있음.
○ 총경께서는 국회 수호와 안전의 책무를 저버리고 계엄에 부역하신 것임	○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함.

(라) 박현수 증인(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월 4일 1시 12분에 조지호 청장과 통화하고, 1시 16분에 이상민 장관과 통화함. 이전 행안위 행위에서 경찰 상황 전반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엄 해제가 의결되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 상황 전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한 것인지?	○ 1시 1분에 계엄 해제 의결이 되어 당시 상황이 종결되었다고 생각하고,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를 했고 전반적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보심.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음.
○ 어떤 말씀을 들었다면서 기억나지 않는 것인지?	○ 이 부분은 재판이 진행중이므로 증언하지 않겠음.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조지호 청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임.
○ 해제 의결이 되어 어떻게 봉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였을 것으로 추정됨.	○ 그런 사안은 절대 아님.

(마) 임정주 증인(경찰청 경비국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1월 3일 11시 7분경에 박현수 직무대리와 두 차례 통화했는지?	○ 그러함.
○ 당시 박현수 국장이 계엄 시	○ 통화 내역은 없고 온 것으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경찰 임무를 묻고 상황파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증언함. 2번째 통화는 30분 뒤인 11시 35분에 이루어졌는지?	기억됨. 전화온 자체가 기억나지 않음. 나중에 1월 달쯤에 국회 청사 복도에서 잠깐 들었는데 현 서울청장이 하는 말이 본인이 11시 35분 전후로 잠깐 통화했는데 제가 '바쁘니까 끊어'라고 하면서 7~8초 동안은 통화했다, 이 말을 들었음.
○ 당시 이상민장과과 조지호청장이 통화를 하고, 이상민 장관과 조지호 청장, 박현수 국장과 임정주 국장 통화 직후인 11시 37분에 국회가 전면 봉쇄됨. 그 직전 통화인데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지?	○ 조지호 청장과 통화한 사실을 몰랐음. 박현수 국장이 전화한 사실은 기억나지 않음.
○ 조지호청장이 증인에게 국회 전면 봉쇄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 비서실에서 그렇게 지시했고, 청장의 지시라고 보임.
○ 이후 지시사항을 서울경찰청 오부명 공공안전차장에게 전달했고 국회가 11시 37분에 완전히 봉쇄된 것인지?	○ 그러함.

(바) 강상문 증인(영등포경찰서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회 외곽 봉쇄 누가 지휘하였는지?	○ 서울 경찰청에서 직접 지휘하는 상황이었고 외곽은 기동대 병력이 경비하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기동대는 영등포 경찰서 소속인지?	○ 아님.
○ 국회 주변 병력배치 요도를 보면, 영등포서는 국회 밖을 담당하였고, 국회경비대는 국회 경내를 담당하였음. 왜 다르게 얘기하는 것인지?	○ 서울청에서 경비무전 지휘망으로 전체 상황을 지휘했던 상황이었다는 설명이었음.
○ 현장에서 느낀 바로는 23시 20분에는 국회 정문만 막았고, 23시 40분은 모든 담을 다 막았음.	○ 제가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21시 27분 경이었고, 07분부터 한 30여분간 출입이 허가되도록 무전 지시가 되었음.

(사) 박만식 증인(서울경찰청 34기동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회 외곽 경계 봉쇄를 하였는지?	○ 서울경찰청 지시로 각 기동대별 출입문이 지정되어 있었음.
○ 담벼락도 모두 봉쇄한 것으로 아닌데?	○ 기본적으로 출입문을 경계하였고, 담벼락마다 한 두명씩은 배치하였음.
○ 한 두명이 아니라 10m 간격으로 서 있었음.	○ 부대별로 좀 다를 수 있음.

(아) 이호영 증인(경찰청장 직무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당일 채증조를 운용 안한 것	○ 확인이 필요함. 최창복 증인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맞는지?	말대로 채증조가 항상 운용되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지시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음.
○ 93건의 채증을 확대해서 보고하고 있다고 아는데 맞는지?	○ 그것은 각 부대별 판단하는 문제일 것으로 생각됨.

(9) 내란범죄 수사주체 논란과 수사상황 점검

(가)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 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한 이유?	○ 공수처법 제31조 전문의 규율 범위는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관해서 중앙지법 관할을 원칙으로 하는 것임. 이 사건은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이 아니라 수사권만 갖는 사건이므로 형사소송법의 원칙으로 관할을 정해야 하며, 여러 피의자 관련되어 있고 특히 이상민 피의자 주소지가 강남이어서 중앙지법을 관할로 했음. 전혀 문제가 없고, 서울 서부법원, 서울 남부법원이 관할 관련성이 제일 많다는 의견임.
○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 이례적으로 보고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에 대하여 불복절차인 체포적부심을 중앙지법에 한 것은 이례적이지 않나?	
○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한 이유는?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유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있는지?	○ 기각되자 서부법원으로 간 것이 아님. 중앙법원에 청구한 것은 여러 피의자가 있었고 이 상민 피의자가 서울 강남구에 주소지가 있어서 중앙법원에 관할이 있었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경우 범죄지, 피의자 소재지 전부 서부지법이었음. 내란죄 수사권을 사유로 기각된 바 없음.
○ 우리법연구회 출신인가? 수사기록 검찰로 이첩할 때 빠짐없이 했나?	○ 아님. 빠짐 없이 했고 문상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은 군사법원에 보낸 기록에 정본이 들어 있음.
○ 구속적부심 신청했고 이의신청했으나 법원의 판단이 나옴.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이상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함. 공수처장도 같은 입장인가?	○ 법원에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라고 생각함.
○ 12월 6일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12월 7일 모두 기각된 사실 있나? 대상장소와 물건 뭐였나? 12월 8일에도 기각되었는데 대상 장소와 물건이 동일했나? 재청구한 영장이 아니고 별개의 영장인가?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관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국회와 선관위 부분에 대해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고 있음. 동일한 것은 아님. 재청구가 아니라 별도로 추가된 영장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압수수색 통신영장 기각 사유는 경찰과의 공조수사본부에서 향후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청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이었음. 공수처에 수사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경찰만 대통령 내란죄에 수사권한이 있어서 공조수사본부 꾸려서 수사할 것이라고 진행되고 있었음. 이 맥락으로 보면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는 것으로 읽히는 것 아닌지?	
○ 12월 20일 서울동부지법에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되었으나, 김용현 전 장관은 12월 10일 발부된 영장에 의해 구속된 상태였음. 통상 이런 경우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는데 체포영장까지도 기각됨. 기각 사유는 뭐였나? 왜 검찰에 기각 사유 가리고 송치했나?	○ 내란죄 수사권 유무와는 전혀 관계 없는 내용임.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 내용 및 수사진행경위 등을 고려하여 기각한다는 취지임. 특정 부분을 가린 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검찰에 송치할 때 12월 6일과 8일의 기각된 영장 부분 다 첨부해서 사건 송치한 것 맞나?	○ 맞음.
○ 12월 6일과 8일 압수수색영장 기각 사유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서 기각된 것은 아니라고	○ 그러함. 통신영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정리하면 되는지? 대통령 윤석열을 직접적 타깃으로 하는 압수수색 또는 통신영장은 아니었던 것인가?	대상 영장이 있었고 압수수색 영장에는 대상이 아니었음.
○ 기각된 영장이나 수사기록 모두 첨부해서 검찰에 넘긴 것 맞나? 다른 장성들 관련된 건은?	○ 맞음. 다만, 문상호 피의자에 대해서는 중앙군사법원에 보낸 기록에 원본이 첨부되어 있음. 12월 6일 8일 청구한 영장에는 박안수 등 군인들이 적시되어 있었으나 돌이켜보면 서울중앙군사법원에 관할이 있어 그 이후 청구될 때에는 중앙군사법원으로 감.
○ 재판관할 관련 공수처법 제31조는 공수처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조항이고 이 사건은 수사만 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 것인가?	○ 맞음. 형사소송법에 따라 토지관할권에 의해 범죄지가 여의도 또는 대통령실·관저이고 주소지는 이태원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부지법에 관할이 있고, 중앙지법은 대통령이 체포됨으로써 서울구치소가 현재지가 됨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상황임.
○ 1월 15일 대통령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 질의한 자료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가 이틀 뒤인 1월 17일 질의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답변이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실무자가 수사	○ 수사에 관해서 질의가 있으면 수사상 답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변함. 주진우 위원이 질문 주셨을 때 파견받은 직원이 체포영장에 대해 묻는 것으로 이해한 나머지 정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팀 확인도 안 하고 제출했다는 것인가? 국회를 대상으로 허위 공문서 발송한 것임.	
○ 대통령 체포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적 있나?	○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서부법원에 처음 청구되었음.
○ 12월 6일 대통령 압수수색·통신영장, 8일 압수수색 영장, 10일 김용현 구속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됨. 30일에는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으로 청구함. 영장을 허가해 줄 진보 성향 판사를 찾아서 영장쇼핑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임. 왜 처음부터 서부지법 청구 안 했나? 서부지법 청구하도록 결정한 사람은 처장 의견인가 수사팀 판단인가?	○ 수사진과 제가 나름대로 의사결정에 관여해서 결정한 사항임.
○ 내란죄 없는데 수사하고 재직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고, 관할 아닌 다른 법원에 영장쇼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55경비단장을 겁박해서 딱풀공문 만들어서 체포영장을 집행함. 경호차장이 한 번도 공수처 들어오라고 허락한 적 없다고 진술함.	○ 정당하게 발부·집행된 체포영장에 대해서 마땅치 않다는 이유로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해치는 발언임. 55경비단 공문서는 경비단장 의사에 의해서 정확하게 발부된 것임.
○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된 날 세금으로 와인 파티를 했음. 박안수에 대해서 관할 오류로 중	○ 2차 체포영장 청구를 위해서 많은 직원들이 애를 썼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앙지법에 청구했다고 해서 관할 오류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함. 이상민 장관 케이스도 사건을 가져가고 수사권이 없다고 판단해서 내려보낸 것으로 보임. ○ 중앙지법에서 기각될까봐 서부지법으로 가서 발부받아놓고 거꾸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영장을 중앙지법에 쭉 청구하다가 바꾸는 것도 까다로운 중앙을 피해서 영장쇼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임. ○ 압수영장은 피의자 여러 명인데 이상민 주거지 강남이어서 중앙지법에 청구했다는 설명이나, 관할이 중앙이 아닌데 이상민 한 명 때문에 만든 것 일반적이지 않음.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과 서부에 둘 다 관할이 있는 것인가? 이상민 장관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인가? 김용현은 12월 6일자 체포영장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주소지는 서대문구로 서부지법 관할이고, 여인형 12월 8일자 체포영장은 주소지는 과천시인데 중앙지법에 청구함. 다 동일한데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부지법으로 도망가듯이	○ 피의자가 이상민 장관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중앙법원에 관할이 생기지만 조사를 진행하면서 이상민 장관이 타깃에서 제외됨. 여인형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은 수사 편의상 중앙법원으로 청구되었는데 지금 따져보니 군사법원으로 가야 하는 것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청구한 것임.	
○ 체포영장과 압수영장은 별개이고 주소지 기준으로 하는 것도 일관되지 않음. 어느 시점에서 서부로 옮겼는지, 누가 그런 건의를 했는지 밝혀 주기 바람.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범죄지 주소지가 중앙법원이 없게되어 관할 정도가 제일 높은 서부법원에 청구하게 된 것임. 처음에 서울중앙법원에 넣은 청구에 군인도 들어 있고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적법절차를 더 지켰다는 말씀을 드림.
○ 처음부터 영장 청구를 서부지방법원에 했다면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을 것인데, 압수수색영장과 통신영장이 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된 후 체포영장을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지난 12월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경찰과의 수사권 중복을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고 명확히 말씀드렸음.
○ 증인은 지난 1월 9일 현안질의에서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기 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있는지?”라는 질의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은 서부지방법원에 처음 청구했다”고 답변하였고, 이후 서면질의를 통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 영장 종류를 불문하고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있는지?”라는 질의에 “진행중인 사건으로 답변할 수 없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다”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청구한 적이 있다고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임.	
○ 또한, 1월 15일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영장이나 통신영장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있는지?”라는 구체적 질문에는 “없다”고 답변하였다가 계속된 위원들의 질의에 “대답할 수 없다”고 답변한 바 있음.	
○ 이번 내란 혐의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를 함으로 인하여 국정수행에 장애나 문제가 되더라도 소추만 안하면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는 선례가 생겼음.	○ 공수처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수사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권이 있으므로 관련사건으로서 내란죄에 대해서도 수사권이 있으며, 이는 여러 차례 영장 발부를 통해 사법부의 권위 있는 판단을 받은 바 있음.
○ 증인은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적이 있는지?	○ 가입한 사실이 없음.
○ 서부지방법원에 진보 성향 판사들이 있는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함.
○ 공수처가 영장을 쇼핑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이는 관련성이 많은 관할 법원을 찾아가는 과정임. 대통령실이 종로구에 있을 때는 중앙지방법원 관할이었으나, 이태원으로 옮기면서 서부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 되었으며, 내란의 주된 범죄지는 국회와 대통령실 그리고 중앙선관위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심판을 받는 입장에서는 관할에 문제가 없고 시비가 걸리지 않을 곳을 찾게 되므로, 범죄지와 주소지를 찾아서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한 것임.
○ 중앙지방법원이든 서부지방법원이든 사법부가 판단해서 영장을 발부한 것인데 공수처가 문제가 있으면 법원에서 기각되는 것 아닌지?	○ 영장을 발부함에 있어 판사들은 적법절차를 제일 중요시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 문제가 없도록 열심을 다했음.
○ 여러 논란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하고 이상이 없다고 결론을 낸 사항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고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사회의 갈등구조를 해결할 대책이 없음.	○ 모든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자는 법원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음.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문제삼는 것 자체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생각함.
○ 공수처의 검찰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는 1월 23일에 있었는데, 당일에 검찰에 자료를 넘긴 것이 맞나?	○ 그렇게 보고 있음.
○ 1월 23일 이전에 검찰에서 공수처 수사기록을 복사해간 적이 있나?	○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고받은 바가 없음.
○ 김용현장관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재판관할이 중앙지방법원에 있으며,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시점에는 중앙지방법원과 서부지방법원 양쪽에 체포영장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왜 서부지법을	○ 김용현 피의자는 동부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었고, 관련재판적은 동부법원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당시 서울구치소가 아니니 중앙지방법원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부분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선택했으며 어떤 보고체계를 거친 것인지?	함.
○ 공수처가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낼 때, 남기는 기록이 있는지, 빠짐없이 보내는지?	○ 그 사건에 있어서 일체가 되는 기록은 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음.
○ 다른 법원으로 간 영장은 문상호 사령관 구속사건 하나인지?	○ 해당 기록은 별도로 사건 기록이 하나 완료되어 있고, 그 사건 하나로 알고 있음.
○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말고 발부된 체포영장이 있는지?	○ 발부된 것은 대통령과 문상호 사령관으로 알고 있음.
○ 오늘 답변 전까지는 기소권과 무관하게 공수처법 제31조 본문에 따라서 중앙지법에도 관할권이 있고, 서부지법에도 관할권이 있다는 취지로 말해왔는데, 오늘은 기소권과 결부시켜 다른 취지로 답변하고 있음.	
○ 12월 9일 증인은 법사위 회의에서 여러 기관이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되었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서울중앙지법에 다른 영장을 청구해서 기각되었다는 말은 여태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음.	
○ 12월 9일 법사위 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은 관할권 문제가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성이나 증거능력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하였고 오	○ 그러함. 저희가 수사를 하면서 관할 문제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였음. 보면 볼수록 더 깊게 생각할 부분이 있었고, 후반부로 가면서 더 관련성이 있는 곳, 관할의 문제를 제기할 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동운 증인도 해당 회의에 참석하여 그 말을 들었음.	없는 곳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말씀을 드림.
○ 중국산 항전 시스템이 장착된 무인기가 평양 및 동해로 간 사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것임. 만약 북풍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국방 획득 절차를 전혀 준수하지 않음.	○ 유념하겠음.
○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권한을 보면 수사권도 없고, 공소권도 없고, 영장청구권도 없음.	
○ 지난해 공수처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도 공수처에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영장을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옴. 또한, 공수처의 영장청구권에 법무부의 검토 의견에 따르면, 공수처는 일종의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직접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다수 있다고 하였음. 이에 대한 견해는?	○ 수사권을 갖는 범죄에 대해 공수처가 영장청구권을 갖는다고 명확하게 규정된 바는 없지만, 기소권을 갖는 범죄와 수사권 및 기소권을 갖는 범죄로 나누어지는데 수사권을 갖는 범죄에 대해서는 영장청구권이 있다고 보고 법원에 청구하였고, 법원도 여러 단계에서 인정하여 영장을 발부하였으므로, 공수처는 영장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에 대해 사법부의 인정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실무도 그렇게 형성되어 있음. 말씀해주신 의견들은 개인적인 견해로 생각함.
○ 복수의 방첩사 인원이 여인형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에 국정원과 검찰이 갈 것이니 지원하	○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그 당시 허모·박모 검사가 선관위로 출발하였다고 함. 이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죄가 아닌지?	
○ 검사가 직권남용죄를 저지르면 누가 수사하는지?	○ 저희 소관인 것은 맞음.
○ 검찰이 선관위 서버 포렌식 수사에 관여하였다면 검찰도 내란에 관여한 것임.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함.	○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당연히 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계엄이 선포되면 방첩사를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를 만들고, 거기에 경찰, 군사경찰 및 검찰도 파견을 받아 관여를 함. 방첩사들 실무자들의 진술에서 검찰의 파견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 고발이 있어야 수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미 진술이 모두 공개되어 있으므로 인지수사하여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 유념하겠음.
○ 방첩사에서 누군가 말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보면 전문진술일 뿐인데, 그러한 것만으로 인지수사하면 안 될 것임.	○ 유념하겠음.

(나)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명태균 전담수사팀 수사검사 여덟 명이 연서로 김건희 수사 필요 보고서에 서명했다고 함. 수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소환조사 하자고 하면 할 것인가?	○ 수사 착수 시부터 모든 의혹은 철저히 수사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했음. 소환 여부는 검토된 바 없고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임.
○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반려 사유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임. 김성훈 차장이 경호처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고 직원들이 공식문서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첨부해서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음. 비화폰 서버에 대한 증거인멸 관련 부분을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수사 중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충분한 사유가 있어서 기각한 것임. 김성훈 차장에 대한 범죄사실은 대통령 체포영장 방해와 직권남용인데 두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인멸이 아님.
○ 노상원 수첩을 특수본에서 수사 중인데, 위헌적·불법적인 계엄 관련하여 주요 인사 체포·처리 등 문제가 나와 있음에도 검찰이 수사를 안 하고 있나? 수사 중인데 하나도 발표를 안 하고 있음.	○ 계속 수사 중임. 조사를 여러 번 했는데 본인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서 다방면으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음.
○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해서 검찰이 세 번이나 영장을 반려 또는 기각한 이유?	○ 첫 번째 기각 사유는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만 있었음. 차장이 출석했고 대통령이 체포된 마당에 재범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위험성이 없어 기각함. 두 번째 범죄사실은 직권남용 혐의가 붙었으나 성립되기 힘든 범죄 중 하나임.
○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행위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뭐라고 판단하나? 비화폰 몇 대가 누구에게 지급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나? 서버 문제는 손도 못 대고 있는데 왜 검찰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안 하는가? 서버 없이도 공소 유지 자신 있는가?	○ 수사 중이라 말씀 못 드림. 공소 사실 작성할 때에는 인적·물적 증거 확보했기 때문임. 최선을 다하고 자신 있다고 생각함.
○ 조태용 국정원장이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진술함. 수사할 계획이 있는지?	○ 최근에 안 사실이고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는 철저히 할 예정임.
○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원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국가정보원 경남지부장이 명태균, 남상권 변호사에 관해 감시 지시를 요청했을 수 있으므로 비화폰 통화기록 수사해주기 바람.	
○ 조태용 원장의 통화 기록에 따르면, 대통령과의 만남 직후 다시 전화로 무언가를 지시한 정황이 있음. 이는 조태용 원장이 비상 계엄과 관련해 홍장원 1차장에 대한 지시사항들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 잘 검토해 보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것임. 이후 조태용 원장은 홍장원 차장으로 체포명단 관련 대통령 지시를 보고 받고도 제지 등의 조치를 지시하지 않음. 주요 행위 가담자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음. 이에 대해 수사해 주기 바람.	
○ 국가안보실 TF가 MB 정부로 거슬러 올라가 종북척결 TF, 포청천 TF 등 연속성을 갖고 있고 노상원이 대북특수공작단 설치에 관여함. 내란 사건의 전모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므로 철저하게 수사해주기 바람.	○ 유념하겠음.
○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증거인멸이 따로 들어가 있는 것인가? 만약 김성훈 경호처장이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면 법리적으로 독자적 범죄사실이 될 수 있나?	○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두 개임. 가정해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노상원 수첩 국수본에서 감정 불능이 나옴. 수첩에 내용이 많아서 감정 불능 나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추가적인 수사계획 생각하고 있나?	○ 글씨가 날아가는 글씨라서 필적감정 어렵지 않나 하는 것인데 다시 검토해 보겠음.
○ 조태용・김건희 문자도 수사해야 하지만 조태용 원장이 12월 3일 계엄이 있는 날 기재부에서 예비비를 타 감. 계엄과 관	○ 유념하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련한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므로 조사해보시기 바람.	
○ 만약 김용현이 노상원이라는 민간인에게 경호처 비화폰을 준것이라면 이는 엄청난 일이므로, 국민이 모두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엄정하고 정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음.	○ 알겠음.
○ 노상원 수첩이 자필로 작성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국과수에서 판단이 나왔는지?	○ 잘 모르겠음.
○ 경찰이 노상원 필적을 감정 의뢰한 것에 대해 국과수에서 2월 4일 감정 불능이라고 통보를 하지 않았는지?	○ 맞음.
○ 감정 불능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 동일 필적인지를 판별할 수가 없다는 것임.
○ 60~70페이지 분량의 노상원 수첩이 마치 계엄 시작의 방아쇠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를 코미디라고 생각하는 것이 과한지?	○ 현재 수사중이라서 답변드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기재부가 국정원에 예비비를 배정한 부분과 이후 대통령이 국정원에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한 부분이 연관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므로, 수사를 할 필요가 있음.	○ 한번 검토해 보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국무위원 중에서 김용현 장관 제외하고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상당한 분들이 모두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음.

(다) 송○○ 증인(대통령경호처 경호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성훈 차장은 비화폰 서버가 이틀 치 이전 데이터는 자동삭제된다고 진술했는데, 복구는 가능한 것인가? 이틀 치 이상 통화기록도 서버에 남아있는 것이 맞나?	○ 기술적인 사항은 확인해보지 않았음. 기록은 이틀 지나면 삭제되기 때문에 삭제되었음.
○ 비상계엄 선포 후 7일여간 경호처 지도부로부터 비화폰 통화기록과 지급내역 삭제하라는 지시를 들은 적이 있나?	○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어서 답변드리기 어려움. 직접적으로 들은 적은 없음.
○ 비화폰이 무분별하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불출대상과 불출확인서 존재하나? 불출대장에 테스트(방), 테스트(수), 테스트(특), 테스트(예) 불출내역 있나?	○ 그런 식의 명칭으로 나가지는 않음.
○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 반납한 것이 12월 13일이고 번호가 9400 맞나? 사퇴하고도 1주일 넘도록 반납 안 한 것임. 사용하던 비화폰은 현재 봉인되어 경호처 캐비닛에 보	○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함. 그러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관 중인가? 켜면 통화기록 확인 가능한 것 맞나?	
○ 김용현 장관의 비화폰을 경호처 보관중이라고 하셨는데, 윤대통령의 비화폰 상태는 어떠한지?	○ 경호·보안 목적상 알려드릴 수 없음
○ 노상원에게 줬던 비화폰의 상태?	○ 수사 진행중 상황으로 답변 제한되어 양해 부탁드리며, 노상원에게 직접 비화폰을 제공한 적 없어서 모르는 내용임
○ 김용현 장관이 반납한 추가적인 비화폰이 존재하는지?	○ 추가적인 비화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라) 김○○ 증인(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비화폰 서버에서 복구가 가능한가?	○ 복구하는 방법은 포렌식이 있을 것인데 기술적으로 포렌식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움. 기술적인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서 가능 여부를 답변드리기 어려움.
○ ‘처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라는 문서 본 적 있나? 지도부에 따른 전체 단말기 데이터 삭제 지시는 증거인멸 관련 문제 소지가 있다는 보고서 부장 라인에서 작성한	○ 경호보안상 답변하기 어려움. 수사가 진행중으로 답변이 제한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것 아닌가? 삭제 지시했다는 내용 들은 바 있나?	

(마) 김대경 증인(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성훈 차장이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 지시 내린적 있나?	○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바) 박종준 증인(前 대통령경호처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지난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증인이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므로, 영장집행 수사기관과 일절 부딪치지 마라는 지시를 내린적 있는지? ○ 최근 공개된 김성훈 차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시그널 문자에 따르면 “국군통수권자 안전만 생각한다. 일관된 임무 하나만 생각한다” 그리고 “저희 경호처가 철통같이 막아내겠습니다” 등 차장은 증인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 상하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듦.	○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서, 일단 정문 밖에서 대기시키면서 대통령 변호인단하고 상의하도록 하고 가급적 부딪치지 마라고 얘기 하였음. ○ 당일 원래 정문 밖에서 대기시키면서 진행하기로 했는데, 정문이 갑자기 개방되면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경호처 직원들이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를 증인에게 보고했는지?	○ 보지 못하였음.
○ 해당 내용은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 소지가 있어서 명령을 불이행한다는 내용임.	○ 비상계엄 이후 국가수사본부에서 경호처에 증거 보전을 철저히 해 달라는 공문이 왔고, 이에 따라 충실하게 증거 보전을 하라는 지시를 한 바 있음.
○ 김성훈 차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직권남용 등 혐의가 있는데, 위헌적 행위를 한 대통령을 수호하겠다고 경호처 차장이라는 사람이 목숨 걸고 서버 훼손을 조장하고, 경호처 직원들이 이를 막기위한 문건을 만들어서 보고하는 등 이런 일이 어떻게 대통령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의문임.	○ 저도 나름대로 경호처장으로서의 역할을 했고, 그에 따라 수사를 받고 있음.

(사) 이호영 증인(경찰청장 직무대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김성훈 경호차장의 비화폰 통화내용 삭제 지시에 대해 내란죄의 증거인멸 범죄가 성립하는 듯 보이므로, 직권남용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범죄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 국수본과 검토해보도록 하겠음.

(10) 기타 국정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일체

(가) 김대경 증인(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용산 집무실을 담당하고 있는데 집무실에 사우나 시설 있는 것 알고 있나? 골프 퍼팅용 매트는 철거했다고 들었는데 집무실에 사우나 시설이 있는 것이 맞나?	○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나) 한덕수 증인(국무총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 변호대리인단이었던 문재인은 헌법재판관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의 정당성을 비판한 적 있음.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된 헌법재판소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권한대행 임명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음. 국회가 선출하는 분에 대해서도 여야합의 거치지 않고 선출한 적이 없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줌으로써 대통령과 국회가 보유한 민주적 정당성을 합쳐서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함.
○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침해 논란이 계속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서 증언들이 엇갈리고 홍장원 1차장의 메모는 원	○ 사법절차 진행 중인 것에 대해 총리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다만 적법절차를 따르고 투명하다는 국민적 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본 사라졌고 사본은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음. 정치인 체포 지시 여부는 신빙성 상실했다고 보는데 총리 생각은?	센서스를 얻어야 결과에 대해 모두가 수용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경제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걱정함.
○ 단심제 헌법재판에서 오심의 치명성이 큰데 어떻게 생각하나?	○ 오심으로 나오리라고 믿고 싶지 않음. 헌법재판소가 국민적 통합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해주기를 기대함.
○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증언을 야당 의원 개인 채널이나 사적 면담을 통해 사전에 공개한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 사법적 절차를 통해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함.
○ 비상계엄 통해서 배타적 고유권한 행사했고 국회가 온전히 통제권을 행사했는데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사후적으로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사법권 한계를 넘는 것이라는 의견에 대한 생각은? 헌재가 민주적 정당성 보유한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직무 관련 없는 대통령 중범죄행위나 비행에 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 헌법재판소법이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고 믿음. 헌법재판소와 재판관은 헌법에 대해서 견제하고 공무원 업무 수행에서의 헌법 위반 사항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대행이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이론적 차이와 공방이 있다고 생각함.
○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후 54일만에 변론이 이루어졌는데, 이것도 90분만에 끝났음.	○ 전혀 아님.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 수도 없다고 생각함.
○ 국회에서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도 증인이 비상계엄 내란 행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위를 공모, 묵인, 방조 했고,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 운영 체제가 문제가 있다는 등인데, 증인은 진짜 계엄에 관여했는지. 권력을 잡으려고 공동 국정 운영 발표를 한 것인지?	

(다) 박종준 증인(前 대통령경호처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언론에 보도된 보안폰 강화 방안 검토 문건에 대해 보고받았는지?	○ 보고받지 못함. 언론보도를 보고 앎.
○ 보안폰 전체 단말기 데이터 삭제 지시를 누가 했는지 아는지?	○ 저는 알지 못함.
○ 경호처 차장이 했다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었는지?	○ 저는 몰랐음.
○ 경호처 차장이 증거 인멸을 지시하면 경호법상의 직권남용 아닌지?	○ 지금 수사중인 상황으로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함.

(라)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인권위원회에서 대통령 방어권 보장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고 권고사항을 보냈는지 받았는	○ 아직 확인하지 못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지?	
○ 인권위에서는 집행 과정의 적법 절차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함. 인권보호 원칙 등 절차적 정의를 철저히 관철하면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는 것은 그 후의 국가 통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므로 헌법상 대원칙인 적법절차 원칙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재판 원칙을 유념하고 피소추인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엄격한 증거 조사를 거쳐서 충실하게 사실을 조사하고 공정하고 신중한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고 갈등과 반목에서 벗어나 국민 통합의 길로 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임.	○ 제 기억에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정확하게 기억이 없음
○ 이것을 따르는지 여부는 임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안하는 건지?	○ 당연한 규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야 함
○ 인권위도 헌법기관 중 하나인데, 헌법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의결해서 보냈는데 안지키고 있음. 내란이 사유에서 제외되어 내란이라고 판결이 안 날수도 있고 탄핵도 결론이 어떻게	○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나올지 모르는 실정임.	
○ 국정조사를 하면서 실무자 증언을 통해 2차 계엄 정황도 나오고, 비상입법기구 및 각 부처의 지시사항 문건들이 있다고 알려졌는데 전반적인 전모가 밝혀졌는지?	○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음.
○ 내란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내란의 블랙박스라고 하는 비화폰의 서버가 필요한게 아닌지?	○ 검찰은 경찰에서 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청구를 다 했음.
○ 그런데 왜 집행이 안 되고 있는지?	○ 해당 상황은 경찰이 집행하는 것이므로 경찰에 물어봐야 함.
○ 김성훈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반려에 대해 검찰은 김성훈처장의 단말기 삭제 지시는 보안 유출을 우려한 조치였고 실제 삭제한 기록이 없다고 하면서 기각했는데, 보안 유출 우려라는 김성훈 차장의 말을 그대로 믿는 것이 웃기는 일 아닌지?	○ 해당 문건 자체가 증거 인멸 지시 문건이 아니라 보안 대책 문건임. 비화폰의 핵심은 보안임.
○ 언론보도 문건을 보면 전체 단말기 내 데이터 삭제 지시가 있는데, 이것이 직권남용 아닌지?	○ 직권남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목적성이나 필요성, 상당성 이런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의원님은 해당 문건 하나만 보셨지만 저희는 기록물 전체를 본 결과 혐의사실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어서 영장을 기각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것임.
○ 증거인멸의 우려가 왜 없는지?	○ 본인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진행해서 본인 휴대폰이나 USB 등을 다 압수하였음.
○ 공수처장님은 공수처에서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한은 없지만 직권남용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고, 그것이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수사할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심. 공수처와 검찰이 서로 경쟁하듯이 수사를 하다가 검찰이 공수처의 사건을 넘긴 건 공수처가 당시 경찰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해서 수사를 했기 때문에 공조수사본부에서 수사하라는 취지로 대검찰청에서 공조수사본부로 사건을 넘긴 게 아닌지?	○ 그런 건 아님. 사실 저희도 직권남용에 관련된 범죄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경찰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어 경찰의 내란에 대한 공범 관련 사건으로 저희가 수사를 진행한 것임. 그 과정에서 공수처에서 관련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청을 했고 공수처법에 보면 공수처장이 요건을 충족해서 요청하면 해당 기관은 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첩한 것임.
○ 지금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해석하고 있는 직권남용에 대한 수사권한이 있는지? 이것은 전례도 없고 처음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없음. 형사적으로 해당 주장에 대해 검증된 바가 없음.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니까 사법부의 판단이 있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말임. 체포영장과 구	○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은 맞는데 저희가 그런 논란까지 다 고려해서 공수처에서 송부받은 사건만 기소한 게 아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속영장을 발부한 판사 한명의 생각임. 그러면 검찰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공소유지를 하는건지?	
○ 만약에 대법원까지 가서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권한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증거능력이 다 없어지는 것임. 그래서 증거능력이 없어질 수도 있는 기록을 바탕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 심리를 하고 있는 것임.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중히 진행해야 되는 것임.	○ 철저히 하겠다는 취지였음.
○ 공수처에서 사건기록을 송부하기 전에 대검의 수사본부의 수사관들이 미리 가서 기록을 열람, 등사해온 적이 있는지?	○ 해당 부분은 제가 잘 모름. 확인을 해보겠음.
○ 현재 국정원장이 피의자신분인지, 참고인신분인지? 22시 56분에 윤석열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전화한 건 홍장원 1차장에게 지시한 것을 고지하기 위함이라 생각함.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내란지시 문건을 받아오고, 홍장원 1차장에 대한 지시내용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	○ 잘 검토해보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일 아침에 보자고 말한 건 결국 그 지시를 이행해라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장에 대해 내란 주요행위 가담자로 확실하게 수사를 해야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최근 국정원장이 홍장원 1차장의 동선이 들어있는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공개함. 국정원 1층 로비는 정무직밖에 못 다니는 곳으로 최고 보안등급시설이라 외부에 촬영도 안되는 곳임. 정보위가 국정감사를 가도 사진을 못 찍는 곳인데 이것을 공개한 것은 국정원법 정치관여 금지 위반 및 보안유지의무 위반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부분도 추가해서 조사해주기 바람.	○ 유념하겠음.
○ 최재형 전감사원장이 군병력을 국회에 진입시키고 국회활동 금지한 포고령만으로 중대한 헌법위반이고 탄핵은 불가피하다는 글을 작성함. 이것이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법조인이라면 당연한 사고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중인 사항이라 제가 답변하기 곤란함.
○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탄핵심판 절차에서도 형사소송법이	○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준용됨. 형사재판에서는 시점과 관계없이 증거능력에 대한 이의 제기가 가능해야 하고 방어권이 보장되어야 함.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동의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로 채택될 수 없음. 탄핵심판에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 원칙이 무너졌음.	
○ 체포자 명단이 공소장에 나온 것과 홍장원,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수사단에서 불러 준 명단이 거의 일치하고 있음. 노상원의 수첩에는 "수거 명단 500명 1차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게 10차본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즉, 체포 대상이 5000명에서 1만 명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데, 이에 대해 확인이 가능한지? 체포 대상이 된 정치인, 언론인, 방송인 등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생각인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생각인지, 아니면 내란수괴 윤석열의 생각인지?	○ 현재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함.
○ 안보실에는 "정보융합 TF"가 존재하는데, 실제로는 야당 탄압 및 반국가 세력 감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지? 이 조직은 국정원, 방첩사, 정보사,	○ 현재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라 답변하기 곤란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심지어 HID 요원 출신까지 포함된 직보 조직인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신원식 안보실장은 "정보융합 TF의 존재만 인지했을 뿐, 보고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고,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같은 입장을 밝혔음. 김태효 1차장을 거쳐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구조가 있었다고 보이는데, 사실인지?	
○ 정보융합 TF에서 수집한 반정부 인사 정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직보되었고, 그 결과 체포 대상자 명단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 철저히 수사하겠음.
○ 비화폰과 관련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수사 중인지?	○ 수사중임.
○ 김용현 전 장관이 과연 계엄선포문, 대국민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것이 확실한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보임.	○ 계속 수사중임.
○ 김용현 공소장에 따르면, 제2수사단에 수십 명을 임명하기 위해 국방부 일반명령이라는 문건을 건넨 사실이 적시되어 있음. 김상용 본인은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와서 직을 받은 사실	○ 알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및 수사관 임명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하였음. 검찰 공소장과 사실이 불일치하는 것들이 있어 공소장 내용의 신뢰가 저하됨. 심도있는 수사가 필요함.	
○ 내란죄 전모 밝히기 위해 비화폰 서버 확보 필요성이 있는지?	○ 필요성이 인정됨
○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 경찰에서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하겠다고 하여 그 신청을 받아 영장을 청구해 발부된 것으로 알고 있음.
○ 집행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 그 이유는 잘 모르겠음. 경찰에 한번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음.
○ 검찰에서 직접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서 직접 집행할 수는 없는 것인지?	○ 내란 사건 관련해서 수사를 할 때 영장 청구했는데, 중복 수사라는 이유로 기각이 되었음. 한번 다른 기관에서 영장을 발부 받으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 안해줌
○ 경찰에서 김성훈 차장의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을 제시하고 있음. 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 정당한 영장집행이라는 공무집행에 대해 다수의 위력, 총기, 철조망 등으로 막아서 공무집행방해라는 것인지?	○ 그 혐의로 알고 있음.
○ 대규모 유혈사태가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 재범의 우	○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인데, 대통령이 체포되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반려하였음. ○ 철조망 등을 가지고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지? ○ 구속영장 청구는 수사기관 의지가 필요한데,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나가고 있어 보임. 결국 판사가 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하는데 검찰이 가운데서 경찰의 활동을 막고 있음.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의리를 보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됨. ○ 특수본에 공수처에 가서 받아온 자료가 있는지 확인했는지? ○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단서에 의하면 재판, 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기록송부를 요구할 수 없음. 이는 탄핵소추가 재직 중 중대한 위법 사유를 전제로 해 형사사건과 같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형사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은 기록을 통해 헌법재판을 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보임. 헌법재판소는 내란을 탄핵 사유	어 더 이상의 체포영장 방해가 없어 재범이 있을 수 없었음. ○ 단순한 지시만 가지고 직권남용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목적성·상당성·필요성 등을 엄격하게 검토하여야 함. ○ 의원님의 의심에 불과함. 경호처 차장에 대한 범죄사실과 비화폰 서버는 별개의 문제임. 검찰의 역할은 의심스러울 때 피의자의 이익이라는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것이며 기본적인 의무임. 의심스러울 때 그냥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사 제도를 없애라는 취지와 똑같음. ○ 확인해보니 사전에 받아온 자료가 없다고 함. ○ 제 기억으로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요청을 해서 가져다 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에서 제외하면서 내란사건 수사 기록을 보고 있음. 검찰에서 헌재에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들에 대해 열람·등사해서 보내준 적이 있는지?	
○ 법에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 민사소송법을 준용한 것으로 보임.
○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소추 결정 근거로 사용하는 문제가 발생함. 대표적으로 노상원 수첩은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니 진정성립을 인정시킬 방법이 없어 국과수에 필적감정을 했는데 판정 불가 결과가 나옴. 그러면 증거로 사용이 안되는 것이 법의 취지임. 현직 법관 중에서도 이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음.	○
○ 공수처는 출범 이후 기소한 사건이 4건이나 예산은 약 800억 원임. 이에 대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하였는데, 존폐위기 공수처를 구하기 위해 대통령 수사에 집중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듦. 그래서 절차위반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음.	
○ 경찰, 검찰, 감사원 특활비 다 삭감되었는데 공수처만 유지되고 있음. 구속영장 청구한 날	○ 대변인을 통해 특경비로 집행하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밝혔음. 직원 격려하기 위해 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진행한 회식비용을 특정업무경비로 썼다고 나오고 있는데, 수사기밀이라는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녁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은 맞음.
○ 지난 정무위에서 권익위원장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신고가 외형상 공익신고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수사기관에 이첩했다고 답변했는데 알고 있는지?	○ 알고 있음.
○ 권익위는 수사기관에 이에 관련된 내용을 공문으로 발송했다는데 확인해봤는지?	○ 사람들이 많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음.
○ 중요한 부분이니 확인할 필요	○ 알겠음.
○ 지난 청문회에서도 언급하였는데, 곽 전 사령관의 신고가 공익신고의 외형에 부합하는지 의문임. 형법에는 공익신고가 적용되지 않는지?	○ 안됨.
○ 그러나 군형법상 반란 신고로 보면 법적 보호가 가능함. 검찰은 곽종근을 형법상 중요임무종사자로 기소함.	○ 그러함.
○ 지난 청문회에서 모 위원이 질의를 통해 국방장관에게 내란과 반란의 성립 요건이 다르고 당시 특전사 행보를 볼 때 반란으로 볼 수 없다고 질의함. 이때 국방부 장관 대행이 반란으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함.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곽종근 조사한 적 있는지?	○ 없음.
○ 권익위는 어떤 이유로 곽사령관의 신고가 공익신고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공문 보냈는지?	○ 나중에 검토해보겠음.
○ 곽사령관의 신청서는 판사출신인 박범계 의원이 불러주는 대로 신고됨. 법조인이 형법과 군형법 헷갈릴 이유 없을 듯. 민주당 의원들도 비상계엄을 반란으로 칭한 적이 없음. 공익신고 적용 목적으로 내란이 아니라 군형법상 반란으로 신청했다면 회유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악용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음. 형법 기소된 곽종근이 현행법 피해 공익신고 요건 갖추는지 확인할 필요.	○ 그렇게 하겠음.
○ 김용현 비화폰을 압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적극 노력하겠음
○ 부정선거론, 서부지법 사건 등의 배후 대수장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함.	○ 그렇게 하겠음.
○ 곽종근 전 사령관의 공익신고자 절차가 군형법상 반란으로 신고되어 있음.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을 형법상 내란으로 기소하였음. 이는 곽종근을 공익신고자로 만들기 위한 꼼수로 보임.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 알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정확히 파악하여 관련 내용을 의원실로 보고 바람. ○ 최근 비상계엄관련 검찰 수사자료가 언론에 계속 공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을 위반한 수사자료의 임의유출에 해당함. 피조사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검찰은 수사자료 유출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유념하겠음.

(마) 김주현 증인(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언론에도 보도되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 김용현 전장관이 윤석열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지금 출석해도 되는지 여쭤보니 윤석열대통령이 민정수석과 협의해보라고 말했다고 함. 이 과정에서 김주현 증인이 역할을 했는지?	○ 저는 역할을 안 했음.
○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고, 통화도 하지 않았다는게 맞는지?	○ 제가 통화했는지 여부는 특별한 기억이 없다고 말씀드림.
○ 이건 본인이 빠져나가려고 그거는 것임. 기억이 어떻게 안 날 수 있는지?	○ 그 때 당시의 상황은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충격적이고 복잡한 상황이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있다 없다로 말을 못하고 기억이 없는건지?	○ 네, 기억이 없음.
○ 계엄 선포문, 대국민 담화, 포고령 작성에 대해서 관여한 바 있는지?	○ 언론을 보고 알았음. 전혀 관여한바 없음.

(바)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대통령을 체포하기 직전 법사위에서 유상범 간사가 군사비밀장소에 책임자 승낙없이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지 물으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함. 그런데, 공수처는 경비단장을 겁박하여 1월 14일 누더기 딱풀 공문을 만들고 1월 15일 경호처의 승인없이 영장을 집행함. 이후 현직 대통령에게 접견금지, 강제구인, 서신금지 등 반인권적 조치를 하였는데, 영장 집행한날 소고기 와인파티를 하는게 적절한지?	○ 해당 공문은 공수처 직원이 관인을 건네받아 경비단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인이 날인되었음. 체포영장 집행 관련 형사소송법 제1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건 법조인들에게 당연한 것임. 55경비단장의 승인 공문을 받은 이유는 군사기지법상 승인한다는 취지임. 2차 영장집행의 불상사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방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확인한 것임. 1월 17일 구속영장 청구한 날 저녁 모임을 한 것은 음주모임이 아니라 여러 노고를 하는 부하직원에 대한 격려의 의미였음.
○ 체포영장 청구 당일 공수처 직원들이 와인을 마시는 회식을	○ 원들을 격려하는 자리였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한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음.	사과하겠음. 다만, 이를 ‘축배’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면이 있음.
○ 공수처가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허위 답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 해당 문서는 수사기획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파견 직원이 단독으로 작성하였으며 공수처 내부의 적절한 결재 절차를 거치지 못한 채 답변이 나갔음.
○ 수사기획관이 공석이라 하더라도 업무 대체자가 있어야 하며, 중요한 국회 답변을 파견 직원이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해당 허위 답변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해당 의혹을 제대로 살펴볼 수 없었음. 의도적인 허위 답변이 아닌지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청구된 이유가 무엇인지	○ 관할권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가장 적절한 법원을 선정하여 청구한 것임.
○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과 공범 관계에 있고, 김 장관이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소되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도 중앙지법에서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지	○ 위원님 지적과 같이 김용현 피의자의 구속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통해 가지고 그 현재지에 관할이 생기는 것은 맞음. 여러 관할 중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았음. 범죄지가 중앙지방법원 관할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결정하였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공수처는 1월 7일까지 "중앙지방법원에도 창설적인 관할권이 있다"라고 해석했는데, 오늘은 그 해석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 공수처법 제31조의 적용 범위는 오늘 말씀드린 해석이 보다 정확하며, 백혜련 위원님도 같은 취지로 지적해 주셨음. 현재 공수처의 공식 입장은 오늘 설명드린 대로임.
○ 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특정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설치되었음. 모든 공직자에게 균등하게 법을 적용하고 적법하게 수사해야함.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 공수처법에 따라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으며, 내란죄와 직권남용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볼 수 있음.
○ 대통령이 직권남용죄로 소추될 수 있는지?	○ 수처법 제2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됨.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수사 후 검찰에 사건을 송부하였음.
○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할 수 없다면, 별건 수사로 내란죄를 적용한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닌지?	○ 수처법상 공수처는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으며, 내란죄는 법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 또한, 법원이 두 차례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공수처의 수사가 정당했다는 것을 의미함.
○ 공수처법 제3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음.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서부지법을 활용한 것이 아닌지?	○ 기소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사 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하였음.
○ 공수처가 생긴 이후로 가장 큰	○ 공수처법을 처음으로 적용하다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역사적인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 내부적인 시행착오도 있고, 많은 비판도 있었으나 수사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치유가 되었다고 보는데 처장의 생각은?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음.
○ 그러한 문제제기들이 사법부의 체포영장 이의신청, 구속적부심 등의 판단을 통해 내란죄 수사가 적법하다고 일차적으로 판단된 것으로 볼 수 있음. 최종적인 것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수사관할과 재판관할은 다르며 수사관할을 위반했다고 해서 재판을 못하는 것도 아님. 따라서, 수사 절차나 공수처의 수사 행위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임. 공수처의 역할은 향후 판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고, 대통령에 대한 형사불소추권과 관련해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첫 사례인지?	○ 그러함.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다보니 많은 곳에서 문제제기 하고, 공수처법 처음 적용해서 문제제기 할 수 있음. 공수처는 적법절차에 있어 무엇보다 신경을 많이 썼음.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적법하다고 판단 받음. 인신구속은 조금의 하자만 있어도 인정 안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법부의 판단 받아 적법한 것으로 보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주면 좋겠음.
○ 법관들이 헌재에서 헌법재판소법에도 불구하고 수사·재판 중인 기록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 보지는 못했는데 공수처는 일반검사이기도 하고 군검사이기도 함.
○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기록을	○ 그런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헌재에 보낸 것이 맞는지? ○ 헌법재판소법에 기록을 송부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왜 거절하지 않았는지 의문임. ○ 여당 의원의 공수처에 대한 서면질의에 파견직원의 실수로 부정확한 답변이 회신된 사안에 대한 파악이 필요함.	있음. ○ 2차 체포영장 직전에 있었던 일로 급박했던 제반상황 등을 고려해주시길 바람.

(사) 김대경 증인(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제보에 따르면 김성훈차장의 지시에 따라 윤석열대통령이 호송차에 타지 않고 경호차량으로 이동함. 혹시 알고 있는지? 호송차량이 아니면 자유롭게 전화하고 증거인멸도 가능한데 확인해주기 바람.	○ 소관 업무가 아니라 모름.

(아) 윤인대 증인(기획재정부 차관보)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증인이 최상목 장관에게 비상계엄 문건을 리마인드 한 시점이 언제인지? 어떤 방식으로 리마인드하였는지	○ 01시 50분경임. “혹시 아까 저한테 맡기신 거를 다시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보면서 문건을 다시 드렸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문건을 펴서 보여줬는지?	○ 문건을 펴서 보여줬음.
○ 최상목 부총리는 해당 문건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맞는지?	○ 그렇지 않음. 제 기억으로는 일부라도 본 것이 맞음.
○ 최상목 부총리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뜻인지?	○ 본회의 질의에서도 부총리께서 윗부분을 어느 정도 인지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으로 기억함.
○ 문건을 부총리에게 돌려준 이후, 차관보는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 문건을 다시 돌려받아 제 가방에 보관하였음. 부총리가 “무시하라”는 지시를 하였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는 없었음.
○ 대통령의 지시를 부총리와 차관보가 무시했다는 건데, 기재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인지?	○ 제 직속 상급자가 부총리이기 때문에, 부총리의 지시에 따랐을 뿐임. 기재부는 처음부터 비상계엄에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혔고, 이는 국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 있음.

(자) 류중재 증인(기획재정부 국고과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월 3일에 기재부가 국정원에 예비비를 배정한 것이 맞는지	○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되었고 실제 집행은 12월 13일에 이루어졌음.
○ 국정원은 특활비가 많은데 왜 예비비를 추가로 요구했는지?	○ 예산 편성만 담당할 뿐, 구체적인 사유는 알지 못함.
○ 배정된 예비비의 금액은 얼마인지	○ 12월 13일에 집행된 금액이 있지만, 이는 1급 비밀로 지정되어 있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12월 3일에 예비비를 배정한 것이 비상계엄을 위한 자금 확보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해당 사항에 대한 정보가 없어 답변하기 어려움.

(차) 김병환 증인(금융위원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F4 회의에서 증권시장 개장 여부를 논의했다고 하는데 증권시장은 열리는게 맞는 것 아닌지, 그런데 계엄이라는 위헌적인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폐쇄 의견이 나온 것인지?	○ 9·11 사태 때도 오전에 문을 닫았던 적이 있음. 이번 사태로 인해 증권시장에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음.
○ 왜 충격이 클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 대외 신인도 측면에서 분명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였음. 외환시장이 이미 장이 열린 상태에서 급격한 환율 변동(폭등)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도 분명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음.
○ 그런데 결국 개장하기로 한 이유는?	○ 당시 회의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음. 결국 다음 날 아침 7시에 다시 모였고, 그 때는 이미 계엄이 해제된 상태여서 개장을 결정하였음.

(카) 김태효 증인(국가안보실 1차장)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2023년 8월 3일(혹은 8월 2일)에 열린 안보교육 추진 회의를 기억하는지? 안보실에서 국민 대상 안보교육을 강화하는 회의가 열렸고, 국방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안보실장과 안보실 1차장,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등 차관급 및 국장급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됨.	○ 2차장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음.
○ 차장이 참석한 것으로 문건에서 확인됨. 이 회의가 권위주의 시대에나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국민 대상 안보교육 추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 1차장 소관 업무가 아님.
○ 비화폰을 사용중인지? 비화폰을 이용하여 계엄 전후로 통화한 기록이 있는지?	○ 비화폰 사용중임. 통화한 사실 있음.

(타) 박현수 증인(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문형배 재판관 집앞에서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 집회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 문 재판관에 대한 신변보호 진행중임.
○ 재판관 거주지 주변 시민들을	○ 검토해보겠음.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위한 수사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주었으면 함.	

(파) 김근태 증인(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대표)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 단체의 회원 수가 얼마 정도인지?	○ 1,200명 정도임.
○ 사단법인인지?	○ 법인은 아니고 시민 단체임.
○ 운영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 회원비는 있고,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후원하는 경우가 있음.
○ 단체 설립 목적이 자유민주주의수호 및 종북좌익세력 척결이 맞는지?	○ 조직 명칭은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임.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단체 명의로 화환을 왜 보낸 것인지?	○ 단체 이름으로 화환을 보낸 적이 없음.
○ 탄핵반대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는지?	○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여야의 극심한 대립과 갈등이 국가 안보에 위기를 불러온다는 차원의 양비론적 성명문 발표였음.
○ 특정 후보 지지하는 유세에 간 경우도 있는지?	○ 간 적은 있지만, 개인 자격으로 간 것임.
○ 본인이 단체의 수장인 이상 개인적으로 가더라도 단체가 간 것과 마찬가지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음.	○ 유념하겠음.

3. 현장조사

[1월 21일, 제1차 현장조사]

(가) 현장조사 개요

○ 일　시 : 2025년 1월 21일 09:30~12:20

○ 장　소 :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 참석자

- 합동참모본부: 국정조사특위 위원 17인(안규백, 한병도, 김병주, 민병덕, 민홍철, 박선원, 부승찬, 백혜련, 윤건영, 용혜인, 김성원, 강선영, 곽규택, 박준태, 임종득, 주진우, 한기호), 합동참모의장,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 정부관계자

- 수도방위사령부: 국정조사특위 위원 12인(안규백, 한병도, 민병덕, 부승찬, 백혜련, 윤건영, 용혜인, 김성원, 곽규택, 박준태, 주진우, 한기호), 수도방위사령관 직무대리, 국방부 동원기획관 등 정부관계자

○ 현장조사 실시내용 : 현황보고, 계엄 당시 작전시설 확인, 특위 위원 질의·답변 등 현장조사

(나) 현장조사 주요 질의·답변내용

○ (비공개)

(다) 참고사항

○ 1차 현장조사 관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여야 간사(김성원 의원, 한병도 의원)가 기자회견을 진행함.

○ 기자회견명: 내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현장조사 관련 여야 간사 기자회견

○ 기자회견 일시: 2025년 1월 21일 14시 20분

○ 기자회견 장소: 국회소통관

[2월 5일, 제2차 현장조사]

(가) 현장조사 개요

○ 일　시 : 2025년 2월 5일 09:20~16:00

○ 장　소 : 서울동부구치소, 서울구치소, 수도방위사령부

○ 참석자

- 서울동부구치소 : 국정조사특위 위원 10인(안규백, 한병도, 민병덕, 민홍철, 박선원, 부승찬, 백혜련, 윤건영, 용혜인, 추미애), 서울동부구치소장 및 구치소 관계자 등

- 서울구치소 : 국정조사특위 위원 10인(안규백, 한병도, 김병주, 민병덕, 민홍철, 박선원, 부승찬, 백혜련, 용혜인, 추미애), 서울동부구치소장 및 구치소 관계자 등

- 수도방위사령부: 국정조사특위 위원 10인(안규백, 한병도, 김병주, 민병덕, 민홍철, 박선원, 부승찬, 백혜련, 용혜인, 추미애),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 및 국방부 관계자 등

○ 현장조사 실시내용 : 수감 증인 접견 시도 등

(나) 현장조사 주요 내용

○ 서울동부구치소

시각	조사 주요 내용
10:00	안규백 위원장이 2층 대회의실에서 현장조사 실시를 선언하고, 구치소 관계자에게 김용현 증인이 회의장에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10:30	구치소 측, 김용현 증인을 만나 현장조사 실시 내용을 전달하고 설득하였으나, 증인 측에서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완강히 거부 의사를 밝힘
10:35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6명(안규백, 한병도, 박선원, 부승찬, 용혜인, 윤건영)이 보안구역으로 이동하여 증인 접견을 시도함
11:06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6명, 증인 접견에 실패하고 복귀함
11:13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안규백 위원장이 조사 실시 중지를 선언함

○ 서울구치소

시각	조사 주요 내용
13:54	안규백 위원장이 3층 대회의실에서 현장조사 재개를 선언하고, 구치소 관계자에게 윤석열, 노상원, 김용군 증인이 회의장에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14:19	구치소 측이 윤석열, 노상원, 김용군 증인을 만나 현장조사 실시 내용을 전달하고 설득하였으나 증인들 측에서 본인 의사로 거부 의사를 밝힘
14:21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6명(안규백, 한병도, 김병주, 민병덕, 백혜련, 추미애)이 보안구역으로 이동하여 증인 접견을 시도함
14:46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6명, 증인 접견에 실패하고 복귀함
14:50	수도방위사령부로 이동하기 위해 안규백 위원장이 조사 실시 중지를 선언함

○ 수도방위사령부

시각	내용
15:38	안규백 위원장이 관악레스텔 세미나실에서 현장조사 재개를 선언하고, 수도방위사령부 관계자에게 여인형 증인이 회의장에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함.
15:56	수도방위사령부 측이 여인형 증인을 만나 현장조사 실시 내용을 전달하고 설득하였으나 증인 측에서 거부 의사를 밝힘
15:58	안규백 위원장이 현장조사 종료를 선언함

(다) 참고사항

○ 2차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안규백, 한병도, 김병주, 민병덕, 민홍철, 박선원, 부승찬, 백혜련, 추미애, 용혜인)이 성명서를 발표함.

○ 성명서 낭독 일시: 2025년 2월 5일 14시 52분

○ 성명서 낭독 장소: 서울구치소 사무청사 앞

○ 성명서 제목 및 내용:

국정조사 비협조 윤석열·김용현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다
오늘(5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서울동부구치소, 서울구치소를 찾아 현장 조사를 추진했습니다. 국조특위는 1차 청문회와 2차 청문회에 내리 불출석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주요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구치소에 대기하며 오랜 시간 기다렸고, 교도관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면서 증인들에 현장 조사 협조를 요구했습니다. 소수 인원의 장소변경

접견을 제안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과 내란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윤석열, 김용현은 공직자로서, 내란 주동자로서 국민 앞에 증언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진상규명 방해 행위입니다.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도 내팽개친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들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면서도, 헌법재판소에는 꼬박꼬박 출석해 궤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을 앞세워 여론몰이에만 골몰하는 모습은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당신들이 무시한 것은 국회나 국회의원이 아닌, 진실을 고대하는 국민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돼 오랜 시간 후대의 철저한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내일 3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청문회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서십시오. 대통령으로서, 장관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책임을 다하길 촉구합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늘 현장 조사에 불참했습니다. 특위 출범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의사진행에 훼방 놓으며 동료의원에 막말만 일삼은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국조특위 위원 일동은 그 어떤 방해와 공작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진상규명에 나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실을 보고드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기본소득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김병주·민병덕·민홍철·박선원·백혜련·부승찬·안규백·추미애·한병도·용혜인

Ⅳ. 종합의견

1.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의 경위

○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비상계엄 선포 담화를 발표하였음.

○ 대통령의 대국민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체제전복을 기도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힘.

○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이 포고되었음.

○ 경찰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22시 47분부터 국회 출입 전면 통제를 실시하였고, 일시적으로 국회의원 등 신분확인자 출입이 이루어졌으나 이후 23시 37분부터 전면 통제를 강화함에 따라 일부 국회의원들과 국회직원 등이 국회 경내 출입을 하지 못함.[2)]

○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수도방위사령부·국군방첩사령부 등의 군 병력이 국회로 출동하여 23시 49분경분부터 군 헬리콥터가 국회 운동장에 착륙하였고, 육상으로 출동한 병력들은 경찰의 안내를 받아 월담 등을 통해

2) 상세한 사항은 종합의견의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및 경찰력 등의 동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등에 기술함.

국회 경내로 무단 진입하였으며, 12월 4일 0시 44분경 특수전사령부 소속 일부 병력 등이 무장한 채로 국회의사당 본관 건물의 유리창을 파손한 후 본관 건물 내부로 진입하였음.

○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1시 1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90인의 전원 찬성으로 헌법 제77조제5항 및 「계엄법」 제11조에 따른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음.

○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가 명백한 위헌이므로 입법부인 국회가 이를 바로잡고자 비상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것임.

○ 12월 4일 4시 30분경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되었음.

○ 비상계엄 해제 이후인 12월 6일 검찰은 비상계엄 사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12월 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하였고, 경찰은 12월 8일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였으며, 12월 11일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수사협의체인 12·3사태 공조수사본부가 출범하여 윤석열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내란 혐의 및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수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음.

○ 2024년 12월 31일 국회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음.

○ 국회 본회의 의결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024년 12월 3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60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하였음.

2.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의 진상 및 원인 규명

(1) 12·3계엄 선포 전 사전 모의, 병력 및 경찰력 동원을 위한 준비 여부

1) 국방부

○ 비상계엄의 주요 인사인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장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진술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제외한 증인 등에 대한 조사위원들의 질문과 답변과정에서의 자료를 기초로 하고, 기관보고, 대국민담화문, 포고령, 다른 수사 및 재판기관에서의 공개된 진술 등을 토대로 정리함.

○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은 2023년 10월 국방부장관 시절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임명한 사실이 있음.

- 대통령이 그들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주지 않았냐는 지적에 신원식 증인은 당시 정상적인 진급 절차였고, 계엄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증언함.

○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장관 시절인 2024년 3월경 대통령이 신원식 당시 국방부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김용현 국방부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삼청동 안가에서 만

찬을 하면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는지, 김용현 장관과 논쟁 후 계엄령은 정치적 솔루션이 아니라고 말했는지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수사 등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하였음.

-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대통령이 비상대권 등에 관해 언급하였고, 본인은 이에 반대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제5차 청문회에 출석하여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러한 취지로 언급을 하였고, 대통령에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고 증언함.

○ 2024년 6월 중순경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및 강호필과 식사하면서 김용현이 위 4명이 대통령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군으로 이야기한 사실이 있음.

- 이진우 증인(前 수도방위사령관)은 해당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고 증언함.

○ 2024년 10월 1일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마치고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에서 국방부장관, 방첩사령관, 수방사령관과 함께 식사하면서 대통령이 반국가세력, 비상대권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고,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도 이런 상황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곽종근 증인(前 특수전사령관)이 진술함.

- 곽종근 증인(前 특수전사령관)은 당시 계엄이 될 상황이 아니고 될 수도 없으며, 특전사 대원들은 따르지 않는다고 김용현 장관에게 분명히 반대의사를 명확하게 말씀드렸다고 진술함.

○ 이진우 증인(前 수도방위사령관)은 2024년 11월 9일 대통령이 국방부장관 공관 2층 식당에서 김용현,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와 함께 식사하면서 비상계엄 선포시 부대 운영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수방사 예하 부대 지휘관들에게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준비태세 강화를 지속적으로 지시하였다고 진술함.

○ 현장조사에서 조사특별위원장은 서울구치소 관계자에게 윤석열, 노상원, 김용군 증인이 회의장에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구치소 측은 윤석열, 노상원, 김용군 증인을 만나 현장조사 실시 내용을 전달하고 설득하였으나 증인들은 모두현장조사 참석 거부 의사를 밝힘.

○ 국방부장관은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있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노상원의 지시를 국방부장관의 지시인 것으로 받아들여 계엄관련 준비를 함.

○ 노상원은 2024년 11월 정보사령관, 정성욱 대령, 김봉규 대령에게 제2수사단에 편성할 정보사 소속 요원을 선발하라는 지시를 함.

○ 이진우 증인(前 수도방위사령관)은 10월 29일 수호신TF단장,

1경비단장, 군사경찰단 등과 여의도 변전소에 가서 여의도 변전소가 단전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하였고, 변전소장은 여의도 지역에 단전이 되지만 우회 선로가 있어서 전기 공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으며, 변전소를 점검한 이유는 국가중요시설 72개 중 부하들이 추천해서 갔다고 증언함.

이에 대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변전소 단전으로 국회 등의 기능을 마비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국회봉쇄 시 단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 지난 10년간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던 국가중요시설 설계도면을, 그것도 국회만 꼭 찍어서 요청한 이유에 대하여 곽종근 증인(前 특수전사령관)은 수도권 후방지역의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검토작업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함.

○ 곽종근 증인(前 특수전사령관)은 12월 1일 이상현 1공수여단장에게 북한 도발 가능성이 커졌으니 12월 4일부터 한 달간 있는 제주도 숙영 훈련을 연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 곽종근 증인(前 특수전사령관)은 12월 2일 1공수여단장, 9공수여단장에게 다음 주에 북한 오물풍선 도발 가능성이 아주 크다, 그런 정보가 있다고 강조하여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 곽종근 증인(前 특수전사령관)은 12월 2일 707특임단장에게 서울지역에 북한에 의한 직간접적인 도발이 있을 수 있고, 최근 북한이 한국 내 동조 세력에 의해서 도발 가능성이 있으니 진

압 작전을 준비해보자고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함.

○ 대통령이 심리전 지휘 목적으로 2024년 5월에 방첩정보협의회를 결성했고, 노조·야당·언론사·선관위 등 반국가 세력, 국가 위해 세력 등에 대한 색출과 대응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하여,

국방부차관은 관련 기관들이 보안·방첩 분야에 대한 임무 기능 역할을 제고시키기 위한 협의회로서 운영된 것으로 나중에 확인했으며, 노조 색출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함.

○ 원천희 증인(국방정보본부장)은 2024년 12월 2일 오전 9시 30분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함께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게 정보사령부 특수부대 현황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함.

○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이미 계엄 선포 전인 2024년 12월 3일 21시 20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방첩사 복귀명령을 내리고, 23시에는 '체포조 구성을 하라'는 지시도 직접 내렸다는 질문에 대하여,

김대우 증인(前 방첩사 수사단장)은 체포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고, 조사본부 100명 그리고 경찰 100명 병력을 요청받아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국방부장관에게 받은 명단을 잡아서 수도방위사령부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수사관들에게 체포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함.

방첩사 수사관들에게 직접 가서 체포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지시했으며, 수사관들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정문에서 많

이 떨어진 길에서 승차한 채로 대기조치하였다고 진술함.

○ 김대우 증인은 정치인 체포와 이송과 구금의 전 과정을 방첩사가 주도했다고 보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것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고 진술함.

○ 구민회 증인(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경찰이 체포하고 방첩사가 이송, 구금을 하는 체포작전을 진행하려 했던 것이 맞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함.

○ 이선진 증인(무속인, 일명 '비단아씨')은 2024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여러 군인들의 사진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수차례 물었다고 진술함.

○ 충청권에 있는 전쟁지도본부로 사용되는 벙커에서 계엄 당일 아침부터 시설과 통신을 점검하는 등 상황실을 준비한 정황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태효 증인은 전혀 모르는 사항이라고 증언함.

2) 행정안전부

○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과 일정이 잡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이상민 증인은 12월 5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과의 일정이 있을 수 있다, 점심 무렵에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나, 청문회에서는 증언을 거부함.

3) 경찰청

○ 계엄 당일 안가 회동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참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관련 증인들이 해당 내용에 관해 진술하지 않음.

○ 김봉식 증인(전 서울경찰청장)은 12·3 계엄당일 안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계엄과 관련된 내용과 지시사항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상세히 증언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음.

계엄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A4용지로 된 서류로 전달받았으나 자세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음.

○ 박현수 증인(경찰국장)은 계엄 선포 여부를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자택에서 오후 10시 30분경 알게 되었으며 계엄 선포 직후와 계엄 해제 의결 직후 각각 2회씩 조지호 경찰청장 및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통화하였다고 답변하였음.

○ 최창복 증인(전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계엄 당일 22시 46분경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으로부터 국회를 전면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변하였음.

4) 국가정보원

○ 2024년 3월말 대통령, 신원식 국방부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김용현 경호처장,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삼청동 안가 등지에서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 조태용 증인(국가정보원장)은 비상계엄 모의는 없었고, 저녁 식사를 하는 격려의 자리였으며, 대통령의 비상대권 발언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음.

5) 대통령경호처

○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비화폰이 이번 비상계엄 상태에서 핵심 통신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의견에 대해,

- 박종준 증인(前 대통령경호처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도 비화폰이 지급된 것은 맞으나, 이는 국정연락 및 경호 기능이 있으므로 정부 출범 시 전체 정부위원에게 일시에 발급한 것이라고 증언함.

- 김대경 증인(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노상원에게 지급된 비화폰을 대통령경호처에서 지급한 것이 맞냐는 질의에 보안 목적상 답변이 곤란하다고 증언하였으며, 노상원에게 지급된 비화폰을 김성훈 차장의 비서관이 와서 가져간 것이 맞냐는 질의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불출 현황을 확인해보겠다고 증언함.

- 비화폰 불출대장에 기록된 '테스트(특)'은 특전사령관, '테스트(수)'는 수방사령관, '테스트(방)'은 방첩사령관, '테스트(예)'는 노상원을 의미하는 것이 맞냐는 질의에 김대경 증인(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본 적은 있으나 잘 모르는 사항이라고 증언하였고, 송○○ 증인(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은 그런 식의 명칭으로 기록되지 않는다고 증언함.

- 송○○ 증인(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은 김용현 전 장관이 사용하던 비화폰이 2024년 12월 12일 또는 13일에 반납되었고, 현재 대통령경호처에 봉인되어 보관 중이라고 증언함.

- 곽종근 증인(前 특수전사령관)은 군이 쓰는 직책 비화폰과 별도로 사령관으로 보직된 이후 대통령경호처에서 받은 별도의 비화폰이 있다고 증언함.

- 박안수 증인(前 육군참모총장)은 대통령경호처에서 받은 비화폰이 없다고 증언함.

(2) 계엄선포 원인 및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

1) 야당의 국무위원에 대한 잦은 탄핵소추 문제

○ 윤석열 정부의 주요 인사에 대해 야당이 다수의 탄핵소추를 추진하였는데, 다음의 사항들을 논거로 국회의 탄핵소추 남발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야기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 탄핵소추를 추진한 것은 총 29건[3]이고, 그 중 비상계엄 전인 24년 12월 2일까지 추진한 것만 22건인데 이는 삼권분립의 정신을 몰각하고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과다한 측면이 있음.

- 야당은 검사에 대한 탄핵을 14건 추진하였는데 이 검사들은 야당 또는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공통점이 있음.

- 비상계엄 선포 전날 있었던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는 단순히 야당이 요청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이를 탄핵 사유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4].

---

3) 2025. 2. 14. 현재 발의일자 순서대로 제21대국회 행안부장관 탄핵소추(가결),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가결),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철회),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철회),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철회), 이희동 검사 탄핵소추(철회), 임홍석 검사 탄핵소추(철회),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철회),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가결),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가결), 방통위원장 탄핵소추(폐기),
제22대국회 방통위원장 탄핵소추(폐기), 강백신 검사 탄핵소추(심사중),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심사중),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심사중), 엄희준 검사 탄핵소추(심사중), 방통위원장 탄핵소추(폐기), 방통위원장 탄핵소추(가결), 감사원장 탄핵소추(가결), 이창수 검사 탄핵소추(가결), 조상원 검사 탄핵소추(가결), 최재훈 검사 탄핵소추(가결), 대통령 탄핵소추(폐기), 국방부장관 탄핵소추(폐기), 행안부장관 탄핵소추(폐기), 법무부장관 탄핵소추(가결), 경찰청장 탄핵소추(가결), 대통령 탄핵소추(가결), 국무총리 탄핵소추(가결)

4) 탄핵소추사유 중 발췌 “피소추자는 2024년 10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과 관련된 회의록 및 자료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고, 이후 2024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검증 과정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하여 국회 국정감사의 정상적인 수행을 방해했다. 또한 피소추자는 자신이 지휘하는 감사원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하거나 제출하려는 업무를 방해하여 직원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했다. 이러한 행위는 국회법 제121조(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행정부가 일을 하는 정치적인 상황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을 때와 다르고 어려우며, 국회에 의한 다수의 탄핵소추는 행정부에는 매우 큰 부담이 되고 행정부가 원활히 작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다고 증언함.

○ 탄핵심판 절차가 현재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먼저 접수된 사건부터 신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탄핵 소추는 2024년 12월 12일 국회에서 의결되었는데 2개월 가까이 절차가 진행되지 않자 2025년 2월 3일 박성재 본인의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는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바 있음.

○ 서울중앙지검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건이 연 10만 건 정도인데 현재 탄핵소추로 주요 검사 3석이 공석인 상황에서[5] 중요 사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을 가지는 현재의 탄핵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지적이 있음.

- 탄핵제도는 원래 인사권자의 부당한 인사로부터 중립성과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의 제도인데, 제22대 국회부터

등의 죄),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를 위반한 것이다."

5) 최재훈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 2부장), 조상원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4차장검사), 이창수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는 탄핵제도를 행정부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변질하여 활용하기 시작한다는 지적이 있음.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제도를 만들었던 취지나 다른 나라의 탄핵제도 운용과 비교할 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탄핵제도가 운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직무가 정지되는 효력이 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답변함.

2) 야당의 2025년 예산안 단독 삭감 문제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윤석열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야당이 4조 1천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이 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되었을 것이라고 답변함.

○ 정진석 증인(대통령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과도한 입법권 행사와 탄핵 남발로 인해 국정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위기상황으로 인식한 것이 비상계엄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증언함.

- 또한, 예산이란 우리 몸에 피가 돌듯이 국정의 각 분야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인데, 예산에 차질이 빚어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답변함.

○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재명은 2025년 2월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최소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2024년에 야당이 독자적으로 추진한 2025년 예산 삭감이 윤석열 정부의 무력화를 목적으로 실행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야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여 민생, 마약 사건 등의 수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압수수색 건수가 1/3정도로 줄었고, 예산이 없어서 필요한 수사를 하지 못하는 등 대규모 혹은 계획적인 범죄 등 국민에게 실제적으로 피해가 가는 범죄 수사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변함.

○ 수사기관별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삭감 현황을 보면, 검찰, 경찰, 감사원은 대부분 전액 삭감되었는데, 공수처는 원안을 유지하여 삭감하지 않음.

3) 부정선거 의혹

○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고, 음모론으로 일축할 수 없다는 자필 메시지를 작성하였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단행했다고 언급함.

○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와 시스템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을 정도로 투명하게 정착되어 있는데,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이유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음.

○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3개 기관의 합동조사에서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 취약성이 드러나 부정선거 의혹이 증폭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용빈 증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해당 합동조사를 통해 문제가 지적된 시스템에 대해 보완조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시스템이 개선된 상태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졌으며 그 결과 성공적으로 선거를 치루었다고 평가함.

- 이와 관련해 조태용 증인(국가정보원장)은 선관위의 여러 가지 시스템에 보안 취약점은 있었으나, 부정선거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증언함.

○ 부정선거 의혹의 해결을 위하여 객관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서버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김용빈 증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현행법상으로 자신들이 서버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니 국회 등이 법률 개정 등을 통하여 적법절차가 된다면 그에 따라 서버를 공개할 용의가 있다고 증언함.

○ 지난 대선의 윤석열후보 선거캠프 자료를 보면 선관위를 불신하고 있었는데, 해당 불신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 아닌 가라는 지적에 대해 신용한 참고인(교수)은 부정선거 관련 관리대책 문건의 내용 중 서버를 확보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는 등 대선후보 때의 불신이 그대로 이어져 온 것 같다고 증언함.

- 이와 관련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보센터 해킹과 득표수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홍보했는데, 대선 승리 후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음.

- 신용한 참고인(교수)은 명태균의 2022년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의 9차례 조사결과에서 모두 윤석열 당시 후보가 승리한다는 결과, 특히 마지막 보고서가 9.1% 격차로 당선이 확실하다고 한 부분이 대통령에게 부정선거에 대한 확신을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증언함.

○ 지난 국회의원선거가 부정선거인지 여부에 대해 진실을 밝히지 못했으므로 비상계엄을 해서라도 확인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증인별로 다음과 같이 답변함.

- 이상민 증인(前 행정안전부장관)은 증언을 거부함.

- 박성재 증인(법무부장관)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고발장이 들어와 검찰에서 수사 중이며, 증인이 확인한 바로는 없다고 증언함.

- 김태효 증인(국가안보실 1차장)은 담당 업무가 아니라 공식적인 의견이 없다고 증언함.

○ 지난 5년간 약 150건의 부정선거 소송에서 선관위가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론이 지속되는 것은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얻기 위함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여인형 前 방첩사령관에게 보고되었던 부정선거 검토 문건에서도 부정선거의 근거가 없다는 것이 결론인 것을 보면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이유로 비상계엄을 한 것이 아니라 비상계엄의 이유를 만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핑계로 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민들이 왜 신뢰하지 않는지에 대해 김용빈 증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믿으려고 하지 않고 바라보는 시각, 확증편향이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증언함.

4) 국가비상사태 야기 관련 의혹

○ 고의적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기 위한 비행 등이 있었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신원식(국가안보실장), 인성환(국가안보실 2차장), 조태용(국가정보원장) 증인 등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함.

- 2024년 한 해에만 7~8회 가량의 NLL 위협 비행을 했다는 점, 비행항로가 평소와 달리 북한군 기지나 북한 어선에 매우 근접하였다는 점, 실무장 상태로 비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북풍 유도로 의심된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음.

-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은 NLL 이남의 우리나라 관할구역에서 훈련하거나 작전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이고, 북한 또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함.

- 인성환 증인(국가안보실 2차장)은 국가안보실은 군사작전 자

체를 직접 관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외환유치에 대한 여러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국가안보실 명의로 민주당 진상조사단을 고발조치 하였다고 증언함.

○ 북한과 관련하여 접경지역 군사작전이 있을 경우에 국방부와 미군에 공유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공유된다고 답변함.

○ 북한의 오물풍선 비행 원점을 타격하라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승오 증인(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지시받은 바가 없다고 답변함.

- 다만,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을 통해 “오물풍선을 원점 타격할 수 있다. 본인이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직접 내려가서 지휘를 하겠다”는 발언을 들었다고 답변한 바 있음.

- 강호필 증인(지상작전사령관)은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오물 풍선의 원점 타격에 대한 언급은 듣지 않았으며, 경고 사격의 필요성에 대한 전화를 받았으나 기존 대응 기조와 매뉴얼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답변했다고 증언함.

○ 국가안보실 제2차장 산하 위기관리센터에 지난 2023년 12월 1일부터 HID 요원이 파견되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 인성환 증인(국가안보실 2차장)은 해당 요원은 공관에 근무하는 인원으로 제2차장실 소속이 아니고, 과거 HID 경력이 있기

는 하나 현재는 국방부 소속으로 이번 계엄과 무관하며, 특정 직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증언함.

- 위기관리센터에 파견된 HID 요원이 계엄 전후로 정보사령부에 인원 차출이 더 가능한지 문의를 했다는 질의에 대해 인성환 증인(국가안보실 2차장)은 아는 바가 없다고 증언함.

- 오○○ 증인(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중령)은 국가안보실 내 비밀 TF의 구성과 업무 등을 확인해줄 수 없고, 노상원과는 연락한 바 없다고 증언함.

5) 기타

○ 명태균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압박을 받은 것이 계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신용한 참고인(교수)은 본인이 자료를 소상히 제출하고, 명태균의 변호인이 휴대폰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한 부분 등이 대통령에게 큰 압박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함.

- 명태균이 2024년 11월 15일 구속되기 전 김건희 여사와의 육성 통화 녹음을 담은 USB를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달을 하면서 자신을 보호하라고 압박을 하였고,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전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3) 12·3 계엄 선포에 대한 국무회의 심의여부 및 그 적법성

1) 12·3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소집 현황

○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20시경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법무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정원장을 먼저 소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됨.

○ 또한, 21시까지 대통령 집무실에 1차로 모였던 국무위원은 도착한 순서대로 박성재(법무부장관), 김영호(통일부장관),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조태열(외교부장관), 조태용(국가정보원장)임.

○ 21시경 대통령 집무실로 모이게 된 경위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12월 3일 20시 40분경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가장 먼저 통지받았다고 증언함.

- 박성재 증인(전 법무부장관)은 12월 3일 20시 30분 전후로 도착해서 계엄 선포에 관한 사실을 들었다고 증언함

- 김영호 증인(통일부장관)은 12월 3일 도착해서 집무실에서 대통령을 만났고, 대통령께서 계엄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고 증언함.

- 이상민 증인(전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 행안부장관으로서 대통령실 부속실 직원에게 참석자와 국무회의 시간, 발언 요지 등을 기록으로 남겨놓을 것을 지시한 바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증언하지 않았음.

- 그러나, 손우승 증인(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사무관)은 12.3 당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집무실 나오면서 점심 때 대통령이 찾을 수 있으니 울산에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교통편을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고 증언함. 또한, 용산 도착은 20시 40분 무렵이고 서울청사에는 23시 30분쯤 복귀하였다고 증언함.

- 조태열 증인(외교부장관)은 21시경 도착했을 때 다섯 명의 국무위원이 도착해 있었고, 조태용 국정원장과 함께 들어갔다고 증언함.

- 조태용 증인(국가정보원장)은 사전에 이유를 듣지 못하였고, 본인을 포함하여 모두 계엄 관련 우려를 표명했다고 답변하였으며, 계엄 선포 이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개최되거나 개최를 시도한 바 없다고 답변함.

- 송미령 증인(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의하면, 12월 3일 당일 울산에서 이상민 증인과 같이 행사가 있었는데 이상민 증인은 행사 도중 대통령실 연락을 받고 일정을 단축해 서울로 왔고 본인은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왔음. 김포에 도착한 이후 21시 30분에 수행비서를 통해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았으나 국무회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도착했을 때 먼저 와 있었던 분들이 있었고 뒤에 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 장관이 들어와 11명이 채워졌다고 진술함.

2) 12.3 계엄 선포 국무회의 전 회동 당시 논의 사항

○ 여러 국무위원들의 증언을 종합할 때, 21시경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관한 사항을 언급했던 것으로 보임.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국무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계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피력하였다고 증언함.

- 김영호 증인(통일부장관)은 계엄 선포는 경제·외교·안보 분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다고 증언함.

- 조태열 증인(외교부장관)은 자리에 앉자마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다고 하면서 A4용지 한 장을 줬으나, 국무총리께서 계엄에 대한 생각을 물어봐 구체적인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함.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대통령이 조태열 외교부장관에게 A4 용지를 건넨 사실에 대해 당시 상황이 충격적이어서 구체적 사항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함.

- 조태용 증인(국정원장)은 12월 3일 21시경 대통령이 비상계엄 필요성을 역설할 때 우려를 표명하였다고 증언함.

- 박성재 증인(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이 A4 용지를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함.

- 이상민 증인(前 행정안전부장관)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함.

3) 국무회의 소집 배경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소집의사가 없어서 본인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다고 증언함.

○ 박성재 증인(법무부장관)은 당시 여러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함.

○ 송미령 증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1시 30분경 수행비서를 통해 대통령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증언함.

4) 국무회의 요건 충족 여부

○ 12·3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 시간은 22시 17분부터 22분까지 약 5분 정도로 추정됨.

- 박성재 증인(법무부장관)은 계엄 당일 회의라고 볼 수 있는 시간은 약 5분 정도라고 증언함.

○ 12.3 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에서 계엄에 관한 사항이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국무위원들은 동의하며, 대부분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고 증언함.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계엄사령관에 대한 논의는 없었고, 본인은 계엄에 대해 반대하고 대통령을 설득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엄 관련 어떠한 지시나 서류도 받은 바 없다고 증언함.

- 박성재 증인(법무부장관)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으며 계엄 포고문 형식의 종이 한 장만 받았다고 증언함.

- 최상목 증인(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비상계엄은 잘못된 결정으로, 계엄 당시에도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증언함.

○ 다만, 12.3 계엄 당일 회의에서 계엄의 종류, 계엄 지역, 시행 일시, 계엄사령관 등이 포함된 A4 한페이지 분량의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았냐는 질의에 대해 국무위원들의 답변이 엇갈림.

- 박성재 증인(법무부장관)은 비상계엄 정국, 일시, 계엄사령관 등을 담은 계엄 포고문 형식의 문서를 보았다고 진술함.

- 반면, 송미령 증인(농식품부장관), 김영호 증인(통일부장관), 조태열 증인(외교부장관)은 보지 못하였다고 답변함.

- 한편,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의 경우 국무회의 후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양복 뒷주머니에 선포문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어떻게 이를 소지하게 되었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함.

○ 12.3 계엄을 선포한 회의가 국무회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는 의혹과 관련한 국무위원의 답변은 다음과 같음.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함.

- 고기동 증인(행정안전부 차관)은 계엄 당일 회의는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증언함.

- 이완규 증인(법제처장)은 계엄 선포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헌재나 대법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증언함.

- 최상목 증인(대통령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 국무회의는 국무회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함.

○ 한편,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통령실 회의의 회의록 작성을 위해 대통령실에 관련 자료를 요청('24.12.6.)하였으나, 회신받은 자료에 안건 및 발언요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회의록 작성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행정안전부로 보낸 회의록에는 해제 국무회의와 달리 의안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4) 12·3 계엄 선포 후 각 국무위원들의 후속대책 이행 등

1)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회의

○ 류혁 증인(전 법무부 감찰관)은 언론을 통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실·국장 단톡방에서 비상소집이 있었고 법무부 청사에 12시쯤 들어갔을 때 계엄 선포 이후의 상황을 논의하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었음. 박성재 법무부장관에게 계엄 관련 회의인지를 확인받은 후에 이후 지시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사직의 뜻을 전하고 자리를 나온 것으로 진술함.

- 사직서를 제출하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함.

- 류혁 증인은 그 당시 박성재 법무부장관의 태도가 계엄선포를 불법으로 생각하거나 의구심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답변함.

2)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교정본부의 수감시설 준비 문제

○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계엄사령부의 요인에 대한 체포를 대비하여 교정본부가 수감시설을 준비하는 등 내란 혐의에 가담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법무부나 교정본부가 구치소에 빈방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으며, 비상계엄 직후

교정기관장 영상회의를 개최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지휘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었다고 답변함.

○ 한 언론사는 12월 4일 새벽에 교정 직원이 비상소집을 해서 독방을 비우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하였는데, 결과적으로 해당 언론사는 허위보도를 인정하였음. 이처럼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뉴스가 너무 많이 유포·생산된다는 지적이 있음.

3) 12월 4일 이상민장관 등 4인의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 문제

○ 12월 4일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이 안가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비상계엄의 주요 관여자들이 사후 대책을 논의한 자리였다는 의혹이 있음.

- 해당 모임은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이 예약한 사실이 확인됨. 김주현 증인(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해당 안가를 보좌관을 통해서 예약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계엄 이후 대책을 논의하는 등 특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증언함.

- 해당 모임에 참여한 증인들은 공통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도대체 비상계엄이 어떻게 발생한 일인지 상황을 파악하는 정도의 정보만 공유하였다고 답변함.

- 이완규 법제처장에게 연락한 사람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임.

- 이상민 증인은 안가 회동을 위해 최초로 연락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냐는 질의에 증언을 거부함.

○ 안가 회동이 있음이 밝혀지고 나서 참여자 네 명은 모두 핸드폰을 교체하였는데, 이는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음.

- 안가 회동 이후 용산에서 다시 모였냐는 질의에 대해 박성재 증인과 김주현 증인은 이를 부정함.

○ 김성훈 증인은 전임 정부에서 대통령 내외 외의 사람이 안가를 이용한 적이 없다고 증언함.

○ 김대경 증인은 안가의 시설물 관리는 본인이 담당하나, 안가 사용에 대하여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답변이 곤란하다고 증언함.

○ 이완규 증인은 안가에 모이라는 연락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받았으나, 대통령이 올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증언함.

4)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경위

○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 조태열 증인(외교부장관)은 당일 21시경 도착해서 집무실로 들어가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생각이라고 하면서 직접 문건을 주었다고 확인함.

- 다만, 박성재 증인(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이 문건 건네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답변하였고,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기억하기 어렵다고 답변함.

- 최상목 증인(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이 본인을 불러서 참고하라고 하며 옆의 직원이 접힌 상태의 쪽지를 주었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기획재정부 차관보에게 가지고 있으라고 주었으며, 기획재정부 1급 회의 종료 후에 윗부분만 보고 계엄 관련 문건으로 인지한 후 무시하기로 하고 내용을 보지 않았다고 답변함.

- 윤인대 증인(기획재정부 차관보)은 11시 30분경 F4 회의를 위해 모였을 때 최상목 부총리를 만나 접힌 상태의 쪽지를 건네받고 밖에 나와서 내용을 잠깐 보았고, 1급 회의가 끝난 1시 50분경 부총리가 앞부분을 조금 보더니 계엄을 반대하기로 했으니 무시하라고 하며 쪽지를 돌려주었으며,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원본을 제출했다고 증언함.

- 이에 대하여 비상계엄 상황에서 대통령이 지시 사항이 담긴 문건의 내용을 부총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 예비비의 조속한 확보, 국회 관련 보조금 등의 완전 차단,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 지시문건의 목표는 계엄을 위한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고 계엄의 통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음.

- 계엄 직후 열린 F4 회의에서 예산상 조치 등 지시문건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최상목 증인, 이창용 증인(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증인(금융감독원장), 김병환 증인(금융위원장), 윤인대 증인(기획재정부 차관보)은 F4 회의는 금융·외환시장 안정 목적으로 긴급히 개최된 것으로 계엄 관련 지시사항은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 기획재정부 1급 간부회의에서 지시문건 이행 방안을 논의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최상목 증인은 해당 회의에서 계엄 때 상황, F4 회의 내용, 사의 표명과 한국은행 총재의 만류 등을 설명하고 계엄 관련 어떤 사항도 응하지 않기로 이야기했다고 답변함.

- 예비비의 확보를 위하여 한국은행 대정부 일시대출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최상목 증인과 김동일 증인(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해당 제도는 재정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법령상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이창용 증인은 일시대출금 한도가 50조 원이나 계엄 자금 용도로 요청이 왔다면 줄 수 없는 항목이라고 답변함.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국가비상입법기구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하기 위한 기구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계엄 당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령할 만한 필요성이나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윤인대 증인(기획재정부 차관보)은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나 공무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긴급재정경제명령을 염두에 두고 일한 적은 없다고 증언함.

○ 12월 3일 기획재정부가 국가정보원에 예비비를 배정한 것이 국가정보원의 요구 또는 대통령의 지시로 계엄 관련 자금으로 활용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 류중재 증인(전 기획재정부 국고과장)은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예비비 배정이 결정되어 12월 13일에 실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예비비 배정 사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배정 금액은 1급 비밀이라고 증언함.

(5) 계엄 선포 및 국회 통고의 구체적 경위와 헌법 및 법률 준수 여부

○ 12·3 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져 헌법 및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께 계엄 건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함.

-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무회의에서 계엄사령관 임명과 관련된 심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고, 해당 심의안건을 국방부에서 작성하였는지 여부도 파악하지 못하였다고 증언함.

- 박성재 증인(법무부장관)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바로 통고하는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점에 동의하는 취지로 증언함.

○ 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였는지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회의가 끝날 때 쯤 누군가 참석했다는 사실을 부서해두자고 이야기하였으나, 본인을 포함한 모든

장관들이 반대하여 서명하지 않았고, 사후에도 부서한 일이 절대 없다고 증언함.

- 박성재 증인(법무부장관)은 이상민 장관 또는 김용현 장관이 부서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증언함.

- 송미령 증인(농식품부장관)은 계엄 당일 회의가 끝난 이후 문 입구에서 국무위원들은 서명하고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함. 또한, 당시 서명하고 가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 국무위원은 아니나 정확하게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함.

○ 헌법재판소 제10차 변론기일에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2월 5일 계엄선포문을 출력하여 한덕수 총리, 김용현 장관의 서명을 받고 7일에 대통령의 서명을 받았으나, 8일에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전화를 하였고 증언하였고 이를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이 인정하여 이와 관련된 질의가 이루어짐.

- 이에 대해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받은 문서가 있는지 묻기에 소지하고 있던 계엄선포문 두 장 중 한 장을 부속실장에게 보냈고 부속실장이 한 장 겉표지에 서명을 요청하기에 이 문서가 소지하고 있었던 문서가 맞다는 의미로 서명한 것이며, 사후에라도 서명하는 것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서명한 부분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증언함.

(6) 계엄 선포 후 포고령 포고 경위

○ 2024년 12월 3일 23시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명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이 발표됨.[6)]

○ 김으뜸 증인(합동참모본부 해작과 연합해상작전담당)은 김용현 장관이 계엄 선포 당일과 그 전날 대통령실이라고 적힌 노란 봉투를 들고 다니는 걸 봤고, 노란 봉투에서 포고령이 담겨져 있었던 걸 나중에 알게 되었고, 장관이 노란 봉투를 누구한테 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

○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 문안의 내용을 계엄 전 미리 알고 있지 않았다고 증언함.

○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되고 나서 장관으로부터 포고령 문안을 직접 받았고, 포고령 문안을 보고 나서 법무 검토를 하여야 할 것 같다고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게 말했다고 진술함.[7)]

○ 이러한 박안수 계엄사령관의 요청에 대하여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이미 검토가 완료된 사항이라고 대답했다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이 진술함.

○ 이에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그 시점이 2024년 12월 3일 22시 2

---

6) 포고령 포고와 관련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하였고, 동행명령장 집행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치소 현장조사에도 응하지 않음에 따라 조사에 한계가 있었음.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에는 출석하여 2024년 12월 1일과 2일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윤석열대통령이 포고령에 대하여 상의하였다고 증언하였음.

7) 제418회국회 국방위원회 제8차 전체 회의 긴급현안질의(2024년 12월 5일)

3분 이후여서 포고령 문안의 발령 시간 22시가 지난 시점이었으므로 23시로 수정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발령 시간만 23시로 수정한 후 포고령 문안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함.

○ 참고로,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국방부 직원 중에 포고령 작성에 개입한 직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다고 증언하였고, 김주현 증인(대통령실 민정수석)은 포고령·포고문 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였으며, 권영환 증인(당시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포고령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포고령을 작성했는지에 대해 신원식 증인(국가안보실장)은 이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증언함.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경위

1) 국군방첩사령부

-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22시 45분 경 전 부대원 비상 소집을 전파하고 12월 4일 01시 경 소집이 완료되었고, 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연수원, 여론조사 꽃에 총 115명(전원 간부) 부대원이 출동함.

- 1처장 통제하에 12월 4일 00:55~01:43 간 4개 팀(115명)이 사복 착용 상태로 차량을 이용하여 순차 출발하였고, 출동 인원 전원 임무지역에는 미진입하고, 인근 휴게소·편의점 등에서 대기함.

[국군방첩사령부 출동 경과]

구 분		인 원	시 간(12.4일)	이동	휴대무기
선관위	과천청사	과학수사센터장 등 27명	00:55~01:27	차량	고무탄총 1정
	관악청사	정보보호단장 등 27명	00:56~01:32		가스총 1정
	수원연수원	군사보안실장 등 33명	01:05~01:38		가스총 1정
여론조사 꽃		사이버보안실장 등 28명	01:10~01:43		가스총 1정

※ 자료: 기관별 보고자료

○ 12월 4일 01시 3분 경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직후 01시 6분 경 기획관리실장이 참모장의 승인을 받아 임무 중단 및 복귀 지시를 전파하였고, 01시 40분 경부터 출동 인원의 복귀가 시작되어 02:20~03:18 경 전원 사령부로 복귀함.

○ 계엄 당시 선관위 서버를 압수하라는 방첩사령관의 명령에 대

하여 윤비나 증인(국군방첩사령부 법무실장)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이유로 끝까지 반대했다고 증언함.

- 이에 대하여 정성우 증인(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압수를 지시했지만, 포렌식 장비를 지참하지 않았으며 부하들은 사전에 사령관의 지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함.

○ 정성우 증인(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에 올 검찰과 국정원을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령 7명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했는데, 정성우 증인은 수사 입건조차 되지 않았으므로, 조속히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2) 정보사령부

-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소집 인원은 2개 조 총 48명으로 계획처장 등 10명은 12월 3일 20시 30분에 사령부를 출발하여 선관위 과천청사에 22시 30분 경 도착하여 서버실 위치 확인 및 출입통제를 실시하였고, 중앙신문단장 등 38명은 12월 3일 20시에 소집하여(여군 3명은 23시 경 별도 소집) 과천청사에 투입 준비를 함.

- 최초 투입된 계엄군 10명은 중앙선관위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행동감시 및 청사를 출입통제하며 위원회 청사를 총 3시간 20여분 동안 점거하였고, 서버실에는 총 15분(22:34~22:49) 정도 머무름.

○ 선관위 과천청사에 투입된 계획처장 등 10명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12월 4일 01시 32분경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철수하였고, 투입준비 중이었던 중앙신문단장 등 38명은 12월 4일 05시 40분경 해산함.

○ 저녁 20시 30분 경 선관위로 출발했던 부대가 실탄과 총기를 왜 휴대하였는지에 대해서 고동희 증인(정보사령부 계획처장)은 문상호 사령관으로부터 총기 휴대 및 실탄 준비 지시를 받았고, 출동할 당시에는 비상계엄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출동했다고 증언함.

○ 선관위 전산 자료를 확보하고 직원을 체포·감금해서 부정선거를 입증하라는 구체적인 임무 하달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김봉규 증인(정보사령부 대령)은 11월 9일 경 민간인 노상원(전 정보사령관)을 만나 전달받았고,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통해 민간인 노상원의 지시가 아니라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이해했다고 증언함.

- 이와 관련하여, 김봉규 증인(정보사령부 대령)은 민간인 노상원으로부터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내가 직접 확인한다”,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등의 언급을 들은 적 있다고 증언함.

- 또한, 정성욱 증인(정보사령부 대령)은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이 출근했을 때 해당 인원들을 회의실로 집합시키는 임무를 받았다고 증언함.

○ 정보사령부 간부가 왜 민간인 노상원의 지시를 따랐는지에 대

해서는 증인별로 다음과 같이 답변함.

- 김봉규 증인(정보사령부 대령)은 문상호 사령관과 함께 있었고, 이후 문상호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함.

- 정성욱 증인(정보사령부 대령)은 블랙요원 유출 관련으로 직무분리된 상태에서 10월 초 민간인 노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진급을 도와주겠다는 언급을 들었으며, 10월 중순경 특별한 임무가 있을 수 있으니 인원을 선발할 수 있냐는 질문을 받아 사령관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거절하였는데, 이후 문상호 사령관이 해당 인원 선발을 지시했고, 그 후로는 민간인 노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함.

○ 선관위 출동 당시 작두를 왜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정성욱 증인(정보사령부 대령)은 민간인 노상원이 해당 물품을 구입하라고 말했고, 문상호 사령관이 물품을 구매하면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증인이 구매하였으며, 왜 작두를 준비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고 증언함.

3) 특수전사령부

-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 326명을 선관위 과천청사에 출동시키고, 병력 133명을 선거연수원에 출동시켜 봉쇄를 시도함.

○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12월 4일 01시 09분 경 특수전사령관이 임무중지를 지시하였고, 04시 30

분경 출동병력의 복귀가 완료됨.

○ 12월 4일 2시 13분, 김용현 장관이 선관위에 병력 재투입 가능 여부를 문의했으며,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이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증언함.

○ 선관위 과천청사에 출동한 3공수여단의 임무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김정근 증인(육군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장)은 선관위 내부의 핵심 장비 시설이 훼손·반출되지 않도록 건물을 확보하고 경계를 지원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증언함.

○ 선관위와 여론조사 꽃에 출동한 9공수여단의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대해 안무성 증인(육군특수전사령부 제9공수여단장)은 선관위 관악청사와 여론조사 꽃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증언함.

○ 3공수여단은 선거연수원에도 출동했는데,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을 체포하여 주일미군기지로 압송했다는 가짜뉴스와 관련해 당시 한국과 미국이 같이 작전을 했는지에 대해 김정근 증인(육군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장)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았고, 선거연수원에 출동한 병력은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고 철수하여 복귀했다고 증언함.

- 이에 대하여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계엄군과 미군이 중국인 99명을 체포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함.

○ 9공수여단의 탄약수송용 트럭이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50분이 지난 시점(01시 52분)에 신월-여의 지하차도를 지나고 있었는데 2차 내란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 안무성 증인(육군특수전사령부 제9공수여단장)은 해당 트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로 가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02시 15분 경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철수 지시가 내려졌다고 증언함.

4) 검찰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공소장에 의하면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있으면 국정원과 수사기관이 올 것이라고 사령관이 말했다고 하는데, 해당 수사기관이 검찰이라는 제보가 있으므로 관련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 전무곤 증인(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검찰을 선관위로 보내는 어떠한 지시도 들은 적이 없다고 증언함.

- 이인수 증인(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연구소장) 역시 검찰을 선관위로 보내는 지시를 들은 바 없다고 증언함.

5) 경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제 : 12월 3일 23시 09분부터 과천경찰서장 등 과천경찰서 소속 23명의 경찰관이 순차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함. 23시 50분경 야간 당직 기동대 1개 제대가 도착하였고 익일 01시 20분경 1개 기동대가 도착하였

고 07시 05분경 경력이 철수함.

- 선거연수원에 대한 통제 : 12월 3일 23시 17분 경 수원서부경찰서장 등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48명의 경찰관이 선거연수원에 순차 도착하였고, 익일 00시 55분경 1개 기동대가 도착하였으며 07시 05분경 병력이 철수함.

(8) 주요 정치인 등 체포조 운용에 관한 사항

1)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및 체포 명단 관련

- 홍장원 증인(국가정보원 전 제1차장)은 계엄 발표 이후인 22시 53분 경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며 방첩사에 필요한 자금과 인원을 적극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목적어는 없었으며, 구체적 대상은 23시 6분경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조국, 정청래, 양정철, 박찬대, 조해주, 이학영, 양경수, 김어준, 김민웅, 김민석, 김명수(총 14명)를 체포하라는 명단을 받았다고 증언함.

  국가정보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대통령께서 정치인을 제포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라고는 보고하지 않았지만,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는 지시사항과, 방첩사령관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11시 30분 정무직 회의때 보고했다고 증언함.
  정무직 회의를 마치고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라고 보고했으나 답변이 없었음. 이어 '그런데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라고 보고했으나,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지요'라는 답변을 들었음. 이에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은 주셔야지요'라고 건의했으나 보고자리를 피해버렸다고 답변함.

- 조태용 증인은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직접 지시사항을 받은 것은 없으며, 홍장원 전 제1차장이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은 당일 밤 11시 50분경에 보고받았으나, 방첩사령부 지원 지시가 있었다는 것만 들었고 정치인 체포 등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답변하였음[8].

- 비상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직속 부하가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임무를 하달받았다고 보고하는데 국가정보기구 수장이 그 임무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대하여 조태용 증인은, 정무직회의에서 계엄 시 방첩사령부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게 되고 국가정보원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국가정보원이 당연히 하는 일의 하나로 이해했다고 답변함.

○ 윤석열 대통령이 22시 53분 홍장원 전 차장에게 전화한 다음 22시 56분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에게 전화하였는데, 이는 홍장원 전 차장에게 지시한 사실을 원장에게 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

- 국가정보원장이 국무회의 소집 전 회동에서 관련 내용을 인지했고, 대통령이 홍장원 전 차장에게 지시한 내용도 알고

8)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제8차 변론(2025. 2. 13.)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은 홍장원 전 차장이 '이재명, 한동훈 오늘 밤에 잡으러 다닐 것 같다.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국가정보원과 상관 없는 일이고 그럴 것 같지 않아서 '내일 아침 회의 때 국가정보원이 하게 되어 있는 일을 의논하는 걸로 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진술함.

있는 상태에서 내일 아침에 보자고 하는 것은 그 지시를 이행하라는 의미이므로 내란 가담자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임.

○ 국가정보원이 정치인 체포 시도에 동원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태용 증인은 비상계엄 현장에 국가정보원 직원이 동원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함.

○ 김대우 증인(국군방첩사령부 前 수사단장)은 23시경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14명의 정치인을 신속하게 잡아서 수도방위사령부 B1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정치인 체포대상 14명은 여인형 전 사령관이 김용현 장관에게 들었다고 진술함.

○ 곽종근 증인(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체포·구금 지시를 분명하게 받았다고 증언함.

2) 주요 정치인 체포 이행 방안

① 국군방첩사령부

○ 김대우 증인(국군방첩사령부 前 수사단장)의 증언 및 국군방첩사령부 기관보고 자료에 의하면,

- 계엄 당일 23시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수사단장에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100명,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100명이 오기로 했으니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전달받은 명단에 따라 대상자를 신속히 잡아 수도방위사령부 구금시설로 이송하라고 지시하였고,

- 23시 04분 방첩사 수사단장은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에게 경찰 100명과 조사본부 100명이 합류할 예정이므로 이를 확인할 것과, 체육관에 부대 수사관들을 준비시키고 경찰에는 호송차, 조사본부에는 구금시설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으며,

- 23시 30분경에 방첩사 수사단에서 14명의 체포자 명단을 하달하였고,

- 23:31~23:53까지,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수사단장에게 현재 집결된 방첩사 수사단을 먼저 국회로 보내고, 조사본부 및 경찰도 준비되는 대로 국회로 출동하도록 지시를 내림.

- 이에 따라 12월 4일 00시 25분에 방첩사 수사단이 출동(수사단장·1처장 통제하 국회, 선관위 등으로 부대원 164명이 개인별 수갑·포승줄 각각 휴대)했으며, 또한 수도방위사령부 B1 벙커 구금시설을 점검함.

- 이 때, 국회에 49명의 체포조가 10대의 차량(2대의 승합차 포함)에 탑승하여 이동함.

- 12월 4일 00시 30분에 김용현 전 장관은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이 명령을 수사단장에게 전달함.

- 이를 김대우 수사단장은 12월 4일 00시 38분에 당시 국회로 출동하고 있는 7개 방첩사령부 출동조와 그룹통화를 하면서 해당 내용을 전파함.

한편, 김대우 증인(국군방첩사령부 前 수사단장)은 체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증언했으나, 계엄 당시 수사조정과의 단체 대화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전달됨.

'기존 부여된 구금인원 전면 취소.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 보시는 팀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 신병을 확보한 이후 인수받아 수방사로 구금 바랍니다. 포승줄 및 수갑 이용'.

- 김대우 증인(국군방첩사령부 前 수사단장)은 방첩사 수사관들이 국회 수소충전소에서 경찰 50명을 포함한 합동조를 구성할 것을 지시한 바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이를 인정함.

-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계엄 다음 날 체포 대상자 명단이 적힌 메모를 전부 수거해서 폐기하도록 지시했지만, 김대우 증인(국군방첩사령부 前 수사단장)은 폐기시 향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하지 말고 조사받더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야한다고 건의하였으며,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폐기하지 말도록 재차 지시되었다고 진술함.

② 수도방위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는 계엄 당일 23:10 이후, 1경비단 소속 136명이 국회 일대로 현장 출동하여 23:40 경 최초 부대가 도착함.

- 23:30 이후, 군사경찰단 소속 76명이 국회 일대로 현장 출동하여 00:04경 최초 부대가 도착함.

- 12월 4일 00:23 이후, 국회 일대로 출동한 병력 212명 중 48명이 국회 울타리 내로 진입하였음. 국회의사당 본청 내로 진입한 인원은 없으며, 당시 총기·탄약은 차량 내 통합 보관함.

- 12월 4일 01:47 경, 출동병력 복귀 지시 이후 부대별 집결하여 인원·장비 확인 후 복귀 출발하였으며 04:50경 복귀 완료하였다는 입장임.

- 이진우 증인(수도방위사령관)은 대통령 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특정 인물 체포, 의원들의 본관 출입 방해 및 강제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함.

-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12월 4일 계엄 해제 이후 군인 13명(제복 착용 11명, 사복 착용 2명)이 국회의장 공관을 배회한 것에 대하여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요청을 받아 관저 경계 강화를 위해 1경비단 요원이 외곽 경계를 위해 이동하는 과정이었다고 증언함.

③ 정보사령부

-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비상계엄 당시에 HID 속초 돼지부대 요원들 10명이 판교 일대에 소집되었다가 복귀했다고 증언함.

④ 특전사령부

- 곽종근 증인은 특전사는 정치인 체포 임무를 일절 수행하지 않았으며, 비상계엄 이전 사전모의와 관련된 내용을 예하 여단장이나 참모들에게 사전에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증언함.

-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707특임단이 국회에 출동할 당시 소지한 케이블 타이의 용도를 묻는 질의에 대해, 운용해본 적이 없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고 증언함(김현태 707특임단장은 헌법재판소 및 국방위원회에서 케이블타이가 문을 봉쇄하는 용도였다고 답변했지만, 해당 케이블타이 구조상 문을 봉쇄할 수 없음).

⑤ 국방부조사본부

- 국방부조사본부는 12월 3일 22:43~23:52 방첩사에서 군사경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 4회를 받았으나, 지원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입장임.

- 국방부조사본부는 23:42 경 방첩사에서 수도권 내 미결수용실 현황 확인 및 이감을 요청받음.

- 국방부조사본부는 23:52~00:00 어간 방첩사로부터 '합동수사본부 시행계획'상 수사2국에 편성된 수사관 10명 파견을 요청 받아 출동시킴(총 21명: 수사관 10명, 그 밖의 인원 11명).

* 파견 출발 : 12. 4.(수) 01:08부(비무장, 사복)

⑥ 경찰청

○ 계엄 당시 영등포경찰서 형사 60여명이 정치인 체포조로 동원되었는데 위 통화 당시 박현수 경찰국장은 체포조에 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여 체포조 관련 내용으로 통화하지 않았다고 답변함.

○ 12월 4일 0시 41분에 박현수 경찰국장이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에게 전화한 것은 국회 주변의 혼란한 상황에 대해 확인하려던 것이라고 답변함.

○ 방첩사령부와 경찰 체포조가 접선하기로 한 국회 앞 수소충전소에 영등포경찰서의 형사과와 범죄예방과 경력이 집결하였는데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 이현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계장은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23시 32분에 수사관 100명 파견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이후 23시 39분에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이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에게 전화해 명단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다고 답변함.

○ 이현일 수사기획계장은 방첩사가 경찰 명단을 요청한지 25분만에 영등포서 형사 명단을 제공했으며, 불법인지 몰랐기 때문에 계엄법에 따라 신속히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함.

○ 임경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체포나 합동수사본부 파견에 대해 요청받지 못했으나 명단 작성 지시에 따라 명단을 작성

하고 경계강화 발령에 따라 출동대기를 지시했다고 답변함.

○ 국가수사본부 간부들이 0시 38분경 '최대한 시간을 끌라'는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지시를 받았음에도 체포조 협력을 중단하지 않은 것은 우종수 국수본부장보다 상급자인 조지호 경찰청장의 별도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됨.

⑦ 기타 정치인 체포조 운영 관련

○ 박○○ 증인(육군 2군단 부군단장)은 노상원 수첩에 '정치인 납치' 등 비상식적인 내용이 기재된 것과 관련하여, 노상원 사령관의 성향을 고려할 때 이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증언함.

(9) 국회 계엄해제 의결 중단을 위한 병력 및 경찰력 등의 동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

1) 국군방첩사령부

○ 이경민 증인(국군방첩사령관 직무대리)은 국회에 방첩수사단장 통제하에 12월 4일 00시 25분부터 01시 05분간 10개팀 49명이 총기를 미휴대한 비무장 상태로 차량을 이용하여 출발하였으나, 출동 인원들은 여의도 일대 도착 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대기하면서 국회 지역에 일절 진입하지 않았다고 보고함.

- 국군방첩사령부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22:45 경 전 부대원에 비상소집을 전파함(12월 4일 1:00 경 소집 완료). 방첩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수사단장 및 1처장의 통제 하에 국회, 선관위 등으로 부대원 164명(전원 간부) 출발(12.4. 00:25~01:43)함. 국회에는 대공수사과장 등 49명이 출동함.

- 수사단장 통제하에 12.4. 00:25~01:05 간 10개팀(49명)이 비무장(총기 미휴대, 개인 방호를 위한 방검복·전술장갑 등 착용, 개인별 수갑·포승줄 각각 휴대) 상태로 차량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출발함.

  ※ 사령관 지시와 무관하게 예하부대 실무자 2명이 담당부대 요청으로 국회 동행(미진입)

- 01:03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01:06 기획관리실장이 참모장의 승인을 받아 임무 중단 및 복귀 지시

를 전파하여 01:40 경부터 출동 인원이 복귀를 시작하고 02:20~03:18 경 전원 사령부로 복귀함.

- 국회 출동 인원들은 여의도 일대에서 대기하며 국회 지역에 일체 미진입하였고, 01:40 경부터 철수를 시작하여 02:20 경 복귀함.

2) 수도방위사령부

○ 김호복 증인(수도방위사령관 직무대리)은 기관보고 시 22시 53분경 1경비단과 군사경찰단에게 사령관의 출동지시로 먼저 23시 10분 이후 1경비단 소속 136명이 국회로 출동하여 최초 부대가 23시 40분경에 도착하였고 후속하는 군사경찰단 부대는 23시 30분 이후 76명이 출동해서 익일 00시 04분 선두 제대가 도착하였다고 보고함.

- 또한, 22시 49분경에 602항공대대로부터 R-75 공역의 긴급비행 건의를 접수하여 미계획된 비행으로 승인을 보류하다가 23시 31분경에 계엄사령부의 승인을 통해 조치하였으며 국회에 도착한 병력들은 00시 23분 이후 총 212명 중에 48명이 국회 울타리 안으로 이동하였고 기타 인원들은 차량 안에서 대기하였으며,

  당시 총기와 탄약은 차량 내 보관 상태였고, 01시 47분경 출동병력 복귀 지시 이후 부대별 집결해서 인원, 장비 등을 확인하고 최종 04시 50분경에 복귀 완료하였다고 보고함.

○ 이진우 증인(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공소장에 적시된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에 한 명씩 둘러업고 나오게 해’라는 내용,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이 제한된다고 증언했으며,

○ 계엄 당시 총을 다 차량에 두고 내려서 임무를 수행하라고 지시해서 수호신TF 병력들은 소총 없이 국회 근처에 다 있었다고 증언함.

- 대통령의 통화 내용 중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해제했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라는 지시를 들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기가 제한된다고 증언함.

3) 육군 특수전사령부

○ 박성제 증인(육군특수전사령관직무대리)은 기관보고 시 22시 47분경 전 특수전사령관이 구두로 임무 지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6개 지역으로 1,142명이 출동하였다고 보고함.

○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대통령과 처음 통화가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라는 내용인지를 묻는 질의에 그렇다고 증언하고, 두 번째 통화했을 때는 대통령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빨리 국회 안으로 가서 의사당에 있는 사람들 끌어내라’ 그리고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라는 내용이었는지에 대한

질의에 그러하나 도끼, 총 발포와 같은 용어들은 기억에 없다고 증언함.

- 비상계엄이 발효되고 특수전사령관은 부하 직원들에게 국회 창문을 깨고서라도 들어가라고 지시를 내렸는지에 대한 질의에 창문 깨고 들어가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증언함.

- 특전사 간부 휴대폰 메모 내용인 '첫 번째, 다급해진 사령관, 유리창이라도 깨고 들어가라 소리치고 보안폰으로 지시. 그 다음에 두 번째,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못 하도록 의원들을 빨리 끌어내라. 빨리 가라. 표결하면 안 되는데. 707은 추가 병력 2차 투입해라. 세 번째, 전기 끊으면 안 되나? 의사당 지붕에 내리면 안 되나?' 라는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의에 증인이 한 말이 아니고 대통령이 한 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그 말을 전달하는 내용이 전파된 것이지 증인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사항이 아니라고 증언함.

- 유리창 문제의 발단은 707특임단장이 정문에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길로 돌아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알았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들어간 것이라고 증언함.

○ 이상현 증인(1공수여단장)은 국회 앞에 장갑차가 배치되었다는 문화방송 등의 보도가 사실인지에 대한 질의에 장갑차가 아닌 지휘관 경호 차량인 소형 전술차량이었다고 증언했으며,

공포탄은 개인이 휴대했고 실탄은 개인에 불출하지 않았는지

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증언했으며, 소형 전술차량에 기관총을 거치하지 않았다고 증언함.

○ 김현태 증인(707특임단장)은 국회로 출동한 707부대가 실탄과 공포탄, 테이저건, 카트리지 등 약 6,000여 발의 탄약을 반출했다는 그런 주장과 언론보도가 사실인지에 대한 질의에 국회에 가져간 현황과 다르다고 증언함.

○ 김세운(특수작전항공단장) 증인과 김현태 증인은 비상계엄 당일 오전 11시 09분경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불시 점검 훈련을 실시하라는 임무를 받았고, 이에 상호 논의하여 경기도 광주 소재의 특수전학교에서 훈련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증언함.

○ 김세운 증인은 계엄 당일 22시 40분 경 작전 대상지가 국회로 결정된 이후 착륙장인 국회운동장을 분석하였고, 항공기 3대의 착륙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진행했다고 증언함.

○ 707특임단장은 당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불시 점검 훈련을 실시하라는 임무를 받았는지 질의에 김현태 증인(707특임단장)은 불시 점검 훈련을 하라는 지시를 간단하게 받았고 직후에 특항단으로부터 항공기 12대가 지원될 거라는 통화를 받았다고 증언함.

○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불시 점검 훈련을 실시하라는 임무를 받았는지 질의에 김세운(특수작전항공단장) 증인은 불시 훈련으로 들었다고 증언함.

- 김세운(특수작전항공단장) 증인은 항공기 출동 지시는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야간 10시 30분에 비화폰으로 받았는데 목적지에 대한 얘기는 없었고 약 10분 후인 40분경에 참모를 통해서 목적지가 국회다.라고 통보를 받았다고 증언함.

○ 2대, 4대, 6대도 아니고 3대씩 나눠서 국회 운동장에 내렸는지에 대한 질의에 김세운(특수작전항공단장) 증인은 이 당시에 착륙장 분석을 했을 때 운동장에 항공기 3대가 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 계획을 유지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안전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고 증언함.

○ 운동장에 3대가 내릴 수 있다는 계획 언제 세웠는지에 대한 질의에 김세운(특수작전항공단장) 증인은 당일 22시 40분에 목적지가 국회로 결정이 되고 나서라고 증언함.

○ 특전사 인원들이 국회에 몇 명 투입됐는지에 대한 질의에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197명이 들어왔다고 증언함.

○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본인이 직접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철수하라라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후에 사령관들에게 지시하였다고 진술했는데 그러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지시받은 바 없다고 증언함.

- 누구의 판단으로 철수를 하게 됐냐는 질의에는 계엄 해제가 의결됐다.라는 상황을 인식했고 그 뒤에 김용현 국방부장관과 비화폰 통화하면서, 김용현 전 장관이 어떻게 하냐라고

먼저 물어봐서 국회, 선관위 세 군데, 민주당사, 여론조사꽃 임무 중지하고 철수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함.

○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23시 47분에 헬기장에 랜딩을 처음 했고, 시설을 확보하라는 임무를 받아서 707특임단장이 출입문 위주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입문 쪽으로 이동했다고 증언함.

○ 곽종근 증인(전 특수전사령관)은 707특임단장하고 통화를 하면서 테이저건 사용이 가능하나 라고 했을 때 '사람이 많이 모여서 위험합니다' '그러면 하지 마라'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함.

- 이러한 지시를 마친 상태에서 법무실장이 '그것은 특전사령관의 권한이 아니라 계엄사령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야 될 사항이다'라고 해서 계엄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는데 사용 승인을 건의한 것이 아니고 사용 승인에 대한 지침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소통을 했는데 마치 그게 건의된 것으로 이해됐다면 그것은 본인의 표현이 잘못될 수 있다고 증언함.

○ 곽종근 사령관이 명확하게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리고 필요하면 전기를 차단해라' 지시를 내렸고 이를 증인에게 전달한 것이냐는 질의에 이상현 증인(1공수특전여단장)은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했는지 되물었고 곽종근 사령관은 '그렇다'라고 대답했음을 증언함.

4) 육군참모총장

○ 박안수 증인(전 육군참모총장)은 특전사령관이 계엄사령관에게 공포탄이나 테이저건을 사용하자고 건의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특전사령관이 예하 부대의 건의사항을 받아서 건의했다고 들었으나, 이에 대해서 금지를 지시했다고 증언함.

○ 「계엄법」 및 그 시행령 등에 의하면 전국단위 계엄 시 계엄사령관이 계엄지역 내 군부대를 계엄군으로 운용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특전사 등을 계엄군으로 지정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박안수 증인(전 계엄사령관)은 승인받는 과정은 없었으며 계엄사령관이 아닌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직접 지휘했고, 장관이 대통령에게 지휘·감독권을 위임받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증언함.

5) 국방부 국회협력단

○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가 국회에 들어올 때 필요하면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의 도움을 받으라고 적시되어 있는 점, 실제 당시 국방부 국회협력단 인원들이 CCTV에 영상이 찍혀 있는 점 및 계엄 전날인 12월 2일에 김용현 전 장관이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체류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국방부 국회협력단은 계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는 질의에 대해,

-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공소장 내용은 파악했으나, 이후 내용은 알지 못하였으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진술함.

○ 국방부 국회협력단 사무실은 현재 폐쇄되어 있는데, 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이 12월 4일 오전 10시 45분 경(국회사무총장 국회 군경 출입통제 관련 기자회견 시)에 폐쇄된 협력단실에 출입했다는 제보가 있는데, 출입협조가 안되자 몰래 들어가 비상계엄의 증거를 은닉·조작·파쇄를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됨. 또한 국회사무처 제공 기록에 따르면 12월 4일 21시 26분에도 국방부 국회협력단실 출입기록이 남아 있으니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는 질의에 대해,

- 김선호 증인(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12월 4일 오전 10시경 약 15분 정도 출입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출입사유는 국방위원장 해외 순방 후 귀국시 계엄 관련 보고 요청이 있어 이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계엄 이후 출입 기록은 해당 1회가 전부인 것으로 파악했으나 2차 출입에 대해 다시 확인 하겠다고 진술함.

○ 12월 2일 오후 국회협력단장은 김용현 장관을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계엄 발동 직후 22시 45분에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어떤 내용의 전화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 양재웅 증인(국방부 국회협력단장) 12월 2일 13시 50분에 김

용현 장관을 국회협력단 사무실에서 만났으나, 계엄 관련이 아닌 본회의 일정 때문에 방문한 것으로 증언함.

- 12월 3일 22시 45분에 특전사와 수방사령관과 통화하라는 내용이었고, 이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8차례 전화를 수신하여 병력을 안내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계속적으로 둘었으나, 거듭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증언함.

○ 계엄 당일 위치와 특임단의 지하 1층 이동에 대한 지원 여부 및 폐쇄된 협력단실 출입 이유에 대한 질의에 대해,

- 상황 파악을 위해 로텐더홀에 한 번 올라가고 대부분 국회협력단실에서 대기하였고, 지하 1층 이동은 지원한 바 없으며, 협력단실이 폐쇄될 거라는 뉴스를 보고 전열기구를 확인하고 소지품을 챙기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진술함.

○ 국회 내부를 모르는 특임단이 지하 1층에 하나 있는 분전반을 찾는 것은 내부의 조력자 없이 불가능한데, 그 내부 조력이 협력관실이라고 보인다는 질의에 양재응 증인(국방부 국회협력단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증언함.

6) 경찰청

○ 서울경찰청은 12월 3일 22시 35분경 국회에 5개 기동대를 추가 배치할 것을 지시하였고, 22시 47분부터 23시 07분까지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였음. 23시 07분부터 국회의원 등 신분 확

인자에 대한 출입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23시 37분경부터 익일 01시 45분경까지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였음. 01시 45분경부터 일반인의 출입은 통제한 채 국회 관계자의 출입을 허용하였으며 11시부터 출입통제를 전면 해제함.

○ 목현태 증인(전 국회경비대장)은 계엄이 테러, 대통령실 주변의 소규모 반란, 휴전선 인근의 국지전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졌고 상부로부터 내려진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가 정당한 지시일 것이라고 판단하여 국회의원의 출입을 저지하고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허용하였으며 국회의장의 봉쇄 해제 지시를 거부하였다고 답변함.

○ 김봉식 증인(전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당일 국회에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는 것이 위법하다는 참모들의 의견을 듣고도 출입 차단을 강행하였는데, 상급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것을 현장 직원들에게 강요할 수 없었다고 답변함.

○ 오부명 증인(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은 계엄 당일 위법한 차단 조치에 대해 김봉식 청장에게 건의하여 1차 차단 해제가 이루어졌으나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고령을 인지한 후 지시를 내려 국회가 다시 전면 봉쇄되었다고 답변함.

○ 이호영 증인(경찰청장 직무대행), 강상문 증인(영등포경찰서장)은 영등포경찰서의 경찰들이 계엄 당시 출동할 때 소지한 권총·전자충격기·가스분사기 등 무장장비는 지역 경찰이 평소에도 소지하는 장비이며 비상소집에 따라 출동한 것이라고 답변

하였음.

○ 강상문 증인(영등포경찰서장)은 국회로 출동시킨 경찰 인력은 질서유지 임무 수행을 목표로 출동시켰으며 기능별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음.

○ 이상민 증인(전 행정안전부장관)은 00시 39분 경찰의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설치 요청 관련 23시 34분 조지호 청장와의 통화에서 어떠한 지시를 하였는지 여부,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경찰국장을 통해 경찰상황을 확인하고, 저녁에 안가에서 회동하는 등 계엄 수습책 논의에 앞장선 것으로 보인다는 질의 등에 대해 증언을 거부함.

- 오부명 증인(당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이 새벽 01시 11분 전화, 01시 15분 문자로 국회 봉쇄 해제를 건의하였음에도 경찰청장은 임정주 경비국장을 통해 계속 국회를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함.

- 이후에도 별도의 지침이 없어 서울경찰청이 1시 45분경 자체적으로 국회 출입허가 결정을 한 것이 맞냐는 질의에 오부명 증인(당시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결정해서 무전으로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함.

- 김봉식 증인(서울경찰청장)은 계엄군이 상당 부분 철수하여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서울경찰청 차원에서 자체 판단하였고, 이후 경찰청장에게 전화로 건의한 후 해제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함.

○ 이상민 증인(전 행정안전부장관)은 23시 34분에, 대통령이 조지호에게 전화한 지 정확히 4분 후에 이상민 증인이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 진압 중에 지원할 것 없냐'라고 물어보거나 '포고령 위반이다, 자신 있게 국회의원들 끌어내려라'라고 지시한 바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증언을 거부함.

○ 조지호 경찰청장이 포고령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 면서 국회 전면 통제를 유지시켰냐는 질의에 오부명 증인(경찰청 공공안전차장)은 조지호 청장의 말은 듣지 못했고 본청장 지시대로 하라는 말만 들었다고 증언함.

7) 소방청

○ 허석곤 증인(소방청장)은 12월 3일 23시 37분경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이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요청하면 소방청에서 적의 조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억하고,

소방청장은 이를 차장과 논의하였고, 이후 차장은 서울소방본부장과 통화하였는데, 이 통화에서 소방청 차장이 서울소방본부장에게 포고령 관련 경찰의 협조 요청에 협력하라는 지시를 하였는지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소방청 차장은 급박한 상황이어서 대화의 정확한 내용은 기억나지 않지만, 해당 통화는 단전·단수조치에 대한 통화가 아닌 재난 대응 차원이었다고 답변함.

○ 이상민 증인(전 행정안전부장관)은 12월 3일 23시 37분 소방청장에게 전화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 증언을 거부함.

(10) 계엄해제 의결 후 해제 공고 지연에 관한 사항

1) 계엄해제 의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까지의 과정

○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12월 4일 01시부터 02시 사이의 행적에 대해 증인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 정진석 증인(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 01시 40분경 결심지원실에서 약 3분간 대통령을 뵌 후 한덕수 총리와 새벽 02시경 통화하여 비상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을 위해 국무위원 소집을 요청하였다고 증언함.

  또한, 계엄사령관이 2시부터 2시 20분까지 신원식 안보실장과 통화를 했고, 그 직후에 대통령실로 회의가 소집되었다는 김용현 장관의 말을 듣고 대통령실로 동행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대통령실에서 소집한 회의를 비서실장이 모집한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본인이 모집한 것이 아니며 한덕수 총리가 2시 30분에 도착한 이후 함께 대통령과 면담하였다고 증언함.

-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계엄 해제 이후 1시간이 지난 02시 10분에서야 서울청사를 나와 대통령실로 간 것에 대해 비서실장과 계엄 해제 건의 관련 통화를 하였다고 증언함.

- 인성환 증인(국가안보실 제2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이후 법령집을 찾았냐는 질의에 대해 그런 기억이 있으나 본인이 가져다주진 않았다고 증언함.

○ 이후,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국회 의결 이후 2시 30분경 대통령을 만났고, 의결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대통령에게 말하였으며, 국무위원들을 모두 용산으로 모이도록 지시하였다고 증언함.

○ 그러나,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이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대통령을 면담한 시간이 02시 30분이나, 병력 철수 지시가 2시 50분에 이루어져 계엄을 해제하지 않고 2차 계엄 시도 등 계엄 상황을 지속시킬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대해 정진석 증인(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 건에 대해 곧바로 승인하였고, 이후 국무회의를 소집하였고 2차계엄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 없다고 증언함.

○ 또한, 정진석 증인(대통령 비서실장)이 먼저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해제에 관해 건의하였는데, 다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하여 비상계엄 해제를 건의하라는 말을 한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대해 정진석 증인(대통령 비서실장)은 결심지원실 내에서는 비상계엄 해제에 관해 언급한 적이 없으며, 대통령에게 계엄 해제 승인을 했지만 총리도 함께 오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다시 국무총리에게 연락을 했던 것이라고 증언함.

2) 계엄해제 국무회의 관련

○ 계엄해제 국무회의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한덕수 증인(국무총리)은 계엄해제 국무회의는 적법한 국무회의라고 진술함.

○ 계엄해제 국무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국무위원들은 다음과 같이 답변함.

- 최상목 증인(대통령 권한대행)은 계엄해제 국무회의는 참석하지 않았는데, 새벽 02시 넘어 목적을 적시하지 않은 소집 명령을 받았고 차관·1급 회의에서 계엄과 관련된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려 불참 통보를 하였다고 진술함.

- 이상민 증인(전 행정안전부장관)은 12월 4일 새벽 1시에 서울청사를 나섰고 03시에 대통령실에 도착했다고 국회에 행적을 제출하였으나, 계엄 해제 직후 2시간 동안 행적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함.

(11) 내란범죄 수사주체 논란과 수사상황 점검

1)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및 체포의 적법성 문제

○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하여,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로만 소추할 수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 반면, 동법의 적용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등은 동법 제2조제3호 고위공직자범죄와 제4호 관련범죄를 말하는데, 대통령의 내란·외환죄는 제3호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제4호 관련범죄에 해당되어 공수처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이 점은 법원의 영장발부 등에서 확인된 것이라는 반대의견이 있음.

○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다고 진술했으나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는 수사 지휘 등을 이유로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함.

- 박성재 법무부장관 및 이완규 법제처장은 사법 절차의 진행 과정에서 법원이 이 쟁점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함.

○ 만약 대법원에서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면 증거능력이 없어질 수 있고, 그래서 헌법재판소법에서는 탄핵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탄

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인데, 현재 제도의 취지가 몰각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이에 대해 내란 수사의 핵심 증거는 대부분 군검찰 및 경찰에서 수사하였으므로,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이 재판에 주요 쟁점이 아니라는 반대의견 있었음.

○ 최초 수사 당시 검찰이 공수처에 사건을 넘긴 이유에 대해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공수처장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검찰에게 사건 기록 및 증거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수처법 규정에 따라 제출하였다고 답변함.

○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및 집행은 다음과 같은 점을 논거로 위법하다는 지적이 있음.

-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도망갈 여지가 없고 관련자가 대부분 구속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없으므로 체포·구속 사유가 없음.

- 동 사건은 법원 관할상 서울중앙지법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발부를 청구함.

- 공수처 검사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공소권을 갖는 범위에서만 검사이고, 그 외 수사 범위에서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에 불과하여 압수수색 등의 영장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음.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작년 12월 6일, 8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 12월 30일에 다시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른바 '영장 쇼핑'임.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체포영장도 윤석열 대통령과 동일한 상황에서의 체포 영장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만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임.

- 체포영장 발부시 판사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시 책임자의 승낙을 얻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110조 및 제11조의 적용을 임의로 배제함.

- 경호처 직원이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관에게 대통령 관저의 배치도를 건네주었는데, 이는 군사상 기밀 유출임.

- 공수처가 체포영장 2차 집행시 55경비단으로부터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는 수사관이 부대장에게 관인을 가져오라고 한 후 강요해서 찍은 것임.

- 25년 1월 13일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책임자의 승낙 없이 군사비밀 장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이 적법한지" 묻는 대한 질의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적법하지 않을 수 있다"고 답변했는데,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이 공수처를 조급하게 만들어 무리하게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게 된 것임.

○ 반면, 체포영장의 집행은 적법하며,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해 불복하려면 체포적부심사제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정당하고 단순히 체포영장의 불법성만을 주장하여서는 안된다는 반대의견이 있음.

- 공수처법 제31조에서는 원칙적으로 중앙지법에 청구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상의 관할인 범죄지, 증거의 소재지 등의 관할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서부지법도 관할이 인정된다는 반대의견이 있음.

- 체포영장 등 공수처의 영장 청구와 관련하여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 이상 이를 존중하는 것이 헌정질서 및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한다는 의견이 있음.

- 공수처법 제31조에 따르면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이 관할하게 되나, 이번 사건의 기소 자체는 검찰에서 수행했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할권 위반의 문제는 없다는 의견이 있음.

-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법규정상 명확하지 않으나, 수사권을 갖는 범죄에 대하여는 영장청구권이 있다고 보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청구권을 인정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 영장청구가 불가능하다는 견해는 개인의 견해로서 실무상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답변함.

-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동 사건은 공수처가

수사권만을 갖는 사건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원칙에 따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발부를 청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답변함.

-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55경비단의 공문서는 경비단장의 의사를 확인하여 첨부형태로 발부받은 것으로 적법한 문서라고 답변함.

-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체포영장의 집행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10조·제111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법리적 다툼이 없는 당연한 해석이고, 55경비단장의 허가를 받은 것은 「경호처법」이 아니라 「군사기지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유효한 절차였으며, 긴박한 시간 속에서 유혈사태를 막고 적법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답변함.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한은 6개월로 맞추고, 조사 인원이 많은 점을 고려할 때 일주일에 3~4번 재판할 것으로 보임. 새로운 내용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도 없게 되므로 적법절차 및 방어권 차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2) 경호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문제 등

○ 2025년 1월 5일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가 무기사용을 검토한 의혹이 있음.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대통령이 그러한 검토를 지시한 적은 없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나 자신이 경호처 직원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함.

- 남○○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장○○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등 경호처 소속 증인은 공통적으로 대통령으로부터 그러한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답변함.

○ 2025년 1월 11일 대통령이 주최한 오찬에서 무기사용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남○○ 증인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증언함.

- 1월 12일 대통령경호처 차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남○○ 증인이 차장과 본부장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했냐는 지적에 대해 남○○ 증인은 구체적 사항은 답변하기 곤란하나, 본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들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증언함.

- 장○○ 증인은 1월 16일 경호본부장으로부터 직무가 배제된 것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소극적으로 임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함.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에 차벽을 설치하고 철조망을 보수하라고 지시한 인물과 그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은 자신이 지시한 것이고 물리력으로 대치할 우려를 막기 위해 차벽을 설치할 필요가 있고, 철조망은 낡은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고 답변함.

○ 김성훈 대통령경호차장이 대테러팀에 헬멧과 전투복을 착용하고 총기를 휴대하여 언론에 노출되도록 지시하였다는 의혹이 있음. 이에 대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차장은 경호기법상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함.

○ 남○○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의 진술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차장 주관 회의에서 남○○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을 비롯한 대부분의 현장 지휘관들은 2차 체포영장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냈고, 일부는 협조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냄.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남○○ 경호부장이 국수본 관계자에게 대통령 관저의 배치도를 건네주는 등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남○○ 경호부장을 대기발령 시킴.

○ 장○○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은 2차 체포영장 집행때 소극적으로 임했다는 이유로 1월 16일 경호본부장으로부터 직무배제를 받음.

○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호처의 영장 불응은 법적인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지적에 대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동의한다고 증언함.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과거 청와대 시절 약 17건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도가 있었으나, 한번도 허가된 적이 없

다고 증언함.

○ 윤갑근 변호사가 2025년 1월 13일 20시 30분 국방부장관 공관에서 경호처 직원 70명에게 공무집행 방해 등 위법행위를 부추겼다는 의혹이 있음.

- 윤갑근 변호사를 국방부장관 공관으로 부른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본인이 부른 것은 아니나 참석한 것은 맞다고 답변함.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국방부장관 공관을 경호처가 대기실로 사용하는 점에 대해 국방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질의에 대해 사전에 실무자와 사전 협조를 하였다고 답변함. 이는 사전 협조가 없었다고 답변한 김선호 국방부장관 권한대행 진술[9]과 차이가 있음.

○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비화폰 서버 관리자에게 삭제를 지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성훈 증인은 이를 부정함.

- 비화폰 서버 기록은 한달간 유지됨에 따라 김성훈 증인이 계엄 전후 기록들을 삭제하기 위해 지시한 것이라는 제보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성훈 증인은 비화폰 서버는 매 2일마다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세팅되어 있고, CCTV 영상의 저장기간이 한달이라고 증언함.

9) MBC뉴스데스크, 2025.1.14.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676926_36799.html

○ 김성훈 차장의 단말기 데이터 삭제 지시는 보안 유출을 우려한 조처였고 실제 삭제한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은 김성훈 차장에 대한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함.

- 비상계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비화폰 서버를 압수하는 것이 핵심인데 검찰이 영장 청구에 너무 엄격한 잣대로 판단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문건 내용이 '보안성 강화'라고 표기된 점은 김성훈 차장의 주장일 뿐이고 사건 관련자들은 모두 증거인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검찰이 증거인멸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목적성이나 필요성·상당성 등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여 혐의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았고, 또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어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고 답변함.

-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은 결국 수사기관 의지의 문제이므로, 경찰의 구속영장 발부 신청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3) 수감시설 내에서 대통령 경호 문제

○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 이미 구치소 시스템으로 적절

히 보호받고 있으므로, 수감시설 내에서까지 별도로 경호를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있음.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여전히 현직 대통령 신분이므로 경호 관련 법령상 경호가 필요하다고 답변함.

○ 구치소 안에서 운동을 하거나 샤워를 하는 등 다른 수용자와 마주할 수 있고, 다른 교도관을 만날 기회도 많으므로 구치소의 개호와 별개로 경호가 필요하다는 반대의견이 제시됨.

4) 비화폰 통화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문제

○ 대통령이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기 위한 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의 전후로 비화폰을 이용하여 가담자들과 많은 연락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비화폰 서버 기록과 불출 대장을 제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신청에 대해 검찰 청구가 있었으며, 영장의 집행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경찰의 소관 사항이므로 알지 못한다고 답변함.

- 비화폰 서버 확보를 위한 검찰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비화폰 서버 이외에 확보된 인적·물적 증거로도 공소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함.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관리자에게 비화폰 서버를 삭제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는 의혹이 있음.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비화 특성상 비화폰 서버는 자동 삭제되도록 설정되어 있다고 답변함.

- 비화폰 서버의 복구가 가능하냐는 질의에 김○○ 증인(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은 복구 방법은 포렌식인데,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증언하였고, 송○○ 증인(대통령경호처 경호관)은 기술적인 사항은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증언함.

○ 비화폰 관련 전체 단말기 내 데이터를 삭제하라는 대통령경호처 지도부의 지시 사항에 대해 검토 결과 증거 인멸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보안폰 보안성 강화 방안 검토 결과'라는 문서가 지난 12월 12일 작성된 것으로 확인됨.

- 박종준 증인(前 대통령경호처장)은 위 문서를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증언함.

- 김대경 증인(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김성훈 차장이 비화폰 관련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적 있냐는 질의에 대해 수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답변이 제한된다고 증언함

- 김○○ 증인(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은 위 문서를 본 적 있는지 또는 12월 7일 전후에 지도부가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

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들은적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경호보안상 또는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답변이 어렵다고 증언함.

○ 국정조사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의 비화폰이 현재 경호처에 밀봉되어 보관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검찰은 빨리 이 비화폰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함.

5) 김용현 전 장관의 검찰 자진 출석 문제

○ 제보에 따라 김용현 전 장관의 자진 출석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보면,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선호 국방부차관에게 김용현 전 장관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묻자 비화폰 번호를 전달하였고,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이 김용현 전 장관과 두 차례 통화하였으며, 이에 김용현 전 장관은 대통령과 통화한 후 말하겠다고 답변하였고, 대통령은 김용현 전 장관에게 김주현 민정수석과 협의하라고 말하였음. 그 후 김용현 전 장관은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에게 통화하여 새벽 01시 30분 자진 출석하였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김용현 전 장관의 자진 출석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다는 의혹이 있음.

- 김주현 증인(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김용현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에 대한 기억이 없으며, 검찰에도 김용현 전 장관의 출석관련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여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음.

○ 이진동 차장검사가 김용현 전 장관에게 전화하기 직전에 김용현 전 장관이 먼저 이진동 차장검사에게 문자를 하였음. 만약 이진동 차장검사가 진술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김용현 전 장관에게 출석을 회유하기 위해서였다면 먼저 전화를 걸었어야 이치에 맞다는 지적이 있음.

-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통화의 선후관계를 확인해 보니 본인이 먼저 문자를 보내서 통화를 하자고 했고, 그 다음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답변함.

-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국방부 협조를 받아 수사팀으로부터 비화폰 전화번호를 받았다고 답변함.

-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통화한 사람이 김용현 전 장관 한 사람이라고 답변함.

6) 추가적인 수사 필요성 검토 요청 사항

○ 현행 수사 및 기소가 미진하므로 아래의 사항과 관련하여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지적이 다수 있음.

- 최근 언론에서 특별수사본부가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함[10]. 국무위원들은 공통적으로 비상계엄을 사전에는 인지하지 못했으며

10) 조선일보, 2025.01.10.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1/10/R2KFQANQCFCDXI3PRHQBXUSDUY/?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국무회의 당시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구체적인 비상계엄 가담 정도와 그 위법성을 판별하기 위해 각 국무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 비상계엄 후 2024년 12월 4일 박성재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이 안가에 모였으며, 안가 모임 후 네 명은 동시에 핸드폰을 교체하는 등 범죄 혐의가 농후하므로 해당 4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 및 홍장원 1차장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전체적인 동향을 볼 때 조태용 국정원장은 내란 행위의 인지 및 가담 정황이 있고, 홍장원 1차장이 촬영된 국정원 1층 로비를 국민의힘 의원에게 공개한 것은 정치관여금지 및 보안유지의무 위반이며, 내란의 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거나 내란 동향이 있으면 이를 조사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해태한 것은 직무유기임. 조태용 국정원장의 다수 혐의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 2024년 12월 3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에게 선관위에서 국정원과 검찰을 지원하라고 지시하였고, 정성우 1처장은 소속 대령 7명에게 같은 내용을 전파하였다고 해당 대령이 검찰 및 경찰에서 진술하였음. 아직 정성우 1처장에 대한 입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정성우 1처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 이후 검찰에서 포렌식을 담당하는 검사들이 선관위로 출발하였다는 제보가 있는바, 이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검찰의 선관위 서버 포렌식 관여행위는 내란 동참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 서울중앙지검은 12월 3일 비상계엄 직전에 선관위 관계자들을 고발했던 사건 4건을 선관위가 있는 안양지청으로 병합 송치를 하였는데,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 이첩받은 안양지청이 과천경찰서로 다시 이첩하였음. 중앙선관위로 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검찰이 안양지청의 부정선거 수사요원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으므로 해당 관련성을 철저하게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정보사 요원 36명으로 구성된 체포조를 조직하여 선관위에 파견한 것은 불법적으로 사조직을 창설한 것인데, 단지 최종적인 인사발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내용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공소장에 빠져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함.

-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인물이 모인 채팅방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 파일이 공유되었으므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을 체포하고 통화 내역을 확보하는 등 수사가 필요함.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차장이 지급한 비

화폰으로 내란 공범들 간에 긴밀히 통화하였는데, 그렇다면 김성훈 대통령경호차장도 내란 관련성으로 인지수사가 필요함.

-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김용현 장관이 경호실 비화폰을 지급한 의혹이 실제 사실일 경우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엄정한 수사를 행할 필요가 있음.

○ 노상원에 대한 수사 진행경과를 묻는 질의 및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노상원 수첩과 관련하여 국수본에서 감정불능 결과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필적감정 등 검찰의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노상원 본인이 계속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으로, 다방면으로 수사중에 있다고 답변함.

- 국가안보실에 김태효 1차장을 거쳐 대통령에게 직보하는 야당탄압 TF에서 반대 세력의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한 정황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며, 상기 TF의 뿌리인 대북특수공작단의 설치에 노상원이 관여하였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노상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조태용 국정원장이 헌법재판소에서 김건희 여사와 문자를 주고 받았다는 사실을 진술한 부분 및 계엄 당일 기재부에서 예

비비를 수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획득 절차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합동참모본부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평양 등으로 무인기를 보낸 행위에 대한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림.

○ 내란의 숨은 동기는 명태균 및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므로, 특별수사본부를 통한 수사를 바탕으로 내란의 실질적인 동기를 철저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계엄 선포 동기와 명태균과의 관련성은 수사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다고 답변함.

- 이에 대하여 김용현의 검찰 공소장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을 언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추가적인 지적이 있음.

○ 계엄 당일 국정원장의 예비비 획득 의혹 등 국정원 및 검찰의 계엄 가담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수처 및 검찰 특수본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관련하여 검사의 파견사실 또는 파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답변함.

7) 경찰청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대통령, 전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경찰청장 등 52명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임.

12월 6일부터 안보수사심의관을 팀장으로 하는 12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출범하였고, 12월 8일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체제로 격상하여 총 150여 명 규모로 특별수사단을 운영중임. 12월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수사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를 출범함.

○ 1차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하여 12월 31일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025년 1월 3일 08시경부터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였으나 13시 30분경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중지·철수를 결정함. 2025년 1월 3일 대통령경호처 처장·차장·경호본부장·경비안전본부장 등 4인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함.

○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경호처장이 경찰과 경호부대 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연락을 주고받았음.

부총리의 경찰 인력 동원 가능 여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적법하지 않은 임무라 부대 동원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고,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방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였다고 답변함.

○ 2차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하여, 공수처가 재청구한 체포

영장이 2025년 1월 7일 발부되어 1월 15일 10시 33분 체포영장이 집행됨. 2025년 1월 11일 대통령 경호처 가족부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입건함.

○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찰특공대는 배치되지 않았으며, 경찰기동대는 외곽 경비 및 질서유지 목적으로만 배치되었다고 답변함. 경찰 국가수사본부 심의관이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대통령 관저 배치도를 몰래 주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고발된 사안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중이라고 답변함.

○ 야당의원이 당과 국가수사본부간 메신저 역할을 담당하였다는 의혹에 대하여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가수사본부의 확인 결과 총경 이상의 간부 중에는 관련된 인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발에 따른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답변하였음.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이 해당 의원과 통화한 사실이 있으나 수사기획조정관은 직접적인 수사 계통에 있지 않아 계엄 관련 사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답변함.

○ 한남동 관저 인근 폭력시위 사건과 관련하여 가담자 2인에 대해 불구속 수사가 진행 중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야당 의원과 경찰관이 석방을 촉구하는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의혹에 대해 보고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함.

○ 공수처가 대통령 비화폰 통화내역 확보를 위해 경호처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경호처 방해로 압수가 집행되

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경호처 차장 및 본부장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함.

8) 기타 수사 관련 사항

○ 공수처의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된 점과 관련하여,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로 삼아 기각된 바는 없다고 답변함.

○ 공수처가 검찰로 수사기록 이첩을 빠짐없이 하였는지 묻는 질의 및 지적이 있었음.

- 공수처가 검찰에 대해 공소제기 요구를 한 1월 23일 당일에 검찰에 자료를 넘긴 것이 맞는지 묻는 질의에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그렇다고 답변하였으며, 1월 23일 이전에 검찰에서 공수처 수사자료를 복사해간 적이 있는지 묻는 질의에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있어서 사건 수사와 일체가 되는 기록들은 모두 이첩한다는 방침 하에 송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문상호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 등 수사기록 정본은 군사법원에 송부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형사기록에 대한 누락 사항이 아니라고 답변함.

○ 최근 비상계엄관련 검찰 수사자료가 언론에 계속 공개되고 있

는데, 이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가 없다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을 위반한 수사자료의 임의유출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검찰은 공소 유지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음.

○ 공수처가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에 소고기·와인 파티를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날에 저녁 모임을 하였을 뿐이고 음주를 한 것이 아니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준비하기 위해 50p에 달하는 ppt를 작성해야 하는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는 답변을 함.

(12) 기타 국정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 일체

1) 비상계엄 후 대통령 탄핵소추 문제

○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하고, 증인신문 시간을 90분으로 제한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 신문을 금지하였는데, 이는 방어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음.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야당 대표와 SNS를 통해서 교류한 점, 정계선 헌법재판관의 배우자가 계엄선포 직후에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한 점, 이미선 헌법재판관 친동생 이상희 변호사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점 등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우려하는 지적이 있음.

○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탄핵심판은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는바, 증거조사와 반대신문권 등 방어권 보장의 핵심절차는 탄핵심판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탄핵심판에서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채택하는 것이 책문권 포기·상실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증거능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기간 도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이 있음.

- 탄핵심판에서 유도신문이나 관련성 없는 신문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반대신문권 자체를 시간 지체를 이

유로 제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자료를 열람·등사 등을 통하여 제출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이진동 증인(대검찰청 차장검사)은 그러한 요청이 있어 자료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자료를 준 적이 있다고 답변함.

2) 비상계엄 후 국무위원 탄핵소추 문제

○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11] 공직자를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행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음.

- 국회의장이 대통령 권한대행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수로 정하면서 근거로 든 조문이 국회법 제10조 의사정리권 규정인데, 『국회법해설』에 따르면[12], 의사정리권의 예시에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적시하고 있지 않음.

- 만약 헌법재판소가 의결정족수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자체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현재 최상목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으

11)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주석 헌법재판소법』, p.653
12) 국회사무처, 『국회법해설』, P61

로서 직무행위도 전부 소급하여 문제가 될 수 있음.

○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문제와 관련하여 아직 심리기일조차 잡히지 않고 있어 진행이 더디다는 지적이 있음.

- 한덕수 국무총리는 변호사를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신속히 이에 대한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는 의견을 정식으로 제출하고 있다고 답변함.

○ 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로 내란 혐의를 삭제하였는데, 이는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였으므로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라는 지적이 있음.

○ 법무부장관의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현재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법무부장관의 탄핵소추 사유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법무부장관이 구금 장소를 확보하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하였다는 사유는 사실이 아님.

- 야당 대표를 째려보는 등 국회를 경시하였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사유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야당 대표를 쳐다본 적이 있지만 그것이 법률적인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답변함.

- 가장 중요한 탄핵사유는 내란 혐의인데 만약 탄핵사유에서

내란 혐의를 뺀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이유가 없음.

3) 헌법재판관 임명 및 구성 문제

○ 최상목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추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존재함.

- 헌법재판소의 국회 추천 3명을 배분할 때에는 통상 여당에서 한 명, 야당에서 한 명, 여야 합의로 한 명을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야 합의를 중시하였던 관행이었던 것임. 야당은 마은혁 후보가 합의된 후보라고 주장하지만 합의의 기준 시점은 표결 시점이어야 하므로, 야당만의 단독 의결한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된 후보라고 볼 수 없다는 찬성 의견이 있었음.

- 이에 대해 국회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의 원리를 통해서 결정되므로 법문의 해석으로 반드시 여야 합의를 조건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도출할 수 없고, 국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없으므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속히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음.

-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에 따르지 않는다면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한덕수 국무총리 및 이완규 법제처장은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여야 합의에 의해 추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야 국민을 통합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폭동 사건 문제

○ 2025년 1월 19일 새벽에 다수의 인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폭동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는 사법부를 유린하고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는 지적이 있음.

-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건이 발생한 지 5시간 반 후에나 사건에 대해 인지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질의에 대해, 최상목 권한대행은 상상할 수 없는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한 점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08시 50분 경에 처음 사건을 인지하였는데 보고가 지체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반성하고 있고 핫라인을 구축하고 있다고 답변함.

○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때부터 확실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결과적으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야기했다는 지적이 있음.

- 최상목 권한대행은 물리적 충돌이 있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가 신인도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했다고 답변함.

5) 2차 계엄 가능성 관련

○ 경찰은 12월 4일 새벽 01시 30분부터 수원 선거연수원을 봉쇄하였고, 해당 경력이 계엄 해제 30분 뒤인 12월 4일 새벽 03시 30분에 다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동한 것에 대해서 2차 계엄에 대한 준비·대비 의혹이 제기됨.

○ 홍장원 증인은 12월 6일 국회 정보위원장실에서 2차 계엄 또는 군사개입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한 사실을 인정함.

- 그 근거로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이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김용현 장관을 경질하였으나 신임 국방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사람을 볼 때 김용현 장관의 영향력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려웠으며, 방첩·특전·수방 등 계엄군 수뇌 지휘관들이 건재하였고 소추 위기와 불안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더 강한 군사적 개입의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답변함.

- 이에 대하여 국가정보원 차장이 개인의 추정 또는 판단에 의해 2차 계엄이 있을 수 있다고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권영환 증인(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장)은 국회의 계엄해제의결 이후 계엄을 즉시 해제해야 함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계엄사령관이 '일이 되게끔 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를 계엄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진술함. 또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일머리가 없다'는 질책을 세 차례 받았다고 진술함.

- 계엄사령부(합참 전비차장)는 계엄 해제 이후인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제2신속대응사단 예하 201·203여단이 출동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권영환 증인에게 지시함.

○ 안경민 증인(수도방위사령부 작전과장)은 12월 4일 02시경 계엄상황실 한영철 증인(합동참모본부 대테러특수전과)으로부터 수도방위사령부 출동 가능 병력 확인 지시를 받은 적 있다고 증언함. 한영철 증인은 해당 지시가 육군본부 정책실장으로부터 전달된 것이라고 진술함.

○ 계엄 해제 이후 12월 4일 03시에 육군본부에서 계엄상황실로 상경하는 34명을 태운 버스가 출발함. 박안수 증인(육군참모총장)은 계엄상황실 구성을 위해 12월 3일 22시 57분에서 23시 어간에 육군본부에 인원 상경을 지시했다고 증언했으며,
조종래 증인(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당시 계엄사령관)으로부터 육군본부에서 34명이 올라오라고 구두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함.
또한, 김홍준 증인(육군본부 정책실장)은 해당 버스가 03시에 출발할 당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출발 여부를 확인한 후 이동했다고 증언함.

-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사령관이 합참 계엄과장에게 '일이 되게끔 하라'고 지시한 점, 계엄 해제 이후 시각인 03시에 육군본부로부터 인원을 출발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2차 계엄을 준비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됨.

6) 계엄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

○ 김병환 증인(금융위원장)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킨 측면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이창용 증인(한국은행 총재)은 경제적 효과는 진행 중이어서 이 단계에서 평가할 수 없으나 상당한 대미지가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고 답변함.

- 구체적으로, 초기에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고,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경제성장률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바, 70원의 환율 상승분 중 약 30원 정도가 계엄의 영향으로 추정하며, 올해 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3%p 하향 조정한 것의 반 정도는 계엄 영향으로 인한 소비 위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는 증언이 있었음.

7) 기타

○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여름휴가 시 해군 함정을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골프 연습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성훈 증인(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은 해당 공간은 창고이며 관저에 골프 연습시설을 지은 적이 없다고 증언함.

- 박준규 증인(현대건설 책임매니저)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발주를 받아 2022년 한남동 관저에 골프 연습시설 공사, 삼청동 안가에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은 맞으나, 세부 내용은 보안서약서로 인해 답변이 곤란하다고 증언함.

- 이재용 증인(현대차그룹 사업관리팀장)은 보안서약서에 의해 답변이 곤란하다고 증언함.

- 윤영준 증인(前 현대건설 대표이사)및 이한우 증인(현대건설 대표이사)은 소액 공사라서 보고 받은 적 없다고 증언함.

○ 2023년 12월 8일 대통령경호처 6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됨.

- 행사를 위해 간호장교 및 여성 경찰을 동원하고, 합창 경연대회가 진행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김성훈 증인(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은 다 부르지 않고 일부만 불렀으며, 군·경이 함께 참여하였다고 증언함.

- 김성훈 증인(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은 매 행사가 아닌 50주년 및 60주년 기념행사 단 2번만 그런 것이고, 이 또한 외부 초청 행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이어서 이렇게 비난받을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증언함.

○ 국정조사과정에서 여당 의원이 공수처에 “대통령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서면질의에 공수처는 “없다”고 답변하였는데, 이는 허위답변이었음. 공수처는 법률 전문가가 아닌 파견직원이 답변을 기안하여 부정확한 표현이 있었다고 사과 및 정정함.

- 국회 답변서 제출 절차를 보면, 부서장의 확인 및 결재, 기조실장의 확인 및 결재가 있어야 하므로 직원의 실수라는 해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음.

- 오동운 증인(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당시 내란 수사에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었고, 그 당시 수사기획관이 공석인 상황이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였고, 이미 공수처장과 공수처 차장이 공개된 회의 석상에서 숱하게 발언했던 내용이므로 숨길 이유가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답변함.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사, 재판,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 방어권 보장에 대한 안건을 의결하고 관련 기관에 권고사항을 보냈음. 국가인권위원회도 헌법기관 중 하나이므로, 각 사법기관은 이에 대한 권고를 따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의 신

고가 외형상 공익신고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이첩하였다고 답변하였는바, 군형법 위반행위에는 공익신고가 적용이 되는 반면 형법 위반행위에는 공익신고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곽종근 사령관을 군형법상 반란으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철저히 파악하여 관련 내용의 보고를 요청하는 질의가 있었음.

- 곽종근 전 사령관은 공익제보자로 확실하게 인정되었고,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제보자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고 폄훼하거나 공익 제보를 막아서는 안되므로, 국정조사의 질의 과정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김성훈 차장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 호송차가 아닌 경호차량으로 이동한다는 제보가 있다는 질의에 대하여 김대경 증인(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은 소관 업무가 아니라 알지 못한다고 증언함.

○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사우나 시설이 있냐는 질의에 김대경 증인(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은 답변이 제한된다고 증언함.

○ 합동참모의장이 계엄사에 통제권을 넘기기 전에 이미 부대들이 움직인 것은 군형법 제5조 반란의 죄에 해당된다고 보임. 또한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 같은 민간인도 형법 제33조에 따라 군형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란죄와 별개로 군형법상 반란죄 적용여부를 검토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음.

3. 시정·처리요구사항 및 향후 대책

(1) 적법한 계엄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국방부는 계엄 시에 헌법 및 계엄법의 규정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계엄실무편람 등에 국회의 회의 방해 금지·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등을 비롯한 관련 사항들에 대하여 보완하도록 할 것.

○ 국방부는 지휘관의 준법적인 지휘·통솔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엄법 등의 관계 규정을 군 간부 등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 국방부·법무부·경찰청 등은 계엄 선포를 전후로 하여 헌법 제44조 및 계엄법 제13조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적인 체포·구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국방부 의뢰 연구용역에서도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계엄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연구할 것.

○ 계엄 시 군사작전과 민간 통제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군의 개입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비상계엄에서도 정부와 국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

○ 계엄 시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적 원칙을 반영한 법률 및 행정입법 등 개정을 검토할 것.

○ 탄핵 결과와 관계없이 이번 비상계엄을 계기로 군이 국회와 함께 민주적 통제 방안을 고민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발표할 것.

○ 이번 비상계엄에서 군이 이용당했다는 국민적 실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엄수행 과정에서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의 심리치료 지원 등 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할 것.

(2) 퇴역 군인의 군행정 및 작전 개입 방지대책 강화 필요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모의 과정에서 정보사령부 간부 등에게 비상계엄 준비관련 업무 지시를 하고, 공관 등의 장소에서 수차례 특수부대 지휘관 등 간부를 만나는 등 군의 인사 및 행정 등에 관여하였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음.

(3) 국무회의 회의록 관리 강화

○ 국무회의 등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생성되는 기록물을 강화하고, 국무회의의 요건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등 국무회의 회의록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행정안전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회신 받은 자료에 안건 및 발언요지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회의록 작성이 곤란한 실정임.

○ 행정안전부는 비상계엄 이후 관계기관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 관리 철저 요청(‘24.12.6.)을 전달하고, 기록물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공수처의 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금지 요청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 후 폐기금지 결정을 관보 게시 및 통보하였으나 이는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함.

○ 따라서, 국무회의를 비롯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회의의 기록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4) 계엄과 관련한 후속 수사상황 관련

○ 비화폰을 이용한 통화 내역이 수사의 핵심인데 이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경호처의 방해로 경호처 서버에 대한 압수가 집행되지 못하였음. 대통령의 비화폰 통화내역 등을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 집행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국회협력단의 비상계엄 연루 및 증거 은닉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할 것.

(5) 부정선거 의혹 해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 부정선거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확인 및 홍보를 강화하고, 부정선거 관련 의심이 가장 많이 지적되는 사전투표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사전투표의 경우 1차 투표와 2차 투표로 사실상 분리가 되어

양자 사이에 정보의 양도 다르고 새로 생성되는 뉴스도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2022년 독일 베를린주 재투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차를 없애는 등의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소쿠리 투표, 선관위 직원 가족 채용비리 의혹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큰 상황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지난 2023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선관위 채용 실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2017년부터 7년 간 진행된 162회의 채용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건이 353건이나 있었던 만큼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법률상으로는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례적으로 대법관이 겸함으로써 비상근으로 근무하는 것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임.

- 위원장이 비상근인 시스템하에서 한 달에 1번 정도 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으며, 회의 외에 월 2회 가량 출무하며 한 달에 3번 가량 나오는 현실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전반을 정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 또한,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다 보니 상호 독립적이어야 할 법원과 선관위가 독립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계속되는 상황임.

-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위원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3명 중 그나마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담보할 수 있는 위원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라는 의견도 있음.

○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상근직 여부는 위원장의 상근직 전환을 통한 책임성·효율성 확보 필요성과 상근하는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가능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6) 그 밖의 사항

○ 군인은 모든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하고 정당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모든 장병들에게 법률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4. 불출석 및 위증 등 고발의결사항

(1) 불출석증인에 대한 고발 관련사항 등

성 명	직 위	고발의결일	고발사유
윤석열	대통령	제11차 (2025.2.28.)	불출석 5회 및 동행명령 거부 3회
김용현	前 국방부장관	〃	불출석 5회 및 동행명령 거부 5회
여인형	前 국군방첩사령관	〃	불출석 5회 및 동행명령 거부 3회
문상호	前 정보사령관	〃	불출석 5회 및 동행명령 거부 5회
노상원	前 정보사령관	〃	불출석 4회 및 동행명령 거부 4회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	불출석 2회 및 동행명령 거부 1회
김용군	정보사령부 예비역	〃	불출석 2회 및 동행명령 거부 1회

(2) 위증고발 관련사항

성 명	직 위	고발의결일	고발사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제11차 (2025.2.28.)	헌법재판소에서의 증언과 불일치
김성훈	대통령경호처장 직무대행	〃	비화폰 삭제 지시 없었다고 위증
김현태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	단체 대화방 관련 국회에 허위 공문서 제출 책임

5. 기타 논의사항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반적인 선거관리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박현수 경찰국장에 대한 치안정감 승진 및 서울경찰청장 임명과 관련하여 12·3 비상계엄 사태와의 연루 의혹이 있는 만큼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의 승진이 수사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가 제기되었음.